

동북아 관계사의 성격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
역사재단
학술회의
자료집

동북아역사재단 · 베이징대학 공동 학술회의

동북아 관계사의 성격

동북아역사재단 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동북아역사재단과 공동 학술회의를 하기 위해 중국에서 오신 베이징대학 역사학과 누다용[牛大勇] 주임 그리고 쑹청유[宋成有], 뤼신[羅新], 왕위안저우[王元周], 리즈성[李志生], 쉬카이[徐凱], 당바오하이[黨寶海] 교수께 재단을 대표해 심심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한국 측 발표 및 토론자로 참여해주신 서울대 이태진, 고려대 김현구, 전남대 김당택, 공주대 정하현, 신라대 배경한, 경북대 이개석 교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술회의 개최를 위해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한 재단 관계자들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특별히 저희 재단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왕림하신 방청객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사 이래 한·중 양국은 이웃 나라로서 많은 교류를 해왔습니다. 역사상 양국 사이에는 갈등과 전쟁도 있었지만 평화적인 우호 협력관계가 더 오랜 기간 지속되었습니다. 양국 사이에는 문화 교류 또한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의 한자가 전래되어 한국인의 문자 생활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중국의 유교, 불교 및 도교 문화가 한국 문화에 끼친 영향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요사이 중국의

네티즌 사이에 퍼지고 있는 오해는 빨리 해소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누구도 한자나 중국 고대의 위대한 사상 등이 한국에서 시작되어 중국으로 갔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문화적인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양국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한국인과 중국인의 외모가 서로 비슷하지만 다른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는 등 다른 민족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의복, 음식, 주거 문화 등에도 많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한·중 양국은 이러한 문화적 동질성과 차별성을 상호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양국 사이에 발생한 역사 갈등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상대방의 역사를 존중하는 가운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학문적 연구를 진행한다면, 역사적 진실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양국의 학자들이 자리를 함께 한 것도 그동안 두 나라 간에 발생했던 역사 인식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진솔한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통시대 중국과 한국의 지식인들이 말이

통하지 않아 필담을 통하여 서로의 학문을 논하고 우정을 나눈 훌륭한 전통을 오늘날에 맞게 새롭게 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꿈을 저는 항상 꾸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회의를 계기로 동북아역사재단과 베이징대학 사이에 학술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특히 베이징대학 교수님들은 서울에 머무는 동안 보람 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9월 4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 용 덕

축사

철저한 사전준비를 거쳐 동북아역사재단과 베이징대학 역사학과와 공동 학술회의가 오늘 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의에 참가하는 중국 측 학자 전체를 대표하여 주최 측인 동북아역사재단이 이번 회의를 위해 보여준 모든 노력에 대해 깊은 관심과 감사를 드립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설립 이래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커다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규모 있는 조직을 갖추었으며, 학술 연구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국제교류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중국 학계와의 각종 교류활동 역시 매우 활발하고 적극적입니다. 우리 베이징대학 역사학과는 중국 대학 중 가장 먼저 동북아역사재단과 교류 협력관계를 맺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귀 재단은 학술 방문, 연구원 파견, 각종 국제학술회의 참가 등의 방식으로 베이징대학과 풍성한 성과가 있는 교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번 공동 학술회의를 열게 됨으로써 쌍방 간 교류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베이징대학 역사학과는 한국의 역사와 중국의 관련 지역 내 동북아 지역사의 교육과 연구를 포괄하고 있어 참으로 ‘源遠流長, 持久不衷’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베이징대학 역사학과는 1920년대 말기~1930년대 중기에 평자성 [馮家昇] 선생이 '동북사지', '조선사', '변강민족사'를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팡창유 [方壯猷] 선생이 '요금원사', 명썬 [孟森] 선생이 '만주개국사', 구제강 [顧頡剛] 선생이 '중국고대지리사' 등의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1940년대 말에는 정토텩 [鄭天挺] 선생이 '청사연구', 야오충우 [姚從吾] 선생이 '송요금원사' 등의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수들은 이러한 영역에서 더욱 깊은 연구를 진행하며, 더욱 많은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동북아연구소, 민족사연구중심, 한반도연구중심 등의 학술기구도 설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베이징대학의 연구자들은 바로 이러한 분야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데 가장 앞장서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이 분들이 발표할 새로운 성과들이 한국 동료 연구자들의 진지한 가르침에 힘입어 학술 발전에 미약하나마 공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세기의 가장 이른 시점에서 있습니다. 점점 강렬해지는 경제 세계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미 인문사회과학은 새로운 세계화의 시야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화의 시각으로 동북아의 근대 역사를 대해야만 협소한 민족주의의 한계

를 초월할 수 있으며, 동북아를 세계체계에 편입시켜 이 지역 근대 발전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동북아지역의 각 나라와 민족은 지식,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의 발전 추이를 논함에 있어 끊임없이 전지구화와 국제화의 큰 흐름 속에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다른 국가, 다른 민족, 다른 시기의 언어가 존재했다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각 나라들은 어떤 때에는 주도적으로, 어떤 때에는 피동적으로, 또 어떤 시기에는 분명하게 자주적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외부 침략세력에 의해 역사가 단절되고 방해받아 순조롭게 발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번 학술회의가 새로운 자료, 새로운 시야, 새로운 방법으로 인간의 역사에 대한 인식을 다시 세울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회의가 원만하게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2008년 8월 29일

베이징대학 역사학과 주임 뉴 다 응

●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내재한 세계관 정하현	
1. 머리말	17
2. 고대 중국의 대외관계와 대외관 문제에 대한 국내 학계의 접근	18
3. 『한서』 「지리지」의 구성과 한대 중국인들의 세계관	23
4. 「위지 동이전」의 서술 태도와 시각 I-지리관의 문제	29
5. 「위지 동이전」의 서술 태도와 시각 II-중국적 세계의 지향	38
6. 맺음말	49
● 고구려 형제 관직의 내륙 아시아 연원 류신	
1. 고구려 형제 관직의 연원과 전승	59
2. '加' 명칭 어원의 내륙 아시아 연원	68
3. 탁발선비 및 기타 내륙 아시아 민족이 aka/akan을 관칭으로 삼은 상황	77
4. 맺음말	83
● 백촌강 싸움과 동북아 국제관계의 변화 김현구	
1. 머리말	91
2. 신라·당·일본 3국 연합체제의 성립	93
1) 신라의 고립과 대당 접근	93
2) 김춘추와 도일과 3국 연합체의 성립	96
3. 백촌강 싸움 구도의 형성	98
1) 당의 고구려 원정	98

2) 일본의 위기의식과 백제 · 일본 · 고구려 3국연대	101
3) 백제 멸망과 백촌강 싸움	104
4. 동북아 국제관계의 변화	107
1) 일 · 당관계의 재개	107
2) 일본의 이중성	110
3) 동북아 세계의 정립	113
5. 맺음말	118

• 서안지역의 당대 상징양식을 통해 본 발해 정혜공주와 정효공주묘 리즈성

1. 정혜공주와 정효공주묘의 배장	132
1) 당나라 공주의 황릉배장 제도	132
2) 당나라 전기 공주의 황릉배장	136
3) 당나라 후기 공주의 장지	147
4) 발해 정혜 · 정효공주의 배장	158
2. 정효공주의 묘실배치에 관하여	162
1) 당나라 공주묘와 정효공주묘의 벽화 배치	162
2) 당나라 공주묘와 정효공주묘의 묘실 배치	172
3. 덧붙이는 말	178

• 고려와 요 · 금 · 원 관계사의 특징 김당택

1. 머리말	187
2. 고려와 요	188
1) 고려 초의 동북아 정세	189
2) 요의 침입	192
3. 고려와 금	196
1) 숙종 · 예종대의 여진정벌	196
2) 조공 · 책봉관계의 성립	200
4. 고려와 원	204
1) 몽골의 침입과 고려의 항전	204
2) 여원연합군의 일본정벌	210

3) 원의 정치적 간섭	213
4) 고려의 반원정책	216
5. 맺음말	219

● 팔기만주의 고려 가족과 청초의 전쟁 쉬카이

1. 고려 43성 가족의 팔기만주 편입	230
2. 독립적으로 편성된 조선과 고려의 좌령	236
1) 정황기 만주도통 제4참령 소속의 18좌령 중 제9, 10이 조선좌령이었다	238
2) 정흥기 만주도통 제1참령 소속 4개의 조선좌령	242
3) 정황기 만주포의 제4참령 소속의 제1, 2 고려좌령	248
3. 고려 가족과 청초의 전쟁	251
1) 조선 정복	252
2) 요서 진출	255
3) 중원 통일과 공고화	257

● 조선중화주의에서 한청조약까지 이태진

-근대적 한중관계의 성립

1. 머리말	269
2. 명-조선 간의 책봉조공체제	271
3. 18세기 조선중화주의와 열하의 충격	274
4. 1880년대 책봉조공체제의 갈등과 1899년 한청조약의 체결	280
5. 맺음말	284

● 『지정조격』의 성격과 영향에 대한 시론 당바오하이

1. 『지정조격』과 『통제조격』의 관계	296
2. 원조 입법 관념의 발전	308
1) 몽골 귀족에 대한 제약의 강화	308
2) 색목인의 관습법에 대한 강력한 관여	315
3) 전통 한법에 대한 인정과 옹호	319

3. 『지정조격』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	322
1) 명대 입법에 끼친 영향	322
2) 고려와 조선에 끼친 영향	326
4. 결론	336
● 20세기 초 한·중 간의 상호인식 <small>배경한</small>	
- 쑨원의 한국 인식과 한국인들의 쑨원 이해를 중심으로	
1. 머리말	347
2. 쑨원과 한국인들 사이의 교류	349
3. 한국 문제에 대한 쑨원의 입장	355
4. 한국인들의 쑨원 이해	361
5. 맺음말	366
● 근대 한중관계 변천의 이상과 현실 <small>왕위안저우</small>	
- 한국인의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역사적 근원	
1. 머리말	377
2. 북벌론에서부터 북방사관까지	380
3. 모화에서 천화로	396
4. 맺음말 : 역사기억, 민족심리와 국제관계	411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내재한 세계관

정 하 현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동북아역사재단

50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머리말

최근 역사 해석을 둘러싸고 벌어진 주변 국가들과의 마찰이 한국 국민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 가운데 중국 동북(東北) 지역의 역사에 대한 일부 중국 연구자들의 편향적인 해석으로 촉발된 갈등은 일견 새로 불거져 나온 사안 같아 보인다. 그러나 그 실상은 근대국가가 수립되고 서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이미 터져 나왔을 성격의 문제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시대를 거치는 동안 양국 간의 교류 단절 때문에 수면 아래 잠복해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1990년대부터 양국관계가 회복되고 워낙 단기간에 교류가 급증하다 보니 그에 수반해서 부작용들이 나타났다. 서로 중첩되는 인적 유산을 둘러싸고 역사 해석상의 갈등이 표출된 것도 그러한 부작용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다만 언론의 과도한 대응이 민족주의라는 외피를 강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감정적인 반응이 증폭되기에 이른 것 같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연구자로서 한중관계사에 대해 보다 더 학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한중관계에서 역사 해석을 둘러싼 미묘한 시각차는 특히 고대사와 중세사 분야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국내의 중국 고대사 연구자들도 이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다.

아래에서는 국내에서 한중관계의 전개 과정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살펴보고, 다음으로 한중관계사 분석을 위한 전제로 중국 사서(史書)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다루어 보기로 한다.

2. 고대 중국의 대외관계와 대외관 문제에 대한 국내 학계의 접근

고대에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는 한국사의 이해에도 불가결한 중요한 주제이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오랫동안 관심의 주된 대상에서 비껴나 있었다. 우선 한국사 연구자들은 민족의 원류나 초기 국가의 발달 문제 등 상고사 분야의 핵심 과제를 다루면서도 서술의 의도성을 경계한 나머지 중국 측 사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외면하거나, 필요에 따라 단편적으로만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덧붙여 고대사에 대한 국민적 정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부담감도 있어 이 주제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였던 듯하다. 그리하여 예를 들면 한사군(漢四郡)은 주된 연구 대상에서 배제되고, 단지 정치 세력 간의 소장(消長) 관계를 언급할 때나 고조선과 위만조선의 위치 설정과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다루었다. 그 결과 고대 중국이 어떠한 형태

- 1 여기에서 고대사·중세사라는 용어와 그 범위는 韓國 국내에서 사용되는 관행에 따랐다. 단, 중국사의 경우 고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어 있고 한국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대체로 중국의 경우 漢代까지로 보는 견해를 편의적으로 따르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후한부터 삼국까지에 걸친 시기는 중국사로서는 고대에서 중세로 바뀌는 시점이 되고, 한국사로서는 고대에 해당한다.

로 동북 일대의 이민족 집단 또는 정치세력들과 접촉하였고 이들을 대하는 정책에는 어떠한 일관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정책의 저변을 관통한 대외관이나 세계관은 어떠한 것이었는지 하는 문제들에 대해 별다른 연구 성과가 없었다. 한중관계사 연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문제들이었음에도 말이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접근은 중국사 연구자들의 책임으로 돌아갈 것들이기도 하다. 그런데 중국사 연구자들은 인적 자원이 부족해 주로 중국 본체(本體)의 역사 규명에 매달리고 관계사에까지 눈을 돌릴 여력이 없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중화사상을 다루는 등 부분적인 시도들이 없지는 않았지만² 그 수준은 대개 자의(字意)의 분석에 치중하는 정도였고, 그것이 시대에 따라 구체적으로 전개된 맥락이라든가, 정책으로 구현될 때의 구체화 과정 등까지 폭 넓게 검토한 연구는 아니었다.

연구 성과가 영성한 가운데서도 고대사에서 중국의 대외 문제를 '중국적인 세계질서'라는 차원에서 다룬 김한규(金翰奎) 교수의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중국이 세계의 중심으로서 주변 민족들을 통제하려는 구상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추적한 연구³로, 1960년대 일본에서 고대 동아시아 세계에 대한 논쟁의 불길을 댕긴 니시지마 사다오(西嶋定生)의 책봉(冊封)체제 이론⁴을 연상케 한다. 상호 관계로서보다 중국

2 尹乃鉉 外(1988), 『中國의 天下思想』, 민음사.

3 金翰奎(1982), 『古代中國의 世界秩序 研究』, 일조각.

4 西嶋定生(1962), 「東アジア世界と冊封體制—六~八世紀の東アジア」, 『岩波講座: 日本歷史』 Vol.2(古代2). 다음에도 수록되었다. 西嶋定生(1983), 『中國古代國家と東アジア世界』, 東京. 西嶋定生の 문제 제기 이후 고·중세의 동아시아 세계론을 둘러싸고 전개된 일본에서의 논쟁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잘 정리하고 있다. 唐代史研究會 編(1979), 『隋唐帝國と東アジア世界』, 東京. 이 가운데

측 입장에 치우친 점이나 도식적인 파악 등으로 인해 비판받을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주변 민족과 접촉하는 장(場)인 변방의 군현(郡縣)이 내지(內地)의 군현과는 다른 방식으로 경영된다고 보고 이 차이에 주목하여 중국이 이민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변군(邊郡) 체제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이상적인 정책 모델이 현실로 구체화될 때 어떻게 변용되는가 살펴보려 한 측면이 있다. 나아가 이 개념을 통해 주변 민족들의 자립이 가능한 조건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려 한 것 같다. 이후 몇몇 연구자가 이러한 관점을 원용하였다. 한중관계에 대한 연구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던 가운데서도 낙랑(樂浪)을 대상으로 동이(東夷)지역에 대한 군현 지배의 특수성을 검토한 한 연구⁵가 그렇고, 최근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 과제 가운데서도 확인된다.⁶

대체로 1990년대까지는 중국의 대외정책, 그리고 이를 뒷받침한 대외관 등을 한중관계사의 관점으로 접근한 시도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러다 극히 최근 들어 변화가 나타났다. 그것은 도외시되어 있던 중국 측 사료를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이들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접근을 시도한 이성규(李成圭) 교수의 연구로부터였다.⁷ 이 교수는 이미 중국의 동이관(東夷觀)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다는 사실

菊池英男의 「總說－研究史的回顧と展望」.

5 權五重(1992), 『樂浪郡研究－中國古代邊郡에 대한 事例的 檢討』, 일조각.

6 서영수·배진영·윤용구·김용성·방향숙(2008), 『요동군과 현도군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이 가운데 배진영·방향숙의 연구.

7 李成圭(2003), 「고대 중국이 본 한민족의 원류」, 『韓國史市民講座』 32; 李成圭(2004), 「中國 古文獻에 나타난 東北觀」, 『동북아시아 선사 및 고대사 연구의 방향』, 학연문화사; 李成圭(2005), 「4세기 이후의 樂浪僑郡과 樂浪遺民」, 『동아시아 역사 속의 중국과 한국』, 서해문집.

에 초점을 맞추어 회수(淮水) 일대의 동이와 중국 동북 일대로부터 한반도에 걸쳐 활동한 동이는 친연(親緣)관계가 없는 별개의 집단이라는 점을 추적해 환황해적(環黃海的)인 활동 무대를 갖는 환상적인 동이상(東夷象)을 지워버림으로써 한민족의 원류를 추적하는 데 전환점을 마련한 바 있다.⁸ 그는 최근 일련의 연구에서 한편으로는 중국 문헌에 나타나는 동이관·동북관(東北觀) 같은 주변 세계에 대한 인식을 검토하면서 전통적인 동북 관계 자료들이 어떻게 자의적으로 구성되고 그에 따라 만들어진 편향적인 한민족관(韓民族觀)이 어떻게 반복 재생산되어 갔는가를 다루었다. 이와 동시에 종래 회피해 왔던 고대사에서 중국의 영향 문제를 직시하고자 하여, 그 기초 작업으로 중국의 대외정책과 변방 통치가 한민족의 활동 무대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었는가 낙랑 지배를 통해 검토하였다.⁹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중국 고대사 연구 성과의 활용, 막대한 양의 신출(新出) 고고 자료들을 이용한 분석 방식 등은 한중 관계사에 관심을 갖는 연구자들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다. 최근 몇 년 사이 새로 나온 간牍(簡牘) 자료들을 활용하여 한(漢)의 군현 지배가 동이 지역에서 어떻게 실행되었는가를 추적한 연구들이 발표된 것도 그러한 사례이지만,¹⁰ 이러한 가운데 낙랑 등 동북 일대에서 고대 중국의 군현 지배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도 발표되고 있

8 李成珪(1991), 「선진 문헌에 보이는 ‘東夷’의 성격」, 『한국고대사논총』 1.

9 李成珪(2006), 「중국 군현으로서의 낙랑」, 『樂浪文化研究』, 동북아역사재단.

10 金秉駿(2006), 「중국 고대 簡牘자료를 통해 본 樂浪郡의 군현지배」, 『역사학보』 189; 尹龍九(2007), 「새로 발견된 樂浪木簡: 樂浪郡 初元四年 縣別戶口簿」, 『한국고대사연구』 46; 金秉駿(2008), 「樂浪郡 初期의 編戶過程과 ‘胡漢稍別」, 『木簡과 文字』 창간호.

는 것이다.¹¹

최근의 전환은 고대사의 한중관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제 막 개시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의미가 깊다. 이러한 접근에서 필수적인 선결 과제의 하나는 중국 측 사서들에 존재하는 의도성을 파악해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종종 사서의 편향된 관점 때문에 과장 또는 무시되거나 때로는 왜곡되기도 한 사실(史實)들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이러한 검토 작업을 거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지만¹² 아직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필자는 한중관계는 물론 한국 고대사 연구에서도 일급 사료(史料)로서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아 온 『삼국지(三國志)』 「위지 동이전(魏志東夷傳)」이 어떠한 의도로 구성되고 서술되었는가 검토하려 한다.

필자가 위에서 국내 중국사 연구자들의 연구 사이에 존재하는 관점의 차이를 언급한 것은 이 「동이전」에 대한 접근방법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동이전」의 내용을 통해 과연 변방 이민족의 자율성에 대한 수용의 자세를 찾아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필자의 의문인데, 이러한 의문은 연구자들의 관점 차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11 李成珪(2006), 앞의 책 ; 吳永贊(2006), 『樂浪郡 研究』, 사계절.

12 다음의 연구는 史書 분석의 점에서 흥미를 끈다. 金秉駿(2008), 「漢이 구성한 고조선 멸망 과정 : 『사기』 조선열전의 재검토」, 『韓國古代史研究』 50. 한편 李成珪 교수의 일련의 연구들은 논지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종종 史書에 대한 검토 작업을 병행하고 있어서 중국 측 史書의 분석에도 유용하다.

3. 『한서』 「지리지」의 구성과 한대 중국인들의 세계관

『삼국지』는 기전체(紀傳體) 형식을 띠는 정사(正史)이다. 기전체 사서로서의 특징이 지나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삼국지』가 모델로 삼았을 『한서(漢書)』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삼국지』의 저자인 진수(陳壽)가 그의 시대에 이미 대작으로 인정받고 있던 『한서』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을 개연성은 당연히 존재하지만 『삼국지』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기 어렵다.¹³ 다만 『삼국지』 「동이전」을 보면 기자(箕子)의 교화가 동이에 미친 효과를 삽입함으로써¹⁴ 동이지역에 대한 중국의 연고권을 효과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지하듯 기자의 교화를 본격적으로 언급하여 동이지역에 대한 중국의 균현적 지배가 정당함을 최초로 주장한 것은 『한서』이다.¹⁵ 일단 기자에 관한 기술에 대해 『삼국지』와 『한서』를 비교해 보아도 『삼국지』의 동이 관계 기사가 『한서』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고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¹⁶

13 『三國志』 「魏志 薛綜傳」의 薛瑩 부분과 「吳志 韋曜傳」에는 귀양 보내진 薛瑩과 私罪에 처해진 韋曜를 구하기 위해 華覈이 두 사람의 史才를 강조하는 가운데 班固의 업적을 언급하는 내용들이 나온다. 이로 미루어 陳壽가 班固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임은 쉽게 추정할 수 있으나 그 영향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추적하는 것은 어렵다.

14 (東)濊 條, “昔箕子既適朝鮮, 作八條之教以教之, 無門戶之閉而民不爲盜.” 또 한 夫餘조에는 “以殷正月祭天”, “國之耆老自說古之亡人”이라 하였다. 이는 殷의 역법을 거론한 것으로 미루어 亡人이 殷의 유민임을 자처했다는 의미로 볼 여지가 있다.

15 李成珪(2003), 앞의 글, 134~135쪽.

그러면 『동이전』이 많은 영향을 받았을 『한서』는 동이지역에 대해 어떻게 묘사하고 있으며, 어떠한 세계상 가운데 동이를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동이지역에 대한 『한서』의 서술은 크게 두 부분, 즉 「지리지(地理志)」의 몇 군데에 실린 단편적 기록들과 이민족 관계 열전의 하나인 「조선전(朝鮮傳)」으로 나뉘어 있다. 다만 「조선전」의 내용은 『사기(史記)』 「조선열전(朝鮮列傳)」의 기록을 거의 그대로 전재(轉載)해 놓은 것에 불과하고 그것도 무제(武帝)의 조선 정벌 과정에 대한 내용들뿐이다. 『한서』는

16 『漢書』 「地理志」 燕地 條를 보면 燕의 道가 衰하여 箕子가 朝鮮으로 가서 禮義와 농경, 織造 등을 가르쳤다고 한다. 이어서 樂浪·朝鮮의 民(혹은 樂浪의 朝鮮民)은 犯禁八條의 효과로 서로 도둑질하지 않고 門戶를 닫지 않으며 婦人들은 정숙하여 음란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犯禁八條를 시행한 주체가 애매한데 역사적 사실로서만 분석하자면 樂浪郡 설치 이후의 律令 적용을 가리킬 가능성이 있다. 李成珪(2006), 앞의 글, 109쪽 주252 참조. 단, 이어지는 뒤의 문장에서 과거에는 순박했던 습속이 점차 각박해지고 犯禁도 60餘條로 늘어났다고 하면서 “可貴哉, 仁賢之化也!”라고 箕子의 教化를 칭송한 것으로 보이는 구절이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犯禁八條를 箕子가 시행하였다고 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東夷傳」(東)濊 條에서는 “昔箕子既適朝鮮, 作八條之教以教之, 無門戶之閉而民不爲盜”라 기술한 것이다. 그렇다면 후대에 출현하는 ‘樂浪’을 어떻게 과거의 箕子와 연결시킬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樂浪·朝鮮은 현재 東夷지역을 범칭한 것으로 본다면 문제는 해결된다. 이에 비해 『三國志』에서는 (아마 冊丘儉의 침략 당시) 遺風이 남아있는 것을 목격한 장소로 (東)濊를 적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뿐 아니라 『漢書』에서는 주민들이 관리나 상인들을 흉내내어 杯器를 먹고 마시는 데 사용하기 시작하였다고 하였는데 『三國志』에서는 (東夷의 땅이) 비록 夷狄의 고장이지만 俎豆의 형상을 확인할 수 있어서 (놀랍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 중국이 예를 잃으면 四夷에게서 찾았다고 한 말을 믿을 만하다고 기술한 것은 『漢書』에서 孔子가 道가 행해지지 않음을 슬퍼하면서 바다에 떠서 九夷에게 가 살고 싶다고 한 말이 근거가 있다고 기술한 것과 너무나 흡사하다. 필자는 箕子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다른 내용 곳곳에서도 『漢書』 「地理志」로부터의 차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이민족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관한 기사는 일단 열전으로 정리하고 당시의 세계관과 각지에 대한 지리 지식은 「지리지」로 정리해 놓았다. 「지리지」에 실린 내용들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지리지」의 구조에 대해 검토해 보자.

『한서』는 『사기』에 「지리지」에 해당하는 편목이 없는 것을 의식하고 『지리지』의 내용을 구성한 듯하다.¹⁷ 「지리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부분에 한대(漢代)의 지리 상황에 이르기까지의 변천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 점이 그렇다. 우선 첫 부분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서는 처음 황제(黃帝)로부터 시작하여 요(堯)·순(舜)을 거쳐 우(禹)의 치수(治水)에 이르는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한 뒤 우의 치수에 의해 안정을 찾게 된 천하(天下)의 지리적 상황을 9주(九州)로 분류해 소개하였다. 9주에 대한 설명은 자의(字意)가 같은 문자 몇 개를 치환한 것을 빼면 『상서(尙書)』 「우공(禹貢)」의 내용을 거의 전문(全文) 그대로 전재하고 있다. 「우공」은 주지하듯 각 주마다 먼저 개괄적인 지형을 간단히 소개한 뒤 토지의 특성, 경지의 수준에 대한 평가, 전부(田賦)의 등급, 해당 주에서 바치는 특산물과 그밖의 특산을 기재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주에 이민족이 있을 경우 간략하게 부기(附記)해 놓고 있다. 9주에 대한 서술이 끝난 뒤에는 제왕(帝王)의 소재지를 중심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거리에 따라 통치력의 정도가 체감되어 가는 상황을 묘사한 5복

17 이는 『史記』에 「食貨志」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前漢에 이르기까지 경제정책과 경제상황이 변화해 온 과정을 「食貨志」 상편에 정리해 놓은 것과 동기가 같다. 班固는 『史記』에 「平準書」가 있기는 하지만 武帝의 均輸·平準 정책에 초점을 맞춘 탓에 시야가 제한되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단, 특별히 연혁을 정리한 「食貨志」 상편을 추가한 듯하다.

(五服)의 제도를 소개하였다.¹⁸ 즉 왕성(王城)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천하가 제왕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우공」의 내용은 전국(戰國) 중기 이후의 지리 지식을 기초로 하고 있고¹⁹ 「지리지」는 이를 한대 사람들의 관점에서 다시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서 언급된 9주는 이상적으로 존재해야 할 것이라 믿은 중국적 세계의 모습일 것이다.

이어서 은(殷)을 거쳐 주(周)까지를 다룬 부분에서는 『주례(周禮)』 「하관(夏官)」 직방조(職方條)의 내용을 그대로 전재함으로써 주대(周代)의 지리적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²⁰ 역시 9주의 틀은 그대로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변화가 있다. 이 변화는 이 글의 논지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동북지역을 관할하는 유주(幽州)가 등장하기 때문이다.²¹ 아울러 천문을 관장한 보장씨(保章氏)를 언급하면서 천문과 지리가 서로 상관 관계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천문을 관찰함으로써 지상의 길흉을 예측할 수 있다고 서술한 내용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²² 이는 「지리지」

18 각기 오백리 단위로 甸服, 侯服, 綏服, 要服, 荒服의 다섯 단계로 나누고 마지막 荒服에 이르기까지 “東漸于海, 西被于流沙” 한 범위 이내의四海는 모두 聲教가 미친다고 기술하였다. 이 부분까지가 「禹貢」에 해당한다.

19 靳生禾(1987), 『中國歷史地理文獻概論』, 太原, 30쪽. 「禹貢」이 쓰여진 시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데, 이 책에서는 주로 顧詒剛의說을 이용, 戰國 중기 저작설을 지지하고 있다. 內藤虎次郎의 戰國 말기설도 소개하고 있다. 「禹貢」成書 연대를 둘러싼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이 상세하다. 辛樹幟(1973), 『禹貢新解』, 香港.

20 한편 職方條에서는 뒤를 이어 지방 통치의 틀로 九服의 제도를 소개하고 있지만, 「地理志」에는 실리지 않았다. 『尙書』의 五服說을 따른 때문으로 생각된다.

21 『漢書』 「地理志」上, “周既克殷, 監於二代而損益之, 定官分職, 改禹徐·梁二州合之於雍·青, 分冀州之地以爲幽·并.”

22 『漢書』 「地理志」下, “而保章氏掌天文, 以星土辯九州之地, 所封封域皆有分星,

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분야설(分野說)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한 장치이다. 마지막으로 주제(周制)가 무너지고 열국(列國) 할거의 상황을 거쳐 통일국가가 등장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서술함으로써 한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마무리하고 있다.

두 번째 부분은 「지리지」의 본문에 해당하는 한대의 지리상을 서술한 것으로 전국을 군(郡)과 국(國)으로 나누어 각 군·국의 상황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먼저 본주(本注)로 연혁을 소개한 뒤, 호(戶)와 구(口)의 통계, 속현(屬縣)의 목록을 신고 각 속현 아래 다시 본주로 간략한 보완 기사를 신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리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리지」에 수록된 수치는 각 군현의 상계(上計)에 의해 수집된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가 확실하다. 먼저 군에 대해 소개하고, 이어 국들을 열거하고, 최종으로는 한 제국의 전체 면적, 미개간지와 경지 면적의 총합, 그리고 앞에 제시된 통계의 총합인 전체 호수(戶數)와 구수(口數)를 수록해 놓고 있다.

「지리지」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분야설을 역사적 전개 과정에 따라 형성된 지역 사회와 결합시켜 각 단위 지역마다 역사적인 연혁, 특징적인 산업, 주민들의 기질, 주목할 풍속들을 소개하고 있다. 역사적 산물로서의 지리 상황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춘추·전국의 주요 국가별로 각 지역을 분류하여 소개하고 있다. 말하자면 인문내지 문화 지리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천문관과 지리관 사이의 밀접한 관계²³에 대해서는 『주례』의 내용을 인용함으로써 그 논거를 마련하고 있음을 지적

以視吉凶。”

23 분야설의 성립 과정, 지리와 천문을 밀접하게 관련짓는 관념에 대해서는 이문규(2000), 『고대 중국인이 바라본 하늘의 세계』, 문학과지성사, 66~74쪽 참조.

했지만, 원래 (지도 제작을 비롯하여) 지리 지식이 부족한 시대에는 천문 지식을 이용해 지리적 구분을 하였던 것이라고 본다.²⁴ 이러한 관계에서 성립된 분야설이 후대까지 이어지면서 점성술(占星術)도 지리 지식과 연결된 상태로 남아 있게 된 것 같다. 문제는 이를 반고(班固)가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점인데, 역사적 산물로서의 각 지역들을 분야설의 각 분야에 배당시키는 작업 역시 중국의 통일적 세계관을 완성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분야설과 결합되어 소개된 단위 지역은 모두 13개라는 점이다.²⁵ 이는 한 무제에 의해 13주가 설치되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지만, 무제가 중국 전체를 13개 지역으로 구분한 것은 한대의 지리적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변화하여 9주로는 적절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²⁶ 그런데 「지리지」에는 각 분야에 해당하는 지역들이 어느 주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없다. 왜 반고는 각 분야 지역들을 특정 주에 배당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 아마 당시의 주는 지역 사회를 통합하는 단위로서 인식될 만큼 주 내부의 결속이 강고하게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고에게는 통일된 중국 전체를 상징하는 데 9주 관념이 더 적합하였던 것 같다.

24 劉俊南(2008), 「上古星宿與地域對應之科學性考釋」, 『農業考古』 2008-1.

25 秦地, 魏地, 周地, 韓地, 趙地, 燕地, 齊地, 魯地, 宋地, 衛地, 楚地, 吳地, 粵(越)地.

26 『漢書』 「地理志」 下, “武帝揚却胡·越, 開地拓境, 南置交趾, 北置朔方之州, …… 凡十三部, 置刺史.” 한편 처음 12州였던 것을 후가 다스려 9州로 안정시켰다는 『漢書』 「地理志」 上 첫머리 기사를 근거로 漢代 이전에 12州가 존재했는가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그러나 이 12州說은 武帝의 13州와 연결해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12州說의 존재 근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는 것 같다. 顧詒剛·史念海(1999), 『中國疆域沿革史』, 北京, 56쪽.

한편 세 번째 부분의 기술 가운데 주목해야 할 것은 연(燕)의 지역인 미(尾)·기(箕) 별자리 분야에 속하는 낙랑군과 대방군(帶方郡)에 대한 내용, 마지막 월(粵=越)의 지역인 견우(牽牛)·무녀(婺女) 별자리 분야에 보이는 일남군(日南郡)의 남방에 대한 내용이다. 우선 중국의 사서²⁷에서 견우·무녀 분야에서는 일남군 남방의 이국(異國)들에 접근하는 노정(路程)에 대한 소개가 눈길을 끌고 있다. 최남단에 속하는 일남군으로부터 선행(船行) 또는 보행(步行)으로 각각 소요되는 일수(日數)를 기록하고 있는데,²⁸ 이는 「동이전」에서 왜(倭)에 이르는 여정(旅程)을 수행(水行) 또는 육행(陸行)으로 나누어 서술한 것²⁹을 연상케 한다. 역시 『한서』의 『삼국지』에 대한 영향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4. 「위지 동이전」의 서술 태도와 시각 I — 지리관의 문제

이같이 장황하게 『한서』 「지리지」의 구성에 대해 설명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필자는 후한(後漢) 말 이래 전란의 지속으로 인한 군

27 箕子 東來說이라는 전승을 東夷와 결부시켜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尾·箕 분야에 대한 서술이 최초인 것 같다. 箕子 東夷 망명설의 성립 배경에 대해서는 李成珪 교수의 연구가 상세하게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거론하지 않는다. 李成珪(2003), 앞의 글, 134~151쪽.

28 “自日南障塞，徐聞·合浦，船行可五月，有都元國；又船行可四日，有邑盧沒國；又船行可二十餘日，有諶離國；步行可十餘日，有夫甘都盧國。自夫甘都盧國船行可二月餘，有黃支國，民俗略與珠崖相類。”

29 “東南陸行五百里，到伊都國，……南至投馬國，水行二十日，……南至邪馬壹國，女王之所都，水行十日，陸行一月。”

현 통치의 현실적 한계, 이로 인한 자료의 부족 때문에 지리지를 만들 수 없었을 것³⁰으로 보이는 진수가 「동이전」을 통해 한대에 구축된 세계관을 부분적으로나마 재구성해 보려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의 도가 「동이전」의 구성과 서술에 작용하고 있지 않았을까 본다. 그러면 「동이전」의 서술 방식을 검토해 보자.

서론격인 첫머리에서는 『상서』 「우공」의 “東漸于海, 西被流沙”라는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고대 문헌들이 중국의 영역을 거론할 때 수시로 인용하는 구절이지만 이는 고대 중국인의 세계를 극한까지 표현하고 있다. 그것이 특히 『한서』 「지리지」에 인용됨으로써 지리류의 문헌에 널리 사용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이어서 9복(九服)의 제도는 이미 알고 있으나 황역(荒域)의 밖³¹은 (과거에는) 다중(多重)의 통역을 통해서야 접촉이 가능하였고 (중국인들의) 발이 닿지 못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는 먼저 동이와 무관한 서역(西域)에 대한 언급으로 말머리를 열고 있다. 서역의 경우 한대에 지배 대상으로 되면서 그 사정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는데, 위(魏)에 들어와서는 서역 제국(諸國) 가운데 비록 전부는 아니지만 대국(大國)들이 해마다 조공(朝貢)을 바쳐와 한대와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한편 동이에 대해서는 한대의 사실에 대한 언급 없이 공손씨(公孫氏) 세력이 요동(遼東)에 할거하였기 때문에 중국과 접촉이 단절되었다는 사실부터 지적하고 있다.³² 이후 (司馬懿에 의한) 공손씨

30 『漢書』 「地理志」와 같은 편집이 가능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上計가 지속되어야 할 것인데 後漢末 三國의 상황에서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31 「東夷傳」에서는 『尙書』의 五服說을 버리고 『周禮』 「職方」조에 보이는 九服說을 택하고 있는 듯하다. 논리적으로도 후대의 제도가 되는 周制를 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荒域之外’라는 표현을 보면 九服의 가장 외곽에 해당하는 ‘荒服’으로부터 따온 듯하고 그렇다면 『尙書』說도 일부 수용한 것 같다.

제거, 그리고 뒤를 이은(田丘儉의) 고구려 정벌로 동쪽으로 대해(大海)까지 닿아 동이에 대해 분명한 정보를 얻게 됨에 따라 동이 제국에 대한 기록을 남길 수 있게 되었다고 서술하였다.

그 뒤를 이어 각 족속에 대해 서술한 부분을 보면 기록 내용에는 우선 위치와 개략적인 면적, 그리고 호구수(戶口數)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의 수집은 군현 지배를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추측한다. 이 때문인지 군현 지배의 경험이 없는 읍루(挹婁)의 경우는 면적이나 호구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고, 한(韓)과 왜(倭)의 경우는 추산치(值)의 인상을 주는 호구수들을 기록해 놓았다. 이는 매우 흥미를 끄는 부분이다.³³ 이어서 서술 분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통치 제도, 사회 구조, 산

32 公孫氏 할거 이전의 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 “以接前史之未備焉”이라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史記』와 『漢書』에 수록된 朝鮮 열전 등을 염두에 둔 때문일 것이다.

33 「東夷傳」에 보이는 통계 수치를 보면 미묘한 차이들이 발견된다. 夫餘 ‘戶八萬’, 高句麗 ‘戶三萬’, 東沃沮 ‘戶五千’, (東)濊 ‘戶二萬’. 이 수치들도 『漢書』 「地理志」가 郡마다 십단위 이하의 숫자까지 밝히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概數이다. 그러나 다음 수치들의 표현 방식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명확해진다. 馬韓 ‘總十餘萬戶’, 弁辰 ‘總四五萬戶’, 對馬國 ‘千餘戶’, (大)國 ‘三千許家’ 末盧國 ‘四千餘戶’, 伊都國 ‘千餘戶’, 奴國 ‘二萬餘戶’, 投馬國 ‘可五萬餘戶’, 邪馬壹國 ‘可七萬餘戶’ (방점 필자). 왜 이렇게 구분해 놓았을까. 후자들은 傳言에 근거한 것이고 전자들은 傳言보다는 더 신빙성 있는 자료에 근거하였음을 암시하기 위해 또는 신빙성 있는 자료에 근거를 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으로 추측된다. 西晉 시기에도 『元康六年戶口簿』와 같이 戶籍 정리 자료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史念海(1990), 「論班固以後迄于魏晉的地理學和歷史地理學」, 『中國歷史地理論叢』 1990-4, 43쪽. 삼국시대만 해도 長沙에서 뭇가 戶口를 정리한 簿籍 사례가 근래 출토된 簡牘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長沙市文物考古研究所·中國文物考古研究所·北京大學歷史學系·走馬樓簡牘整理組(2003), 『長沙走馬樓三國吳簡·竹簡』 [壹](上·中·下), 文物出版社. 그렇다면 漢代처럼 정상적인 上計를 통한 簿籍의 정리는 어려웠다 해도 형식은 존재

업과 특산, 풍속 등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그런데 이러한 각 족속들에 대한 기록들을 일별하면 앞에서 검토한 「지리지」의 두 번째 부분과 세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비록 간략하기는 해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지리지」처럼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외면상으로는 형식이 다른 것 같아도 그 내용물에서는 「지리지」의 틀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진수는 『한서』를 통해 어떠한 정보들이 지리지인 「동이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숙지하고 있었던 듯하다. 그리하여 가능한 한 동이의 모든 족속들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모두 기록하려 했다는 인상을 준다. 다만 열전의 형식을 취함에 따라 서술 스타일이 달라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각 족속마다 중국과 관련된 사건의 기술이 뒤를 잇고 있는데, 특히 해당 족속들과의 분쟁이나 중국 측의 침략 사실들을 기술하고 있다. 이는 『사기』 「조선열전」, 그리고 『사기』를 거의 그대로 전제한 『한서』 「조선전」이 중국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관련 사실 위주로 내용을 정리한 방식을 답습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삼국지』 「동이전」은 『한서』 「지리지」의 세계관을 전제로 하면서 「지리지」에 담아야 할 내용들을 먼저 기술한 뒤, 이어서 사건 관계의 서술에서는 이민족 열전의 방식을 빌린, 말하자면 「지리지」와 이민족 열전이 결합된 형태로 완성된 것이다.

이렇게 서술 방식에서도 『한서』의 영향을 인정할 수 있다면, 다음으

하였을 것이다. 郡縣 지배가 이루어졌던 지역이라면 종래의 관행대로 戶口 통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양새를 갖출 필요가 陳壽에게는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추산치가 아니라 정확한 수치인 것 같은 인상을 주는 概數를 제시한 것이 아닐까.

로 「지리지」의 세계관이 「동이전」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지리지」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9주라는 세계관이 「동이전」에 적용되었을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여기에서 유주자사(幽州刺史) 관구검(田丘儉)의 동이 침략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이전」 내용의 축이 되는 중대 사건들을 따라가다 보면 동북지역의 지방 통치 단위로서 별 다른 비중이 없던 유주가 어느 순간 갑자기 강조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논지 전개 과정에서 유주의 등장을 전환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셈인데 그렇다면 그 동기는 무엇일까. 「동이전」 서술 전체로 보면 낙랑군을 비롯하여 고구려·부여와의 관계에서 현도군(玄菟郡), 한·왜와의 관계에서 대방군 등의 역할에서 확인되듯, 군(郡)들은 동이의 모든 족속과의 관계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위의 지배가 유주의 개입 시점에 완성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서술하고 있어서 흥미롭다.³⁴ 이러한 기술이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는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이후의 전개 과정을 보면 일부 과장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실제 관구검의 정벌 이후 고구려가 급속히 국력을 회복하고 선비(鮮卑)의 모용씨(慕容氏)도 급성장하여 동북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축소된 사실에 대해서는 진수도 감지하고 있었을 것이다.³⁵

34 「東夷傳」에서는 幽州刺史 田丘儉의 역할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기사의 말미에 “語在儉傳”이라 附記한 것도 이러한 의도로 보인다.

35 陳壽가 『三國志』를 285년 언저리에 완성한 것으로 본다면 비슷한 시기에 鮮卑의 慕容廆는 遼西를 침범하고 高句麗는 帶方을 공격하고 있다. 福井重雅 編 (2006), 『中國古代の歴史家たち－司馬遷・班固・范曄・陳壽の列傳譯註』, 東京, 291쪽 참조. 이미 高句麗에서는 魏將 尉遲楷를 격파하고 8000여명을 참수한 전투가 있었다. 『三國史記』 卷17 高句麗本紀5 中川王 12年條, 이는 260년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주(州)의 성격에 대해 언급해 둘 필요가 있다. 한 무제에 의해 처음 설치된 주는 주지하듯 감찰 기구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후한을 거치면서 지방 관제로서의 성격이 점차 강화되어 간 듯하다.³⁶ 하지만 적어도 삼국시기에는 황건(黃巾)의 내란으로 촉발된 분열 때문에 성격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났던 것으로 추측된다. 즉 군사적 기능이 중요해지면서 주의 자사(刺史)에게는 목민관(牧民官)으로서의 역할보다 군사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이 더 요구되었던 것이다.³⁷ 그러면서도 주는 점차 완결된 지역 단위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고 이러한 경향은 후한 말의 분열상에도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³⁸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당시에 논자들이 주의 회복을 거론할 때는 현실적인 지방 관제의 복구, 그리고 이를 통해 주로 표현되는 광역적인 지역 사회의 복구에 대한 기대가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이면에 통합된 전중국의 부활을 갈구하는 동기가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당시에 개별적인 주·군 단위로 방지(方志), 즉 지리서가 다수 편찬되

36 安作璋·熊鐵基(1985), 『秦漢官制史稿』下, 濟南, ‘刺史·州牧’條. 그러나 어느 정도 행정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였는지는 의문이다. 李成珪(1992), 「中國帝國의 分裂과 統一—後漢解體 이후 隋·唐 統一의 形成過程을 중심으로」, 『歷史上의 分裂과 再統一』上, 일조각, 107쪽 참조.

37 高敏(1998), 『魏晉南北朝兵制研究』, 鄭州, 96~100쪽. 당시에는 將領으로서 지방관을 兼領하는 사례가 잦았으며 특히 변경 荊·揚·青·徐·幽·并·雍·涼 등의 州들은 모두 군대를 두고 있었다. 이 때문에 刺史들은 民事를 제대로 돌볼 수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郡도 해당하는 것이지만 州의 경우 더욱 두드러진 것 같다. 州에 군사적 기능이 집중되는 경향은 西晉에서 일시 진정되는 듯하였지만 東晉부터는 더 심해져 간 것 같다. 越智重明(1970), 「南朝의 國家と社會」, 『岩波講座：世界歷史』Vol.5(古代5—東アジア世界の形成), 191~192쪽.

38 李成珪(1992), 앞의 글, 107~108쪽.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범위에서 13주니 9주니 하는 제목으로 지리서들이 쓰여졌던 사실³⁹은 의미하는 바 깊다. 무제가 중국을 13주로 분할한 이후 13주는 또 다른 점에서 전중국을 상징하는 숫자가 된 것이지만,⁴⁰ 후한 말 이래 13주와 함께 9주를 표방한 지리서도 나왔고 9주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기도 하였다.⁴¹

흥미로운 것은 후한 말 조조(曹操)의 전권기(專權期)에 과거의 9주를 재현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결국은 전국을 9주로 개편하였다는 사실이다.⁴² 처음 건안(建安) 9년(204) 조조의 핵심 근거지인 기주(冀州)의 관할지역을 넓게 잡음으로써 조조의 세력 근거를 강화하자는 제안이 나왔을 때는 내부의 반대에 부딪혀 실행되지 못하였다.⁴³ 그러다 몇년 뒤인 건안 18년(213) 조조는 9주로의 개편을 강행하고 있다.⁴⁴ 9주 개편의 중요한

-
- 39 應劭, 『十三州記』; 闕駟, 『十三州志』; 樂資, 『九州記』; 荀綽, 『九州記』. 한편 黃恭의 『十三州記』에 대해서는 『十四州記』의 잘못이라는 견해도 있다. 史念海(1990), 앞의 글, 40~41쪽. 西晉 武帝初에 司州를 새로 설치하여 14주가 되었는데 아마 이 때의 저작일 것으로 본다. 西晉에서는 곧이어 계속 州들을 증설, 19개 州가 되었다고 한다.
- 40 12州를 거론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후한 시기 12州와 13州는 司隸校尉를 포함 시키느냐의 차이인 것이다. 西晉에서는 통일 직후 司隸校尉를 司州로 고쳐 13州로 개편하였다.
- 41 史念海(1990), 앞의 글, 41쪽; 樂資, 『九州記』; 荀綽, 『九州記』; 『三國志』 卷12 「崔瑗傳」, “瑛對曰, 今西天下分崩, 九州幅裂.”; 『三國志』 卷14 「劉曄傳」, “劉曄曰, …… 九州百郡, 十并其八, 威震天下, 勢懼海外.”
- 42 岡崎丈夫(1932), 『魏晉南北朝通史』, 東京, 36~37쪽; 顧詒剛·史念海(1999), 『中國疆域沿革史』, 91쪽.
- 43 『三國志』 卷10 「荀彧傳」, “(建安)9年太祖拔鄴, 領冀州牧, 或說太祖, 宜復古置九州, 則冀州所制者廣大, 天下服矣. 太祖將從之, 彧言, …… 太祖遂寢九州議.”
- 44 『三國志』 卷1 「武帝紀」, “(建安)18年春正月, …… 詔書并十四州郡, 復爲九州.”

동기가 조조의 세력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었음은 확실하지만, 처음 제안에서 ‘복고(復古)’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논의의 이면에 한대에 완성된 중국적 세계의 틀을 재현하겠다는 이념적 동기가 작용하고 있었던 것도 분명하다.⁴⁵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개편 사실에 대해 『후한서(後漢書)』가 「우공」의 9주를 회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⁴⁶ 한편 후속 조치로 조조는 기주의 10개 군을 봉지(封地)로 받았다.

주는 처음 설치 이후 삼국 위까지 대체로 12주, 또는 13주로 유지되었다가 서진(西晉) 때 점차 증가하여 19주로까지 늘어났다.⁴⁷ 하지만 조조에 이용될 정도로 9주 관념은 위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후한 말 이래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진수도 온전한 중국 세계는 9주로 이루어졌다는 의식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는 9주 가운데 유주(幽州)가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조조가 도입을 감행한 9주 체제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작 유주는 조조의 9주 재편에서 폐지되어 빠져버리고 있기 때문이다.⁴⁸ 다만 유주가 기주에 편입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와 동시에 사예교위(司隸校尉)·양주(涼州)가 폐지되어 옹주(雍州)에 편입되었고 교주(交州)가 폐지되어 형주

45 崔珍烈(1999), 「三國時代 天下觀念과 그 현실적 변용—遙領·虛封·‘四方’將軍의 수용을 중심으로」, 『서울大東洋史學科論集』 23. 曹操의 9州復古는 冀州牧을 겸하였던 曹操의 직할령을 넓히려는 의도 이기에 ‘九州’관념을 통해 영토의 불안정성을 합리화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103쪽).

46 『後漢書』 卷9 「獻帝紀」, “(建安)18年春正月庚寅復禹貢九州.” 그런데 魏에는 12州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다(『三國會要』 卷35 魏州郡上). 漢·魏 교체기 이루어진 뒤 文帝에 의해 9州 체제가 파기된 것 같다.

47 史念海(1990), 앞의 글, 41쪽.

48 『後漢書』 卷9 「獻帝紀」, 建安18年春正月 기사의 章懷太子 注에 인용된 『獻帝春秋』의 기록.

(荊州)와 익주(益州)에 편입되었던 것을 참조한다면 건안 9년 처음의 시도에서처럼 조조의 입지를 반영해서만은 아닌 듯하다. 아마 할거 체제에 따른 세력의 위축을 반영하면서 최소한의 9주를 재현하는 형태로 정리된 것이 아닌가 한다. 양주는 후술하듯 후한 이래 통제가 용이하지 않았고, 교주는 오(吳)의 남방으로서 현실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했으며, 유주는 동이 족속들의 성장과 공손씨의 요동 할거가 맞물려 상당한 지역이 손에 닿지 않았다. 마침 「우공」의 9주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야 하는 당시의 요구와 맞아떨어져 조조는 양주(涼州) 대신 익주를 넣는 변화 정도만으로 「우공」의 9주를 재현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우공」의 9주관과 달리 유주를 포함시키는 주대(周代)의 9주관이 적어도 한대부터의 대외 정세에 더 부합하였을 것이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논자들의 호응을 더 받지 않았을까 본다. 진수도 이러한 입장에서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유주는 한·위의 교체 직후 문제(文帝)에 의해 12주 체제로 복귀하면서 부활되었던 것 같다.⁴⁹ 경초(景初) 연간에는 요동·창려(昌黎)·대방·현도·낙랑의 관할 5개 군이 일시 병주(并州)에 이관되는⁵⁰ 우여곡절도 겪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쳤기에 관구검의 동정(東征)이 더욱 극적인 사건으로 보였을 것이다.

진수가 유주에 대해 언급할 때 위 문제 이후 12주로 개편된 현실을 염두에 두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조조 시기의 9주 논쟁, 『한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동이전」 서술의 이면에는 9주로 상징화된 세계

49 『三國會要』 卷36 魏州郡下 幽州 條.

50 『三國會要』 卷36 魏州郡下 帶方郡 條 말미에 인용된 『典略』의 기사에는 景初 3년의 일이라고 되어 있다.

관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사정 속에서 진수는 ‘중국=9주’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면서, 동북지역의 경우 이 일대를 관할하는 것이 유주이므로, ‘유주-제군(諸郡)-동이 제족(諸族)’의 통속 관계가 동북 일대에서 구현되어야 할 통치 구도라 상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유주에 대한 구상이 후한 말부터 내지의 혼란과 분열, 그리고 공손씨의 3세대에 걸친 요동 할거 등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가 경초 연간(237~239) 사마의(司馬懿), 정시(正始) 연간(240~249) 관구검으로 이어지는 동진(東進) 정책으로 완성되었다고 진수는 「동이전」에서 전하려 한 것 같다.

5. 「위지 동이전」의 서술 태도와 시각 II —중국적 세계의 지향

다음으로 「동이전」의 서술 구도를 이해하는 데 주목해야 할 것은 외부 세계에 대한 신기한 견문이 중간 중간에 삽입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선 서론 부분에서는 관구검 정벌시 동쪽으로 대해(大海)에 도달해 그곳의 장로(長老)들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으로 기이한 얼굴을 한 사람들이 “해가 나오는 곳 가까이에 있다(近日之所出)”고 기이한 구절이 있다. 이 내용을 (北)옥저(沃沮)에 관해 언급한 부분에서는 여자들만 있는 나라가 바다 가운데 있다든가, 목 가운데 얼굴이 하나 더 있는 사람이 표류해 왔다든가 하는 식으로 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⁵¹ 한

51 “問其耆老 ‘海東復有人不?’ 耆老言 ‘國人嘗乘船捕魚, 遭風見吹數十日, 東得一

편 난쟁이들의 나라라든가 벌거숭이들의 나라라 하여 같은 성격의 전(傳聞)이 왜에 대한 기술의 중간에도 나온다.⁵²

그런데 『삼국지』를 전대의 사서(史書)들, 즉 『한서』나 특히 『사기』와 비교해 볼 때 신비주의적인 내용의 기술들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비교적 합리적이고 현실 위주로 되어 있는 다른 부분의 기사(記事)들과 조화가 되지 않는 이러한 『삼국지』의 건문들은 어떠한 동기에서 들어간 것인가. 여기에서 『위략(魏略)』의 한 편으로 전해지는 「서융전(西戎傳)」의 내용 가운데 로마 제국에 해당하는 대진국(大秦國)을 장황하게 소개한 뒤 대진의 서쪽이 해가 들어가는 곳 가까이(近日之所入)고 기술한 내용을 결부시켜 볼 필요가 있다. 해가 나오는 곳 이든 해가 들어가는 곳이든, 이는 당시 중국인이 의식하고 있던 세계의 극한 지점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렇다면 그 경계 지대에 존재하는, 말하자면 비(非)문명, 또는 과장하자면 비(非)인간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이전」에 나타나는 동해(東海), 또는 대해(大海)는 4해의 일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이내의 모든 지역, 즉 “東漸于海, 西被流沙”로 표현된 경계의 내부는 중국적 세계이다. 이는 말하자면 적어도 관념상으로는 9주로 정리되어야 할 영역인 셈이다. 그런데 관념의 세계인 9주가 『한서』 「지리지」에서는 현실로 구체화되어 가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는데,

島, 上有人, 言語不相曉, 其俗常以七月取童女沈海.’ 又言 ‘有一國亦在海中, 純女無男.’ 又說 ‘得一布衣, 從海中浮出, 其身如中人衣, 其兩袖長三尺.’ 又 ‘得一破船, 隨波出在海岸邊, 有一人項中復有面, 生得之, 與語不相通, 不食而死.’ 其域皆在沃沮東大海中.”

52 “女王國東渡海 …… 又有侏儒國在其南, 人長三四尺, 去女王國四千餘里. 又有裸國·黑齒國復在其東南, 船行一年可至.”

이러한 「지리지」의 문제 의식이 역시 통합된 중국 세계를 염두에 둔 진수의 문제 의식으로 전이되어 「동이전」의 서술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흥미를 끄는 것은 약수(弱水)라는 특이한 지명이 「동이전」에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 지명은 『삼국지』의 다른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약수는 『산해경(山海經)』 「해내서경(海內西經)」과 「대황서경(大荒西經)」, 『상서』 「우공」, 『사기』 「대완열전(大宛列傳)」 등 문헌에서 세계의 극단지역에 존재하는 하천으로 자주 등장하는 신화적 지명이다.⁵³

수력(水力)이 약해서 홍모(鴻毛)조차 떠있지 못한다는 약수는 『한서』

53 문제는 漢代 이전부터 崑崙과 같은 다른 신화적 지명들에 대해 그러하듯 弱水에 대해서도 현실 세계에서 구체적인 위치를 比定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점인데, 당시의 논자들은 대개 崑崙山과 연결지어 서방 또는 서북방에서 弱水を 찾으려 하고 있다. 『尙書』 「禹貢」; 『淮南子』 「地形訓」; 『史記』 「夏本紀」· 「大宛列傳」. 현대의 연구자들도 대개 이를 따르는 것 같다. 劉建華, 論山海經所說的赤水·黑水和崑崙, 『中國歷史地理論叢』 1994-4, 152~153·157쪽. 「東夷傳」에서 동북에 弱水가 나오는 것은 이러한 통설과 배치된다. 혹 동일한 명칭의 하천이 또 있다고 여겼는지가 문제되는데 『三國志』에서는 「東夷傳」에서 단 한 차례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어떠한 과정을 거쳐 東北에서 弱水を 찾게 되었는지는 추적이 불가능하지만 우선 『淮南子』와 「禹貢」에서 流沙를 관통한다 하여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山海經』에서의 기술과 부분적인 차이가 있고, 『史記』에서도 崑崙山 일대로 비정한 「夏本紀」와 서방의 條支 일대로 비정한 「大宛列傳」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西北 소재설과 전혀 다른 東北 소재설도 존재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東夷傳」에 관한 한 『三國志』를 대부분 轉載한 『後漢書』에서는 「三國志」의 이러한 입장 때문에 「東夷傳」과 「西域傳」 두 곳에 모두 弱水가 출현하는 결과를 낳았다. 연구자들은 두 개의 弱水を 동시에 존재하는 별개의 하천이라 여긴다. 張舜徽 編(1994), 『後漢書辭典』, 濟南, 「弱水」條. 한편 『太平御覽』 地條에 인용된 『廣志』에는 “弱水夫餘北, 其水不勝毛羽, 世無見者”라 하여 「東夷傳」의 弱水가 신화적 존재임을 확인해주고 있어서 참고할 만하다.

에서도 「지리지」의 「우공」 전제 부분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 등장한다. 「동이전」의 부여조에서는 이를 부여의 북단에 있는 하천으로 간단히 서술하고 있다. 일단 부여 북방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사실을 반영하는 것 같다. 그러나 한편으로 당시의 세계관과 연결지어 유주의 영역이 9주 가운데 동북방에 해당하고 동북방에 배당된 미·기의 분야에 동이가 포함되며 그 일부로서 부여가 존재한다고 하는 맥락에서 보면 약수가 부여의 북단에 위치한다고 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삼국지』의 배송지(裴松志) 주(注)에는 『위략』 「서용전」을 인용하고 있어서 참고할 만한데 아마 전문(全文) 그대로인 것으로 보인다. 『위략』과 『삼국지』의 밀접한 관계는 잘 알려진 대로이다. 특히 「동이전」의 경우 적지 않은 내용을 『위략』에서 따왔다는 견해부터 『위략』 거의 그대로 「동이전」을 재구성하였다는 견해까지 있을 정도이다.⁵⁴ 「서용전」도 분명히 참조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위략』의 「서용전」이나 『후한서』의 「서역전(西域傳)」처럼 서북 방면을 다룬 열전이 『삼국지』에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서용전」에는 남녀 모두 키가 1장 8척이나 되는 주민들, 서왕모(西王母)에 관한 소문, 부도(浮屠)에 관한 기문(奇聞) 등 기관이문(奇觀異聞)이 상당수 실려 있는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서술을 중시하는 진수로서는 이러한 종류의 지리 지식을 탐탁하지 않게 여겼을 수 있다.⁵⁵ 그러나 서진

54 高柄翊(1970), 「中國正史의 外國列傳」, 『東亞交涉史의 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20쪽; 全海宗(1982), 『東夷傳의 文獻的研究—魏略·三國志·後漢書 東夷關係 記事의 檢討』, 일조각.

55 高柄翊(1970), 위의 글, 20쪽에서는 이러한 이유와 함께 西域과의 관계가 밀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立傳하지 않은 것 같다고 보았다.

시기에 나온 『박물지(博物志)』, 동진 시기에 나온 『포박자(抱朴子)』 등이 널리 유행하였던 사실을 감안하면 위·진 시기의 풍토에서는 신비주의적 지리관에 대한 거부감이 적었을 것 같고 진수도 그러한 풍토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동이전」만 해도 기문들이 간간히 섞여 있는 것이다. 이유는 다른 데서 찾아야 할 것 같다. 서북 일대는 우선 한대에 장성(長城) 바깥에서 이민족들을 통제하던 서역도호(西域都護)에 해당하는 관직이 후한 말 이래 설치되지 않았고, 그렇다면 서북 일대를 관할해야 했던 것이 그나마 강족(羌族)을 비롯한 서북 일대의 이민족들과 빈번한 접촉을 보이던 양주(涼州)였을 터인데도 양주지역에서는 강족의 장악만으로도 고전하였던 것 같다.⁵⁶ 게다가 동북 방면에서 군현 지배를 통한 동이 세계의 재편을 시도하였던 관구검의 동침(東侵)과 같이 이민족들과의 관계에서 획기적인 사건 자체가 서북 일대에는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진수는 양주 일대에 대한 서술이 중국 중심의 이상적 세계 구도를 그려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아닐까.

이와 달리 유주의 실정을 보면 그 외곽에 있는 오환(烏丸)이 원소(袁紹) 일족과의 관계를 통해 후한 말 정세에 깊이 관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소의 잔여 세력이 소탕된 뒤에는 조조의 병력으로 활용되기도 하면서 유주를 둘러싼 정세는 위 정권의 소장(消長)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⁵⁷ 이러한 사정으로 유주지역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56 『三國志』卷3 明帝紀, “(景初2年)秋8月, 燒當羌王芒中·注詣等叛, 涼州刺史率諸郡攻討, 斬注詣首。” 이는 魏의 안정기에 涼州刺史가 통솔해 치른 대규모 군사작전인 것 같다. 그러나 이민족 首長 1人을 斬했다는 기록뿐 달리 관련 기록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성공한 것 같지도 않고 이후 羌族들의 통제에도 효과를 거두지 못한 듯하다.

57 『三國志』卷30, 「烏丸傳」.

없었던 것도 「동이전」 입전(立傳)의 한 원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원인을 찾는다면 진수의 ‘중국적 세계’ 구상에 「동이전」이 적합하였을 것이라는 점이다. 선인(先人)에 의한 교화의 유풍(遺風), 유주자사 주도하에 극적으로 이루어진 통제 회복, 그리고 새 구성원으로서 왜의 등장까지 갖추어짐으로써 위 중심으로 전개된 세계의 전개를 서술하는 데는 더할 나위 없이 적절한 모델처럼 여겨졌을 것이다. 여기에 보태 진수는 기관이문류의 기사를 사이 사이에 끼워 넣음으로써 대조적으로 ‘중국적 세계’를 더욱 분명하게 묘사해 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동이전」은 서두에서 “東漸于海, 西被流少” 한 경역(境域)까지를 세계의 한계로 설정하고 그 이내에 거주하는 족속들의 활동을 하나씩 나누어 소개하였다. 그리고 중간 중간 삽입된 기관이문의 기록은 중국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외부 세계의 일로 인식하면 되었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었을 것이다. 한편 오환이나 동호(東胡)의 경우는 당시에 중국과 접촉이 잦아 풍부한 자료를 갖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오환처럼 위의 주 병력으로 활약하기도 하는 등 조조 정권 이래 중국과의 관련이 밀접하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따로 입전(立傳)하여 「동이전」과 합권(合卷)하게 되었다. 이에 비해 서북 방면의 경우 서용 또는 서역 열전으로 독립 서술하는 것을 포기하고 「동이전」의 서문 가운데 “其大國……無歲不奉朝貢, 略如漢氏故事”라 하여 간략하게 처리해버리고 말았다. 한대의 고사(故事)처럼 조공이 지속되었다는 기록을 통해 중국의 영향을 확인해 주면서 ‘중국적 세계’의 구상에 대한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선에서 정리한 것이다.⁵⁸

58 朝貢을 바치는 國에는 德化를 수용하고 禮의 관계를 통해 外臣의 관계를 맺는

다음으로 「동이전」에서의 조공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조공과 책봉(冊封)의 문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의 이해에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기에 이들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여기에서 다시 이 문제를 다룰 여유는 없지만, 「동이전」의 서술 구도에 어떻게 작용하였는가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고구려의 경우 후한 광무제(光武帝)의 즉위 후 왕망(王莽) 정권에서의 대외 강경책을 포기하고 유화책으로 전환하는데, 왕망시의 하구려(下句麗)라는 폼칭(貶稱)을 취소하고 고구려(高句麗)라는 칭호를 회복 시킴과 동시에 후국(侯國)으로 되어 있던 지위를 제후왕(諸侯王) 수준의 왕국으로 격상시킨다. 그 과정에 대해 「동이전」은 “高句麗王遣使朝貢, 始見稱王”으로 묘사하고 있다. 문맥상으로는 조공에 따른 대가로 비로소 칭왕(稱王)이 허용된 것이다. 왜 굳이 조공에 따른 대가로서의 칭왕을 강조하였을까. 중국 측의 입장에서 보자면 조공은 중국 중심의 세계에 편입되는 첫 단계인 바, 다음 단계로서 후(侯)·왕 등의 책봉이 있고 이 단계에 도달해야 편입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현도군에 고구려현(高句麗縣)이 설치되어 있었다고는 하나 기실 고구려는 군현 지배의 틀에서 일찍이 벗어난 듯하다.⁵⁹ 이러한 가운데 어떠한 형식으로든 중국 중심의

朝貢國이 있고 德化와 무관한 朝貢國이 있는 바, 後者は 絕域의 國들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있다. 栗原朋信(1970), 「漢帝國と周邊諸民族」, 『岩波講座: 世界歴史』 Vol. 4(古代4), 480~483쪽. 이러한 관점에서 西域 諸國에 대해서는 朝貢 교류를 통한 최소한의 영향만을 확인하는 정도로 정리하고 쉽게 立傳을 포기하였던 것 같다.

59 「東夷傳」에는 “常從玄菟郡, 受朝服衣幘. 高句麗令主其名籍, 後稍驕恣, 不復詣郡, 于東界築小城, 置朝服衣幘其中, 歲時來取之”라 하였는데 이로 미루어 초기에는 郡縣 지배를 강요했던 것 같다. 그러나 점차 郡縣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립하면서 郡縣과 애매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後漢은 이러한 상황

질서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필요하여 광무제 시기의 조공-책봉 사건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서술에서 한왕조 측의 체면을 살리는 식으로 처리한 것이 흥미롭다.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된 것이 동(東)옥저의 서술에서이다. 광무제는 낙랑 동부도위(東部都尉)를 폐지하여 이 일대에 대한 군현의 직접 지배를 포기하였으며 후한은 이후 현중(縣中)의 거수(渠首)들을 현후(縣侯)로 책봉하고 있다. 그리하여 불내(不耐)·화려(華麗)·옥저의 현이 모두 후국(侯國)으로 되었다고 한다. 후한 시기에 향후(鄉侯)·정후(亭侯)가 나타나 열후(列侯) 책봉 가운데서도 향후·정후의 비중이 늘고 현 단위의 열후가 급감 하였으므로,⁶⁰ 이는 파격적인 우대이다. 아마 현실적으로 군현 지배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명분이라도 세우자는 의도와 고구려에 대한 견제의 의도에서 이와 같이 동(東)옥저 거수들에 대한 파격적인 대우가 나왔겠지만, 「동이전」에서는 이어지는 부분에서 진수 자신의 시대까지 남아 있었다고 하는 불내예후(不耐濊侯) 속하의 중국식 유제(遺制)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⁶¹ 이렇게 현후에게 보인 과도한 관심은 단지 고구려를 의식해서만은 아닌 듯하다. 일단 일부 지역의 경우 군현 지배로부터 일부 후퇴한 이후에도 역시 중국 중심의 질서가 작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려 한 것이다. 즉 조공과 함께 현후에 대해 상세하게 언급한 것은 진수의 구상과 적절하게 맞아떨어지는 내용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에 적응한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60 守屋美都雄(1962), 「曹魏爵制に關する二三の考察」, 『東洋史研究』 20-4, 33쪽; 布目潮瀨(1955), 「前漢侯國表」, 『東洋史研究』 13-5, 386쪽. 특히 후자에서는 前漢末 존재했던 縣 단위의 列侯가 後漢에서 급감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61 “夷狄更相攻伐, 唯不耐濊侯至今猶置攻曹·主簿諸曹, 皆濊民作之.”

한편 「동이전」을 검토하다 보면 각 족속에 대한 서술 사이에도 중국과의 연계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복선으로 깔려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동이전」 내에서도 다른 동이계(東夷系)들과는 이질적인 족속인 읍루와 왜에 대해서만 살펴보자. 우선 읍루를 보면 중국의 군현 지배 경험도 없고 조공의 사례도 확인하기 어려운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동이전」에 편입되어 있는 이상 어떠한 형태로든 연결고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진수는 이 문제를 부여에 신속(臣屬)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간단히 처리한 것 같다. 부여는 기자 이래 중국의 연고가 가장 깊게 뿌리 내린 족속인 것이다.

다음으로 「동이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존재가 왜이다. 그런데 왜의 경우를 보면 하(夏)의 제왕이었던 하후(夏后) 소강(少康)의 아들이 회계(會稽)에 봉해지고 단발문신(斷髮文身)을 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간접적인 서술 방식으로 왜가 그 후예인 것처럼 이해하도록 기술하고 있다.⁶² 이민족을 중국과 연계시키기 위해 성인(聖人) 제왕의 후예를 가장하는 것은 널리 사용되어 온 방식으로 『사기』 「흉노열전(匈奴列傳)」에서 흉노를 하후씨(夏后氏)의 묘예(苗裔)로 기술한 것과 흡사하다.⁶³ 이와 함께 「동이전」에서는 중국적 세계에의 편입을 염두에 두고 또 다른 연결고리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동이전」에서는 특히 한(韓)과의 관계를 부각시키고 있는데, 이를 통해 왜를 먼저 동이의 세계 속에 편입시키는 논리를 마련한 듯하다. 어떤 국(國)은 경계를 접하고 있다거나 왜에 닿기 위해서는 한의 나라들을 거쳐야 한다고 표현하여⁶⁴ 지리적 접근성에

62 “夏后少康之子封於會稽，斷髮文身以避蛟龍之害，今倭水人好沈沒捕魚蛤，文身亦以厭大魚獸禽，後稍以爲飾，……計其道里，當在會稽·東冶之東。”

63 李成珪(2003), 앞의 글, 107쪽.

대해 소개한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其男子, 時時有文身”(馬韓), “男女近倭, 亦文身”(辰韓)이라 하여 한과의 문화적 친연성(親緣性)을 알리는 정보를 삽입한 것은 최종적으로 중국적 세계로의 편입을 염두에 둔 설정일 수 있다. 한에 대해서는 군현과의 접촉과 그 영향,⁶⁵ 그리고 중국계 망명인들의 존재를 소개함으로써⁶⁶ 중국과의 연계를 설정하고 다음으로 한과 왜의 관계를 이용해 다시 왜까지 연결하는 식으로 중국적 세계의 외연(外延)을 확장시켜 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왜에 대한 기술에 왜와 교통할 때 경유하는 코스에 대해 상충하는 두 개의 기사가 함께 존재하게 된 것 같다. 하나는 『예기(禮記)』 「왕제(王制)」와 같은 고문헌을 통해 내려오는 “東方曰夷, 被髮文身”의 과거 전승과 결부된 회계 동야(東冶)로부터 동행(東行)하는 코스,⁶⁷ 다른 하나는 대방군으로부터 한을 경유하여 동남행하는 코스이다. 이 두 가지 정보는 전자의 경우 과거 신화를 통해 연고를 확인하는 전통적인 인식, 후자의 경우 한을 매개로 연고를 확인하는 새로운 인식과 각

64 弁辰 條, “其瀆廬國與倭接界”; 倭 條, “從(帶方)郡至倭, 循海岸水行, 歷韓國, 乍南乍東, 到其北岸狗邪韓國, 七千餘里, 始度一海, 千餘里至對馬國.”

65 馬韓 條, “漢時屬樂浪郡, 四時朝謁”, “下戶詣(帶方)郡朝謁.”

66 馬韓 條, “桓·靈之末, 韓滅疆盛, 郡縣不能制, 民多流入韓國, ……(帶方郡)收集遺民”; 辰韓 條, “其耆老傳世, 自言古之亡人避秦役來適韓國, 馬韓割其東界地與之.”

67 倭를 東夷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무리없이 파악하게 된 데는 「王制」편 이 구절의 영향도 있어 보인다. 『漢書』 「地理志」에서는 樂浪(주변의) 바다에 100여 개국으로 나뉘어 생존하는 倭人의 존재를 소개하고 있다. 이로 보아 班固는 倭를 東夷로 인정한 것이다. 한편 「王制」편을 戰國 중반에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東夷는 淮夷·徐戎을 가리킬 가능성이 있다. ‘被髮文身’도 이들의 습속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王制」편의 成書 시기에 대해서는 王鏊(2007), 『禮記成書考』, 北京, 179~188쪽 참조.

기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아마 진수는 이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아 전자는 상세한 도정(道程)을 소개하고 후자는 방향만 소개하는 식으로 양자를 함께 실은 것으로 보인다.⁶⁸

한편 왜의 경우 다른 족속에 대한 기사들과 비교할 때 서술 분량이 「동이전」에서 가장 많다. 중국과의 접촉 빈도를 따지자면 중요도가 그렇게 높았을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도 이와 같이 서술 비중이 커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기사 내용을 보면 첫머리에 노정(路程)과 경유 제국(諸國)들을 장황하게 나열한 것을 제외하면, 다음으로 물산·습속 등을 싣고 있어서 다른 족속들에 대한 설명 방식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왜 전체 기사의 1/3 이상이나 되는 마지막 부분은 위 명제(明帝) 때 있었던 사마일국(邪馬壹國) 여왕 비미호(卑彌呼)의 조공, 그에 따른 책봉과 반사(頒賜), 그리고 답사(答使)의 파견 등 외교적 접촉 과정에 대해 기술한 것으로 그 가운데에는 비미호를 친위왜왕(親魏倭王)으로 책봉함과 동시에 반사를 베푼다는 내용의 외교 문서가 장문(長文)에 걸쳐 소개되고 있기도 하다. 일단 새롭게 중국 중심의 구도 속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왜에 대해 더 많은 비중을 두었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추리할 수 있다. 그렇다 해도 「동이전」의 다른 족속, 예컨대 중국과의 잦은 접촉으로 외교 문서도 많은 양이 남아 있었을 것이 틀림없는 부여라든가 고구려의 경우와는 크게 대비가 된다. 삼국의 대립 상황 때문에 왜가 오(吳)에 접근하는 것을 경계한 위가 왜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68 지금의 지리적 지식으로 보면 후자는 오키나와 열도를 거쳐 杭州 방향으로 연결되는 항해 코스인데 이 코스에 대해서는 陳壽도 잘 몰랐던 것 같다. 아마 陳壽가 蜀 출신이어서 吳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에 倭로의 방향만 언급하고 道程에 대한 언급은 빠졌을 것이다.

는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⁶⁹ 당시의 입지 때문에 위가 취한 태도에 대해 진수가 공감하였을 것이라고 이유를 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진수가 볼 때, 특히 통일 이후의 진(晉)의 입장에서라면 왜와의 접촉은 중국적 세계의 외연 확대라 볼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더욱이 주변 민족들의 이탈 경향으로 영향력이 위축되어 있던 삼국으로부터 서진에 걸친 시대를 살아간 진수로서는 더욱 의미 깊은 사건이었을 것이 틀림없다. 그리하여 『사기』에 이민족 열전들이 전쟁과 관련된 기사들로 채워져 있는 것과 유사한 의미에서 외교 사실을 상세하게 기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지하듯 『후한서』 「동이전」에는 후한 광무제(光武帝)가 조공을 바친 왜의 노국(奴國)에게 인수(印綬)를 하사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진수가 굳이 이 사실을 누락시킨 동기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라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6. 맺음말

「동이전」은 한대(漢代)의 세계관에 영향을 받았으며 그 영향은 내용 전반에 걸쳐 저변에서 작용하였다고 추측한다. 한대적(漢代的) 세계가 쇠퇴해 가는 와중에 한대에 완성된 중국 중심적 세계관을 부분적으로나마 재구성해 보려는 의도가 「동이전」의 편성에 작

69 西嶋定生(1978), 「親魏倭王册封に至る東アジアの情勢—公孫氏政權の興亡を中心として」, 『古代史論叢』上, 東京. 다음에도 수록되었다. 西嶋定生(1983), 『中國古代國家と東アジア世界』, 東京; 川勝守(2000), 「倭國王と倭王—二つ金印をめぐって」, 『西嶋定生博士追悼論文集：東アジア史の展開と日本』, 東京.

용하고 있는 것 같다. 『삼국지』의 편찬 시점에서 동북 일대는 위(魏)에 서의 동진(東進) 정책 성공에도 불구하고 예맥계(濊貊系)에게서든 한계(韓系)에게서든 군현 지배의 약화가 가속되어 가는 현실⁷⁰에 부딪히고 있었을 터인데, 그럼에도 「동이전」을 통해 고대 제국의 세계 구도를 고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다. 필자는 그 결과 구체적인 서술에서 실제 모습보다 그렇게 되어야 할 모습이 그려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중국적 세계의 일부로서 유주(幽州)의 비중이 강조되는 것이 실례라 하겠다. 그러면 이러한 분석은 「동이전」을 토대로 진행하는 연구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어쨌든 후세에 전해진 내용들은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을 터이고 그렇다면 그 의도와 상관 없이 사료로서의 가치는 엄존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보자. 고구려가 동(東)옥저에 대해 “遇之如奴僕” 하였다는 표현은 정시(正始) 6년(245) (田丘儉의 東侵 과정에서) 낙랑군과 대방군이 동(東)예(濊) 등을 격파하여 군현 지배를 재개한 이후 동(東)예 등에 대해 “遇之如民” 하였다는 표현과 대조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

70 각주 35 및 「東夷傳」馬韓條, “臣智激韓忿, 功帶方郡崎離營. 時太守弓遵·樂浪太守劉茂興兵伐之, 遵戰死, 二郡遂滅韓.” 帶方태수의 전사 이후 두郡이 韓을 격멸하여 안정시킨 것처럼 서술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韓을 가리키는지도 不明이고 뒷받침할 만한 다른 자료도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한 기사로 보인다. 그러면 陳壽는 어떠한 이유에서 “二郡遂滅韓”이라고 간략하게라도 덧붙여 놓아야 했을까. 이는 正始 연간 幽州刺史 주도 아래 추진된 東侵의 일환이었기 때문인 것 같다. 帶方太守 弓遵과 樂浪太守 劉茂는 高句麗 원정 바로 다음해 후속 작전으로 嶺東濊 지역을 침공하였다(東濊條). 이로 미루어 양자는 잘 안정되지 않았던 韓 지역에 대해서도 공동 작전을 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弓遵이 전사하였다. 이렇게 간단한 附言을 함으로써 田丘儉의 東侵은 韓 지역에서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정리되는 것이다.

다. 이러한 표현에는 위, 나아가 이전 한의 군현 통치에 대해서도 고구려의 지배보다 우월하다는 의식이 내포되어 있음이 틀림없다.

한편 한(韓)과 왜(倭)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한의 풍속으로 문신(文身)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선택적으로 일면만을 부각시켰을 가능성은 없을까. 진수는 이제 막 중국적 세계로 등장한 새로운 구성원인 왜와의 연계를 이미 중국적 세계의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던 한과의 관계를 통해 확인하려 했던 것이다. “東方曰夷, 被髮文身”이라 기록된 왕제(王制)편의 전승을 감안하고, 다시 그 위에 당시의 지리 지식을 통해 연결고리를 찾고자 하는 의도에서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 현상 가운데 특정 요인만을 강조함으로써 초래할 과장의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또한 「동이전」에는 동이의 모습이 중국적 세계의 일부로서 그려지다 보니 한인(漢人) 망명자들의 비중이 중요하게 기술되고 있기도 하다. 이 문제와 관련해 최근 중국의 연구자들 사이에 한인 출신 유이민(流移民) 집단의 존재에 주목하여 이들의 역할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시도들이 발표되고 있는 것이⁷¹ 눈길을 끈다. 당연하지만 중국으로부터의 선진 문화 수용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 한민족의 고대 국가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유이민 집단이 일정한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사서를 접할 때는 그 사서의 이면에 존재하는 의도성에 대해서도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원칙론적으로 말하자면 사료(史料)가

71 董萬崙(2001), 「華夷, 華夏, 漢人在東方」, 『北方文物』 2001-4, 2007년 8월 中國 長春에서 열린 中國秦漢史學術大會에서의 발표. 예를 들면, 王子今(2007), 「略論秦漢時期朝鮮“亡人”問題」, 발표의 公刊은 아직 未見.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맥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동이전」의 기록을 이용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함을 새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내재한 세계관」에 대한 토론

뤼신(베이징대학)

정 교수는 이 논문에서 『삼국지(三國志)』 「위지 동이전(魏志東夷傳)」을 예로 들며 현존의 사료 형성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사실적(史實的)이지 못한 요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이런 요인들에는 문헌 전통과 정치적 입장, 현실적 이해관계 및 세계관이 포함된다. 정 교수는 특히 진수(陳壽)의 세계질서관이라는 각도에서 「동이전(東夷傳)」과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를 연관시켜 고찰하면서 이들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주었다. 이러한 분석은 「동이전」을 포함하는 고대문헌의 사료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문헌의 특성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이들 특성을 뚜렷이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역사의 진상에 대해 인식하고 또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의심할 바 없이, 이러한 연구는 방법상에서는 물론이고 구체적 사례상에서도 사람들에게 많은 계발(啓發)의 기회를 준다. 같은 형태의 연구 방법은 관련된 주변 종족집단들이나 정권들의 고대문헌을 우리가 접할 때도 유용할 뿐만 아니라, 일체의 고대문헌을 처리할 때도 필수적이다. “The past is a foreign country”란 말처럼 고대 중국은 현재의 중국인에게도 먼 이역(異域)이다. 따라서 사료 형성 과정을 깊이있게 분석해내지 못

하면, 어떠한 사료도 우리가 역사의 진상을 탐구하여 찾아내는 데 부족한 것들일 뿐이다.

진수는 『삼국지』에서 동이(東夷)를 위한 전문적인 전(傳)을 지었는데, 이는 일정한 정도로 삼국 혹은 위진(魏晉) 시기 동방 각 종족집단들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물론 문헌 전통은 구속력을 지닐 수 있지만, 그럼에도 현실 관찰이 더욱 중요할 가능성은 있다. 후일 역사가 전개되면서 동방 종족집단, 특히 선비(鮮卑) 각 집단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었는데, 이는 진수의 역사편찬이 거시적 예견 능력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그가 접촉할 수 있었던 자료의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설명하여 준다. 주의할 만한 것은, 『삼국지』가 관구검(關丘儉)의 동북아 역사 구조에 대한 영향을 과장하고 사마의(司馬懿)가 요동을 정벌한 정치적 성과도 과장하면서 오히려 공손씨(公孫氏)의 요동정권이 시행한 삼국 시기의 여러 정책이 동북아 역사에 미친 깊은 영향을 매몰시켰다는 점이다. 물론 정 교수가 분석한 것처럼, 진수가 현실 이해관계에 대한 고려에서 사료를 취사선택하여 역사서를 썼다는 예증으로 볼 수도 있다. 공손씨 요동정권이 동북아 역사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지위에 대해 과거 연구자들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함은 명백히 진수가 사료를 취사선택한 것과 관련이 있다. 『삼국지』의 이러한 특성을 인식해야만, 우리는 진수의 동북아 역사 서술 구조를 타파하고 공손씨와 동북아 각 종족집단의 관계를 고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선비 종족집단과 고구려 사이의 정치관계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역사 서술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고구려 형제 관직의
내륙 아시아 연원

뤄신 (베이징대학 역사학과)

동북아시아역사재단

동북
아시아
역사
재단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미 잘 알려졌듯, 고구려 관제 중에는 형계(兄系) 관직이 있는데 연구자들은 이를 ‘형계 관위군(官位群)’이라고 지칭한다. 한국의 학자 김철준(金哲俊)은 일찍이 1956년에 발표한 「고구려·신라의 관계조직의 성립과정」에서 고구려의 형계 관직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¹ 1977년 일본 학자 다케다 유키오(武田幸男)의 「고구려 관위제와 그 전개[高句麗官位制とその展開]」는 이 영역의 권위 있는 논저임이 확실하다.² 근년에 중국 학자들도 이 문제에 대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다.³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거의

- 1 金哲俊(1956), 「高句麗·新羅の官階組織の成立過程」, 『李丙燾博士華甲紀念論叢』, 一潮閣에 수록되었으며 뒤에 논문집인 金哲俊(1990), 『韓國古代社會研究』, 知識産業社, 219~260쪽에도 수록됨. 여기서는 일역본에 근거한다. 鄭早苗·池內英勝·龜井輝一郎 譯(1981), 東京: 學生社, 104~138쪽.
- 2 武田幸男(1997. 10), 「高句麗官位制とその展開」, 『朝鮮學報』 第85輯, 1~53쪽. 이 논문은 뒤에 제목이 「高句麗官位制の史的展開」로 바뀌었고, 저자의 『高句麗史とアジア — “廣開土王碑” 研究序說』, 東京: 岩波書店(1989), 356~405쪽에 실렸는데, 이 글에서는 전자를 인용하였다.
- 3 高福順(2000), 「〈高麗記〉所記高句麗官制體系的初歩研究」, 劉厚生·孫啓林·王景澤 編, 『黑土地的古代文明』, 呼和浩特: 遠方出版社, 145~157쪽; 楊軍(2005), 「高句麗地方官制研究」, 『社會科學輯刊』 2005年 第6期, 139~144쪽; 高福順(2006), 「高句麗中央官位等級制度的演變」, 『史學集刊』 2006年 第5期, 81~88쪽; 高福順(2007), 「高句麗官制中的兄與使者」, 『北方文物』 2007年 第2

일률적으로 관료 등급제도(한국의 학자들이 ‘官階組織’이라 지칭하고, 일본의 학자들은 ‘官位制’라 지칭하는) 영역으로부터 고구려 관제에 대한 중국 고대 사서의 기록을 해독하는 데 편중되어 있고, 고구려 관제 중 호칭 이름 및 그 연원 변천에 대해 주목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 이러한 상태를 만드는 주요한 원인은 아마도 중국 사서(특히 唐代에 편찬된 몇 종의 사서)가 고구려 관제의 등급 서열 및 차이를 특히 강조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분명하게 지적할 것은, 중국 사료가 이와 같이 등급 요소를 강조한 것은 고구려 관제의 등급 서열이 아주 발달하여 한문(漢文) 사료를 기록한 사람들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준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상황은 이와 정반대일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사료 특색의 형성 원인은 중국 중고시대의 관료제도가 고도로 발달했는데, 특히 그중 관계제도(官階制度)의 발전이 아주 성숙된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⁴ 고도로 발달된 관료 등급제도 아래에 있던 사람들로서는 고구려 관제를 관찰할 때 자신이 지닌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며, 고구려 관제 중 등급 요소를 특히 중시하고 일정한 정도로 과장했을 것이다. 물론 고구려와 같은 중화의 주변 방국(邦國)이 중국 관료제도의 영향을 받아 중원의 관계제도를 애써 모방했을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모방은 그들의 정치 발전과 관료제도 진화의 단계성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기존의 사료 중 고구려 관료 등급제도의 기록을 지나치게 믿고 무턱대고 고구려 관제의 품급(品級), 관계, 관직(官職) 서열을 탐구하면 고구려 정치제도의 진상을 밝히지 못할 것

期, 49~55쪽.

- 4 中古시기 중국 관료 등급제도에 관한 연구로 근년에 제일 중요한 성과는 閔步克(2002), 『品位與職位—秦漢魏晉南北朝官階制度研究』, 中華書局이다.

이다.

이 글에서는 앞선 연구자들이 이룩한 고구려 관제에 대한 많은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이용하면서 형제 관직 중 개별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고구려 형제 관칭(官稱)의 차입과 분화, 신라 관제에 대한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각도에서 시험적으로 고구려 정치제도가 중원 왕조의 깊은 영향을 받았으며 내륙 아시아의 정치문화 전통과도 모종의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1. 고구려 형제 관직의 연원과 전승

고구려 형제 관직은 『위서(魏書)』 「고구려전(高句麗傳)」의 “그 관명(官名)으로는 계사(謁奢), 태사(太奢), 대형(大兄), 소형(小兄)이 있다”는 기록에 처음 나타난다.⁵ 이 자료는 이오(李敖)가 고구려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올린 보고를 기초로 하고 있다. 당시 북방 각 나라 사이의 외교관계로 볼 때 고구려는 북위(北魏)와 정식으로 왕래하였으며, 이오가 사절로 고구려를 방문한 시기는 북위 태무제(太武帝)가 북연(北燕)을 멸망시킨 전쟁을 일으킨 연화(延和) 원년(432) 전후이다. 이는 『삼국사기(三國史記)』 기록, 즉 장수왕(長壽王) 23년(435)과 시간상 비교적 가깝다.⁶ 『위서』 이후에 고구려 형제 관직과 관련된 사료는 아주 많

5 “其官名有謁奢，太奢，大兄，小兄之號。” 『魏書』 卷100, 「高句麗傳」, 北京：中華書局標點本(1974), 2215쪽.

6 『三國史記』 卷一八, 韓國精神文化研究院(1996), 185쪽. 『三國史記』는 北魏가 北燕을 멸망시킨 시점을 長壽王 23~24년(435~436)으로 기록하고 있다. 『魏

다. 제일 뚜렷한 사료는 『주서(周書)』로, “가장 높은 관(官)으로는 대대로 (大對廬)가 있고 그 아래에 태대형(太大兄), 대형(大兄), 소형(小兄), 의사사(意侯奢), 오졸(烏拙), 태대사자(太大使者), 대사자(大使者), 소사자(小使者), 육사(褥奢), 예속(翳屬), 선인(仙人)과 유살(禱薩) 등 모두 13등급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⁷ 그 이후 후세에 전해진 문헌사료인 『수서(隋書)』, 『북사(北史)』, 『구당서(舊唐書)』, 『신당서(新唐書)』, 『삼국사기』와 석각(石刻) 사료인 염모묘지(冉牟墓志), 중원고구려비(中原高句麗碑) 및 천씨(泉氏)의 여러 묘지(墓志) 등은 ‘冗’에서 분화해 나오는 형계 관직이 확실히 고구려 관제 중 아주 중요한 구성요소라는 것을 증명해주었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자들의 충분한 논증이 있기에 여기서 더 언급하지 않겠다.⁸ 여기에서 제기해야만 하는 문제는 “형계 관직이 어느 시기에 고구려 제도에 출현하였는가?” 또는 “고구려 관제 중 형계 관직은 『위서』 이전에 이미 있었는데 기록에만 없을 뿐인가?” 등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위서』보다 늦은 『양서(梁書)』는 고구려 관제를 기록할 때 “상가(相加), 대로(對廬), 패자(沛者), 고추가(古鄒加), 주부(主簿), 우대(優台), 사자(使者), 조의선인(皂衣先人) 등 신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 각각 등급을 두었다”며 형계 관직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⁹ 이오가

書』卷4上, 「世祖紀」에 의하면 燕을 멸망시킨 전쟁은 延和 元年(432)부터 太延 2년(436)까지 5년이나 지속되었다.

7 『周書』卷49, 「異域傳上」, 北京: 中華書局標點本(1971), 885쪽. “大官有大對廬, 次有太大兄, 大兄, 小兄, 意侯奢, 烏拙, 太大使者, 大使者, 小使者, 褥奢, 翳屬, 仙人并禱薩凡十三等.”

8 武田幸男(1997. 10), 앞의 글; 高福順(2000), 앞의 글.

9 『梁書』卷54, 「東夷傳」, 北京: 中華書局標點本(1973), 801쪽. “其官有相加, 對廬, 沛者, 古鄒加, 主簿, 優台, 使者, 皂衣先人, 尊卑各有等級.”

사신으로 나간 것보다 늦게 출판된 범엽(范曄)의 『후한서(後漢書)』에 기록된 고구려 관칭은 『양서』와 완전히 같다.¹⁰ 다만 고추가를 ‘고추대가(古鄒大加)’로 썼을 뿐이다. 물론 “其官有相加, 對盧, 沛者, 古雛加, 主簿, 優台丞, 使者, 皂衣先人, 尊卑各有等級”이란 『후한서』와 『양서』의 기재는 『삼국지(三國志)』의 원문을 거의 답습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다.¹¹

『후한서』는 한나라 말까지 서술하였기 때문에 이를 통째로 옮겨 놓은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왜 『양서』도 이렇게 처리하였을까? 요사렴(姚思廉) 혹은 요찰(姚察)의 게으름에 의한 실수라고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설령 그렇다고 해도 의문은 풀리지 않는다. 동진(東晉) 남조(南朝) 시대에 고구려와 강좌(江左) 정권은 아주 긴밀하고 쌍방 사절의 왕래가 빈번하였기 때문에, 강좌에 고구려와 관련된 상당히 풍부한 지식이 축적되어 필연코 사관(史官)의 공문서에 반영되었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지식이 『삼국지』의 기록과 달랐다면 양조(梁朝)의 사관이나 요찰이 눈치챘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구려의 정치제도에 대한 강좌의 이해가 사관으로 하여금 『삼국지』 기록의 유효함을 믿게 하였다고, 즉 동진 남조 시대에 축적한 고구려 관제와 관련된 지식은 진수(陳壽)가 서진(西晉) 시대에 접촉한 관련 자료와 일치한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로 이연수(李延壽)가 『남사(南史)』를 편찬할 때 고구려 기원의 역사는 “『북사(北史)』에 상세히 기재되었다(事詳『北史』)”고 하면서도 제도, 풍속 등은 『양서』의 관련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하였을 것이다.¹²

이렇게 고구려 관제와 관련된 지식에 남조계(南朝系)와 북조계(北朝系)

10 『後漢書』卷85, 「東夷傳」, 北京: 中華書局標點本(1965), 2813쪽.

11 『三國志』卷30, 「魏書·東夷傳」, 北京: 中華書局標點本(1959), 843쪽.

12 『南史』卷79, 「夷貊傳」, 北京: 中華書局標點本(1975), 1970쪽.

란 두 개의 사료 계통이 존재하게 되었다. 『양서』와 『주서』를 대표로 하여,¹³ 이 두 계통을 간단히 대비시켜 보면 아래와 같다.

南朝系：相加, 對盧, 沛者, 古鄒加, 主簿, 優台, 使者, 皂衣先人

北朝系：大對盧, 次有太大兄, 大兄, 小兄, 意俟奢, 烏拙, 太大使者, 大使者, 小使者, 禡奢, 翳屬, 仙人, 禰薩

두 개의 계통에 서로 겹치는 관칭은 대로, 사자와 선인(先人, 『周書』는 仙人으로 기록)이다. 그 중 남조계의 사자는 북조계에서 태대사자, 대사자, 소사자로 분화되어 있다. 제일 큰 차이는 남조계에 ‘加’로 호칭하는 상가, 고추가(혹은 古雛加로 씀) 등이 있다는 것이다. 『삼국지』에는 대가(大加), 제가(諸加)도 있다. 북조계에는 ‘兄’으로 이름된 많은 관칭이 있는데, 그 분화 상황은 바로 사자류(使者類) 관직과 같다. 이는 남조계의 ‘加’가 북조계의 ‘兄’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러한 추측은 두 개 사료 계통 사이의 모순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제도 연원을 이해하기 위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도 찾을 수 있게 해준다.

연구자들은 모두 위진 시대의 ‘加’가 북조 시대에 ‘兄’으로 대체된 것은 인식하였지만, 양자가 같은 관칭에 대한 다른 번역, 즉 ‘加’는 음역(音譯)이고 ‘兄’은 의역(意譯)일 수 있음을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 두 개의 사료 계통에 기록된 관칭 중 대로, 패자와 같은 음역도 있고 사자, 조의와 같은 의역도 있다. 상가와 같이 음역과 의역이 서로 혼합된 것도 있다. 의역인 것 같은 일부분의 관칭 중 주부와 같이 중원 왕조로부

13 『周書』所記의 13개 官稱 중 意俟奢와 翳屬의 음이 가깝고 禡奢와 禰薩의 음이 가까운데 중복하여 계산한 감이 있다.

터 차입한 요소도 있다. 차입한 관칭이라면 음역이든 의역이든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의역할 때는 억지로 끼워 맞추거나 대충 맞추어 넣는 것도 가능하다. 『한원(翰苑)』 주해(註解)의 인용문 『고려기(高麗記)』에는 고구려 관칭 중에 ‘대형가(大兄加)’가 있다는 것이 언급되어 있다.¹⁴ 다케다 유키오는 ‘加’자가 관각이나 조판 또는 필사가 잘못되어 더 들어간 글자라고 생각하는데,¹⁵ 사실은 의역된 것에 음역이 겹치며 생긴 현상일 따름이다.¹⁶ 어느 상황에 속하더라도 ‘兄’은 중원왕조로부터 차입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한대(漢代)부터 당대(唐代)까지의 중원 각 정권에는 이러한 관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외 ‘兄’과 ‘加’를 동일한 관칭의 의역과 음역으로 보면 고구려 관제사의 단절은 없게 된다. 어떤 학자는 고구려 정치 변화의 각도에서 이러한 단절을 해석하려 시도했다. 예를 들면 양군(楊軍)은 형계 관위의 출현에 대해 왕권이 성장하고 지방관이 권력 중심에 진입된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¹⁷ 물론 ‘加’부터 ‘兄’까지의 단절이 없더라도, 동일한 관칭은 비교적 오랜 역사시

14 『翰苑』 ‘蕃夷部’ 註引 『高麗記』 逸文 13條 第1條. 『翰苑』은 日本福岡縣太宰府 天滿宮에 소장된 唐人 寫本(第30卷만 있음)이다. 圖版 및 釋文은 竹內理三이 校訂하고 解説한 『翰苑』(東京: 吉川弘文館, 1977)을 보기 바란다. 『高麗記』 逸文의 研究에 대해서는 吉田光男(1977), 「〈翰苑〉註所引〈高麗記〉について—特に筆者と作成年次」, 『朝鮮學報』 第85輯, 1~30쪽; 『遼海叢書』, 沈陽: 遼沈書社(1985), 2518쪽 참조.

15 武田幸男(1997. 10), 앞의 글, 5쪽.

16 마찬가지로 『高麗記』는 이 逸文에서 ‘拔古雛加’도 언급하였다. 이런 경우 ‘加’로 호칭한 어떠한 관직명들은 그 어원이 ‘兄’에서 나왔음을 쉽게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것은 식별하기 좀 곤란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기록이 나타날 수도 있다.

17 楊軍(2001), 「高句麗中央官制研究」, 『黑龍江民族叢刊』 2001年 第4期, 70~73쪽.

기를 거치며 권력 및 지위와 기능의 변화가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제도 형식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모종의 중요한 관칭이 동일한 정치체제 안에서 장기적으로 사용된다면, 더욱 믿을 만한 역사상태라고 할 수 있다.

다케다 유키오는 고구려 초기의 관제 중 충분한 분화가 진행된 ‘使者’와 ‘加’는 고구려의 역사 기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부여(夫餘)로부터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¹⁸ 『삼국지』에 “부여는 모두 여섯 가족의 이름으로 관명을 정하였는데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대사, 대사자, 사자가 있다”는 기록이 있다.¹⁹ 하나의 민족체(民族體)로서의 고구려는 물론 하나의 정치체(政治體)로서의 고구려도 그 기원과 발전관계를 따지면 부여와 선후(先後) 관계에 있다.²⁰ 따라서 고구려가 자기의 정치체를 형성하는 초기에 부여에서 ‘加’란 관칭을 차입하였고,²¹ 이것이 점차 복잡한 가계(加系) 관직(兄系 官位群)으로 진화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다. 차입한 관칭은 보통 원래 명사의 어음(語音)을 옮겨 놓는 것이 원칙이다. ‘加’는 고구려 국내에서 자연스럽게 원래 명사의 어음으로 읽는다. 따라서 위진 강좌의 자료에도 음역의 방법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북위의 사신이 평양에 나타난 이후, 한문 사료에서 발음만 알고 어의(語義)를 모르는 이러한 역사가 끝나게 되었다. 이후 북조계의 사료에는 의역만 있게 되었다.

18 武田幸男(1997. 10), 앞의 글, 17쪽.

19 『三國志』 卷30, 「魏書·東夷傳」, 841쪽. “皆以六畜名官, 有馬加, 牛加, 猪加, 狗加, 大使, 大使者, 使者.”

20 楊軍(2006), 『高句麗民族與國家的形成和演變』,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15~128쪽.

21 鄭早苗(1981), 「中國周邊諸民族の首長號」, 『村上四男博士和歌山大學退官記念-朝鮮史論文集』, 東京: 開明書院, 3~9쪽.

이로써 남조계의 사료와 뚜렷한 차이가 있게 된 것이다. 북위의 사신이 어떻게 ‘加’의 어의를 아는가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이 문제에 관해 수·당(隋·唐)의 관방(官方) 문헌과 사서는 기본적으로 북조계의 전통을 계승하였고 『삼국사기』도 이 전통을 계승하였다. 그러나 이 전통은 서면 기록을 할 때부터 ‘宍’의 발음을 흘시하였다. 그 결과 끝내 이 발음은 서면 기록에서 없어지고 말았다. 고구려 정권의 멸망에 따라 ‘宍’과 ‘加’의 관계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거나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고구려의 정치제도는 한반도의 각 지역 및 집단의 정치 발전에 뚜렷한 영향을 미쳤으며, 많은 요소들이 뒤이어 일어난 백제와 신라 등의 정치제도에 남겨졌다. 고구려 정권에서 매우 중요하였던 형계 관위군의 흔적은 신라의 관제에서 찾을 수 있다. 『삼국사기』 권38에 신라 ‘대보(大輔)’류의 고위 관직 17등급이 기록되어 있다. 이 중 앞의 9등급은 아래와 같다.²²

- 一. 日伊伐餐(原註：或云伊罰干，或云角干，或云角祭，或云舒發翰，或云舒弗邯)
- 二. 日伊尺餐(原註：或云伊餐)
- 三. 日迎餐(原註：或云迎判，或云蘇判)
- 四. 日波珍餐(原註：或云海干，或云破彌干)
- 五. 日大阿餐
- 六. 日阿餐(原註：或云阿尺干，或云阿祭)
- 七. 日一吉餐(原註：或云乙吉干)

22 『三國史記』 卷38, 374쪽.

八. 日沙餐(原註：或云薩餐, 或云沙咄干)

九. 日級伐餐(原註：或云級餐, 或云及伏干)

원주(原註) 중 이른바 ‘혹운(或云)’은 사실은 이역(異譯)이다. 이러한 동음이역을 이용하여 우리는 일부 보기 드문 글자들의 당시 발음, 적어도 신라 사람의 당시 발음을 이해할 수 있다. 앞의 9등급에서 ‘餐’ 자로 구성된 관칭의 이역 중, 우리는 ‘餐’의 이역에 사용한 글자로 ‘干’ 자가 제일 많이 쓰인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餐’의 발음이 ‘干’과 제일 가깝거나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²³ ‘干’ 자로 쓰고 ‘餐’ 자를 안 쓰는 이러한 번역은 시대가 좀 뒤인 『삼국유사(三國遺事)』에서는 아주 보편적이었다. 예컨대 『삼국사기』 권10 ‘원성왕 즉위 조’에 “(왕의) 고조 대아찬 법선(法宣)을 현성대왕(玄聖大王)으로, 증조 이찬(伊餐) 의관(義寬)을 신영대왕(神英大王)으로, 할아버지 이찬 위문을 흥평대왕(興平大王)으로, 부친 일길찬(一吉餐) 효양(孝讓)을 명덕대왕(明德大王)으로 추봉하고……”라는 기록이 있다.²⁴ 그러나 『삼국유사』 권2 ‘원성대왕 조’는 이를 “할아버지 훈인 잡간(訓人匠干)을 흥평대왕으로, 증조 의관잡간(義官匠干)을 신영대왕으로, 고조(高祖) 법선대아간(法宣大阿干)을 현성대왕으로 추봉하고……”라고 기록하였다.²⁵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개 조의 대응관계를 만들 수 있다.

23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통일신라시대(827년) 황룡사 9층목탑(지금 경주 경내에 있는)의 찰주본기(刹柱本記)에 “監軍伊干龍樹”라고 쓰였는데, 이는 당시에 ‘干’은 쓰이나 ‘餐’은 쓰이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음을 설명해준다.

24 『三國史記』卷10, 114쪽, “追封高祖大阿餐法宣爲玄聖大王, 曾祖伊餐義寬爲神英大王, 祖伊餐魏文爲興平大王, 考一吉餐孝讓爲明德大王.”

25 『三國遺事』卷2, 李丙燾 譯註本(2000), 明文堂, 64쪽, “追封祖訓人匠干爲興

- 1) 高祖 大阿餐 法宣 — 高祖 法宣大阿干
- 2) 曾祖 伊餐 義寬 — 曾祖 義官匣干
- 3) 祖 伊餐 魏文 — 祖 訓人匣干

이 세 개 조의 대응관계 중 『삼국사기』의 ‘餐’ 자는 『삼국유사』에서 모두 ‘干’ 자로 쓰였다. 그러나 『삼국유사』에 ‘餐’으로 ‘餐’을 그대로 쓴 예도 적지 않다. 이것은 『삼국유사』가 다른 판본을 따랐거나 아니면 『삼국사기』의 역사지식이 구두와 서면으로 유전되는 과정에서 분화가 생겨 어떤 고대 발음은 전승되고 어떤 발음은 유실되어 그 잘못이 그대로 전해졌다는 것을 말해준다.

김부식(金富軾)은 신라 관칭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벌찬(伊伐餐), 이찬 등의 관칭에 대해 “모두 우리나라의 말로 명명(命名)하게 된 뜻을 알 수 없다”고 하였다.²⁶ 김부식마저 이러하니 일연(一然) 때에는 자연스럽게 누구도 신라 관직 중 찬계(餐系, 干系) 관칭의 뜻이 무엇인지 밝혀낼 수 없었다. ‘餐(干)’의 의미가 더욱 일찍이 사라졌거나 신라가 고구려에서 이 관칭을 차입할 때부터 원래 의미를 아는 사람이나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유명사로 되어 여러 사람이나 단계를 통해 전해지는 단어들은 흔히 본의(本義)가 탈락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고유명사 자체가 이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의미 혹은 부가된 의미가 운용될 때 원래의 의미가 배제될 수도 있다. ‘餐(干)’이 차입될 때에는 이미 관칭이었고 그 의미는 제도상의 새로

平大王，曾祖義官匣干爲神英大王，高祖法宣大阿干爲玄聖大王。”；孫文范 外(2003), 「校勘本」, 長春：吉林文史出版社, 76쪽.

26 『三國史記』卷38, 374쪽, “皆夷言, 不知所以言之之意.”

은 의미 혹은 부가된 의미로 세상에 널리 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때문에 아주 박식한 김부식조차 그 본의를 알 수 없어서 “명명하게 된 뜻을 알 수 없다”고 하였다.

부여의 ‘加’로부터 고구려의 가계 여러 관직으로 또는 북조계 사료가 가계 직관으로 의역되어 형성된 형계 관위군으로 그리고 신라의 ‘饗(干)系’ 여러 직관으로까지 우리는 동일한 정치명호(政治名號, political titulary)가 공간상으로는 내륙 아시아부터 동북아까지, 족속상으로는 부여로부터 고구려를 거쳐 신라까지, 시간상으로는 한대부터 당대까지 전파된 과정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언어, 문자와 문화 차이로 초래된 여과 작용으로 인해 ‘加(兒, 饗, 干)’ 명칭의 내용과 형식이 분화하거나 변이하고 동시에 원래 의미의 탈락과 잃음도 발생하였다. 단지 현대 학술 연구의 여러 학과의 축적지식에 의존한다면, 이 글이 관심을 두는 문제에 관해서는 주로 현대 알타이학의 일련의 축적성과에 근거하여 앞에서 서술한 시간상, 공간상 및 족속관계상의 역사과정을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서 우리는 ‘加(兒, 饗, 干)’ 명칭의 어원 및 그 내륙 아시아와의 연원에 대해 필요한 고증과 교정을 해보자.

2. ‘加’ 명칭 어원의 내륙 아시아 연원

고구려의 가계 직관은 부여에서 기인하였지만, 정치명호로서의 ‘加’는 부여에서 기인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 명칭의 어원(語源)은 무엇일까? 기존의 알타이 비교역사언어학의 지식에 의거하여, 우리는 이 명칭의 어원이 동호어(東胡語, 古蒙古語)에서 ‘형(哥哥)’의

뜻인 aka/aga임을 확신할 수 있다. 『송서(宋書)』에 모용외(慕容廆)가 그의 형 토곡혼(吐谷渾)과 분열하여, 토곡혼이 부하를 인솔하여 서쪽으로 옮겨 갔다며, “뒤에 모용외가 토곡혼을 그리워하며, 아간(阿干)의 노래를 지었는데, 선비(鮮卑)는 형을 아간이라 부른다”라는 기록이 있다.²⁷ 『위서』와 『진서(晉書)』 등에도 같은 기록이 있다.²⁸ 선비어(鮮卑語) 속성의 분류에 대한 리게티(Louis Ligeti)의 권위적인 연구가 있는 뒤,²⁹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선비어 및 오환어(烏桓語, 烏桓과 鮮卑는 모두 東胡集團에 속하기 때문에 東胡語라고도 한다) 모두 고몽골어(古蒙古語, Proto-Mongolian)에 속한다는 것에 동의한다.³⁰

처음으로 선비어의 ‘阿干’을 현대 알타이어와 비교한 사람은 프랑스 학자 폴 펠리오(Paul Pelliot)와 일본 학자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이다. 폴 펠리오는 토곡혼 족속을 연구하는 논문에서 ‘阿干’이란 단어를 토론하면서 “이 ‘阿干’은 분명(蒙古語 중에서 형을 부르는) aqa의 상대 발음이다”라고 명확하게 결론을 내렸다.³¹ 시라토리 구라키치는 『동호민족고(東胡民族考)』에서 현대 알타이의 여러 언어 중에서 ‘兄’을 표시한 어휘, 예

27 『宋書』 卷96, 「鮮卑吐谷渾傳」, 北京: 中華書局標點本, 1974, 2370쪽, “後廆追思渾, 作阿干之歌, 鮮卑呼兄爲阿干.”

28 『魏書』 卷101, 「吐谷渾傳」, 2233쪽; 『晉書』 卷97, 「吐谷渾傳」, 北京: 中華書局標點本, 1974, 2537쪽.

29 Le Tabghatch Louis Ligeti(1970), “un dialecte de la langue Sien-pi,” Louis Ligeti ed., *Mongolian Studies*, Budapest, pp. 265~308.

30 Peter B. Golden(1992),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the Turkic Peoples: Ethnogenesis and State-formation in Medieval and Early Modern Eurasia and the Middle East*, Wiesbaden, Germany: Otto Harrassowitz Verlag, pp. 26~27.

31 伯希和(1957), 「吐谷渾爲蒙古語系人種說」中譯本, 馮承鈞譯, 『西域南海史地考證譯叢七編』, 北京: 中華書局, 33쪽.

컨대 aka/akan-aga/agan-aki/akin 등을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선비어의 ‘阿干’이 알타이어에서 기인한 것임을 증명하였다.³² 이린진(亦鄰眞)도 “阿干(兒)과 몽골어 ‘阿合(兒)’의 비교를 통해 동부 선비어와 몽골어는 같은 어원 관계임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전자는 더욱 오래된 형태를 가진다”고 지적하였다.³³ 현대 알타이 어원학(語源學) 연구에 의하면, 돌궐어족(突厥語族) 여러 언어의 aga/ağa(兒)는 모두 몽골어의 aka/aga에서 차입해 온 것이다.³⁴

러시아 언어학자 세르게이 스타로스틴(Сергей Старостин)이 만든 알타이 어원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고알타이어(Proto-Altai) 중 ‘형(哥哥)’을 표시하는 어휘로 *ak'a를 상정할 수 있으며, 고대 몽골어의 *aka가 돌궐어에 차입되어 *(i)aka로 되고 통구스어(通古斯語)에 차입되어 *akā / *kakā로 된다고 한다.³⁵ 현대 몽골어의 ‘兒’은 ax인데,³⁶ 글로 쓸 때는 axa이지만 어미의 모음 -a가 탈락되어 ax로 읽힌다.³⁷ 『몽고비사(蒙古秘史)』도 이 단어를 언급하였다. 예컨대 제79절의 ‘阿(中)合納兒’ 옆에 ‘兒每’로 번역하였다.³⁸ 리게티는 aqa-nar로 옮겨 쓰고,³⁹ 기타 연구자

32 白鳥庫吉(1986), 「東胡民族考」(1910~1913年), 『塞外民族史研究』上册, 東京: 岩波書店, 126~127쪽.

33 亦鄰眞(2001), 「中國北方民族與蒙古族族源」, 『亦鄰眞蒙古學文集』,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560쪽.

34 İsmet Zeki Eyuboğlu(2004), *Türk Dilinin Etimolojik Sözlüğü*, İstanbul: Sosyal Yayınlar, p. 11.

35 Сергей Старостин(1998), *Вавилонская Башня*, основан в 1998г, <http://starling.rinet.ru/>.

36 Цогбадрахын Ганбаатар(2005), *ШинэХятадМонглТоль*(新編漢蒙辭典), Улаанбаатар, хуудас 122.

37 孫竹(1985), 『蒙古語文集』, 西寧: 青海人民出版社, 118쪽.

38 『蒙古秘史』(校勘本) 卷2, 額爾登泰·烏云達賚 校勘(1980), 呼和浩特: 內蒙古

들도 이렇게 옮겨 썼는데, 중고(中古) 시기의 몽골어는 아직도 aqa로 형님의 뜻을 표시함을 알 수 있다.⁴⁰ 현대 다우르족은 ag로 쓰는데,⁴¹ 현대 몽골어와 같은 어미 모음 -a의 탈락 상황을 반영하였다. 통구스어족 중에서는 aka/aga의 변화도 크지 않고 만족어와 석백족어(錫伯族語는 ‘兄’을 모두 age로 쓴다.⁴² 돌궐어족 중에는 aka/aga가 거의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예를 들면 위구르어의 aka와 터키어의 ağa(輔音-g는 이미 약화되었다)가 그것이다.

선비어의 ‘阿干’은 중고시대에 한어 체계로도 들어갔는데, 뒤에 한어 중 아주 중요한 친족 호칭어인 ‘哥哥’로 진화되었다. 왕리(王力) 선생은 『한어사고(漢語史稿)』에서 처음 당대(唐代)부터 구두어에서 ‘兄’을 대체한 ‘哥’는 외래어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⁴³ 왕리 선생이 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 한어사(漢語史) 연구자들은 이에 대해 획기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한어의 ‘哥哥’는 ‘阿哥’에서 나온 것이며, ‘阿哥’는 선비어의 ‘阿干’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데에 동의한다.⁴⁴ 폴리블랭

人民出版社, 95쪽.

- 39 Louis Ligeti(1971), *Histoire Secrète des Mongols*, Budapest : Akadémiai Kiadó, p. 48.
- 40 Gerhard Doerfer(1963),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in Neupersischen*, Band I, Wiesbaden : Otto Harrassowitz, pp. 131~140.
- 41 仲素純(1982), 『達斡爾語簡志』, 北京 : 民族出版社, 91쪽.
- 42 劉厚生 等(1988), 『簡明滿漢辭典』, 開封 : 河南大學出版社, 7쪽 ; 李樹蘭 等(1986), 『錫伯語簡志』, 北京 : 民族出版社, 150쪽.
- 43 王力(1980), 『漢語史稿』下冊, 北京 : 中華書局, 506~507쪽.
- 44 胡雙寶(1980), 「說“哥”」, 『語言學論叢』第六輯, 北京 : 商務印書館, 128~136쪽 ; 趙文工(1998), 「“哥哥”一辭來源初探」, 『內蒙古大學學報』1998年 第1期, 7~12쪽 ; 張清常(1998), 「〈爾雅·釋親〉札記—論“姐”, “哥”辭義的演變」, 『中國語文』1998年 第2期 ; 趙文工(1999), 「唐代親屬稱謂“哥”辭義考證」, 『內蒙古

크(Edwin G. Pulleyblank)는 ‘哥’ 자를 ka 음으로 하면,⁴⁵ ‘阿哥’는 aka 음으로 유추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干’ 자의 발음은 kan으로, ‘阿干’을 akan으로 읽으면, 분명히 ‘阿干’이 ‘阿哥’보다 비음(鼻音) -n이 하나 더 많은데, 이러한 모순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이런전은 阿干(*akan)에 미비음(尾鼻音) -n이 붙어 있는 것은 아마 현대 몽골어 aka의 보다 더 오래된 형식이라고 생각한다. 즉 고대 몽골어에서는 본래 akan이었는데, 후에 미비음 -n이 탈락하여 aka로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본래 -n이 붙어 있던 원대(元代) 몽골어의 많은 명사에 들어 있던 미비음이 현대 몽골어에서는 탈락한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usun → ūs(水), darasun → dras(酒) 등이다.⁴⁶ 이 해석에 따르면 aka의 형식이 고대에는 akan이란 한 가지만 있게 된다. 그러나 이 해석은 『몽고비사』의 시대와 그 뒤 중고시기 몽골어의 동일한 명사에는 늘 미비음이 붙어 있거나 그렇지 않은 두 가지 형식이 있다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현대 몽골어, 특히 구두어 중 어미가 모음인 일부 명사에도 미비음이 붙어 있거나 그렇지 않은 두 가지 형식이 존재한다. 심지어 미비음의 존재 여부와 관련해 어휘, 어음과 문법 등에 엄격한 기능 구분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몽골어에서 어미가 모음으로 된 일부 명사를 구체적으로 사용할 때 뒤에 미비음 -n을 덧붙이는 것은 어떤 언어환경 아래에서는

大學學報』1999年 第1期, 58~65쪽.

45 Edwin G. Pulleyblank(1991), *Lexicon of Reconstructed Pronunciation in Early Middle Chinese, Late Middle Chinese, and Early Mandarin*, Vancouver :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p. 105.

46 亦鄰真(2001), 앞의 책, 560쪽, 주1.

일정한 정도로 임의적이고 불확실한 데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현상에 대하여 천종진(陳宗振)이 한 가지 간결한 해석을 해주었다. 그는 명사 뒤에 운미(韻尾) -n을 덧붙인 것은 몽골어의 일부 명사가 두 가지 어간(語幹) 형식을 갖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몽골어의 일부 명사는 한 가지 어간만 갖는데 이를 ‘불변어간명사(不變詞干名詞)’라고 한다. 또 일부 명사는 두 가지 어간, 즉 어미가 비음화 성분을 갖고 있는 원형어간(原型語幹)과 비음화 성분이 없는 간화어간(簡化語幹)이 있는데, 이를 ‘가변어간명사’라고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어간 형식을 갖고 있는 명사 뒤에 일부 부가성분(附加成分)을 이을 때 원형어간(亦鄰真이 말하는 ‘더 오래된 형식’이다)을 사용해야만 하며, 이때 어미의 비음화 성분은 설첨비음(舌尖鼻音)으로 환원된다. 즉 주어, 목적어, 연합성분(聯合成分)이 되거나 뒤에 다른 일부 부가성분을 이을 때 간화 형식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⁴⁷

따라서 aka와 akan은 두 개의 어간으로 볼 수 있지만 이들은 결국 동일한 명사의 부동한 형식일 뿐이다. 고대 한자는 비한어(非漢語) 어휘를 옮겨 쓸 때 간혹 어두(語頭) 모음을 생략한다. 예컨대 işbara를 사발락(沙鉢略) 혹은 시파라(始波羅)로 번역한다. 『삼국지』에서는 ‘加(ka)’ 음으로 부여와 고구려의 aka를 번역하고 『삼국사기』 및 『삼국유사』에서는 ‘干’ 및 ‘餐(kan)’ 등 단음절 한자음으로 신라의 akan을 번역하면서 어미 모음 a-는 모두 생략해 버렸다. 물론 이는 원어 어두 모음의 탈락을 의미하지 않으며, 단지 한자로 옮겨 쓸 때 간결함을 추구하여 생긴 생략 문제일 따름이다. 그러나 앞에서 서술한 신라 관직 중 대아찬과 아찬, 아

47 陳宗振(2001), 「試釋李唐皇室以“哥”稱“父”的原因及“哥”, “姐”等辭與阿爾泰諸語言的關係」, 『語言研究』 2001年 第2期, 110~121쪽; 道布(1983), 『蒙古語簡志』, 北京: 民族出版社, 21~22쪽.

간과 아찬은 생략하여 번역한 것이 아니고 어두의 모음이 번역되어 나온 것이다.

이상에서 신라의 아주 중요한 관직들은 ‘餐’ 혹은 ‘干’을 관칭으로 삼고 각종 관호를 더하여 정치명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이별찬=이별(관호) + 찬(관칭), 이별간=이별 + 간, 각간=각 + 간, 이척찬=이척 + 찬, 파진찬=파진 + 찬, 해간=해 + 간, 파미간=파미 + 간 등이 있다. 신라의 이러한 관칭은 고구려의 ‘兄(意譯)’ 혹은 ‘加(音譯)’에서 온 것이다. 신라 초기의 군주 칭호, 예컨대 거서간(居西干) 및 마립간(麻立干)은 그 이름과 호의 구조가 완전히 같다. 즉 거서(관호) + 간(관칭) 및 마립(관호) + 간(관칭) 등은 신라가 초기에 고구려에 정치적으로 예속되었으며 고구려의 관직을 받아들였음을 반영한다.⁴⁸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비록 신라가 고구려의 관칭 akan을 받아들였지만 그 관호(官號, 예컨대 ‘居西’, ‘麻立’ 등)들이 완전히 신라 자신의 언어와 정치 전통에서 기인하였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⁴⁹ 김부식은 “신라왕(新羅王)으로 거서간이라 칭한 이가 하나요, 차차웅(次次雄)이라 한 이가 하나요, 이사금(尼師今)이라 한 이가 열 여섯이며, 마립간이라 한 이가 넷이다. 신라 말기의 저명한 유학자 최치원(崔致遠)은 『제왕연대력(帝王年代歷)』을 편찬할 때 모두 무슨 왕이라고 칭하고 거서간 등으로 말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 말이 비야(僻野)하여 족히 칭할 것이 못되는 까닭일까”라고 하였다.⁵⁰ 신라 초기 군주 칭

48 武田幸男(1980), 「朝鮮三國의 國家形成」, 『朝鮮史研究會論文集』 第17集(20周年記念大會特集), 東京: 龍鷄書舍, 41~54쪽.

49 李炳壽는 『三國史記譯注』에서 麻立 등의 官號에 대해 해석하고 있다.

50 『三國史記』 卷4, 48쪽, “新羅王稱居西干者一, 次次雄者一, 尼師今者十六, 麻立干者四, 羅末名儒崔致遠作『帝王年代歷』, 皆稱某王, 不言居西干等, 豈以其言僻野不足稱也.”

호의 불완전함은 곧 신라의 정치 발전으로 인한 신속한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혹자는 다른 시각에서, 신라 초기에 군주와 기타 귀족이 호칭상 평등(모두 ‘干’을 官稱으로 삼는다)한 것을 두고, 이는 왕권이 확립되지 못해 왕실이 아직도 귀족집단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반영한다고 말한다. 신라가 정치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신라 군주는 지증마립간(智證麻立干)부터 새로운 관칭(王)을 얻었고, ‘干(akan)’은 더 이상 군주의 관칭이 아니고 신라 대신의 전유물이 되었다. 그럼으로써 ‘干’은 신라 관제 내에서 『삼국사기』에 기록된 9등급의 관직으로 분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akan의 원시적 어의가 마침내 사라져 관방(官方)의 사료를 통해서 이 관칭이 고구려의 ‘覓’에서 온 것임을 후세 사람들은 모르게 되었다. 그러나 고구려의 ‘加(兒)’는 부여에서 기인하였고 『고려기(高麗記)』가 ‘大兄加’를 언급하는 것을 보면 고구려 내부에서는 아직도 ‘加’의 원의(原義)를 알고 있었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부여의 언어와 족속은 아직도 너무 불확실하다.⁵¹ 시라토리 구라키치는 이전에 아주 추상적으로 부여 및 고구려 등의 민족 근원이 되는 ‘예맥’을 ‘몽골과 통구스의 잡종족(雜種族)’이라고 하였지만, 여전히 부여어(夫餘語) 중에는 통구스의 성분이 비교적 많으며 동시에 소량의 몽골어 성분도 있다고 인식하였다.⁵² 뒤에 시라토리는 부여의 시조 동명왕(東明王) 전설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부여와 고구려는 모두 예맥에서 기인하였다고 더욱 강조하였다.⁵³ 근년에 상당히 많은

51 王珽(2005), 「古代東北亞史研究概覽」, 余太山 主編, 『內陸歐亞古代史研究』, 福州: 福建人民出版社, 200~204쪽.

52 白鳥庫吉(1935), 「塞外民族」, 『塞外民族史研究』上册, 532~533쪽.

53 白鳥庫吉(1936), 「夫余國の始祖東明王の傳説に就いて」, 『塞外民族史研究』下

연구자들은 부여와 선비의 연원이 같다고 주장한다.⁵⁴ 그러나 필자는 부여는 고통구스어족이고 고몽골어족에 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믿는다.

부여의 형성과 규모 및 영향을 볼 때, 부여의 정치체는 주로 동호의 자극과 영향을 받아 발전했다. 따라서 동호의 일부 정치 전통이 부여에 들어왔으며 ‘加’는 그 중 한가지였다는 설득력 있는 가정이 가능하다. 물론 우리에게는 아직도 동호가 akan으로 호칭하는 관직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 그러나 아래에서 토론하는 바와 같이 동호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는 탁발선비(拓跋鮮卑)는 이 관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동호가 이러한 전통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일정한 정도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필자는 aka/akan이란 관칭이 동호에서 고구려로 차입되었고, 또한 고구려로부터 신라로 전입되었다고 믿는다. 본래 관칭의 전승과 차입은 어음(語音)의 형식만 존재하고 있는데, 고구려에 도착한 북위의 사신은 ‘加’로 호칭하는 관직이 바로 선비어의 ‘阿干’임을 쉽사리 식별하였을 것이다. 이들 사신은 자신이 알고 있는 고구려 관제를 조정에 보고할 때 주저 없이 ‘加’를 ‘兄’으로 의역하였을 것이며, 따라서 북조계의 고구려 관제에 관한 사료 체계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북위의 사신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들이 이 어휘의 어원을 안다는 것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필자는 이들이 이러한 번역을 함으로써 고구려의 akan이 북위의 ‘阿干’과 혼동되는

冊, 363~391쪽.

54 劉高潮·姚東玉(1988), 「“日種”說與匈奴之族源—兼論夫余王族屬東胡系統」, 『求是學刊』1988年 第4期, 78~80쪽; 楊軍(2006), 앞의 책, 93~99쪽.

것을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⁵⁵

3. 탁발선비 및 기타 내륙 아시아 민족이 aka/akan을 관칭으로 삼은 상황

북위에는 ‘阿干’이란 관직이 있었다. 이는 정사(正史)와 석각(石刻) 사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북사』에는 탁발가슬릉(拓跋可悉陵)이 17세에 홀몸으로 맹수와 싸우는 용맹을 떨쳐 내행아간(內行阿干)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⁵⁶ 『신당서』에는 우문계(宇文弼)가 북위 때에 “내아간(內阿干)까지 올라갔다”는 기록이 있다.⁵⁷

북위의 장로(張廡) 묘지(墓誌)에 장로의 아버지 장선(張善)이 후진(後秦)에서 위(魏)로 간 이후에 “나라와 임금의 은총으로, 내시(內侍)에서 근무하며, 아간으로 봉직되어(蒙國寵御 側在內侍 爲給事阿干)”란 기재가 나온다.⁵⁸ 1997년에 발표된 북위 문성제남순비(文成帝南巡碑)와 관련된 보고서를 통

55 『魏書』에 따르면 사절로 高句麗에 간 使臣은 李敖뿐인데 당시 관습으로는 主使 외에 副使도 있었다. 예컨대 저명한 嘎仙洞刻銘에 기록된 첫 사신은 “謁者僕射庫六官”이다. 그러나 『魏書』는 두 번째 사신인 中書侍郎 李敞만 언급하였다. 사실 李敞은 副使였다. 羅新(2008), 「高昌文書中的柔然政治名號」, 『吐魯番學研究』 第1期, 35~41쪽. 이런 상황이 나타난 것은 『魏書』가 마지막으로 編定될 때 특별히 中原 士族의 지위를 부각시킨 것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李敖가 실사 主使라도 그의 副使 등 수행한 사람 중에는 필연코 수많은 북방 여러 민족의 언어에 익숙한 자가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高句麗 aka/akan의 語義를 당연히 알 수 있었다.

56 『北史』 卷15, 「魏諸宗室傳」, 北京: 中華書局標點本(1974), 566쪽.

57 『新唐書』 卷71下, 「宰相世系表一下」, 北京: 中華書局標點本(1975), 2404쪽.

58 趙超(1992), 『漢魏南北朝墓誌匯編』,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127쪽.

하여,⁵⁹ 비신의 뒷면에 쓰인 제명(題名) 중 첫 번째 줄에서 9개의 ‘內阿干’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寧□將軍 宰官內阿干 魏昌男 代伏云右子尼
 左衛將軍 內阿干 太子左衛率 安吳子 乙旃阿奴
 □□將軍 太子庶子 內阿干 晉安男 盖婁太拔
 揚烈將軍 內阿干 陰陵男 社利幡乃婁
 安北將軍 內阿干 東平公 是婁勅万斯
 寧東將軍 內阿干 建安男 尉遲杏亦干
 中常侍 寧南將軍 太子率更令 內阿干 南陽公 張天度
 散□□□ 內阿干 嘉寧男 若干若周
 庫部內阿干 □□庫蘭

비신의 뒷면에 쓰인 제명의 배열 규칙에 의하면 “庫部內阿干□□庫蘭”의 앞 약간약주(若干若周)의 뒤에 글씨가 희미한 여섯 사람 및 장천도(張天度)와 약간약주 사이의 고애인(賈愛仁)은 ‘내아간’이란 관직을 갖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문성제남순비의 비신 뒷면에 쓰인 제명 중에는 본래 16개의 내아간이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내아간은 바로 『북사』에 기록된 ‘내행아간(內行阿干)’ 및 장로 묘지 중의 이른바 ‘내시(內侍)에서 근무하며’, ‘봉직한 아간’이다. 남순비 비신 뒷면 제명의 첫 번째 줄에는 모두 51명이 적혀 있는데 모두 ‘내시의 관’이다. 이들 51명 중에서 시중(侍中), 중상시(中常侍), 서기부상서(西起部尙書), 전중상서(殿中尙書), 내도당장(內都幢將) 등 관함(官銜)을 가진 사람들 이외 나머지는 내아간, 내행내상

59 山西省考古研究所·靈丘縣文物局(1997), 「山西靈丘北魏文成帝〈南巡碑〉」, 『文物』1997年 12期, 70~79쪽.

랑(內行內三郎), 내행령(內行令)과 내행내소(內行內小)들이다. 내행(內行)은 내(內)에서 주행(走行)한다는 의미일 수 있는데 내아간은 마땅히 ‘내행아간’의 약칭이라 할 수 있으며, ‘봉직’하여 ‘내시에서 근무’하였다는 것은 내아간 속성의 간단한 개괄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젊은 학자 마쓰시다 겐이치(松下憲一)는 그의 새로운 저서인 『북위호족체제론(北魏胡族體制論)』에서 남순비 비신 뒷면의 제명과 『위서』에 나오는 관련 기록을 대조하여, 제명 중 “散□□□ 內阿干 嘉寧男 若干若周”는 바로 『위서』 「전(傳)」에 있는 인물인 구퇴(苟頹)의 동생 구약주(苟若周, 散騎常侍, 尙書)이고 “庫部內阿干 □□庫蘭”은 바로 『위서』 「전」의 인물인 이란(伊蘭, 散騎常侍, 庫部尙書)이라고 확인한다. 따라서 남순비에 나오는 ‘內阿干’은 『위서』의 상서(尙書)와 서로 대응해야 한다고 추정한다.⁶⁰ 마쓰시다는 이에 근거하여 더 나아가 이른바 내아간을 『위서』에서는 상서로 고쳐 썼다고 추론하였다. 예컨대 남순비의 고부내아간(庫部內阿干)은 『위서』의 고부상서(庫部尙書)이고 남순비의 재관내아간(宰官內阿干)은 『위서』중의 재관상서(宰官尙書)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북위 초기의 선비계 관직 내아간과 위진계(魏晉系) 관직인 상서 간의 대응관계가 성립된다. 이러한 관련성은 사료에 보이는 북위 초기 상서 직관의 혼란과 난잡함, 예를 들면 어조(魚曹), 목조(牧曹), 우조(虞曹)도 모두 상서가 있는 상황 등을 해석할 수 있게 해준다.⁶¹ 그렇지만 북위의 내아간을 바로 상서의 선비어 명칭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그것은 틀린 관점일 것이다. 내아간은 탁발선비의 오래된 제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60 松下憲一(2007), 『北魏胡族體制論』, 札幌: 北海道大學出版會, 59~61쪽.

61 羅新(2008), 「松下憲一〈北魏胡族體制論〉評介」, 『北大史學』第13輯,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서는 위진제도의 상서와 비교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비교는 제도 자체의 전통과 속성을 반영할 수 없다.

탁발선비는 ‘阿干’을 관칭으로 삼으면서 친족 호칭으로도 계속 쓴 것으로 보인다. 『남제서(南齊書)』에 따르면, 북위 효문제(孝文帝)가 천도를 시작할 때 일부 귀족들이 천도를 반대하는 정변을 도모하였는데 그 기록은 다음과 같다.

僞征北將軍恒州刺史鉅鹿公伏鹿孤賀鹿渾守桑乾，宏從叔平陽王安壽戍懷柵，在桑乾西北。渾非宏任用中國人，與僞定州刺史馮翊公目鄰，安樂公托跋阿幹兒謀立安壽，分據河北。⁶²

이 인용문 중 “恒州刺史鉅鹿公伏鹿孤賀鹿渾”은 바로 『위서』의 육예(陸睿, 伏鹿孤는 步六孤의 또 다른 번역인데 바로 bilge이다)이고, “僞定州刺史馮翊公目鄰”은 바로 『위서』의 목태(穆泰)이며, 안수(安壽)는 양평왕이(陽平王頤, 本名은 安壽이고 孝文은 名頤로 하사해 주었다)이다. “安樂公托跋阿幹兒”는 당연히 『위서』의 안락후(安樂侯) 원룽(元隆)이다. 『북사』에 의하면 원룽은 원승(元丕)의 장자(長子)다. 북조의 사료는 원룽의 소자(小字)를 기록하지 않았다. 『남제서』에 의하면 그의 선비 본명은 ‘아간아(阿幹兒)’이다. ‘阿幹兒’는 바로 ‘阿干兒’이고 ‘小哥兒’라는 말과 같은데 반 의역 반 음역의 단어이다. 이와 같은 이름으로 또 하나의 예가 있다. 『북사』에 따르면 북제(北齊) 말년 안덕왕(安德王) 고연종(高延宗)이 진양(晉陽)에서 왕위에 올랐는데 그에게는 용명한 신하 화아우자(和阿于子)가 있었다는 기록이 나온다.⁶³ 아우자

62 『南齊書』卷57, 「魏虜傳」, 北京:中華書局標點本(1972), 996쪽.

63 『北史』卷52, 「齊宗室諸王傳下」, 1881~1882쪽.

(阿干子)는 마땅히 아간자(阿干子)가 되어야 맞다. ‘干’ 및 ‘干(간)’의 형태가 유사하여 잘못 기재된 것이다. 『자치통감(資治通鑑)』에는 이를 화아간자(和 阿干子)로 기록되어 있는데 참으로 옳게 쓴 것이다.⁶⁴ ‘阿干子’는 바로 ‘阿 干兒’이고 역시 반 의역 반 음역의 이름이다. 남자 아이에게 이러한 소 명(小名)을 지어 준 것은 선비 사회에서 친족 호칭으로 ‘阿干’이 이때까지 사용되었다는 것을 설명한다.

고몽골어의 aka/aga는 오래 전부터 돌궐어족으로 차입되었는데 중앙아시아의 돌궐민족을 거쳐 페르시아,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등 비돌궐어(非突厥語) 지역으로 전입되어 갔다. 오스만튀르크 제국 시대에는 심지어 서아시아, 북아프리카와 동부 유럽으로까지 전입되어 영예적인 직함으로서 관호로 사용되기도 하고 관칭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페르시아 카자르 왕조의 건립자인 아가 무함마드 샤는 바로 agha(즉 aga/aka)를 영예적인 칭호로 삼았다.⁶⁵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집트와 이란은 aga를 영예적인 직함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가족의 성씨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슬람교 시아파 제2대 교파인 이스마일의 제1대 분파인 니자리의 이맘(imam)이 세습한 직함은 바로 Aga Khan인데, 이 두 단어는 모두 알타이의 오래된 전통에서 기인한 것이다. 지금 파키스탄에는 Aga Khan으로 명명한 대학교가 있다. 1969년부터 1971년까지 재임하였던 파키스탄 전 대통령 헵해아·한(叶海亞·汗)의 전체 이름은 아가 무함마드 아야 칸인데 이 중 Agha는 바로 그의 세습적 영예 직함이다.⁶⁶

64 『資治通鑑』 卷172, 「陳宣帝太建八年」, 北京: 中華書局標點本(1956), 5363쪽.
 65 CL, Huart와 L. Lockhart가 편찬한 『伊斯蘭百科全書』(The *Encyclopaedia of Islam*)의 Agha Muhammad Shah 條를 참고하였다. I : 246b, CD-Rom edition, Leiden : Brill Academic Publishers(2003).

더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은 오스만튀르크 제국 시대에 ağa(輔音-g-는 이미 약화되고 발음을 안한다)로 호칭한 대량의 관직들이다. 오스만튀르크의 군사와 행정 직관 중에는 최고 등급이나 기층의 관리를 막론하고 ağa를 관칭으로 삼는 것이 아주 많다. 고급 관리 중에서 후궁(後宮, Harem)을 관리하는 대환관(大宦官)은 Kızlar Ağası(Ağası는 Ağa의 屬格 形式인데 앞의 명사 사이의 영속관계를 표시함)이라고 하거나 Darüssaade Ağası(Harem ağası라 부르기도 함)이라고 한다. 황궁을 관리하는 대환관은 Kapı Ağası이다. 기층의 관리 중에서 총장은 Köy Ağası이고, 시장관(市場官)은 Çarşı Ağası이며, 여관 책임자는 Han Ağası이다. 각급 군관의 관칭은 baş(머리라는 뜻)를 사용하지 않으면, ağa를 사용한다. 예컨대 제일 저명한 금위군(禁衛軍) 장관은 Yeniçeri Ağası이고 경무장 보병의 장관은 Azap Ağası이다. 기층 군관 중에서 천부장(千夫長, Binbaş)과 백부장(百夫長, Yüzbaş) 사이에 Kol Ağası(一翼之長)이라는 군관이 있다.⁶⁷ 오스만 제도의 영향을 깊이 받은 동유럽 지역에서도 aga를 관칭으로 삼은 뚜렷한 흔적이 있다. 루마니아에서도 한 종류의 법무관을 Aga로 부른다.

그러나 동시에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돌궐어 세계의 제일 서쪽에서도 ağa는 역시 ‘兄’의 원시적 어의를 보존하였다는 점이다. 예컨대 터키어의 ‘형(哥哥)’인 ağabey는 바로 ağa와 남자에 대한 존경어 bey로 구성된 복합어이다. 물론 aga가 가진 ‘웃어른(尊長)’의 파생 의미로 일부

66 파키스탄에서는 세습적 영예 직함 Agha를 사용할 때 이름의 뒤에 쓰고 앞에 쓰지 않는다. 현재 앞에 쓰는 형식은 영문의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67 오스만 군정제도와 관련된 지식을 필자는 우선 Halil İnalcık의 여러 저서, 특히 *The Ottoman Empire, The Classical Age 1300~1600*, London : Phoenix, 2000을 통해 배웠다. 이 기회를 빌려 감사를 드린다.

다른 의미를 파생시켜 낼 수 있다. 예를 들면 발칸 서부의 터키어와 투르크멘어에서 aga는 조부란 뜻이고 야쿠트어에서 aga는 아버지란 뜻이다.⁶⁸

필자의 좁은 지식범주 안에서 알타이 민족이 aka/akan이란 친족 호칭의 원시적 의미를 보존하는 동시에 정치명호, 특히 관칭으로 삼은 몇 가지 사례를 찾아냈다. 이러한 예들은 박학한 알타이 학자가 보기에 아무 가치도 없을 수 있다. 그들은 아주 쉽게 이보다 훨씬 많은 관련 예증을 열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목적은 이러한 자료들을 모두 찾는 것이 아니다. 일부 사례를 열거하며 부여와 고구려, 그 후의 신라가 동호에서 쓰인 친족 호칭으로 중요한 관칭을 삼았는데 사실은 동호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고 이 전통은 또한 내륙 아시아 정치문화의 일부 분이라고 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4. 맺음말

이 글에서 필자는 알타이 전통과 내륙 아시아 문화의 영향이란 각도에서 고구려 정치문화에서 명확히 찾아낼 수 있는 내륙 아시아와 관련된 관직을 고찰함으로써 고구려의 역사 전통과 알타이 민족 사이의 깊은 연원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필자의 구체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전국(戰國) 진한(秦漢) 즈음에 신

68 H. Bowen이 편찬한 『伊斯蘭百科全書』(*The Encyclopaedia of Islam*)의 agha 條를 참고하였다. I : 244b.

속히 발전한 동호(東胡) 정치체 안에서 친족 칭호인 aka/akan으로부터 기인된 정치명호가 발전해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물론 내륙 아시아 정치명호의 일반적 진화 상황에 대한 이해에 근거하면 우선 관호로, 점차 관칭으로 발전되었을 것이다. 동호의 영향을 깊이 받은 부여가 이 정치명호를 차입하였고, 그리고 이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 후에 발전한 고구려로 전달되었다. 고구려가 위진(魏晉)과 모용선비(北燕 馮氏를 포함)의 압박 아래 점차 한반도로 발전해 나갈 때 반도의 기타 민족 집단은 고구려의 정치제도 등 문화성과를 차입하기 시작하였다. 그 중 aka/akan 관칭의 전승에 중요한 실마리를 남긴 나라는 신라이다. 이러한 전달, 차입, 개조와 분화의 역사 과정에서 서면언어, 구두언어, 번역과 서면보고 등이 모두 원시적 정보의 유실 및 재기록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시기에 왜 이러한 진상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는지 그 이유를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고구려 형제 관직의 구체적 상황에 관하여 시종 정확히 밝히지 못했지만, 고구려를 연구하는 각 나라 학자들은 고구려 사회와 문화 발전의 내륙 아시아 연원을 홀시하지 않았다. 필자는 이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고구려 형제 관직의 내륙 아시아 연원」에 대한 토론

김현숙 (동북아역사재단)

뤄신(羅新) 선생의 발표문을 잘 읽어보았다. 발표자는 고구려 관계(官階)에 대한 사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남조계 사서와 북조계 사서에 나오는 고구려 관계의 차이를 파악, 남조계 사료에 나오는 가(加)와 북조계 사료에 나오는 형(兄)이 상호 동일한 것의 음역과 의역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가계(加系) 또는 형계(兄系)의 관직은 부여로부터 고구려로 전파되었으며, 그것은 고구려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다시 신라로 전파되어 신라의 손계(滄系) 관계를 형성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이러한 가(加)계 관등의 어원을 동호어(東胡語, 古蒙古語)의 aka/aga에서 찾았다.

발표자의 글은 형(加)계 관계의 어원이 중원 쪽이 아닌 알타이어계에서 왔다고 본다는 점에서 기존의 관련 연구와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관계의 발생 연원 혹은 발생 과정을 보는 시각에서 기존 연구 성과들과 차이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형(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다. 형은 단순히 형제의 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연장자, 혹은 가부장적 가족장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으며, 여기에서 비롯된 형제 관계는 곧 원시 씨족사

회에서 부족사회로, 부족사회에서 소국의 성립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여러 세력집단의 장을 하나의 정치체제 안에 서열에 따라 편제(編制)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았다. 다시 말해 기존 연구는 형(幁)계 관등이 고유의 친족 명칭에서 유래된 것으로, 부여와 고구려가 여러 정치세력을 결집하고 편제하여 국가를 성립하고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분화, 발전해간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발표자는 이와 달리 고구려의 가계 관계가 부여에서 기인하였지만 정치명호(政治名號)로서의 가(加)는 부여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고, 동호(東胡)로부터 받아들인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어휘의 전파만이 아닌 정치적 영향의 결과였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토론자는 고구려사 전공자이지만 관등 문제에 대해 깊이 연구해보지 않았다. 따라서 발표자의 광범위한 사료 섭렵과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토론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에 발표문을 읽으면서 가졌던 의문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고구려 형(幁)계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발표자의 연구 사이에서 발견되는 차이점은 자료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인식상의 차이라고 생각된다. 알타이어계에서 유래한 형(幁)계 관계가 부여와 고구려 자체의 성장·발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관계명(官階名)으로 성립했다고 보는 것과, 부여가 동호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정치명호로서의 가(加)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은 부여사와 고구려사를 보는 인식상에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발표자는 부여의 형성과 규모 및 영향으로 볼 때 부여의 정치체는 주로 동호의 자극과 영향을 받아 발전했으며, 동호의 일부 정치 전통이 부여에 들어왔고 가(加)가 그 중 한 가지라고 가정했다. 그렇지만 정작 동호에 akan으로 호칭하는 관직명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발표자의 가정은 동호로부터 연원을

찾을 수 있는 탁발선비가 이 관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동호가 이 전통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언어학적 유사성을 근거로 역사상을 추적해 들어가는 연구방식은 문헌 사료와 고고학적 자료가 부족한 고대사에서 유용한 측면이 있지만, 때로는 자의적인 해석을 유도할 우려가 많다. 더욱이 이러한 추적 과정에서 추론의 근거가 없는 경우 한 단계를 건너뛴 근거를 간접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결론을 정해놓고 추론해 들어간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

유사한 명칭의 관계(官階)를 가진다는 것은 정치적 영향력의 결과 한 나라의 관계가 다른 나라로 전파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같은 계통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언어에서 파생한 유사 관계를 공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발표자는 동호 관계의 부여로의 전파를 논함에 있어, 이 두 경우 가운데 어느 쪽이라고 보는지 궁금하다.

만약 전자 쪽으로 본다면, 이 경우에는 언어적 유사성에 대한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두 나라 간의 정치적 관계에 대한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 예컨대 고구려와 신라의 경우에는 두 나라의 역사적 관계(關係)를 통해 고구려 정치제도가 신라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다면 동호의 관계(官階)가 부여로 전파되었고 그것이 다시 고구려로 전파되었다고 보는 경우, 상호간 정치적 관계의 내용과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백춘강 싸움과 동북아 국제관계의 변화

김 현 구 (고려대학교 사학과)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
역사
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머리말

현재 세계는 유럽연합(EU) 등 지역적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한·중·일이 중심인 동북아에서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동북아가 지역적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 구조를 역사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역사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한다.¹

동북아의 역사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북아 각국이 연관된 사건들을 검토해 나가면서 보편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유력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640년대는 한·중·일이 뒤엉키면서 동북아가 격동하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백제에서는 의자왕이 641년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뒤 642년부터 신라에 대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선다. 고구려에서는 연개소문이 642년

1 菊池英男(1979), 「總說－研究史的的回顧と展望」, 『隋唐帝國と東アジア世界』, 汲古書院.

대당(對唐) 온건론자인 영류왕을 제거하고 대당강경론을 주도한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645년 당·신라 유학생이 중심이 되어 친백제적인 소가씨(蘇我氏)정권을 타도하고 친신라적인 개신(改新)정권을 창출한다. 한편 신라에서도 647년 김춘추가 비담(比曇)의 난을 평정하고 실권을 장악한 다음 백제·고구려에 대항하기 위해서 일본·당과의 유대를 강화해 나간다. 이런 640년대 동북아의 정치적인 변화가 신라·당 연합과 백제·일본·고구려 연합이 싸운 663년의 백촌강(白村江) 싸움으로 수렴되었다가 오늘날 한·중·일이 중심인 동북아 세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라·당·일본의 정립을 초래한다. 따라서 백촌강 싸움을 전후한 동북아 세계의 국제관계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동북아 세계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핵심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백촌강 싸움은 기본적으로 백제 부흥군의 요청으로 출병한 일본과 백제를 점령하고 있던 당의 싸움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백촌강 싸움의 성격에 대한 정설이 없는 상태다.

백촌강 싸움에 대한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일본 학계에서는 백제가 일본의 종속국이었음을 전제로 당이 중심이 된 대제국주의와 일본이 중심이 된 소제국주의가 부딪혔다는 이른바 고대제국주의 전쟁설이 통설로 되어 있다.² 반면 백제가 일본의 종속국이었음을 부정하는 한국 학계에서는 당시 야마토[大和] 정권의 지배층이 백제계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그들이 조국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출병했다는 이른바 조국부흥전쟁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³ 그러나 이들 주장의 전제가 되고 있는 백

2 石母田正(1971), 『日本の古代國家』, 岩波書店, 70쪽이 대표적이다. 石母설의 계승자로 鬼頭清明(1981), 『白村江』, 教育社, 129쪽; 遠山美都男(1997), 『白村江』, 講談社現代新書, 204쪽 등을 들 수 있다.

제가 일본의 종속국이었다거나 백제계가 아마토 정권의 수뇌부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확실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백촌강 싸움을 중심으로 신라·당의 연합과 백제·일본·고구려 연합이라는 백촌강 싸움의 구도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과 이 구도가 백촌강 싸움이 끝난 뒤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대외관계에서 각국의 지배층을 규제하고 있던 요인이 무엇이었는데를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당시 동북아 세계의 구조를 밝히고자 한다.⁴

2. 신라·당·일본 3국 연합체제의 성립

1) 신라의 고립과 대당 접근

백제는 수·당에 걸쳐 끊임없이 신라를 공격한다.⁵ 특히 의자왕은 641

3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林宗相(1974), 「七世紀中葉における百濟・倭の關係」, 『古代日本と朝鮮の基本問題』, 學生社를 필두로 변인석(1994), 『白村江戰爭과 百濟・倭 關係』, 한울아카데미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정효운(1995), 『古代 韓日 政治交渉史 研究』는 신라를 정복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설을 제시하고 있다.

4 이 글은 주로 김현구(1972), 「백촌강싸움 전야의 동아시아 정세」, 『사대논총』 21 ; 김현구(2004a), 「백촌강싸움과 일본의 대륙관계의 재개-당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대 한일관계의 현재적 의미』, 고려대학교 일본학센터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바탕으로 시각을 달리해서 작성되었다.

5 『삼국사기』에 의하면 641년 의자왕이 등장할 때까지 신라가 백제를 공격한 것은 605, 618년의 2회에 불과하다. 그러나 백제는 수대에는 602, 616년의 2회에 그치고 있으나 당대에 들어서서는 624, 627, 628, 632, 633, 636년 등 일방적인 공격을 가한다.

년 등극하자마자 신라와의 전쟁에 소극적이던 40여 명의 친야마토 정권파를 숙청하고,⁶ 이듬해부터 신라에 대해 대대적인 공세를 취하기 시작한다. 642년 7월에는 신라의 40여 성을 빼앗고 8월에는 대야성을 공격하여 김춘추의 사위인 성주 품석까지 살해한다.⁷

위기에 처한 신라에서는 김춘추가 642년 10월 고구려에 가서 원군을 요청한다. 그러나 고구려는 오히려 김춘추를 감금하고 신라가 이전에 공취한 죽령(竹嶺) 서북 땅의 반환을 요구하는 강경한 태도를 취한다.⁸ 더욱이 다음해 8월에는 백제와 고구려가 신라의 대당통로를 단절하기 위해 당항성을 공략한다.⁹ 한반도 내에서 백제와 고구려의 강경한 태도에 직면한 신라로서는 해외의 일본이나 당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게 되었다.

신라는 642년 백제의 대대적인 침입을 받을 때까지 10회에 걸쳐 당에 조공을 하거나 방물을 바치면서¹⁰ 때로는 입조하는 길을 고구려가 막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¹¹ 자제의 국학 입학을 청하는 등¹²의 방법으로 당에 접근해간다. 신라의 접근에 대해 당은 624년에는 진평왕¹³을, 635년에는 선덕왕¹⁴을 책봉함으로써 신라를 영향권 안에 묶어

6 『일본서기』 皇極 4년조.

7 『삼국사기』, 「백제본기」 의자왕 2년조.

8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

9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여기서는 정효운(1995), 앞의 책, 66쪽을 취했다.

10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는 621, 623, 625, 626, 629, 631, 633, 642, 627년 6월, 11월에 사신을 보내거나 방물을 바쳤다.

11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평왕 47년조.

12 『삼국사기』, 「신라본기」 선덕왕 9년조.

13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평왕 46년조.

14 『삼국사기』, 「신라본기」 선덕왕 4년조.

둔다.

한편 당은 일본의 견당유학생을 백제를 거쳐 귀국시키던 관례를 무시하고 623년 견당유학생 혜일(惠日)을 신라로 보내 신라가 송사로 하여금 귀국시키게 한다. 그리고 632년에는 고표인(高表仁)으로 하여금 1차 견당사로 파견되었던 혜일¹⁵과 함께 신라를 거쳐 도일하여 야마토 정권에 신라를 지원할 것을 요청하게 한다.¹⁶ 야마토 정권이 고표인의 요청을 거절함으로써 일·당관계가 단절된 뒤에도 당은 관례를 무시하고 귀국하는 일본의 견당유학생들을 신라로 보내 신라가 송사로 하여금 귀국시키도록 함으로써 야마토 정권이 친신라정책을 취하도록 무언의 압력을 계속한다.¹⁷ 따라서 당시 고구려와 대립하던 당이 고표인을 일본에 파견하는 632년 단계에서는 고구려를 배후에서 견제할 세력으로 백제와 신라 중 신라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¹⁸ 그 이유는 백제가 수에 고구려 원정을 권하면서도 수와 고구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오히려 고구려와 내통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거나 백제와 고구려가 같은 뿌리라는 인식 때문이 아니었는가 생각한다.¹⁹

15 『일본서기』 舒明 2년조.

16 김현구(1985), 『大和政權の對外關係研究』, 吉川弘文館, 340~348쪽 참조.

17 김현구(2004a), 앞의 책, 358쪽 참조.

18 김현구(2004b), 「多面外交の後退と蘇我氏の危機」, 앞의 책, 주)참조. 후술하는 것처럼 630년 돌궐의 명망에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631년부터 고구려에 대해 강경책을 취한 사실과도 무관치 않다고 생각한다.

19 『구당서』, 「동이전」은 고구려와 함께 백제를 ‘扶余之別宗’이라고 서술하고 있고, 『수서』는 백제를 ‘出自高句麗’라고 서술하고 있다.

2) 김춘추와 도일과 3국 연합체의 성립

7세기 전반 일본에서는 백제계의 소가씨가 야마토 정권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외관계에서 야마토 정권의 지배층을 규제하고 있던 요인은 선진문물의 도입 문제였다. 따라서 소가씨는 씨족적 성격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친백제정책을 표방하면서도 동북아 문화의 중심지였던 중국과 접하고 있는 고구려나 한반도의 대중통로를 장악한 신라와도 관계를 갖는 이른바 다면외교를 전개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이 백제를 통해 일본의 견당유학생들을 귀국시키던 관례를 깨고 신라로 보내자, 신라는 송사로 하여금 그들을 귀국시키게 함으로써 야마토 정권 내부에 당과 신라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친신라세력이 성장하도록 뒷받침하고 있었다.²⁰ 그 결과가 623년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신라를 거쳐서 귀국하여 당·신라와의 관계를 요구한 혜일²¹이나 혜일의 요구를 계기로 반백제·친신라정책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다나카 오미^{田中臣} 등의 등장으로 나타난다.²² 그러나 소가씨에게 친신라정책을 수용하는 것은 자신의 권력기반 상실을 의미하고, 친백제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지배층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소가씨는 야마토 정권 내에서 지도력을 상실할지도 모르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이런 때에 고표인이 도일하여 친신라정책을 요구하자, 소가씨는 친백제정책과 친신라정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되었다. 소가씨로서는 당장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표인의 요구를 거

20 김현구(2004a), 앞의 책, 354쪽 참조.

21 『일본서기』推古 31년조.

22 김현구(2004a), 앞의 책, 328~335쪽 참조.

절하고 친백제정책으로 회귀하지 않을 수 없었다.²³

따라서 일본에서는 지배층의 이익에 반하는 소가씨의 친백제정책으로의 회귀에 반대하는 당·신라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645년 소가씨 정권을 타도하고 친신라·친당정책을 표방하는 다이카 개신정권을 탄생시킨다. 개신정권은 신라·당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대륙관계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나니와(難波, 현 오사카)로 천도하는 한편, 646년 9월 당·신라 유학생으로 개신정권의 국박사인 다카무코노 구로마로(高向玄理)를 신라에 파견한다.²⁴ 다카무코노 구로마로는 647년 신라의 실력자인 김춘추를 대동하고 귀국하여 야마토 정권은 신라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신라는 야마토 정권에 선진문물을 제공하는 양국 간의 협력 체제를 창출한다.

그런데 일·당관계는 632년 고표인의 신라 지원 요청을 야마토 정권이 거절함으로써 단절된 상태였다. 따라서 648년 입당한 김춘추는 일본이 신라를 지원하기로 한 사실을 알리는 일본의 표(表)를 당에 전달함으로써 632년 이래 단절되었던 일·당관계를 회복시킨 주인공이다.²⁵ 그리고 당 태종과 백제와 고구려를 정토하기로 하고 그 정토가 성공하는 경우 백제의 옛 땅은 신라가, 고구려의 옛 땅은 당이 차지하기로 약속한다.²⁶ 따라서 김춘추가 입당하여 일본의 표를 당에 전달한

23 舒明朝(629~641)에 야마토 정권이 다면외교를 버리고 친백제정책으로 회귀한 것에 대해서는 김현구(2004a), 앞의 책, 354~359쪽 참조.

24 『일본서기』 大化 2년 9월조.

25 『구당서』, 「왜전」 貞觀 22년(648)조에 '又附新羅奉表, 以通起居'라는 기사가 보인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648년에 신라에서 입당한 사람은 김춘추이다. 따라서 김춘추가 양국관계를 중재했음을 알 수 있다.

26 『삼국사기』, 「신라본기」 선덕왕 12년(643)조에 따르면 신라사가 백제와 고구

648년 단계에서는 신라를 중심으로 일본과 당이 연합하는 이른바 3국 연합체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⁷

3. 백촌강 싸움 구도의 형성

1) 당의 고구려 원정

초기에는 서로 신중을 기하던 당과 고구려가 631년쯤부터 본격적인 대립국면에 들어간다. 당은 631년 대고구려전에서 사망한 수의 전사자들을 제사지내는 한편 고구려의 대수전쟁 전승탑이라고 할 수 있는 경관을 파괴하는 등 적대감을 노골화한다.²⁸ 당이 고구려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화하기 시작한 것은 630년 돌궐의 멸망을 계기로 이룩한 북방의

려의 침입을 알리고 구원을 호소하자 당 태종이 “謂使人曰 …… 百濟 國恃(特同書作負)海之險(險同書作險) 不修機械 …… 我以數十百船 載以甲卒 御枚泛海 直襲其地”라는 제안을 한다. 당시 신라와 당은 먼저 백제를 정토하고 이어서 고구려를 정토해야 한다는데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 11년조의 회고에는 “先王 貞觀二十二年 入朝 面奉太宗文皇帝恩勅 朕今伐高麗 非有他故 憐你新羅攝乎國 每被侵陵 靡有寧歲 山川土地 非我所貪 玉帛子女 是我所有 我平定兩國 平壤已南 百濟土地 竝乞你新羅 永爲安逸”이라며, 648년 구원을 청하기 위해서 입당한 김춘추와 당 태종 사이에 한반도의 분할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약속은 『구당서』 「百濟傳」의 도침과 복신이 유인궤에게 사자를 보내서 전한 “聞大唐與新羅約誓, 百濟人無問老少一切殺之, 然後以國付新羅”라는 말에서도 확인된다.

²⁷ 김현구(2004a), 앞의 책, 422~434쪽 참조.

²⁸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영류왕 14년조.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적대적인 것임은 이 직후부터 고구려가 천리장성의 축조에 착수한 사실로도 알 수 있다.

안정에서 오는 자신감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당은 고구려에 대한 적대감이 컸음에도 수의 고구려 원정으로 인한 관동제주의 피해가 아직 미회복 상태이고²⁹ 또한 고창이라는 서역의 장자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원정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³⁰ 고구려는 당의 적대적인 태도에 대응해 북방에 장성을 쌓는 등 대결 태세를 분명히 한다.³¹ 그런데 641년 당은 진대덕을 보내서 지리를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전쟁 준비에 들어가고,³² 조정에서도 고구려에 대한 정벌론이 등장하였다.³³ 그 전해에 서역의 고창을 멸망시킴으로써 고구려 원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된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한다.³⁴ 따라서 당은 643년 백제와 고구려가 대당통로를 차단하려 한다는 신라의 구원 요청³⁵과는 별도로 이미 고구려를 정벌할 결심을 굳히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642년 10월 연개소문이 왕을 시해하는 쿠데타를

29 山尾幸久(1982), 「遣唐使」,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 6, 學生社.

30 高昌이 멸망한 다음해인 641년부터 본격적으로 고구려 원정을 논의한 것으로 보아 고창이 당의 고구려 원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1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영류왕 14년(631)조에 의하면, 당이 수의 전사들을 제사지내고 대수전쟁의 전승담이라고 할 수 있는 경관을 파괴한 직후인 그해 2월부터 고구려도 백성들을 동원해서 동북의 부여성으로부터 서남의 발해에 이르기까지 천리에 걸친 장성을 쌓기 시작한다.

32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영류왕 24년(641)조에는 태자의 입조에 대한 답례 사로서 온 陳大德이 고구려의 허실을 정탐하고 간 사실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33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영류왕 24년조.

34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영류왕 24년조에 의하면, 고구려는 高昌 멸망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였다. 이는 거꾸로 고창 멸망이 당의 고구려 원정의 한 요인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35 『삼국사기』, 「신라본기」 선덕왕 12년조.

일으키자 당은 643년 6월부터 고구려 원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다.³⁶ 그리고 643년 9월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가 연합하여 신라를 공격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재차 구원을 요청하자³⁷ 이듬해(644년) 정월에 현장을 고구려에 보내 다시 백제와 함께 신라를 침공하면 명년에 고구려를 정벌하겠다는 경고를 발한다.³⁸ 그러나 연개소문은 이를 무시한다. 이에 따라 명분상으로도 더 이상 고구려 원정을 미룰 수 없게 되었다.³⁹ 645년 정월 태종이 고구려 원정에 즈음해서 사신들에게 “요동은 본래 중국 땅인데 수가 네 번이나 출동하였으나 취하지 못하였다. 연개소문이 왕을 죽인 것을 징치한다. 천하를 통일하고 오직 고구려만 남았다”⁴⁰고 한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구려 정벌의 이유는 고구려가 원래 중국의 땅이었다는 것과 주위를 모두 평정하고 고구려만 남았다는 데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당 태종은 644년 7월부터 정벌 준비를 한 뒤 11월 신라·백제·거란 등에 길을 나누어서 고구려를 공격하도록 함과 동시에 수륙양도로 대대적인 공격을 개시한다. 신라는 당의 요청에 따라 645년 5월 3만군을 출병시킨다.⁴¹ 그러나 백제는 군사를 출동시키지 않고 오히려 신라가 군사를 출동시킨 틈을 타서 신라를 공격함으로써⁴² 반당 친고구려

36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보장왕 2년 6월조에는 당 태종이 연개소문이 왕을 살해한 사실을 근거로 고구려 원정을 발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37 『삼국사기』, 「신라본기」 선덕왕 12년조.

38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보장왕 3년조.

39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보장왕 3년조에는 현장의 보고를 받고 고구려 정토를 결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40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보장왕 4년 3월조.

41 『삼국사기』, 「신라본기」 선덕여왕 13년조. 그러나 『구당서』, 「신라전」에는 신라가 5만군을 출동시킨 것으로 되어 있다.

색채를 분명히 한다.

승승장구하던 당 태종의 친정군은 645년 9월 안시성 싸움의 패배를 계기로 고구려 원정을 중단한다.⁴³ 그 뒤 당은 방침을 소모전으로 바꿔⁴⁴ 647년과 648년에 걸쳐 육로와 해로로 파상적인 공격을 감행한다. 그러나 파상적으로 전개되던 소모전도 649년 태종의 죽음과 고구려 원정을 중단하라는 태종의 유조로 중단된다.

2) 일본의 위기의식과 백제 · 일본 · 고구려 3국연대

다이카 개신정권(645~654)에서는 고토쿠천황[孝德天皇, 645~654]의 후계체제를 둘러싸고 649년쯤부터 고토쿠천황과 나카노오에황자[中大兄皇子, 후의 天智天皇, 662~671] 사이에 대립이 표면화된다. 후계체제를 둘러싼 대립은 외교노선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고토쿠천황이 아들 아리마황자[有間皇子]의 기반인 나니와에 신궁을 조영해 정착하려 하자⁴⁵ 나카노오에황자는 당의 고구려 원정이 성공하면 일본열도를 침입할 가능성이 크므로 내륙의 아스카[飛鳥]로 환도하여 대당 방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42 『삼국사기』, 「백제본기」 의자왕 5, 7, 8, 9년조에는 645년에 신라의 7개성을 취하고, 647년에 무산성을 공격하고, 648년에 신라 서변의 10여 성을 취하고, 649년에 또 다시 7개 성을 취한 것으로 되어 있다.

43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보장왕 3년 및 4년조.

44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보장왕 6년조에는 당이 소모전으로 방침을 바꾸는 과정이 소개되어 있다.

45 나니와 신궁 조영에 관한 첫 기사는 白雉 원년(650)조에 보이지만 645년 이래 행궁에 머물고 있었으므로 비공식적인 논의는 그 이전에 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논리로 반당·친백제정책을 주장하기 시작한다. 나카노오에황자는 649년 개신정권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좌대신 소가노쿠라노야마다노이 시카와마로[蘇我倉山田石川麻呂]와 우대신 아베노우치마로노오미[阿部内麻呂臣]를 제거하고 야마토 정권의 실권을 장악한다.⁴⁶

실권을 장악한 나카노오에황자는 651년 신라의 사신이 당의 복장을 하고 도일하자 신라와 당의 밀착을 비판하면서 쓰쿠시[筑紫]에서 그대로 돌려보낸다.⁴⁷ 그리고 653년에는 아스카로의 환도를 반대하는 고토쿠천황을 나니와에 남겨둔 채 백관들을 이끌고 아스카로 환도해버린다.⁴⁸

고토쿠천황은 사망하기 직전인 654년 2월, 3국 연합체제 출범의 일본 측 주인공인 다카무코노 구로마로[高向玄理]를 당에 파견하여 더 이상 신라를 지원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린다.⁴⁹ 그러나 당 고종은 오히려 다카무코노 구로마로에게 신라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던 약속의 이행을 촉구한다.⁵⁰ 고토쿠천황에 이어 등장한 사이메이[齊明]제제⁵¹(655~661)는 당의 요구를 거절하고⁵² 656년부터 당의 침공에 대비해 수도 아스카의 방위체제 구축에 나선다.⁵³

46 김현구(2004a), 앞의 책, 455쪽 참조.

47 『일본서기』 白雉 2년 是歲條.

48 『일본서기』 白雉 4년 是歲條.

49 『일본서기』 白雉 5년(654)조에는 단순히 高向玄理를 당에 파견한 사실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의 역할이 신라를 군사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었다는 점은 김현구(2004a), 앞의 책, 466쪽에 잘 설명되어 있다.

50 『구당서』, 「일본전」; 김현구(2004a), 앞의 책, 345쪽 참조.

51 645년 다이카개신으로 물러났던 皇極天皇(642~645)으로 中大兄皇子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52 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라를 지원하지 않고 당의 침공에 대비해서 아스카의 방위체제를 강화한 사실로도 알 수 있다.

53 『일본서기』 齊明 2년 是歲條의 “於田嶺, 冠以周 …… 起觀 …… 廻使水工穿

백제·고구려와 연대하여 신라·당에 대항하려는 사이메이천황이 등장하자 백제는 대규모의 사절단을 파견한다.⁵⁴ 일본은 즉각 사절을 파견하여 호응한다.⁵⁵ 고구려도 연달아 대규모의 사절을 파견하자⁵⁶ 일본은 고구려에 대해서도 격식을 갖춘 정중한 사절을 파견함으로써 답한다.⁵⁷ 당시 고구려는 연년 당의 침략을 받고 있었다.⁵⁸ 그리고 백제도 당의 위협하에 있었다.⁵⁹ 그럼에도 야마토 정권이 백제·고구려와의 관계 강화를 모색하고 있었다는 것은 양국과 손잡고 당에 대항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⁶⁰ 따라서 일본이 고종의 신라 지원 요청을 거절한 654년의 시점에서는 당·신라 연합과 백제·고구

…… 七萬 余矣”라는 내용은 아스카의 방위를 위한 것이다. 門脇禎二(1977), 『新版飛鳥』, 日本放送出版協會, 201쪽.

- 54 『일본서기』 齊明 원년 7월조 및 동년 是歲條에는 백제가 연달아 대규모의 사절단을 파견한 내용이 보인다.
- 55 백제의 접근에 호응해 야마토 정권도 사자를 파견한 내용이 『일본서기』 齊明 2, 3년조에 보인다.
- 56 고구려가 연달아 사절을 파견한 내용이 『일본서기』 齊明天皇 2년 8월, 5년 是歲條, 6년 청월조 등에 보인다.
- 57 『일본서기』 齊明 2년 9월조 참조. 일본이 고구려에 답사를 파견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지만 격식을 갖춘 사절을 파견한 것은 더욱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58 649년 태종의 유조에 의해서 중단되었던 당의 고구려 원정이 655년 2월에 재개되어 백제가 멸망하는 660년까지 연년 계속되었다. 김현구(1972), 앞의 글.
- 59 『삼국사기』, 「신라본기」 선덕왕 12년조에 의하면 643년 구원을 청하기 위해서 입당한 신라사에게 당 태종은 신라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3책이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 중에는 백제를 기습하는 방안도 있다.
- 60 백제 구원군이 당과의 대결을 앞두고 ‘日本救高麗軍將等’으로 ‘백제 구원군’이 아니라 ‘고구려 구원군’을 칭한 사실이나(『일본서기』 齊明 7년 是歲條) 백촌강 싸움을 석달 앞둔 663년 5월에 실제로 야마토 정권의 사자가 고구려를 방문하여 군사 문제를 상의하였다는 사실(『일본서기』 天智 2년 5월조)이 이를 잘 입증한다.

려·일본의 3국 연합이 부딪치는 백촌강 싸움의 구도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백제 멸망과 백촌강 싸움

당의 고구려 원정이 중단되고 일본에서 친백제적인 나카노오에황자가 실권을 장악하는 649년 시점에서 신라로서는 당밖에 기벌 곳이 없게 된다. 신라는 650년에는 태평송을 바치고,⁶¹ 651년에는 왕자 김인문을 숙위시키고,⁶² 652년에는 조공을 하고,⁶³ 653년에는 금충포를 바치는⁶⁴ 등 끊임없이 당에 접근한다.

그런데 고구려가 654년 10월 말갈과 함께 거란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한다.⁶⁵ 655년 정월에는 고구려가 백제·말갈과 함께 신라의 30여성을 공파한다. 신라의 김춘추는 즉각 당에 구원을 요청한다.⁶⁶ 당에 거란과 신라는 고구려를 정벌하기 위한 우호세력이었다. 따라서 고구려의 거란과 신라에 대한 공격은 당에 대한 도전이므로 655년 2월 고구려 원정을 재개한다. 당의 고구려 원정은 백제 공격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660년까지 연년 계속된다.⁶⁷

61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덕여왕 4년조.

62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덕여왕 5년조.

63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덕여왕 6년조.

64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덕여왕 7년조.

65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보장왕 13년조.

66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보장왕 14년조.

67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보장왕 14(655), 17, 18, 19년조에 당이 고구려를 공격하는 내용이 보인다.

그런데 고구려 공략이 여의치 않자 당은 660년 7월 돌연 방향을 바꿔 백제를 기습한다. 당의 백제 기습은 643년 9월 신라에 제시한 3책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던 방안 중 하나였다. 단지 이때에 와서 실행에 옮겨졌을 뿐이다. 백제 멸망 직후인 661년 4월부터 당의 고구려 침공이 재개된다.⁶⁸ 따라서 660년의 백제 공격은 고구려 공격의 일환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비성이 함락되고 의자왕(義慈王)이 항복함으로써 백제가 공식적으로 멸망한 것은 660년 7월이다.⁶⁹ 그리고 백제 부흥운동의 중심인물인 복신(福信)이 일본에 원군과 일본에 머물고 있던 왕자 풍장(豐璋)의 귀국을 청한 것은 10월이다.⁷⁰ 10월에 복신의 구원 요청을 받은 사이메이천황은 12월에 나니와궁에 행차하여 백제 구원을 위해 제반 무기를 준비하게 하고⁷¹ 다음해 정월 6일에 60이 넘는 노구를 이끌고 기타큐슈(北九州)의 쓰쿠시를 향해서 항해를 시작한다. 그리고 두 달 만인 3월 25일 쓰쿠시의 나노오쓰(娜大津)에 이르러 이하세(磐瀨) 행궁(行宮)에 자리를 잡는다. 그 사이 백제 구원을 위한 배를 만들게 하고⁷² 쓰쿠시로 항해하는 과정에서 곳곳에 들러 모병을 한다.⁷³ 그러나 출병을 준비하던 사이메

68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보장왕 20, 21년조.

69 『삼국사기』, 「신라본기」 무열왕 7년조.

70 『일본서기』 齊明 6년 10월조. 한편 9월조에는 백제의 達率(闕名), 沙彌覺從 등이 당에 백제의 君臣들이 포로로 잡혀 갔음을 알린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達率(闕名), 沙彌覺從 등은 공식적인 사자가 아니고 백제가 멸망하자 도망 나온 자들이다.

71 『일본서기』 齊明 6년 12월조.

72 『일본서기』 齊明 6년(660) 是歲조.

73 「備中國風土記」 逸文에는 齊明天皇과 동행한 中大兄皇子가 오노우미[大伯海]와 니키타쓰[熟田津] 사이에 있는 備中國下道郡邇磨郷 부근에서 군사를 모은

이천황이 7월 24일 급사한다. 사이메이천황의 상중임에도 8월에는 출병 계획이 발표되고 9월에는 우선 1차로 풍장과 함께 ‘별군’이 파견된다. 그러나 백제 부흥군 측 내부 사정으로 ‘본대(本隊)’의 파견은 663년 3월에야 이루어진다.

사이메이천황이 백제 부흥군의 요청을 받고 즉각 준비에 착수하고, 천황이 노구를 이끌고 직접 쓰쿠시로 가면서 군사를 모아 출병을 준비하고, 그의 상중에도 출병 계획이 발표되고 ‘별군’이 파견되는 등 일본이 백제 구원에 나서는 일련의 과정들은 일본에 백제 구원이 얼마나 긴박한 일이었는가를 잘 보여준다. 그런데 일본은 이전부터 당의 침략에 대비해서 방위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의 출병은 백제가 멸망하면 일본이 직접 당의 침공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백제 부흥군이 무너지기 전에 그들과 손잡고 당의 세력을 한반도 내에서 저지하려 했던 것이다.

일본의 백제 구원군은 백제 부흥군과 신라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백촌강 입구에서 663년 8월 27, 28일 이틀에 걸쳐 벌어진 싸움에서 손인사(孫仁師)가 이끄는 당군에 괴멸적인 패배를 당한다. 『일본서기』는 일본군의 규모를 2만 7000, 『삼국사기』는 백제를 구원하러 온 왜의 병선을 1000척, 『구당서』의 「유인궤전(劉仁軌傳)」은 백촌강에서 만난 왜선을 400척으로 각각 기록하고 있다. 9월 7일에는 백제 부흥운동의 거점인 주류성이 함락되고 24일에는 퇴각하는 일본군의 배를 타고 3000명 이상의 백제 지배층이 일본으로 망명한다.

것으로 되어 있다.

4. 동북아 국제관계의 변화

1) 일·당관계의 재개

백제를 평정한 당의 소정방(蘇定方)은 660년 9월 3일 귀국하면서 그의 낭장(郎將) 유인원(劉仁願)으로 하여금 사비성을 진수하게 했다. 본국에서는 곧바로 웅진에 도독부를 설치하고 왕문도(王文度)를 도독으로 보냈다. 그러나 9월 28일 그의 갑작스러운 병사로 웅진도독부 설치는 계획만으로 끝나고 만다.⁷⁴ 따라서 백제의 옛 땅에 대한 당의 지배는 661년 초 왕문도를 대신해서 다시 파견된 대방자사(帶方刺史) 유인궤(劉仁軌)와 백제 부흥운동군의 공격으로 사비성에 고립되어 있던 진수장 유인원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었다.⁷⁵

그런데 당은 664년 2월 백제 부흥군을 평정하고 귀국했던 유인원과 함께 의자왕의 아들인 부여융(夫餘隆)을 웅진도독에 임명하여 귀국시킨다.⁷⁶ 당 고종은 부여융을 웅진도독으로 부임시키면서 “귀국해서 여중

74 『구당서』 권199상, 「백제전」 顯慶 5년(660) 기사 및 『삼국사기』, 「신라본기」 무열왕 7년(660) 9월조 참조.

75 『구당서』 권199상, 「백제전」에는 “帶方州刺史劉仁軌, 代文度統衆”, 『同書』 권84, 「劉仁軌傳」에는 “詔仁軌, 檢校帶方州刺史, 代文度統衆” 등 劉仁軌가 王文度 대신 파견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구당서』, 「백제전」에는 “龍朔二年(661) 七月, 仁願, 仁軌等率留鎮之兵”으로 기록돼 劉仁軌가 661년 7월 이전에 백제에 도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76 『구당서』, 「백제전」에는 “劉仁軌及別師杜爽, 夫餘隆率水軍及糧船自熊津江往白江”이란 백촌강 싸움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夫餘隆이 귀국해서 663년 8월의 백촌강 싸움에 참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孫仁師가 劉仁軌 등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착한 것이 663년 5월쯤이다. 따라서 夫餘隆은 백촌강

(餘衆)을 무마하는 한편 신라와 화친하라”는 임무를 부여했다.⁷⁷ 그리고 『구당서』의 「백제전」에도 “乃授夫餘隆熊津都督，遣還本國，共新羅和親，以招輯其餘衆”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당시 당의 최대 과제는 고구려 정벌이었다. 따라서 “귀국해서 여중을 무마하라”는 부여용의 책무는 고구려 정토를 위해서 그 배후의 여중들을 무마하여 안정시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중들을 무마하여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을 지원하던 일본과의 관계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다.

백촌강 싸움 직후인 664년 5월 돌연 당은 적대관계에 있던 일본에 조산대부(朝散大夫) 곽무중(郭務衆) 등을 파견한다.⁷⁸ 당시 당과의 관계에서 일본의 지배층을 규제하고 있던 요인은 당의 침입 문제였다. 따라서 곽무중의 파견은 일본을 침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반면 일본이 당과의 관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당의 고구려 정벌을 위한 배후의 여중들을 무마하는 데 협력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선린국보기(善隣國寶記)」에는 일본이 곽무중을 입경도 시키지 않고 12월에 그냥 귀국시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⁷⁹ 그 이유는 곽무중 등이 천자의 ‘사인(使人)’이 아니고 백제진장(百濟鎭將) 유인원의 ‘사사(私使)’

싸움 직전인 663년 5월 孫仁師와 함께 귀국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夫餘隆이 664년 2월에 다시 왔음은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 4년(664) 2월조에서도 확인된다.

77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 5년(665) 8월조에는 “高宗詔扶餘隆 歸撫餘衆 及令與我和好……”라고 되어 있다.

78 『일본서기』 天智 3년 5월조.

79 「善隣國寶記」 권상에는 郭務衆이 4월에 내일했다가 9월에 1차 회답을 받고 12월에 정식 회답을 받은 뒤에 귀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5월에 내일해서 10월에 勅을 받고 12월에 귀국한 것처럼 되어 있는 『일본서기』, 「天智紀」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온 첩서(牒書)도 천자의 ‘서(書)’가 아니고 백제진장의 ‘사의(私意)’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⁸⁰ 그러나 곽무중이 웅진도독부에서 파견되었다고 해서 그의 도일 목적이 본국의 방침과 배치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다음해 9월 일본의 요구에 따라 다시 천자가 파견한 유덕고(劉德高)가 곽무중을 대동했기 때문이다.⁸¹ 그렇다면 곽무중이 웅진도독부에서 파견된 사신(私臣)이기 때문에 입경도 시키지 않고 돌려보냈다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곽무중의 도일은 일본을 침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측으로서는 백제진장의 사신에 불과한 곽무중이 일본의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일본이 다음해에 파견하는 천자의 사신은 받아들이면서 곽무중을 진장(鎭將)의 사신이라고 돌려보낸 원인은 여기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당은 고구려 원정을 앞두고 그 배후의 여중들을 무마하는 데 일본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천자의 사자를 보내 천자의 ‘서’로 보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당은 665년 9월 본국에서 곽무중을 대신해 유덕고를 파견한다. 일본은 유덕고의 귀국에 즈음해 소금(小鎬) 모리키미 오이하(守君大石) 등을 5차 견당사로 파견한다. 그런데 667년 11월 5차 견당사 모리키미 오이하의 귀국에 즈음해 이번에는 당이 그들의 송사로서 웅진도독부의 사마법충(司馬法聰)을 파견하고, 일본도 다시 이키노 하카토코(伊吉博德)를 그

80 「善隣國寶記」에 “非是天子使人，百濟鎭將私使”와 “又無天子書，唯是總管使，乃爲執事牒。牒是私意”라는 내용이 보인다.

81 『일본서기』天智 4년 9월조.

의 송사로 파견한다.⁸² 이로써 당과 적대관계에 있는 양국관계가 완전히 회복된다. 일본은 당의 고구려 정벌을 위해 배후의 여중들을 무마하는데 협력하고 당은 일본의 안전을 보장한 셈이다.

2) 일본의 이중성

일본은 663년 8월 백촌강 싸움에서 패배한 직후부터 군의 정비나⁸³ 국가적 전투력을 보강한다.⁸⁴ 한편 대대적인 방어시설의 구축에도 착수하여 664년부터 지속적으로 축성을 한다.

664년에는 대륙을 향한 최전선에 해당되는 쓰시마[對馬島]와 이키섬[壹岐島]에 사키모리[防]와 스스미[烽]를 두고,⁸⁵ 대륙에 대한 관문에 해당되는 쓰쿠시에는 미즈키[水城]를 만든다.⁸⁶ 다음해 8월에는 세토[瀬戸] 내해(內海)로 진입하는 입구에 해당되는 나가토국[長門國]의 성⁸⁷과 쓰쿠시국[筑紫國]에 오오노구[大野]와 다루키[榎]의 2성을 쌓는다.⁸⁸ 백촌강 싸움 직후

82 양국 사자들의 왕래에 대해서는 『일본서기』 天智 4, 5년조 참조.

83 예를 들면 『일본서기』 天智 4년(665) 10월조에 ‘大關於菟道’라는 記事가 보이는데, 이는 열병을 했다는 것으로 일종의 군사훈련으로 보아도 무방하리라고 생각된다. 日本古典文學大系, 『日本書紀』 下(364頁 頭註 6).

84 山尾幸久(1989), 『古代の日朝關係』, 塙書房, 428頁에 의하면 『일본서기』 天智 3년 2월조에 보이는 ‘甲子の 정책’은 국가의 전투력을 보강한 정책이다.

85 『일본서기』 天智 3년 是歲조에는 “於對馬島・壹岐島・筑紫國等, 置防與烽, 又於筑紫, 築大堤貯水. 名曰水城”이라고 되어 있다.

86 日本古典文學大系, 『일본서기』 下(362頁 頭註 16)에 의하면 水城은 筑紫大宰府의 방위를 위한 시설들이다.

87 日本古典文學大系, 『일본서기』 下(363頁 頭註 27)에 의하면 이때에 쌓은 성은 下關海峽에 임하는 곳으로 下關市 豊浦町の 茶白山說과 唐樞山說 등이 있다.

인 664년과 665년에 걸쳐 만들어진 방어시설들이 대륙에서 세토 내해에 들어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67년 세토 내해를 장악하는 요충에 자리 잡고 있는 사누키국[讃岐國]에는 야시마성[屋島城],⁸⁹ 나니와[難波]에 상륙한 뒤 야마토로 넘어가는 고개에 자리 잡고 있는 야마토국[倭國]에는 다카야스성[高安城],⁹⁰ 쓰시마국[對馬國]에는 나카타성[金田城]을 쌓는다.⁹¹ 이들은 세토 내해에서 야마토에 들어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는 요충에 만들어진 것들임을 알 수 있다.⁹²

그런데 당시 당에서는 백제에 웅진도독부,⁹³ 신라에 계림도독부⁹⁴를 둔 다음 고구려에 대한 침공을 계속함으로써 한반도 전체를 직접 지배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진행시키고 있었다. 실제로 당이 일본열도를 침략하려 한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하였다.⁹⁵ 따라서 일·당관계가 재개되

88 『일본서기』天智 4년 8월是條.

89 日本古典文學大系, 『日本書紀』下(367頁 頭注 25)에 의하면 屋島城의 유적지는 香川縣 高松市 屋島로 瀬戸 内海를 장악할 수 있는 요충이다.

90 日本古典文學大系, 『일본서기』下(367頁 頭注 24)에 의하면 奈良縣 生駒郡과 大阪府 八尾市の 경계를 이루는 高安山에 쌓은 성으로 동서남북 각 2km에 가까운 산간을 점하고 있다.

91 『일본서기』天智 6년 11월조에는 “是月, 築倭國高安城·讚古國山田郡屋島城·對馬國金田城”이라고 되어 있다.

92 당시의 전반적인 방어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는 鈴木靖民(1992), 「七世紀東アジ아의爭亂と變革」, 『アジアからみた古代日本』, 角川書店, 291쪽이 자세하다.

93 『삼국사기』, 「신라본기」 무열왕 7년조 참조.

94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 3년(663)조에는 “夏四月 大唐以我國爲鷄林大都督府 以王爲鷄林州大都督”이라고 되어 있다.

95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 11년조의 회고에는 “至總章元年(668 又通消息云 國家修理船 外詔征伐倭國 其實欲打新羅 百姓聞之 驚懼不安”이라는 기록이 보인다. 즉 대륙에서는 당이 왜를 정벌하려 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다. 이런 사실은 『일본서기』持統 4년 10월조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있다고는 하지만 당에 대한 일본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될 수는 없었고
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일본이 구축하고 있던 일련의 방위체제는 당의
침략에 대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 대당 방위체제 구축에 여념이 없던 666년 정월 고구려에서
전부능루(前部能婁) 등이 도일한다.⁹⁶ 이들은 6월에 귀국하는데⁹⁷ 곧바로
10월에 다시 고구려에서 신을상엄추(臣乙相奄鄒) 등을 2차로 파견한다.⁹⁸
그리고 668년 7월에 고구려는 다시 3차사를 파견한다.⁹⁹ 특히 3차사의
도일은 평양성이 함락되기 2개월 전이다.¹⁰⁰ 따라서 고구려사의 도일
목적은 원군을 청하기 위한 것을 제외하고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생각
된다.¹⁰¹

그러나 일본이 고구려에 원군을 제공한 흔적은 없다. 당시 일본은
663년 백촌강 싸움에서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667년 내륙 오오미(近江)
로 천도하여 고구려를 지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그러나 일본이
잇단 고구려사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만
약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면 고구려가 잇달아 사신을 파견했을 리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은 표면적으로는 당과 국교를 재개했지만 실제로
당의 침입에 대비해 고구려와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96 『일본서기』 天智 5년, 정월조에는 “高麗遣前部能婁等進調”라고 되어 있다.

97 『일본서기』 天智 5년 6월조.

98 『일본서기』 天智 5년 10월조에는 “高麗遣臣乙相奄鄒等進調. 〈大使臣乙相奄鄒·副使達相遁·二位玄武若光等〉”이라고 되어 있다.

99 『일본서기』 天智 7년조.

100 『구당서』 권5, 「高宗本紀」 總章원년(668)조에는 9월 13일 평양성을 함락시
킨 것으로 돼 있다.

101 鈴木靖民(1968), 「百濟救援の役後の百濟及び高句麗の使について」, 『日本歴史』 241號도 이들의 일본 방문이 구원을 청하기 위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3) 동북아 세계의 정립

백제를 평정한 당은 곧바로 웅진에 도독부를 설치하고 왕문도를 도독으로 보냈다. 그러나 9월 왕문도가 급사함으로써 웅진도독부 설치의 계획만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당 고종은 664년 2월 부여웅을 웅진도독으로 부임시킨다. 그리고 664년 2월 유인원이 주관하여 반강제적으로 신라의 김인문(金仁問)으로 하여금 백제의 부여웅과 ‘백제 고토(故土)의 유지’를 맹서하는 회맹을 하게 했다.¹⁰² 옛 백제 땅에 대한 직접 지배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한편 663년 4월에는 신라에도 계림도독부를 설치한다. 그리고 668년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에도 안동도호부를 설치함으로써 한반도를 직접 지배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그런데 당 태종은 648년 중국을 방문한 김춘추에게 “백제와 고구려를 평정하면 평양 이남, 백제의 토지는 다 신라에 준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¹⁰³ 따라서 한반도를 직접 지배하려는 당의 기도에 대해 신라가 반발

102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 11년조의 회고에는 “至麟德元年(664) 復降嚴勅 責不盟誓 卽遣人於熊嶺 築壇 共相盟會 仍於盟處 遂爲兩界 盟會之事 雖非所願 不敢違勅”이란 기록이 보인다. 實際로 唐의 劉仁願과 百濟의 夫餘隆과 新羅의 金仁問 사이에서 ‘百濟 故土의 維持’를 盟誓한 664년 2월의 회맹이 신라의 반대 속에서 당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103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 11년조의 회고에는 “大王報書云 先王 貞觀二十二年 入朝 面奉太宗文皇帝恩勅 朕今伐高麗 非有他故 …… 我平定兩國 平壤已南 百濟土地 竝乞你新羅 永爲安逸”이라고 되어 있다. 이 내용은 道琛과 福信이 使者를 劉仁軌에게 보내서 “聞大唐與新羅約誓, 百濟人無問老少一切殺之, 然後以國付新羅”라고 전하는 『구당서』, 「百濟傳」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하지 않을 리 없었다.¹⁰⁴

고구려가 멸망한 이듬해인 669년부터는 당의 한반도 지배를 저지하려는 신라와 당 사이의 대립이 표면화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670년부터는 직접적인 싸움이 시작된다. 신라는 670년 7월부터 백제의 고지를 공격하기 시작하여¹⁰⁵ 671년 6월에서 8월 사이에 당의 근거지인 웅진과 사비를 공취함으로써¹⁰⁶ 당과 전면적인 싸움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고구려가 멸망하기 이전부터 이미 신라는 당이 약속과 달리 한반도를 직접 지배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신라는 당의 침입을 걱정하고 있었다.¹⁰⁷

당시 일본도 표면적으로는 당과 국교를 재개했지만 실제로는 당의 침입에 대비해 방위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실 여부를 떠나서 당이 일본을 정벌하려 한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었다.¹⁰⁸ 따라서 일본은 당의 침입을 걱정하고 있는 신라와 같은 입장이었다. 그러나 당과 국교를 재개한 일본으로서는 백촌강에서 싸운 신라에 먼저 손을 내밀

104 후일 신라가 백제의 옛 땅을 당으로부터 무력으로 빼앗은 사실로도 당시 신라가 당이 백제의 옛 땅을 直接 지배하려는 데 반대했음을 알 수 있다.

105 『삼국사기』 문무왕 10년조 참조.

106 『삼국사기』 문무왕 11년 8월조에는 671년 6월에서 8월까지 사비성을 점령한 다음 소부리주를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다.

107 『삼국사기』 문무왕 11년조의 회고에는 “至總章元年 又通消息云 國家修理船艘 外託征伐倭國 其實欲打新羅 百姓聞之 驚懼不安”으로 되어 있다. 이를 통해 신라가 당의 침입을 걱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은 『持統紀』 4년 10월조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總章元年是 668년이지만 山尾幸久(1989), 앞의 책, 433쪽에 의하면 實際는 669년이라는 것이다.

108 신라가 당의 침입을 걱정하고 있던 점으로 보아서는 당시 ‘羅唐’ 연합군의 내공이 예상됐다는 酒寄雅志(1979), 「七·八世紀の大宰府—對外關係を中心に」, 『國學院雜誌』 80-11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고구려 멸망 직전인 668년 9월 12일에 신라가 돌연 김동엄(金東嚴)을 일본에 파견한다.¹⁰⁹ 김동엄의 도일은 평양성 함락을 목전에 둔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신라가 663년 일본과 백촌강에서 싸운 지 5년 만의 일이다. 따라서 당과의 대결을 앞둔 신라가 김동엄을 파견한 것은 일본과 손잡고 당에 대항할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본은 김동엄의 귀국에 즈음해 신라왕에게 ‘견50필(絹五十四)·면500근(綿五百斤)·위100매(韋一百枚)’를 전한다.¹¹⁰ 그리고 일본의 실력자인 나카도미노 가마타리[中臣鎌足]도 개인적으로 신라의 실력자인 김유신과 신라왕에게 따로 배 한 척씩을 선물하였다.¹¹¹ 그런데 신라를 번국으로 기록하고 있는 『일본서기』에 신라왕에게 공식적인 선물을 전하고, 일본의 실력자가 신라의 실력자와 왕에게 따로 선물을 했다는 기록을 남긴 것은 전무후무한 파격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라와는 오랫동안 적대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이 김동엄의 귀국에 즈음해 취한 일련의 조치는 일본과 손잡고 당에 대항하자는 신라 측의 제의를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된다. 일본이 신라와 손잡을 의사를 분명히 했다는 것은 김동엄의 귀국에 즈음해 답사로서 소산하(小山下) 미치모리노오미[道守] 마로[麻呂] 등을 신라에 파견한 사실로도 입증된다.¹¹²

109 『일본서기』 天智 7년 11월조. 고구려의 멸망을 『구당서』, 「高宗紀」는 9월 13일로 기록하고 있으나 『일본서기』나 『續日本記』 神龜 4년 12월조는 10월로 기록하고 있다.

110 『일본서기』 天智 7년 11월조.

111 『일본서기』 天智 7년 9월조

112 『일본서기』 天智 11월조.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해인 669년부터 당이 한반도를 직접 지배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신라와 당 사이에 대립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여 670년부터는 직접적인 싸움이 시작된다.¹¹³ 신라가 671년 6월에서 8월 사이에 당의 근거지인 웅진과 사비를 공취함으로써¹¹⁴ 당과 전면적인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당이 웅진과 사비를 둘러싸고 신라와 공방을 벌이던 671년에 웅진도독부 측에서 전후 4차례에 걸쳐 일본에 사신을 파견한다.¹¹⁵ 한편 신라 쪽에서도 3차례나 사신을 파견하였다.¹¹⁶ 백제의 옛 땅 웅진과 사비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던 신라와 당이 일본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치열한 외교전을 벌인 것이다.

그런데 웅진도독부 측에서 최후로 네 번째 도일한 인물은 664년 파견되어 백제간 싸움으로 단절되었던 당과 일본 사이의 현안을 해결하는 계기를 만들었던 곽무종이다. 2000인이나 대동한 곽무종은 3월에 서함(書函)과 신물(信物)을 바치고 5월에 귀국하고,¹¹⁷ 일본은 ‘갑주(甲冑) 궁

113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 10년(670)조에는 3월에 신라의 사찬설오유와 고구려 延武가 각각 1만을 거느리고 출병하여 4월에 말갈병을 격파한 다음 당과 대치하는 기사가 보인다.

114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 11년 8월조.

115 당 측에서는 1월에 李守眞 등, 2월에 臺久用善 등, 6월에 羿眞子 등, 그리고 네 번째로 11월에는 곽무종이 2000여명을 데리고 도일하고 있다.

116 『일본서기』 天智 10년조에는 1월에 高麗가 보낸 上部大相可婁 등, 6월에 調使 그리고 10월에 金萬物 등이 도일한 것으로 되어 있다. 1월에 도일한 고려사는 당시 신라가 고구려의 유민과 손을 잡고 당과 대결하고 있었으므로 신라가 파견한 것으로 생각된다.

117 郭武棕이 일본을 방문했다가 귀국할 때까지의 자세한 일정은 張洋一(1991, 10), 「壬申의 亂과 九州」, 『地方史研究』 41-5 참조. 『일본서기』 天智 8년 是歲조에도 “又大唐遣郭務棕等二千餘人”이라는 郭務棕의 來日 記事가 보인다. 그러나 池内宏(1960), 「百濟滅亡後の動亂及び唐·羅·日三國の關係」, 『滿鮮史研究』 上世 第二冊, 吉川弘文館, 210쪽은 天智 8년의 내일 월일이 불명

시(弓矢)’ 등 군수품만 제공하였다.¹¹⁸ 광무종이 도일하기 직전 그들의 근거지인 웅진과 사비가 신라의 수중에 들어갔고 신라도 이미 일본에 세차례나 원군을 청하는 사자를 파견한 바 있다. 따라서 광무종이 원군이 아닌 단순히 군수물자만을 얻기 위해 도일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¹¹⁹ 그렇다면 일본이 군수물자만을 제공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당의 요청을 거절한 셈이라고 생각된다.¹²⁰ 광무종이 귀국한 후 당과 일본 사이에 30년이나 국교가 단절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잘 입증한다.

한편 당이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수한 것은 677년이다. 그 기간에 일본은 신라에 668, 670, 675, 676년 사신을 파견한다. 신라도 668, 669, 671, 672, 673년 등 거의 매년 일본에 사신을 파견한다. 이는 신라와 당이 싸우는 기간에 일본이 신라를 직접 지원할 수는 없었지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반면 일본과 당 사이에는 광무종의 귀국 후 30년이 지난 701년에야 교류가 재개된다.¹²¹ 일본이 한

한데다 내용도 부대 기사 없이 너무 간단하고, 광무종을 당의 사자로 한 점 등으로 보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118 『일본서기』 天智 원년 5월조.

119 이런 면에서는 森克己(1955), 『遣唐使』, 至文堂, 22쪽에 나오는, 日本을 회유하고 위협하기 위해서라는 說도 성립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120 이런 면에서 결론은 다르지만 1차로 원군을 요청하는 國書を 보냈다가 거절당하고 군수물자만 받게 됐다는 直木孝次郎(1980), 「近江朝における日唐關係の一考察」, 『末永先生米壽記念獻呈論文集』, 末永先生米壽記念會의 견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한편 지금까지의 중요한 설로는 池內宏(1955), 앞의 글, 212쪽의 百濟難民 輸送說, 森克己, 『遣唐使』, 至文堂, 22頁의 威壓·懷柔說, 鈴木治(1978), 『白村江』, 學生社의 모략부대설, 松田好弘, 「天智朝の外交につえてー壬申の亂との關聯をめぐって」, 『立命館大學』 415·416·417 합본; 直木孝次郎(1980), 앞의 글의 포로송환설 등이 있다. 이들 주장에 대한 비판은 直木孝次郎(1980), 위의 글 참조.

121 671년 그들이 귀국한 뒤에는 701년에야 견당사가 파견된다. 그 사이에 당의

반도를 직접 지배하려는 당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신라와 손을 잡은 계기가 668년 김동업의 도일과 671년 광무종의 원군 요청을 거절한 데 있음을 잘 보여준다.

5. 맺음말

663년 백촌강 싸움을 전후한 동북아 정세는 당과 고구려의 대립을 축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대륙에서는 당이 중국을 통일한 후 주위의 거란⁽⁶³⁰⁾, 고창⁽⁶⁴¹⁾ 등을 정복하고 최후로 동방의 강자 고구려 정벌을 기도하고 있었다. 한반도에서는 고구려와 백제가 연합하여 신라를 압박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고립된 신라는 해외로 눈을 돌려 당·일본에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당은 배후에서 고구려를 견제할 세력으로 백제와 신라 중 신라를 선택한다. 백제는 신뢰하기 어렵고 고구려와 뿌리가 같다는 생각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따라서 당이 신라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고표인을 일본에 파견하는 632년에는 대륙에 당·신라와 고구려·백제라는 대립구도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일본의 정세는 2전 3전된다. 6세기 전반 야마토 정권에서는 대외관계에서 선진문물의 도입 문제가 지배층을 규제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야마토 정권에서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소가씨는 백제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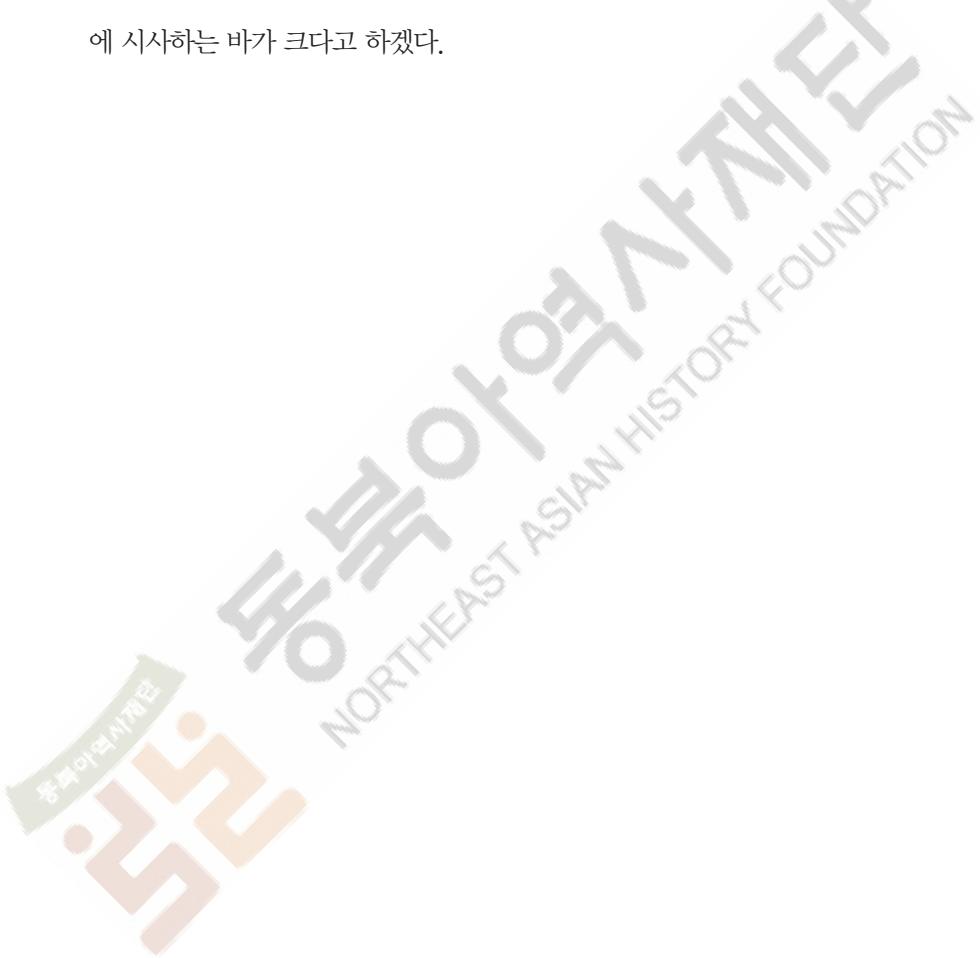
사자가 방일한 일도 없다. 광무종의 귀국 이후 30년이나 양국 국교가 단절된 것이다.

는 씨족적 특성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친백제정책을 표방하면서도 동북아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접하고 있는 고구려나 한반도의 대중통로를 장악하고 있는 신라 등과도 관계를 갖는 이른바 다면의 교를 전개하고 있었다.

그런데 632년 당이 파견한 고표인이 신라 지원을 요청하자 소가씨로서는 친신라정책을 취할 것인가, 친백제정책을 취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게 된다. 그러나 당장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였던 소가씨로서는 지배층의 이해에 반해 고표인의 요청을 거절하고 친백제정책으로 회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소가씨가 지배층의 이해에 반해 친백제정책으로 회귀하자 645년 당·신라 유학생들이 소가씨 정권을 타도하고 친신라적인 개신정권을 출범시킨다. 그 결과 동북아에는 신라·일본·당 3국 연합체가 등장하여 신라·일본·당과 고구려·백제가 대립되는 구도가 형성된다.

그러나 당의 고구려 원정이 진행되는 동안 야마토 정권에서는 후계 체제를 둘러싼 권력투쟁이 외교노선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나가노오에 황자는 당이 한반도를 장악하면 일본열도까지 침공당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오히려 백제·고구려와 손잡고 당의 세력을 한반도에서 저지해야 한다는 일본열도위기론을 배경으로 신라·당과 연합하고 있던 고토쿠 체제에 대항하여 실권을 장악한다. 그 결과 동북아에서 기존의 신라·일본·당이라는 3국 연합체제가 붕괴되고 백제·일본·고구려와 신라·당이 대립하는 이른바 백촌강 싸움의 구도가 확정되었다. 그런데 백촌강 싸움 이후 당이 한반도를 직접 지배하려 하자 이번에는 신라가 일본과 연대하여 당을 한반도에서 구축한다. 일본도 당이 한반도를 직접 지배하게 되면 일본열도까지 침공당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가지

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오늘날 한·중·일이 중심인 동북아 세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라·당·일본이 정립하게 된다. 당이 한반도를 직접 지배하려 하자 신라가 백촌강에서 싸웠던 일본과 손잡고 당을 한반도에서 구축했다는 것은 임진왜란 때 왜가 한반도에 침입하자 조선이 명과 손잡고 왜를 한반도에서 구축한 사실과 함께 동북아 세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백촌강 싸움과 동북아 국제관계의 변화」에 대한 토론

송청유 (베이징대학)

1. 연구 의의와 가치

매우 큰 흥미를 갖고, 김현구 교수의 「백촌강 싸움과 동북아 국제관계의 변화」를 배독(拜讀)하였다. 십 몇 년 전 베이징대학 역사학계에 동북아사(東北亞史)를 개설하며 일찍이 동북아 국제관계의 변화 발전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7세기 동북아 국제관계의 구조 형성이 한·중·일 3국 관계의 가이드라인을 확립하는 분수령이라고 간주했으며, 이러한 기초에서 더 나아가 ‘한·중·일 3국 삼족정립론(三足鼎立論)’의 몇가지 기본적 관점을 형성하였다. 이 관점으로 3개 항을 강조하였다. ① 대륙국가는 열도국가와 함께 반도국가의 영토주권 보유에 대해 분수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지 않고 반도국가는 자립자강하는 것은 한·중·일 3각 구조의 안정을 유지시키는 핵심적 요인이다. ② 중·일관계의 교류가 좋고 나쁨은 중·일 양국 관계에 의해 결정될 뿐 아니라 중·일 쌍방이 한반도 국가에 대해 취하는 정책 방침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③ 한·중·일 3각 구조 중 어느 일방, 한반도 일변에서 격변이 일어나 총체 구조의 균형이 깨지면, 그 기세는 반드시 전

체 국면의 흔들림 또는 전쟁을 야기한다.¹

이상의 관점은 김현구 교수의 관점과 거의 같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김 교수의 논문은 “신라·당조(唐朝)·일본이 정립하던 구조를 오늘날의 한·중·일이 정립하는 동북아 세계 구조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백촌강 전투 전후의 동북아 세계 관계의 변화를 이해하면 동북아 세계 구조의 핵심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고 서술한다. 분명히 백제와 고구려의 연이은 멸망으로 700년간 삼국이 해동(海東)에서 병립하며 피차 혹은 적과 동지로서 오랜 시기 혼전하던 국면은 끝났다. 이와 동시에 당조와 일본이 각각 동맹을 선택하여 한반도의 일에 개입하던 국면도 끝났다. 동북아는 이전에 없던 큰 변화의 국면에 처하여, 전쟁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를 건립하는 중요한 시기로 들어갔다. 신라·당·일본은 삼국병립으로 동북아 삼국정립이란 새로운 구조의 주요한 주역이 되었다. 이것이 그 첫째이다.

둘째, 김 교수의 논문은 신라·당·일본 삼국이 연맹으로부터 분열되고 또한 백제·일본·고구려 삼국연맹이 형성되는 문제 등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740년대로부터 770년대까지 동북아 국제구조가 크게 변화하는 과정을 논증하였다. 논술 과정 중에 김 교수는 일본이란 요인의 독특한 작용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관점은 논문 전체에서 일관됨으로써 이 논문의 현저한 하나의 특색이 되었다. 이러한 생동감이 풍부한 역사 파악은 새로운 견해와 계발을 가능하게 해준다.

셋째, 현실에 근거하여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구 입장이다. 김 교수는 서문 부분에서 일본 학자의 “현재 세계는 유럽연합 등 지역협력의 방

1 宋成有(2002), 『東北亞傳統國際體系的變遷』, 台北中研院近代史所, 50~51쪽.

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한·중·일이 중심인 동북아도 예외가 아니다. 동북아 지역협력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선 무엇보다도 그 구조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과거의 역사는 미래를 비추어보는 거울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필요한 것이다”²라는 관점을 인용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김 교수는 “신라·당조·일본이 정립하던 구조가 오늘의 한·중·일이 정립하는 동북아 세계 구조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백촌강 전투 전후의 동북아 세계 관계의 변화를 이해하면 동북아 세계 구조의 핵심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김 교수가 동북아 세계 구조를 연구하는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는 매우 가치가 깊다. 이 논문의 취지는 바로 여기에 있다.

2. 토론할 만한 몇 가지 문제

1) 서술의 사료 근거 문제

서문 세 번째 단락의 “백제의 의자왕은 641년에 정변을 일으켜 실권을 장악하였다”를 예로 들 수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 『백제본기(百濟本紀)』 의자왕 원년조의 기재에 의하면, 왕위는 순조롭게 계승되었다. 정변의 사료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제1장 제1 부분의 두 번째 단락은 642년 보장왕(寶藏王)이 아닌 천개소문(泉蓋蘇文)이 신라 사절인 김춘추(金春秋)를 구금하고 죽령(竹嶺) 이서(以西)의

2 菊池英男(1979), 「總說－研究史的回顧與展望」, 『隋唐帝國與東亞世界』, 汲古書院.

실지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제기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선덕왕 11년조의 기재에 근거하면, 김춘추와 대화하고 또 “별관에 가두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은 천개소문이 아닌 보장왕이다. 천개소문이 김춘추를 구금했다는 관련 서술은 새로운 사료의 발견을 근거로 한 것인가?

네 번째 단락은 632년 당의 사신 고표인(高表仁)이 일본에 가서 “야마토 [大和] 정권에 신라를 구원해달라고 청구했고, 야마토 조정에 의해 거절당함으로써 당과 일본의 관계가 중단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구당서(舊唐書)』, 「왜전(倭傳)」의 “정관(貞觀) 5년에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태종이 그 길이 매우 멀기에 가엾게 여기고, 해당 관청에 칙서를 내려 해마다 조공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 신주자사(新州刺史) 고표인을 파견하여 그들을 위무하게 하였다. 표인이 먼 지방을 편안하게 하는 재주가 없어, 왕자와 더불어 예절을 다투다가, 조정의 명령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돌아왔다(貞觀五年, 遣使獻方物。太宗矜其道遠, 敕所司無令歲貢, 又遣新州刺史高表仁持節往撫之, 表仁無綏遠之才, 與王子爭禮, 不宜朝命而還)”라는 기재에 의하면,³ 당조가 왜국에 신라 구원을 위한 청병을 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제2 부분의 세 번째 단락은 “647년 다카무코노 구로마로(高向玄里)가 신라의 실력과 인물 김춘추를 대동하고 귀국하여, 야마토 정권의 신라에 대한 군사원조 제공을 달성하였으며, 신라는 야마토 정권에 선진문물을 제공하는 협력을 협의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일본서기』, 「고토쿠천황(孝德天皇) 다이카(大化) 2년조에 의하면 646년 소덕(小德) 다카무코노 구로마로가 사신으로 신라에 간 목적은 ‘사공질(使貢質)’, 즉 인질의 제공과 교환이었

3 『舊唐書』, 「倭傳傳」貞觀5年條.

으며, “드디어 임나(任那)의 조(調)가 그치게 되었다(遂罷任那之調)”⁴는 기재에서도 야마토 조정이 신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었음을 간파할 수 있다. 다이카 3년, 즉 647년, 다카무코노 구로마로가 귀국할 때 배동한 김춘추 등은 일본에 공작과 앵무새 각 한 쌍을 선사하지만, 억류되어 인질이 된다.⁵ 다이카 5년, 즉 649년에 이르러 신라왕은 대신(大臣) 김다수(金多遂)를 보내 인질로 삼게 한다. 야마토 조정이 신라를 신임할 수 없는 속국으로 보았음이 분명하다. 이런 상황 아래에서 일본과 신라가 어떻게 ‘합작 협의’를 달성할 수 있는가? 일본의 군사 원조와 신라의 선진문물 제공에 대한 유력한 사료 근거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제2 부분의 네 번째 단락은 “김춘추가 당으로 들어가 일본의 표문(表文)을 전한 648년에 신라가 중심이 된 일본·당조·신라의 삼국연맹이 형성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구당서』, 『왜전』의 기재에 의하면, 정관 22년 왜국이 “또한 신라에 위탁하여 표를 올리니, 이로써 그 기거(起居)가 통하게 되었다(又附新羅奉表, 以通起居)”라고 하였는데,⁶ 정관 22년은 바로 진덕왕 2년인 648년이다. 이 해에 신라는 연이어 3차례 사신을 당에 파견하였는데, 세 번째 당에 파견된 사신, 즉 이전에 지원군을 청한 김춘추의 사신 파견 시말에 대한 기술이 가장 상세하다. 그러나 “김춘추가 당에 들어가 일본의 표문을 전했다”는 사실은 언급되지도 않았다. “또한 신라에 위탁하여 표를 올리니(又附新羅奉表)”에서의 위탁은 앞의 두 차례 견당사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봉표(奉表)에는 단지 ‘기거’ 평안 여부의 안부만 언

4 『日本書紀』, 「孝德天皇」大化2年9月條.

5 『日本書紀』, 「孝德天皇」大化3年條.

6 『舊唐書』, 「倭傳」貞觀22年條.

급될 뿐이며, '삼국연맹' 형성의 의미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2) 어떤 중요한 논점들은 다시 논의 필요

예를 들면 신라·당·일본 삼국연합체 혹은 백제·일본·고구려 삼국 연맹이란 표현법은 관점이 참신하지만 아직 더 논의되어야 한다. 이 밖에 논문 전체에서 백촌강 전투 전후의 동북아 국제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일본의 작용을 너무 지나치게 높이 평가한 것 같다.

시간과 함께 논평의 지면이 제한되어, 삼가 위에 서술한 의견을 단지 참고의견으로 제출하고자 한다. 이후에 김 교수님과 더 깊은 학술교류와 동북아 역사구조라는 이 중요한 과제에 대한 연구 토론이 계속되기를 희망한다.

서안지역의 당대 상장양식을 통해 본 발해 정혜공주와 정효공주묘

리즈 성 (베이징대학 역사학과)

동북아역사재단

5년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서안(西安)지역은 오늘날 섬서성(陝西省) 서안시(西安市)와 그 주변지역을 가리키며, 이 지역은 당나라 수도가 있었던 곳으로 경조부(京兆府) 옹주(雍州)의 관할구역이었다. 1949년부터 1980년대까지 서안지역에서는 2000여기의 당나라 무덤이 발굴되어¹ 이 지역의 상장양식(喪葬樣式)을 연구하는 데 충분한 자료적 근거를 제공하였다.² 이러한 기초 위에서 몇몇 학자는 “수도 부근의 묘는 당시 상장제도를 포함한 중국의 각종 제도를 비교적 엄격하게 준수했으며, 일정한 규범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최근 각 지역에서 당나라 무덤이 발견되었는데 서안지역 당나라 무덤의 규범화가 분명하게 나타

1 段鵬琦(1984), 「唐代墓葬的發掘與研究」, 『新中國的考古發現和研究』第6章,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北京: 文物出版社, 581쪽; 陝西省文物管理委員會(1979), 「建國以來陝西省文物考古的收穫」, 文物編輯委員會, 『文物考古工作三十年 1949~1979』, 北京: 文物出版社, 133쪽.

2 서안지역의 당나라 묘장양식을 연구한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宿白(1995, 12), 「西安地區的唐墓形制」, 『文物』, 41~50쪽; 孫秉根(1986), 「西安隋唐墓葬的形制」, 中國考古學研究編委會, 『中國考古學研究—夏鼐先生考古五十年紀念論文集』2, 北京: 科學出版社, 151~190쪽; 齊東方(1990), 「試論西安地區唐代墓葬的等級制度」, 北京大學考古系, 『紀念北京大學考古專業三十周年論文集 1952~1982』, 北京: 文物出版社, 286~310쪽; 宿白(1982, 2), 「西安地區唐墓壁畫的布局 and 內容」, 『考古學報』, 137~153쪽; 李星明(2005), 『唐代墓室壁畫研究』, 西安: 陝西人民美術出版社.

나 있다. 이러한 무덤들에 나타난 규범은 최소한 황하 중하류지역, 즉 일반적으로 말하는 증원지역에서도 활용되고 있었다”³고 지적하였다. 이로써 서안지역에서 규범화된 당나라 상장양식을 통해 같은 시기 발해지역 상장 상황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당나라 증원문화가 발해지역에 미친 영향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발해정권(669~929)은 당나라 말갈족이 건립한 것으로,⁴ 중심지는 오늘날의 길림성(吉林省) 돈화분지 일대이다. 1949년과 1959년에 고고학자들은 길림성 돈화현(敦化縣) 육정산(六頂山)에서 발해 제3대 군왕 대흠무(大欽茂)의 둘째 딸 정혜공주묘를 발굴하였다. 이 묘는 방형의 석실묘이며 복도에서 비석이 하나 출토되었다.⁵ 또한 1980년과 1981년에 연변 조

3 宿白(1995. 12), 위의 글, 41쪽.

4 발해정권의 건립에 대해서는 중국과 외국 학계의 인식이 다양한데 중국 학자 대부분은 발해정권이 말갈족에 의해 건립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과 북한의 학자들은 발해정권이 고구려 유민에 의해 건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沈儀琳(1992. 4), 「朝鮮史學界關注渤海史研究」, 『國外社會科學』, 54~58쪽; 郭素美(2007. 3), 「朝鮮建立以來的渤海國史研究」, 『學習與探索』, 225~229쪽; 宋基豪(1995a), 『渤海政治史研究』, 일조각, 23~76쪽 참조. 구소련의 학자들은 발해가 말갈인 정권이라는 것은 동의하지만 구소련지역의 현대 埃文基人(오원키족: 중국소수민족)과 선비족으로부터 시작된 고대 말갈인을 공동의 선조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薛虹(1983. 1), 「蘇聯的渤海史研究—兼評 蘇聯對渤海國的研究」, 『中國史研究動態』, 25쪽; 範恩實(2003), 「近二十年國內外靺鞨史研究評述」, 王小甫, 『盛唐時代與東北亞政局』,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473쪽 참조.

5 정혜공주묘의 정리발굴에 대한 글은 다음과 같다. 王承禮(1979. 3), 「敦化六頂山渤海墓清理發掘記」, 『社會科學戰綫』, 200~210쪽. 정혜공주 墓誌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閻萬章(1956. 2), 「渤海“貞惠公主墓碑”的研究」, 『考古學報』, 69~73쪽; 金毓黻(1956. 2), 「關於“渤海貞惠公主墓碑研究”的補充」, 『考古學報』, 75~78쪽; 王健群(1980), 「渤海貞惠公主墓碑考」, 文物編輯委員會,

선족자치구박물관은 대흙무의 넷째 딸 정효공주묘를 발굴하였는데 북도에서 역시 묘비가 하나 발견되었다.⁶ 학계는 정혜·정효공주묘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왔다.⁷ 전체적으로 보아 특히 정효공주묘는 매장지점·무덤구조·묘실배치 면에서 당나라의 중원지역과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⁸ 그렇긴 하지만 서안지역의 규범화된 당나라 상장양식과 대조해 보면 발해의 묘는 그 나름의 분명한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정혜공주와 정효공주의 배장(陪葬)과 묘실배치 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文物集刊』第2集, 北京: 文物出版社, 208~216쪽; 王承禮(1982. 1), 「唐代渤海“貞惠公主墓志”和“貞孝公主墓志”的比較研究」, 『社會科學戰綫』, 181~187쪽; 羅繼祖(1983. 3), 「渤海貞惠貞孝兩公主的墓碑」, 『博物館研究』; 孫進己·孫海(1994), 『高句麗渤海研究集成6·渤海卷3』, 哈爾濱: 哈爾濱出版社, 285쪽.

- 6 정효공주묘의 정리발굴에 대한 글은 다음과 같다. 延邊朝鮮族自治州博物館(1982. 1), 「渤海貞孝公主墓發掘清理簡報」, 『社會科學戰綫』, 174~180쪽. 정효공주묘비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王承禮(1982. 1), 위의 글; 羅繼祖(1983. 3), 위의 글; 王承禮(1982. 1), 「唐代渤海國“貞孝公主墓志”研究」(上)·(中)·(下), 『高句麗渤海研究集成6·渤海卷3』, 291~313쪽; 鄒秀玉, 「渤海貞孝公主墓志并序考釋」, 『高句麗渤海研究集成6·渤海卷3』, 314~324쪽.
- 7 『高句麗渤海研究集成6·渤海卷3』, 252~339쪽; 蔡熙國(1988. 2), 「關於渤海的貞惠公主和貞孝公主墓」, 『朝鮮考古研究』, 북한, 15~21쪽; 宋基豪(1995b), 「關於渤海貞惠公主墓碑的考證」, 『韓國文化』2; 宋基豪(1995a), 앞의 책, 264쪽.
- 8 蔡熙國은 북한 학계의 전통적인 견해를 답습하여 정혜·정효 두 공주의 묘가 발해의 고구려에 대한 문화적 계승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蔡熙國(1988. 2), 위의 글, 15~21쪽.

1. 정혜공주와 정효공주묘의 배장

발해의 정혜공주 묘지(墓誌)에는 “寶曆七年冬十一月二十四日甲申, 陪葬於珍陵之西原, 禮也”⁹라고, 정효공주 묘지에는 “其年冬十一月二十八日己卯, 陪葬於染谷之西原, 禮也”¹⁰라고 각각 기록되어 있다. 두 공주 묘지의 배장에 대한 이러한 서식(書式)에서 당나라 공주 묘지와 유사성이 확인된다. 예를 들어 고조의 딸 회남공주의 묘지에 “以天授二年正月十二日, 陪葬于獻陵, 禮也”¹¹라고 기록된 것과 태종의 딸 임천공주의 묘지에 “以其年歲次壬午十二月庚申朔二十五日甲申, 陪葬于昭陵之左, 禮也”¹²라고 기록된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발해의 정혜·정효공주가 이전 사람들의 예(禮)에 따라 배장된 것으로 당나라 공주가 황릉에 배장되는 예제(禮制)에서 기원하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1) 당나라 공주의 황릉배장 제도

중국의 전통적인 예제에 의하면 부인은 남편 부근에 매장되며, 남편은 아버지와 할아버지 무덤 부근에 매장된다.¹³ 당나라에 들어서 이리

9 王承禮(1979, 3), 앞의 글, 205쪽.

10 延邊朝鮮族自治州博物館(1982, 1), 앞의 글, 177쪽.

11 王其禕·周曉薇(1995), 「唐代公主墓志輯略」, 『碑林集刊』第3輯, 西安: 陝西人民美術出版社, 65쪽.

12 吳鋼(1994), 「大唐故臨川郡長公主(李孟姜)墓志銘」, 『全唐文補遺』第1輯, 西安: 三秦出版社, 67쪽.

한 관념은 사람들 마음속에 더욱 깊이 자리잡았다.¹⁴ 당나라 공주는 남편 부근에 매장되지 않고 아버지인 황제의 무덤 부근에 매장되었는데 이는 전통적인 예제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예이다(禮也)”라고 칭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주가 황릉에 매장되는 것은 당나라의 예제에서 하나의 특수한 경우이다.

당나라 황릉의 매장제도는 태종 시기 고조의 현릉에서부터 시작된다. 고조가 죽은 후 태종은 두 번에 걸쳐 정식으로 당나라 매장제도를 제정하였다. 정관 11년(637) 11월, 태종은 「증공신배릉지조(贈功臣陪陵地詔)」를 다음과 같이 반포하였다.

諸侯의 장례에 관해서는 주문공이 그 禮를 처음 말씀하셨고, 大臣의 매장에 관해서는 위무공이 그 규범을 거듭 천명하셨다. …… 이는 모두 이전 성인들의 모범이요, 이전 현인들이 남기신 법칙이다. …… 당나라 초기에 거듭 喪을 당하였고 많은 어려움을 제거하여 나라의 기틀을 명예롭게 세웠다. 그리하여 지략을 지닌 신하와 무장(謀臣武將)들은 軍門의 앞으로 경쟁하듯 나아갔고, 밝게 빛나는 덕과 남다른 재주를 가진 자(明德異材)들은 조정의 대궐 아래로 다투듯 달려왔다. …… 가까운 친족 사이에 다정하고 화목한 자(密戚懿親), 오랜 공훈과 덕망이 있는 자(舊勳宿德), 선조에 처음 베푼 자(委質先朝), 특별히 두터운 대우를 받은 자(特蒙顧遇)들은 지금 이후부터 죽는 그날까지 마땅한 직분을 맡기고 곧 황제에게 알리라. 또한 獻陵 좌측에 葬地를 내려주며, 東園秘器(황실에서 쓰는 棺)를 주어 葬事를 넉넉하고 후하게 하고, 바라건대 조상을 생각하고 제사지내는 뜻을 돈독하게 하여

13 齊東方(2006, 5), 「附葬墓與古代家庭」, 『古宮博物院院刊』, 26~30쪽.

14 陳弱水(1997), 「試探唐代婦女與本家的關係」,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第68本, 第1分, 229~237쪽.

부모의 큰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이 거듭되도록 하라.¹⁵

또한 정관 20년(646) 8월, 태종은 다시 「공신배릉조(功臣陪陵詔)」를 다음과 같이 반포하였다.

주나라 姬公은 畢陌(渭水の 북쪽에 위치)에 매장되었고, 한나라 蕭相은 高園에 합장되었다. 황제가 총애하여 墳塋을 내려주는 것은 잇대의 여러 현인들에게 듣고 陵邑에 장사지내는 것이니 참으로 예전부터 내려오는 문물제도라고 할 수 있다. 황실의 친척으로 훌륭한 신하 懿戚宗臣]는 근본이 같은 가치와 즐기이고, 높은 공을 세운 재상 元功宰相은 몸의 다리와 팔과 같이 귀하게 여긴다. 죽은 후에도 얻는 영광을 실로 성대히 하고, 終始의 인연을 성실히 하라. 지금 마땅히 옛 제도를 따르는 것은 비유하자면 사방의 백성이 천자의 덕화에 귀의하고 복종하는 것과 같아서 鳥耘(聖德의 감응을 가리키는 말)의 땅이 있고, 魚水(군신이나 부부 간의 친밀한 관계를 이룸)의 도에 어긋남이 없기를 바란다. 마땅히 맑은 직분으로 昭陵의 남쪽 좌우 곁의 땅을 취하게 하여 봉토를 만들어 영역을 표시하고 葬地로 삼아 공신들에게 내려 주어라. 父祖의 능에 매장되고자 하는 자손에 대해서는 또한 그것을 허락하라.¹⁶

15 “諸侯列葬，周文創陳其禮；大臣陪陵，魏武重申其製。……斯蓋往聖垂範，前賢遺則，……皇運之初，時逢交喪，掃除多難，光啟鴻業，謀臣武將，競進轅門之前；明德異材，爭趨魏闕之下。……及密戚懿親，舊勳宿德，委質先朝，特蒙顧遇者，自今以後，身薨之日，所司宜即以聞，並于獻陵左側，賜以葬地，並給東園秘器，事從優厚，庶敦追遠之義，以申罔極之懷。”『唐代詔令集』卷63，「贈功臣陪陵地詔」，上海：學林出版社(1992)，316쪽. 또한 이 조항은 『冊府元龜』卷60，「帝王部·立制度一」，北京：中華書局(1960)，669~670쪽을 참조하는데，다만 개별 글자와 『唐大詔令集』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唐會要』卷21의 「陪陵名位」 역시 이 「贈功臣陪陵地詔」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으며，다만 시간을 貞觀十一年‘十月’이라고 기록하고 있다(北京：中華書局，1955，416쪽).

두 차례에 걸친 태종의 반포는 당나라 황릉에 매장되는 사람들의 신분을 규정한 것이다. 매장될 수 있는 자로는 모신무장(謀臣武將), 명덕이재(明德異材), 밀척의친(密戚懿親), 구훈숙덕(舊勳宿德) 및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묘에 매장되길 원하는 공신의 자손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른바 ‘밀척의친’에는 공주도 포함된다.

두 차례에 걸친 태종의 조령(詔令)을 살펴보면 당나라 매장제도가 실제로는 한(漢)나라에 그 기원이 있음을 보여준다. 한나라 고조(高祖)의 딸 노원공주(魯元公主)는 그 동생 혜제(惠帝)의 안릉(安陵)에 매장되었다.¹⁷ 또한 문제(文帝)의 딸 관도공주(館陶公主)는 아버지 패릉(霸陵)에 매장되었으며,¹⁸ 경제(景帝)의 딸 양신공주(陽信公主) 역시 동생이었던 무제(武帝)의 무릉(茂陵)에 매장되었다.¹⁹ 한대(漢代) 공주가 황릉에 매장된 사례를 살펴보면 한대 전기에는 그 예가 적어서 제도가 아직 규범화되지 않았음을 알 수

16 “周室姬公，陪于畢陌；漢庭蕭相，附彼高園。寵錫墳塋，聞諸上代。從窆陵邑，信有舊章。蓋以懿戚宗臣，類同本之枝幹；元功上宰，猶在身之股肱。哀榮之義實隆，終始之契斯允。今宜事遵故實，取譬拱辰，庶在鳥耘之地，無虧魚水之道。宜令所司，于昭陵南左右廂，封鏡取地，仍卽標誌疆域，擬爲葬所，以賜功臣。其父祖陪陵，子孫欲來從葬者，亦宜聽許。”『唐代詔令集』卷63，「功臣陪陵詔」，316쪽. 또한 이 조항은 『冊府元龜』卷133，「帝王部·褒功二」，1603쪽을 참조하지만 두 책의 개별 글자에는 차이가 있다. 『唐會要』卷21，「陪陵名位」는 시간을 貞觀二十三年이라고 기록하고 있다(416쪽). 이 외에도 당나라의 매장제도에 대해서는 『通典』과 『唐會要』에도 기록이 있다. 『唐會要』卷21，「陪陵名位」，412쪽；『通典』卷86·『禮』46·『凶禮』8，北京：中華書局，1988，2350～2351쪽.

17 劉慶柱(2000)，『西漢諸陵調查與研究』，『古代都城與帝陵考古學研究』，北京：科學出版社，211쪽；閻崇東(2007)，『兩漢帝陵』，北京：中國青年出版社，343쪽. 노원공주는 혜제의 안릉에 매장됐는데, 그것은 노원공주가 혜제의 황후인 장언(張嫣)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18 『兩漢帝陵』，349쪽.

19 任常泰(1995)，『中國陵寢史』，臺北：文津出版社，79～80쪽.

있다. 즉 노원공주가 아버지인 고조 유방의 무덤에 매장되지 않고, 혜제의 능에 매장된 것은 이를 잘 증명한다. 경제의 딸 역시 무제의 능에 매장되었다. 한대 공주의 매장제도를 모방한 당나라 제도는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한 아주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당나라 공주가 황릉에 매장되는 것을 ‘예’라고 한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다.

2) 당나라 전기 공주의 황릉배장

당나라 공주가 황릉에 매장되는 것은 숙종의 재위기간과 예종의 교릉(橋陵) 이전에 존재했다. 『당회요(唐會要)』²⁰에 기록되어 있는 각 무덤의 매장 수가 이를 증명한다.

표1 『唐會要』에 기록된 당 황릉의 매장모수량

帝陵	陪葬墓數量	公主·駙馬陪葬墓數量
高祖獻陵	25	公主墓 1
太宗昭陵	154 ²¹	駙馬墓 22
高宗·武則天乾陵	16	公主墓 4

20 『唐會要』 卷21, 「陪陵名位」, 412~416쪽. 당나라의 여러 황릉에 매장된 인물에 대해서는 『唐會要』와 『文獻通考』 卷125, 「王禮考·山陵」, 北京: 中華書局(1986), 1123~1127쪽에 관련된 자료가 기록되어 있다. 송나라 宋敏求가 저술한 『長安志』와 당나라의 기타 사료에도 당나라의 여러 황릉배장에 대한 기록이 더러 있다.

21 劉向陽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릉의 매장묘가 194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劉向陽(2006), 『唐代帝王陵墓』, 西安: 三秦出版社, 59쪽.

帝 陵	陪葬墓數量	公主·駙馬陪葬墓數量
中宗定陵	8	公主墓 5, 駙馬墓 2
睿宗橋陵	8	公主墓 4
玄宗泰陵	1	0
肅宗建陵	1	0
代宗元陵	0	0
德宗崇陵	0	0
順宗豐陵	0	0
憲宗景陵	4	0
穆宗光陵	2	0
敬宗莊陵	1	0
文宗章陵	0	0
武宗端陵	1	0
宣宗貞陵 ²²	1	0
懿宗簡陵	0	0
僖宗靖陵	0	0
昭宗和陵	0	0

『당회요』의 기록에 따르면, 당 태종이 규정한 공신밀척(功臣密戚)이 황릉에 매장되는 제도는 태종이 죽은 후 소릉(昭陵)에 매장됨으로써 일시적으로 성행했을 뿐, 고종과 무척천의 건릉(乾陵)에 이르러서는 매장된 수가

22 『舊唐書』, 北京: 中華書局(1975), 645·650쪽; 『新唐書』, 北京: 中華書局(1975), 256쪽; 『資治通鑑』, 北京: 中華書局(1956), 8080쪽에서는 '貞陵'이라고 했고, 『唐會要』, 415쪽; 『文獻通考』, 1127쪽에서는 '正陵'이라고 하였다.

이미 현격히 감소하였으며, 현종 이후에는 더욱 적어진다. 동시에 공주, 부마의 배장묘 역시 태종 시기에는 22기였으나 현종 이후에는 없다.

이외 공주의 배장에 관해서는 비록 현존하는 당나라 공주 묘지의 기록과 『당회요』의 기록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변화의 양상은 두 기록이 서로 상당히 비슷하다. 당나라 공주 묘지에 기록된 황릉배장의 상황은 표 2와 같다.

표 2 묘지에 기록된 당나라 공주 황릉배장

編號	公主	父皇	葬年	駙馬	葬地
1	房陵公主 ²³	高祖	高宗咸亨四年(673)	寶奉節·賀蘭僧伽	高祖處陵
2	淮南公主 ²⁴	高祖	武則天天授二年(691)	封言道	高祖處陵
3	長樂公主 ²⁵	太宗	太宗貞觀十七年(643)	長孫沖	太宗口陵 ²⁶

23 周紹良·趙超(2001), 「大唐房陵大長公主墓志銘」, 『唐代墓志匯編續集』 咸亨 23,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쪽.

24 王其禕·周曉薇(1995), 「淮南大長公主墓志」, 『唐代公主墓志輯略』, 64~65쪽
참조. 淮南公主駙馬封言道墓志는 岳連建·柯卓英(2004, 4), 「唐淮南大長公主駙馬封言道墓志考釋」, 『考古與文物』, 65~72쪽 참조.

25 周紹良·趙超(2001), 앞의 책 貞觀36, 28~29쪽.

26 周紹良·趙超(2001), 앞의 책 貞觀36, 29쪽에는 황릉의 名號가 한 글자 빠져 있다. 이를 살펴보면, 장락공주는 長孫后의 소생으로 생전에 아버지 태종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역사에 “帝以長孫皇后所生, 故敕有司裝齋視長公主而陪之”(『新唐書』, 「長樂公主傳」, 645쪽)라고 기록되어 있다. 『唐會要』 卷 20, 「陵議」를 다시 살펴보면, 태종의 소릉은 정관 23년(649) 8월에 완공되었지만(395쪽), 이보다 앞서 정관 10년(636)에 장손황후가 이미 소릉의 葬地에 入葬되었다(이때는 소릉이라고 칭하지 않았다). 沈睿文은 정관 11년(637) 당 태종이 정식으로 소릉을 경영한 시기라고 생각했다. 榮新江(2003), 「關中唐陵地秩序研究」, 『唐研究』 第9卷,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380쪽. 任常泰는 소릉의 건축이 정관 10년(636) 장손황후를 매장하면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했다

編號	公主	父皇	葬年	駙馬	葬地
4	臨川公主 ²⁷	太宗	高宗永淳元年(682)	周道務	太宗昭陵
5	蘭陵公主 ²⁸	太宗	高宗顯慶三年(658)	竇懷哲	太宗昭陵
6	新城公主 ²⁹	太宗	高宗龍朔三年(663)	長孫綏 · 韋正矩	太宗昭陵
7	永泰公主 ³⁰	中宗	中宗神龍二年(706)	武延基	高宗乾陵
8	涼國公主 ³¹	睿宗	玄宗開元十二年(724)	薛伯陽 · 溫曦	睿宗橋陵
9	息國公主 ³²	睿宗	玄宗開元十三年(725)	薛徹 · 鄭孝義	睿宗橋陵
10	金仙公主 ³³	睿宗	玄宗開元二十四年(736)	未嫁睿	未嫁睿

당나라 공주 묘지는 『당회요』에서 밝힌 것처럼 공주가 황릉에 매장된 하한을 증명해준다. 예종(睿宗) 이전, 황릉에 매장된 공주는 10명이며, 그녀들의 배장을 ‘예’라고 부르는 것과 부르지 않는 것 사이에는 구별이 있다.

(『中國陵寢史』, 189쪽). 이로써 정관 17년(643)에 매장된 장락공주가 매장된 것도 아버지 태종의 소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27 吳鋼(1994), 앞의 책 第1輯, 66~67쪽.

28 「大唐故蘭陵長公主碑」, 『全唐文』 卷153, 上海: 上海古籍出版社(1990), 688~689쪽.

29 周紹良(2000), 「大唐故新城長公主墓志銘」, 『全唐文新編』 卷993,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14108~14109쪽; 張云(2000), 「唐“新城長公主墓志”考」, 『碑林集刊』 第6輯, 西安: 陝西人民美術出版社, 33~37쪽.

30 周紹良(1992), 「大唐永泰公主志石文」, 『唐代墓志匯編』(上) 新龍27,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058~1059쪽.

31 「涼國長公主神道碑」, 『文苑英華』 卷933, 北京: 中華書局, 1966, 4908~4909쪽; 『全唐文』 卷258, 1154~1155쪽.

32 「鄜國長公主神道碑」, 『文苑英華』 卷933, 4910~4911쪽.

33 周紹良 · 趙超(2001), 앞의 책 開元145, 552~553쪽.

(1) 고조의 딸 방릉공주

방릉공주(房陵公主) 묘지에는 “悼深旒宸, 恩隆詔葬, 賙贈有加, 寔光恒典, 卽以其年十月四日, 陪葬于獻陵”³⁴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방릉공주는 두 번 결혼했는데, 처음은 두봉절(竇奉節)에게 시집간 후 이혼했고, 이후 하란승가(賀蘭僧伽)에게 시집갔지만 하란승가가 공주보다 먼저 죽었다. 첫 남편 두봉절은 고조(高祖)의 황후 두씨와 같은 가문이며, 아버지인 두궤(竇軌)는 당나라 개국공신이었다. 하란승가의 출신에 대한 기록은 역사서에 없다. 왕건(王健)은 그가 북주(北周) 계통의 오랑캐 성씨인 무장가문이 아닐까라고 추측하였다.³⁵ 방릉공주 묘지는 헌릉에 매장된 사실을 ‘예’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는 하란승가가 방릉공주가 죽기 전에 황릉에 매장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2) 고조의 딸 회남공주

회남공주(淮南公主) 묘지에는 “以天授二年正月十二日, 陪葬于獻陵, 禮也”³⁶라고 기록되어 있다. 회남공주는 봉언도(封言道)에게 시집갔으나 남편이 먼저 죽었다. 봉언도의 아버지 봉덕이(封德彝)는 고조, 태종에 걸쳐 재상을 역임했다.

(3) 태종의 딸 장락공주

장락공주(長樂公主) 묘지에는 “以(貞觀)十七年八月十日奄然薨謝, 春秋

34 周紹良·趙超(2001), 앞의 책 咸亨23, 201쪽.

35 汪篋(1981), 「唐太宗樹立新門閥的意圖」, 『汪篋隋唐史論考』,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58쪽.

36 王其禕·周曉薇(1995), 『唐代公主墓志輯略』, 65쪽.

二十三. 皇帝悼深天蕙, …… 粵以其年歲次癸卯九月丁丑朔二十一日丁酉, 陪于□陵”³⁷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장락공주는 장손충(長孫冲)에게 시집갔으며 남편보다 먼저 죽었다. 장손충은 후에 장락공주와 합장되었다. 장락공주의 황릉배장을 ‘예’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공주가 죽었을 때 부황 태종(太宗)이 살아 있었으며, 장락공주가 먼저 소릉에 매장되었기 때문이다.

(4) 태종의 딸 임천공주

임천공주(臨川公主) 묘지에는 “卽以其年歲次壬午(永淳元年)十二月庚申朔二十五日甲申, 陪葬于昭陵之左, 禮也”³⁸라고 기록되어 있다. 임천공주는 주도무(周道務)에게 시집갔으며 남편보다 먼저 죽었다. 주도무는 후에 공주와 합장되었다. 주도무는 전중대감(殿中大監) 초군공(譙郡公) 주소범(周紹範)의 아들이다. 주도무가 갓난아이였을 때 공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궁중에서 자랐다.³⁹

(5) 태종의 딸 난릉공주

난릉공주(蘭陵公主) 묘지에는 “以其年歲次己未(顯慶三年)十月甲辰朔二十九日□□, 遷窆于□(昭)陵⁴⁰□□十里安樂原, 禮也”⁴¹라고 기록되어 있다. 남편 두회철(竇懷哲)은 고조의 황후 두씨와 같은 가문 사람이

37 周紹良·趙超(2001), 앞의 글 貞觀36, 29쪽.

38 吳鋼(1994), 앞의 글, 67쪽.

39 『新唐書』卷83, 「諸帝公主傳」, 3646쪽.

40 『全唐文』卷153, 「大唐故蘭陵長公主碑」, 688쪽에 “奉詔, 竇氏既是大外家, 情禮稍異, 特宜陪葬昭陵”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41 『全唐文』卷153, 「大唐故蘭陵長公主碑」, 688쪽.

다.⁴² 『보각총편(寶刻叢編)』의 기록에 의하면,⁴³ 난릉공주의 비문은 두회철이 썼으며, 두회철은 후에 공주와 합장되었다.

(6) 태종의 딸 신성공주

신성공주(新城公主) 묘지에는 결자가 있어 완전하지 않으나 남아있는 글씨를 보면 “其葬事宜依后禮”, “昭陵, 禮也”⁴⁴라고 기록되어 있다. 신성공주는 소릉에 매장된 황후의 예를 따랐는데 공주가 시집간 사람이 선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성공주는 두 번 결혼했는데 처음은 장손전(長孫綽)과 결혼했고, 이후에 위정구(韋正矩)와 결혼하였다. 장손전은 죄를 지어 수주(嵩州)로 귀양 갔다. 신성공주의 두번째 남편 위정구는 봉면대부(奉冕大夫)가 되었으며, 공주를 만나 예를 치르지 않았다. (공주가) 갑자기 죽게 되자 고종은 삼사(三司: 당나라의 세 사법기구)에서 잡치(儆治: 會審과 같은 말로 공동으로 심의하는 것을 말함)하도록 조서를 내렸으며, 위정구는 변론하지 못하고 사형되었다. 따라서 황후의 예로서 소릉의 옆에 매장되었다.⁴⁵

(7) 중종의 딸 영태공주

영태공주(永泰公主) 묘지에는 “粵(神龍)二年(歲)次景午五月癸卯朔十八日庚申, 有制, 令所司備禮與故駙馬都尉合窆于奉天之北原, 陪葬乾陵, 禮

42 竇懷哲의 世系는 역사서에 불분명하게 기재되었다. 『新唐書』 卷83, 「諸帝公主傳」, 3647쪽은 太穆皇后의 族子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新唐書』 卷71 下 「宰相世系」 1 下, 2293쪽은 두씨 황후의 증손자라고 기록하고 있다. 『全唐文』, 「大唐故蘭陵長公主碑」, 688쪽은 태목황후의 손자라고 기록하고 있다.

43 陳思(1937), 「京兆府下」, 『寶刻叢編』 卷9, 上海: 商務印書館, 274쪽.

44 周紹良(2000), 앞의 글, 14109쪽; 張云(2000), 앞의 글, 34쪽.

45 『新唐書』 卷83, 「諸帝公主傳」, 3649쪽.

也”⁴⁶라고 기록되어 있다.

영태공주는 대조 1년(701) 장역지(張易之 : 측천무후의 측근)를 미워하여 측천무후에 의해 살해되었다. 황제는 영태공주를 추증하고 예로써 다시 장례를 치렀으며, 묘를 능이라 하였다.⁴⁷ 영태공주와 남편 무연기(武延基)는 같이 피살되었으며, 그들의 묘는 개장(改葬)되어 건릉에 매장되었다. 이 일은 중종(中宗)이 측천무후가 내린 잘못된 조치를 바로잡은 것 가운데 하나로 정치적 배경이 짙게 깔려 있다.⁴⁸

(8) 예종의 딸 양국공주

양국공주(涼國公主) 묘지에는 “開元十二年仲冬壬午, 陪葬于橋陵”⁴⁹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묘지에는 교릉에 매장된 것이 ‘예’라고 칭하지 않았다. 양국공주는 두 번 결혼하였는데 처음은 설백양(薛伯陽)과 결혼하였고, 이후에 온희(溫曦)⁵⁰와 결혼하였다. 공주가 온희보다 먼저 죽었다. 설백양은 당나라 개국공신인 설수(薛收)의 4세손이다. 아버지 설직(薛稷)은 중종과 예종(睿宗) 때 재상이었으며, 외증조는 위나라를 정벌하였다. 온

46 周紹良(1992), 앞의 책(上)新龍27, 1059쪽.

47 『新唐書』卷83, 「諸帝公主傳」, 3654쪽.

48 齊東方(2006. 1), 「唐代的喪葬觀念習俗與禮儀制度」, 『考古學報』, 63~65쪽.

49 『文苑英華』卷933, 「涼國長公主神道碑」, 4909쪽 ; 『全唐文』卷258, 1155쪽.

50 『唐會要』卷6, 「公主」편에는 涼國公主가 薛伯陽과 溫曦에게 두 번 시집갔다고 기록되었는데(64쪽), 『新唐書』卷83에는 “薛伯陽에게 시집갔다”(3656쪽)고만 적혀 있고, 「涼國長公主神道碑」에는 溫曦만 기록되었다. 『文苑英華』卷933, 908쪽. 『舊唐書』와 『新唐書』의 「薛稷傳」을 살펴보면 薛稷의 아들 伯陽이 仙源公主(仙源은 涼國公主의 舊封名이다)와 결혼했고, 후에 그 아버지가 죄를 범하여 嶺表로 유배를 당하였으며, 가는 도중에 자살했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었다(『舊唐書』, 2591~2592쪽 ; 『新唐書』, 3894쪽). 墓志에는 薛伯陽과 결혼한 것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실제로는 공주가 꺼린 것이다.

희의 고조(高祖)는 태종 때의 재상 온언박(溫彦博)이며 부친은 관직이 낭주자사(閔州刺史)에 이르렀다.

(9) 예종의 딸 식국공주

식국공주(鄕國公主) 묘지에는 “窆窆之禮，一如涼國長公主故事。夏四月，恩旨陪葬于橋陵，不祔不從，古之道也”⁵¹라고 기록되어 있다. 공주의 묘지에는 교릉에 배장된 것을 ‘예’라고 칭하지 않았다. 식국공주는 설경(薛敬)·정효의(鄭孝義)와 두 차례 결혼하였다. 설경의 조부(祖父) 설관(薛瓘)은 태종의 딸 성양공주(城陽公主)와 결혼했으며, 조형(祖兄) 설소(薛紹)는 태평공주와 결혼했다. 정효의의 출신은 불분명한데, 아마 산둥(山東)의 오성(五姓) 가운데 높은 가문이었던 정씨 집안 출신이었을 것이다.

(10) 예종의 딸 금선공주

금선공주(金仙公主) 묘지에는 “以壬申之年建午之月十日辛巳，薨于洛陽之開元觀”，“越以景子之年(開元二十四年)七月己卯朔四日壬午，啓舊塋而自洛，卽陪葬于橋陵，禮也”⁵²라고 기록되어 있다. 금선공주는 태극(太極) 1년(712)에 출가하여 도인이 되었으며, 결혼하지 않았다.

이상의 황릉에 배장된 10명의 공주 중 6명의 배장을 ‘예’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고조의 딸 회남공주, 태종의 딸 신성공주, 임천공주, 난릉공주, 중종의 딸 영태공주, 예종의 딸 금선공주 등이다. 이들 6명의 공주 중 금선공주는 도교에 귀의하여 시집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

51 『文苑英華』卷933, 「鄕國長公主神道碑」, 4911쪽.

52 周紹良·趙超(2001), 앞의 책 開元145, 553쪽.

지 예종의 교릉(槨陵)에 매장되었고 이는 당나라 예제와 서로 부합되는 것이다. 당나라 상층문화에서는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죽으면 생전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집에 속했다.⁵³

신성공주는 두 명의 남편이 죄를 지어 죽었기 때문에 남편 가문의 무덤에 묻힐 수 없어서 아버지 태종의 소릉에 매장되었다. 이 역시 당나라 예제와 부합하는 것이다. 회남공주, 임천공주, 난릉공주가 죽었을 때는 남편들이 모두 살아있었기 때문에 남편들의 묘에 잠시라도 합장될 수 없었다. 또한 남편들의 정치적 지위가 아주 높았기 때문에 공신의 자손이 황릉에 매장될 수 있는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다. 영태공주가 황릉에 매장된 것은 중종이 측천무후의 정치적 영향을 제거하고 이씨 당왕조를 다시 부활시켰으며, 영태공주의 남편 무연기가 측천무후의 가문 출신(측천무후의 오빠 武元爽의 손자)이었기에 가능했다. 이를 통해 당나라 공주가 황릉에 매장되는 것을 ‘예’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주가 죽을 당시 남편과 합장할 수 없거나, 결혼하지 않았거나(금선공주), 남편이 죄를 지었거나(신성공주) 남편이 공주보다 늦게 죽었을 경우(회남공주·임천공주·난릉공주)와 남편의 정치적 지위가 아주 높았을 경우이다. 이를 통해 당나라 공주가 황릉에 매장되는 제도는 전통적으로 부인이 남편과 합장되는 예제와 공주가 아버지 무덤에 매장되는 특수한 예제를 절충한 것이다.

당나라 공주가 황릉에 매장되는 ‘예’에는 ‘예’라고 칭할 수 없는 공주의 묘장도 볼 수 있다. 고조의 딸 방릉공주는 처음에 두봉절에게 시집갔지만 이미 금실이 어긋났고 공경하지 않음이 손님 대하듯 하였다. 영휘 5

53 陳弱水(1997), 앞의 글, 232~233쪽 참조.

년⁽⁶⁵⁴⁾ 방릉대장공주(房陵大長公主)라고 봉호를 고치고 하란승가에게 시집갔다.⁵⁴ 방릉공주는 두봉절과 이혼한 후 하란승가에게 다시 시집갔으나 하란승가가 일찍 죽었다.⁵⁵ 하란승가는 권세있는 집안 출신도 아니었다. 공주가 남편 무덤에 묻히지 못했거나 부마가 공주 무덤으로 옮겨왔을 때 ‘예’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예종의 딸 양국공주와 식국공주 역시 두 번 결혼했으며, 두 번 결혼한 공주가 어떤 남편과 합장돼야 하는지는 공주의 상장제도와 관련한 문제가 되었다. 예종의 딸 식국공주는 먼저 설경에게 시집갔으나 설경은 일찍 죽었다. 설경의 묘지에는 “歸葬于萬泉之孤山, 瑩于孟仲之次, 禮也”⁵⁶라고 기록되어 있다. 설경은 아직 예종의 교릉이 완성 되기 전이라 배장할 수 없어서 선영(先塋)에 배장되었다.⁵⁷ 식국공주는 정효의에게 재가하였으며 정효의가 먼저 죽었다. 이 때문에 식국공주는 사후에 아버지 예종의 교릉에 배장되고 설경의 무덤에 합장되지 않았다. 장설(張說)이 식국공주를 위해 지은 묘지 중에 “不附不從, 古之道也”라고 한 것은 특별히 남편의 무덤에 묻히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 장설이 이 일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두고 설명한 것은 이러한 방법이 일반적인 예제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식국공주 묘지에 “窆窆之禮, 一如涼國長公主故事”라고 한 것은 양국공주 역시 재가하였는데, 공주가 죽었을 때 재가한 부마가 여전히 생존해 있었기 때문이다. 식국공주 묘지에 상례(常禮)에 부합한다고 말하지 않고 다만 양국공주의 배장 ‘예’와

54 周紹良·趙超(2001), 앞의 책 咸亨23, 201쪽.

55 『舊唐書』·『新唐書』에 賀蘭僧伽의 「父傳」·「祖傳」은 없다.

56 薛儼墓志·山西省考古研究所(2000), 『唐代薛儼墓發掘報告』, 北京: 科學出版社, 67쪽.

57 山西省 運城地區 萬榮縣 皇甫鄉 皇甫村에 위치하고 있다. 薛儼墓志·山西省考古研究所(2000), 위의 책, 1~2쪽.

같다고 말한 것은 그 상장이 예제에 어긋남을 설명한 것이다.

3) 당나라 후기 공주의 장지

당 숙종 이후에 죽은 공주는 한 명도 황릉에 매장되지 않았는데, 이는 공주가 황릉에 매장되는 제도가 폐지되었음을 의미한다. 묘지에 기록된 숙종 이후에 죽은 공주들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묘지에 기록된 당 후기 공주의 장지

編號	公主	父皇	葬年	駙馬	葬地
1	玉眞公主 ⁵⁸	睿宗	肅宗寶應元年(762) ⁵⁹	未嫁	萬年縣寧安里風樓原
2	和政公主 ⁶⁰	肅宗	代宗廣德二年(764)	柳潭	萬年縣義豐鄉銅人原
3	荊國公主 ⁶¹	肅宗	德宗貞元三年(787)	張清	咸陽附馬張清墓
4	紀國公主 ⁶²	肅宗	憲宗元和三年(808)	鄭市	京兆府長安縣細柳原駙馬墓

58 玉眞公主의 묘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묘지의 부분적 내용은 趙明誠, 『宋本金石錄』 卷27, 北京: 中華書局(1991), 636~637쪽과 『寶刻叢編』 卷8, 「京兆府中」, 232쪽 참조.

59 『宋本金石錄』, 637쪽과 『寶刻叢編』, 232쪽의 기록이며, 玉眞公主의 墓志는 公主가 숙종 원년에 사망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新唐書』, 「諸帝公主傳」, 3657쪽은 옥진공주가 寶應 시기에 사망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宋本金石錄』, 637쪽은 “사관(史官)이 보응연간에 사망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아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60 「和政公主神道碑」, 『全唐文』 卷344, 1543~1545쪽.

61 「大唐故荊國大長公主墓志銘」, 『唐代墓志匯編』 (下) 貞元12, 1845~1846쪽.

62 「大唐故紀國大長公主(李淑)墓志銘」은 吳鋼(2008), 『全唐文補遺』 第7輯, 西

編號	公主	父皇	葬年	駙馬	葬地
5	唐安公主 ⁶³	德宗	德宗興元元年(784)	未嫁 ⁶⁴	長安城東龍首原
6	宣都公主 ⁶⁵	德宗	德宗貞元十九年(803)	柳昱	萬年縣豐義鄉同人原
7	普安公主 ⁶⁶	順宗	宣宗大中五年(851)	鄭何	長安縣同樂鄉附馬鄭何葬地 ⁶⁷
8	文安公主 ⁶⁸	順宗 ⁶⁹	文宗大和二年(828)	未嫁	萬年縣崇道鄉洛女原
9	岐陽公主 ⁷⁰	憲宗	文宗開成三年(838)	社宗	萬年縣洪原鄉少陵原駙馬父葬地

安：三秦出版社，81~82쪽 참고. 기국공주 및 駙馬 鄭何의 墓志는 崔庚浩·王京陽, 「唐紀國大長公主及夫鄭何墓志合考」, 『碑林集刊』 第6輯, 64~70쪽 참조.

63 陳尙君(2005), 「故唐安公主墓志銘」, 『全唐文補遺』 卷54, 北京：中華書局, 659~660쪽.

64 『唐會要』에는 唐安公主가 韋宥에게 시집갔다고 기록했지만(65쪽) 불확실하며, 실제로는 “장차 秘書少監 韋宥에게 시집가려 했으나 아직 朱泚의 亂이 평정되지 못하여 城에 이르러 죽었다”. 『新唐書』, 3664쪽. 『新唐書』의 기록은 또한 唐安公主의 墓志로 증명되었다. 『全唐文補編』, 659쪽.

65 「唐故宜都公主墓志銘」, 『唐代墓志匯編續集』 貞元73, 787쪽.

66 吳鋼(2005), 「大唐故普安公主册贈梁國大長公主(李自虛)諡(下關)」, 『全唐文補遺』 第8輯, 西安：三秦出版社, 184~185쪽. 보안공주 및 그 부마 鄭何의 墓志는 李文英·師小群(2001), 「唐普安公主及其夫鄭何墓志合考」, 『陝西歷史博物館館刊』 第8輯, 西安：三秦出版社, 267~271쪽 참조.

67 普安公主 葬地의 구체적인 위치에 관해서는 墓志에 글이 빠져 있고 다만 그 부마의 근처에 장사지냈다고 기록되어 있다. 보안공주의 남편 鄭何의 장지를 살펴보면, 정하는 長安縣 同樂鄉의 先塋에 장사지냈다. 李文英·師小群(2001), 앞의 책, 268쪽. 다시 정하의 어머니 紀國公主와 아버지 鄭何의 장지를 살펴보면, 기국공주 부부는 長安의 細柳原에 장사지냈다. 李文英·師小群(2001), 앞의 책, 64~66쪽. 따라서 보안공주의 葬地는 당연히 長安縣 同樂鄉의 細柳原이 된다.

68 周紹良·趙超(2001), 앞의 책 大和11, 887~888쪽.

69 문안공주 묘지는 문안공주가 順宗의 열일곱번째 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唐代墓志匯編續集』, 887쪽. 『新唐書』 卷83, 「諸帝公主傳」, 3665쪽과 『唐會

編號	公主	父皇	葬年	駙馬	葬地
10	朗寧公主 ⁷¹	文宗	懿宗咸通八年(867)	未嫁	萬年縣崇道鄉夏侯村
11	平原公主 ⁷²	宣宗	懿宗咸通四年(863)	未嫁	萬年縣崇道鄉夏侯村
12	普康公主 ⁷³	懿宗	懿宗咸通七年(866)	未嫁	萬年縣澗川鄉尙傅村

표 3과 같이 숙종 이후 죽은 12명의 공주 중 6명은 결혼하지 않았으며, 그녀들의 장지는 각각 다음과 같다.

(1) 옥진공주

옥진공주(玉眞公主) 묘지의 전문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전 시기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숙종 연간에 풍서원(風棲原)에 묻혔다고 한다.⁷⁴ 『태평광기(太平廣記)』 권389에 의하면 “신룡 연간에 땅을 잘 살피는 승려 홍사(泓師)가 위안석(韋安石)과 잘 어울렸는데, 일찍이 위안석에게 이르기를 ‘제가 풍서원 근처의 한 곳을 보니 20여 묘(畝)가 용이 엮드렸다가 일어나는 형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장사지내면 반드시 세세토록 태좌(台座)가 될 수 있습니다.’”⁷⁵라고 했다. 풍서원은 만년현(萬年縣)에 위

要』卷6, 65쪽은 문안공주가 德宗의 일곱번째 딸이었다고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다.

70 『樊川文集』 第8, 「唐故岐陽公主墓志銘」,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24~127쪽; 『全唐文新編』 卷756, 8887~8888쪽.

71 『唐代墓志匯編續集』 咸通45, 「唐故朗寧公主墓志銘」, 1069쪽.

72 『唐代墓志匯編續集』 咸通15, 「故贈平原長公主墓志銘」, 1044쪽.

73 『唐代墓志匯編續集』 咸通39, 「故普康公主墓志銘」, 1065쪽.

74 『寶刻叢編』 卷8, 「復齋碑錄」, 232쪽에서 인용.

75 “神龍中, 相地者僧泓師, 與韋安石善, 嘗語安石曰 ‘貧道近於鳳棲原見一地, 可二十餘畝, 有龍起伏形勢, 葬於此地者, 必累世爲台座.’” 『太平廣記』 卷389

치하며, 풍수가 아주 좋아서 당대(唐代) 유명한 장지 가운데 한 곳이었다. 안진경(顔眞卿),⁷⁶ 안고경(顔杲卿),⁷⁷ 내시호군중위(內侍護軍中尉) 팽헌충(彭獻忠)⁷⁸의 할아버지가 모두 이곳에 묻혔으며 좌무위장군(左武衛將軍) 백도생(白道生),⁷⁹ 김남동천절도관찰사(劍南東川節度觀察使) 엄려(嚴礪),⁸⁰ 내시감(內侍監) 구사량(仇士良),⁸¹ 선종조재상(宣宗朝宰相) 영호도(令狐綯)⁸² 등도 이곳에 묻혔다. 그러나 풍서원이 당나라 황족의 장지가 아니었음에도 옥진공주가 이곳에 묻힌 것은 현종(玄宗) 말년의 정치투쟁에 그녀가 말려들었기 때문이다.⁸³

옥진공주는 어머니가 같은 현종의 친 여동생이다. 개원(開元) 및 천보(天寶) 초기에 많은 권세를 누렸으며, 정치적 지위 또한 매우 높았다. 안록산의 난 이후, 현종은 강요에 의해 양위(讓位)했고 옥진공주는 현종이 태상황(太上皇)이었을 당시 소수의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현종과 숙종 및 이보국(李輔國)이 서로 배척하는 가운데 옥진공주가 연루되었다. “현종이 태상황이 되어 흥경궁(興慶宮)에 머물 때 오랜 비가 잠시 멈추고

「韋安石」, 北京: 中華書局(1961), 3108쪽.

- 76 『全唐文』 卷341, 「秘書省著作郎夔州都督長史上護軍顔公神道碑」, 1528쪽; 『全唐文』 卷514, 「顔魯公行狀」, 2316쪽.
- 77 『全唐文』 卷341, 「攝常山郡太守衛尉卿兼御史中丞贈太子太保諡忠節京兆顔公神道碑銘」, 1532쪽.
- 78 『文苑英華』 卷932, 「內侍護軍中尉彭獻忠神道碑」, 4902쪽; 『全唐文』 卷644, 2890쪽.
- 79 『文苑英華』 卷908, 「左武衛將軍白公神道碑」, 4779쪽; 『全唐文』 卷371, 1666쪽.
- 80 「唐故劍南東州節度副大使知節度事管內支度營田觀察處置靜戎軍等使光祿大夫檢校尚書左外射使持節梓州諸軍事兼梓州刺史御史大夫鄭國公贈司空嚴公神道碑銘」, 『全唐文』 卷497, 2245~2246쪽.
- 81 「內侍省臨楚國公仇士良神道碑」, 『文苑英華』 卷932, 4905쪽.
- 82 「寔相國令狐公文」, 『全唐文』 卷782, 3622쪽.
- 83 丁放·袁行霈, 「玉眞公主考論—以其與盛唐詩壇的關係爲歸結」, 48쪽.

날이 맑아지자 친히 근정루(勤政樓)에 나아가니 누(樓) 아래의 상인들과 길가던 사람들이 기뻐하고 눈물흘리며 ‘태평천자(太平天子)를 뵈 수 있는 오늘을 다시 기약할 수 없네’라고 말하였다. 만세를 부르니 소리가 천지를 움직였다. 이에 숙종이 기뻐하지 않자 이보국이 거짓으로 꾸며 아뢰기를 ‘이는 모두 구선원(九仙媛: 옥진공주)·고력사(高力士)·진현예(陳玄禮)의 계략입니다’라고 말하고 황제의 조서를 사칭하여 서내(西內)로 태상항을 옮겨가게 했다. …… 이미 구선원·고력사·진현예는 오랫동안 먼 곳으로 떠돌고 있었다.”⁸⁴ 현종은 이에 충격을 받고 곧 죽었고 그 다음해 옥진공주도 세상을 떠났다.

아마 안록산의 난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황족의 장지에 들어갈 수 없어 이곳에 묻혔을 것이다.

(2) 당안공주

당안공주(唐安公主) 묘지에는 “遷神於長安城東龍首原, 詔京兆尹李齊運監護, 禮也.”⁸⁵ 龍首原, 也名龍首山, 位於京兆府長安縣, “在縣北一十里.”⁸⁶ 唐安公主卒于興元元年(784), 此時正值涇原兵變, 公主隨父皇德宗外逃, 三月“庚寅, 車駕次城固. 唐安公主薨, 上愛女, 悼惜之甚”⁸⁷이라고

84 “玄宗爲太上皇, 在興慶宮居, 久雨初晴, 幸勤政樓, 樓下市人及街中往來者, 喜且泫然曰: “不期今日再得見太平天子.” 傳呼萬歲, 聲動天地. 時肅宗不豫, 李輔國誣奏雲: “此皆九仙媛(玉真公主)·高力士·陳玄禮之異謀也.” 下矯詔遷太上皇於西內. …… 既而九仙媛力士·玄禮·長流遠惡處.” 『太平廣記』 卷188, 1409쪽.

85 陳尙君(2005), 앞의 글, 659쪽.

86 『元和郡縣圖志』 卷1, 「關內道」, 北京: 中華書局, 1983, 5쪽.

87 『舊唐書』 卷12, 「德宗記」(上), 341쪽.

기록되어 있다. 현재에 남아 있는 사료를 보면 기타 황실 구성원을 용수원(龍首原)에 장사지냈다는 기사는 보이지 않으나 당안공주의 묘지에는 이곳에 장사지낸 것을 ‘예’라고 했다. 또한 당안공주는 덕종이 사랑하던 딸이었다. 이런 이유로 용수원이 황가의 장지 중 한 곳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다.

(3) 문안공주, 낭녕공주, 평원공주

문안공주(文安公主), 낭녕공주(朗寧公主), 평원공주(平原公主)는 만년현 승도향(崇道鄉)에 장사지냈다. 만년현 승도향은 당나라 중후기의 매우 중요한 황실묘역 가운데 한 곳이었다.⁸⁸

(4) 보강공주

보강공주(普康公主)는 만년현 산천향(澗川鄉) 상전촌(尙傳村)에 장사지냈다. 만년현 산천향은 당나라 후기 중요한 황가의 장지 가운데 한 곳으로 이곳에는 선종(宣宗)의 아들 강왕(康王) 이문(李文)·현종(憲宗)과 정이 깊었던 왕비 최씨가 묻혔다.⁸⁹ 당나라 후기 결혼하지 않은 6명의 공주 중 정상적으로 묻힌 사람은 모두 황가의 장지에 묻혔다. 이 역시 당나라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죽은 경우 부모의 집안에 속한다는 전통적인 관념을 따른 것이다. 이외에 당나라 후기에 결혼한 공주 6명의 장지 상황은 다음과 같다.

88 尙民杰, 「長安城郊唐皇室墓及相關問題」, 408~409쪽.

89 尙民杰, 「長安城郊唐皇室墓及相關問題」, 415쪽.

(5) 숙종의 딸 담국공주

담국공주(郟國公主)의 묘지에는 “以貞元三年八月四日, 合祔于咸陽舊塋, 禮也”⁹⁰라고 기록되어 있다. 공주의 남편 장청(張淸)이 먼저 죽었고 공주는 죽은 후 장청의 묘에 합장되었다.

(6) 숙종의 딸 화정공주, 덕종의 딸 의도공주

화정공주(和政公主)는 류담(柳潭)에게 시집갔고 의도공주(宜都公主)는 화정공주의 아들 류옥(柳昱)에게 시집갔다. 화정공주의 묘지에는 “處空公主于萬年縣義豐之銅人原, 從理命也”⁹¹라고 기록되어 있다. 남편 류담이 먼저 죽었고, 화정공주가 사후에 류담의 조영(祖塋)에 들어가지 못하자 그녀의 신위를 만년현 의풍향(義豐鄉) 동인원(銅人原)에 옮겼다.⁹² 동인원은 당나라 황실 장지 가운데 한 곳이다.⁹³

화정공주가 시댁의 장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곳에 묻힌 것은 그녀가 당왕조에 기여한 정치적 공헌과 관련 있다. 『신당서』, 「화정공주전」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려 있다.

郭千仞이 반란을 일으키자 현종이 玄英樓에 나아가 항복하라고 타일렀지만 듣지 않았다. 柳潭이 張義童 등을 이끌고 죽을 각오로 싸우니 화정공주가 류담에게 轂弓을 주었다. 이에 류담이 적의 목 50급을 베어 반란을 평정했다.

阿布思의 처 隸掖廷이 황제의 연회에서 푸른색의 옷을 입고 노래를

90 「大唐故郟國大長公主墓志銘」, 『唐代墓志匯編』(下) 貞元12, 1845쪽.

91 「和政公主神道碑」, 『全唐文』卷344, 1545쪽.

92 「唐故宜都公主墓志銘」, 『唐代墓志匯編續集』貞元73, 787쪽.

93 尙民杰, 「長安城郊唐皇室墓及相關問題」, 412~413쪽.

불렀다. 화정공주가 황제에게 간하여 이르기를 “아포사는 참으로 逆人입니다. 아내가 황제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에 (황제가 말하기를) “죄가 없다. 群倡과 더불어 함께 있을 수 없다” 라고 말하고 그녀를 내보냈다. 저절로 군대가 튼튼해지고 재화가 쓰여지며, 공주께서 무역을 통해 千萬澹軍의 이익을 보았다. 황제께서 山陵에 이르자 또 마을에 천만이 들어갔다.

代宗이 즉위하고 사람들 사이의 이로움과 병폐, 국가성쇠와 관계된 일을 자주 말씀하시자 천자들이 嚮納하였다. 吐蕃이 수도를 침범하자 화정공주께서 남쪽으로 피란을 갔고 商於에서 도적의 무리를 만났다. 공주께서 禍福으로 타이르시자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노비가 되었다. …… 廣德연간에 토번이 재침입했을 때 공주께서 임신중이었는데 방비의 계책을 말하려 들어서자 류담이 극구 말렸다. 공주께서 “당신은 형제가 없습니까?” 라고 말하고 내전에 들어왔다. 다음날 아기를 낳다가 돌아가셨다.⁹⁴

화정공주의 특별한 정치적 지위로 인해 대종(代宗)은 그녀에 대해 “의(儀)·예(禮)를 평상의 등급보다 높여 부조하라”⁹⁵고 말하고 황가의 장지에 장사지내도록 했다.

덕종(德宗)의 딸 의도공주는 화정공주의 아들 류욱에게 시집갔고 류

94 “郭千仞反，玄宗禦玄英樓諭降之，不聽。潭率折冲張義童等殊死鬥，主穀弓授潭，潭手斬賊五十級，平之。” “阿布思之妻隸掖廷，帝宴，使衣綠衣爲倡。主諫曰：‘布思誠逆人，妻不容近至尊；無罪，不可與群倡處。’帝爲免出之。自兵興，財用耗，主以貿易取奇贏千萬澹軍。及帝山陵，又進邑入千萬。”；“代宗立，屢陳人間利病，國家盛衰事，天子嚮納。吐蕃犯京師，主避地南奔，次商於，遇群盜，主諭以禍福，皆稽顙願爲奴。…… 廣德時，吐蕃再入寇，主方妊，入語備邊計，潭固止，主曰：‘君獨無兄乎？’入見內殿。翌日，免乳而薨。” 『新唐書』卷83，「諸帝公主傳」，3661쪽.

95 「大唐故銀青光祿大夫行殿中次監駙馬都尉贈工部尚書河東柳府君墓誌銘」，「唐代墓志彙編續集」貞元78，791쪽.

육보다 먼저 죽었다. 류육의 묘지에는 정원 20년⁽⁸⁰⁴⁾ “公終于永興里第,……以其年冬十月旬有九日合葬宜都塋, 禮也”⁹⁶라고 기록되어 있다. 의도공주와 류육은 만년현 동인원에서 장사지내고 부모의 장지에 합장되었다.

(7) 숙종의 딸 기국공주 · 순종의 딸 보안공주

기국공주(紀國公主)는 정패(鄭陴)와 결혼했고 순종(順宗)의 딸 보안공주(普安公主)는 기국공주의 아들 정하(鄭何)와 결혼하였다. 기국공주의 묘지에는 “(子)少監駙馬(鄭何)痛殷創巨, 杖起成喪. 以(元和)三年七月二十九日, 哀奉裳帷. 合祔□□府長安縣細柳原先常侍之舊塋, 禮也”⁹⁷라고 기록되어 있다. 기국공주의 남편 정패는 공주보다 먼저 죽었고,⁹⁸ 공주는 정패의 묘에 합장되었다. 보안공주의 묘지는 결자가 있는데 남아 있는 글자를 보면 “以大中五年五(下闕約二十八字)尉府君之域, 禮也”⁹⁹라고 기록되어 있다. 정하의 장지에 대해서는 그 묘지에 보력 1년⁽⁸²⁵⁾ “歸葬于長安縣同樂鄉之先塋, 禮也”¹⁰⁰라고 기록되어 있다. 정패, 정하 부자 및 이들과 결혼한 공주들은 모두 장안현 동락향 세류원에 장사지냈고 세류원은 당나라 중후기의 중요한 황가의 장지 가운데 한 곳이었다.¹⁰¹

96 「唐故宜都公主墓志銘」, 『唐代墓志匯編續集』貞元73, 787쪽.

97 「大唐故紀國大長公主(李淑)墓誌銘」, 『全唐文補遺』第7輯, 81쪽.

98 鄭陴墓志, 崔庚浩·王京陽, 「唐紀國大長公主及夫鄭陴墓志合考」, 5쪽.

99 吳鋼(2005), 앞의 글, 185쪽.

100 李文英·師小群(2001), 앞의 글, 268쪽.

101 尙民杰은 細柳原이 玄宗 시기에 皇家의 중요 묘역 가운데 한 곳이며, 그 범위는 비교적 넓었다고 생각했다. 尙民杰, 「長安城郊唐皇室墓及相關問題」, 405~406쪽. 이밖에도 紀國公主와 鄭何의 장지에 따르면 이 묘역은 長安縣同樂鄉에까지 이어졌다. 『元和郡縣圖志』卷1 「長安縣」條에는 “細柳原是 長

(8) 헌종의 딸 기양공주

헌종(憲宗)의 딸 기양공주(岐陽公主)의 묘지에는 “以開成二年十一月某日薨于汝州長橋驛, …… 某年某月日祔葬于萬年縣緱原鄉少陵原尙書先塋, 禮也”¹⁰²라고 기록되어 있다. 기양공주의 남편 두종(杜宗)은 공주보다 늦게 죽었고 개성(開成 : 836~840) 초에 공부상서(工部尙書)와 판도지(判度支)를 지냈다. 그는 기양공주가 죽은 뒤에도 오래도록 사직하지 않았다.¹⁰³ 기양공주는 두종의 부친 두우(杜佑)의 장지에 묻혔다.

당나라 후기, 결혼한 공주가 시대의 선영 혹은 남편의 장지에 묻히는 것을 ‘예’를 지키는 것이라고 여겼으며, 이는 중국 전통 예교(禮敎)와 당나라 사람들의 기본관념이 서로 부합한 것이다.¹⁰⁴ 당나라 공주가 전기에 황릉에 매장되다가 후기에 남편 장지 혹은 남편의 선영에 묻힌 것은 안록산의 난 이후 당나라의 국력이 약해지고 재력이 떨어진 것과 관련이 있다.

헌종 이후, 공주뿐만 아니라 친왕(親王)도 황릉에 매장되는 것이 매우 드물었다.¹⁰⁵ 고조의 열다섯 번째 아들 궤왕(魏王) 이봉(李鳳)은 상원 2년

안현의 西南 33리에 있다. 다른 말로 一細柳이며, 周亞夫의 屯軍 장소가 아니다.(5쪽)”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장안현 세류원의 위치를 정확하게 가리킨다. 기국공주와 보안공주는 황실의 일원으로 이곳에 장사지내졌으며, 곧 이어 당나라 후기로 이어진다.

102 『樊川文集』 第8, 126쪽.

103 『舊唐書』 卷147, 「杜宗傳」, 3985쪽.

104 당나라 사람들의 관념에 대해서는 陳弱水(1997), 앞의 글, 229~230쪽 참조.

105 당나라 공주·황족이 황릉에 매장되는 제도의 興衰와 당나라 조정의 정치 정세·國力强弱의 밀접한 관계에 관해서는 尙民杰, 「長安城郊唐皇室墓及相關問題」, 『唐研究』 第9卷, 421~422쪽 참조. 황족이 황릉에 陪葬되는 것은 같은 글 418~420쪽 참조.

(675)에 장사지냈다. 그 묘지에는 “담당 관청에 예를 갖추게 하고 헌릉(獻陵)에 매장하도록 명했다. 견(絹) 2000단(段), 미속(米粟) 1000석(石)을 부조하고 동원비기를 내려 주었다. 장례일에 반검(班劍) 40인과 의장용 수레를 주고 장지에서 돌아왔다. 장례지내는 데 쓰인 비용은 관급(官給)에 적합하게 했고 힘써 후하게 했다” 고 기록되어 있다.¹⁰⁶

묘지의 기록을 살펴보면, ‘장례지내는 데 쓰인 비용’으로 많은 재물이 지출되어야 하는데, 안록산의 난 이후 당나라의 국력이 약해지고 경제가 절박해져서 이미 황릉에 매장되는 비용을 지출할 힘이 없었다. 그 다음으로 공주의 장지 변화는 당나라 후기 유교의 예교적 중요성이 새롭게 강조된 것과 관련이 있다.

당나라 후기 유교에 관해서 어떤 학자는 “비록 당나라 전기 유학의 발전상황과 전제정치의 발전은 부적합한 부분이 있었지만 통치체제의 전체 기능이 비교적 강화되고, 사상적 결합이 그다지 드러나지 않은 것에 연유한다. 그러나 당나라 후기는 곧 정치체제가 평형을 잃고 중앙집권의 통제력이 약화되어 유학이 적당한 역할 수행을 못 했으며, 사상적 결합이 날이 갈수록 드러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유학을 부흥시키고자 하는 열망을 드러냈다”¹⁰⁷는 의견을 제시했다.

당나라 후기, 이러한 유학 부흥의 대세 아래 공주를 포함한 부녀자들에 대한 예교의 요구가 더욱 높아졌다.¹⁰⁸ 공주도 전통 예교를 준수

106 “所司備禮，冊命陪葬獻陵。賻絹布二千段，米粟一千石，並賜東園秘器。葬日，給班劍四十人，羽葆鼓吹及儀仗，送至墓所往還。葬事所須，並宜官給，務從優厚。”「大唐故使持節青州諸軍事青州刺史上柱國贈司徒揚州大都督虢莊王(李鳳)墓志銘」，『全唐文補遺』第1輯，54쪽.

107 張躍(1994)，『唐代後期儒學』，上海：上海人民出版社，21쪽.

108 李志生(2003)，「試析經濟政策對中國古代婦女貞節的影響－兼談唐後期婦女貞

했고 남편 혹은 남편의 선조와 합장되기 시작했다. 또한 예교의 부흥은 공주의 생활에 영향력을 미치는 한 요인이 되었다.

4) 발해 정혜·정효공주의 배장

정혜공주의 묘지를 살펴보면 정혜공주는 대흠무 보력 4년(777: 당나라 대종 대력 12)에 죽었으며, 정효공주의 묘지에 의하면 정효공주는 대흠무 대흥 56년(792: 당나라 덕종 정원 8)에 죽었다. 이때 당나라 공주는 이미 황릉에 배장되지 않았는데 정혜공주, 정효공주는 황릉에 배장되었으며, 현종 이전의 당나라 공주가 배장되는 예를 따랐다.

또한 정혜공주 묘지에는 “陪葬于珍陵之西原, 禮也”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정효공주 묘지에는 “陪葬于染谷之西原, 禮也”라고 기록되어 있다. 앞에서 분석한 것처럼 당나라 전기, 공주가 황릉에 배장되는 제도는 부인이 남편과 합장되는 예제와 공주가 부황의 무덤에 배장되는 특수한 제도가 절충된 것이다. 당나라 공주가 황릉에 배장되는 것을 ‘예’라고 칭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공주가 죽을 당시 합장할 수 있는 남편이 없을 경우(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남편이 죄를 지었거나, 남편이 죽기 이전에 공주가 죽는 경우 등)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발해의 정혜·정효공주는 모두 남편보다 늦게 죽었다. 남편들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두 공주의 묘지에는 “誰謂夫智先化, 無終助政之謨”¹⁰⁹라고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추

節變化的意義, 鄧小南, 『唐宋女性與社會』(下),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888~890쪽.

109 王承禮(1979. 3), 앞의 글, 205쪽; 延邊朝鮮族自治州博物館(1982. 1), 앞의

측해보면, 정혜공주와 정효공주의 배장을 ‘예’라고 칭한 것은 이들의 남편이 먼저 배장되었기 때문이다. 정효공주묘의 발굴보고서에는 “용도(甬道: 묘의 가운데 길)와 묘실을 발굴할 때 31개의 인골을 발굴하였는데 감정 결과 두 명의 남녀 인골로 판정되었다. …… 발해에서 부부를 합장하는 풍속이 성행했던 것에 의하면……. 남자 뼈는 당연히 정효공주 남편의 뼈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실질적으로 정효공주묘는 정효공주 부부 2명의 합장묘이다”¹¹⁰라고 기록되어 있다. 한 번 결혼한 공주 또는 부마가 공주보다 먼저 죽은 당나라 공주의 황릉배장제도에 관해서는 아직 사료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발해 정효공주와 남편의 합장제도가 당나라 사료에서 빠진 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

정혜공주와 정효공주가 죽었을 때 그 부황인 대흙무가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에 두 공주가 배장된 능의 주인이 학계의 주요한 관심사였다. 정혜공주가 배장된 진릉(珍陵)의 주인에 관해서 학계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았지만 많은 학자들은 발해 제2대 왕 대무예(大武藝)의 능이라고 생각했다.¹¹¹ 만약 진릉의 주인이 확실히 정혜공주의 할아버지 대무예라면

글, 177쪽.

110 延邊朝鮮族自治州博物館(1982. 1), 앞의 글, 179쪽.

111 이것은 王健群에 의해 제시된 하나의 의견이다. 王健群, 「渤海貞惠公主墓碑考」, 214쪽. 王承禮는 1960년대 이전에 珍陵의 주인이 발해 3대왕 大欽茂라고 생각했다. 王承禮(1957), 「敦化六頂山渤海古墓群調查簡記」, 『吉林省文物工作通訊』; 王承禮, 『高句麗 渤海研究集成6·渤海卷(三)』, 247쪽; 王承禮(1961. 6), 「吉林敦化六頂山渤海古墓」, 『考古』, 301쪽 참조. 1970년대 이후, 王健群의 관점을 받아들여 珍陵이 大武藝의 陵이라고 생각했다. 王承禮(1979. 3), 앞의 글, 208쪽; 哈爾濱(1984), 『渤海簡史』, 黑龍江出版社, 40쪽; 王承禮(1985. 1), 「唐代渤海國〈貞孝公主墓志〉研究(下)」, 『博物館研究』, 64쪽; 「高句麗 渤海研究集成6·渤海卷(三)」, 312쪽. 魏國忠 등은 『渤海國史』에서 珍陵이 大武藝의 陵이라는 王承禮의 관점을 수용했다(427쪽). 근년

그 상장 예제는 당나라의 영태공주와 같은 것이다.¹¹² 『당회요』와 기타 사료를 보면 당나라 공주가 흔히 배장되는 곳은 아버지의 무덤이며, 자매가 형제의 무덤에 배장되는 예도 있다. 예를 들어 고조의 딸 장광공주(長廣公主), 장사공주(長沙公主), 형양공주(衡陽公主)는 태종의 소릉에 배장되었지만¹¹³ 공주가 할아버지의 무덤에 배장되는 경우는 당나라에서는 흔하지 않다. 영태공주는 고종의 건릉에 배장되었는데 이는 공주가 일찍 죽어 배장할 당시 아버지 중종이 아직 건재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배장에 관해서 묘지에는 “有製, 令所司備禮與故駙馬都尉合窆于奉天之北原, 陪葬乾陵, 禮也”¹¹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로 보아 영태공주는 할아버지 무덤에 배장된 것이며, 이는 당나라의 배장 예제와 부합하는 것이다. 영태공주의 배장 예제에 비취 정혜공주가 할아버지의 능에 배장된 것도 ‘예’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이다.

정효공주의 묘지에는 배장된 능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단지 “염곡(染谷)의 서원(西原)에 배장한다”라고만 기록되어 있다. 정효공주의 배장 대상에 관해 그 무덤의 발굴보고서는 “용두산(龍頭山)의 발해 고분군 중에는 아마 정효공주보다 신분이 더욱 높은 발해의 왕실귀족묘가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¹¹⁵ 배장된 대상은 명확히 지적하지 못했으며,

에 徐學毅는 珍陵이 정혜공주의 어머니라는 관점을 제시했다. 徐學毅(2003, 2), 「敦化六頂山“珍陵”新考」, 『北方文物』, 95~98쪽.

112 이러한 의견은 이미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었다. 王健群(1980), 앞의 글, 214쪽; 王承禮(1979, 3), 앞의 글, 208쪽.

113 『唐會要』卷21 「陪陵名位」, 413쪽. 昭陵에 배장된 사람으로는 衡陽公主의 남편 阿史那社爾·長廣公主의 남편 楊師道·長沙公主의 남편 豆盧[懷]讓이 있으며, 황릉에 배장된 당나라 공주 및 陪葬禮制를 살펴보면, 공주는 당연히 남편과 합장되었다.

114 周紹良(1992), 앞의 글, 『唐代墓志匯編』(上), 1059쪽.

또 다른 학자들은 백부 혹은 숙부라고 추정하였다.¹¹⁶ 그러나 이 두 사람으로 추정하는 것은 모두 당나라 제도와 서로 부합하지 않는데, 당나라에서는 공주가 기타 황실 사람의 무덤에 매장된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정효공주가 매장된 염곡의 주인에 관해서는 뤼지쭈(羅繼祖)의 견해가 더욱 합리적이다. 그는 염곡에 묻힌 사람이 정효공주의 백부라고 추측하는 견해는 불확실하며, “배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곧 황제가 되지 못한 왕을 매장한 것이니 마치 당나라의 소릉(昭陵)과 같다. 염곡은 대흙무의 능이 있는 곳이지만 대흙무가 아직 살아 있었기 때문에 무덤 이름을 붙일 수 없었고 염곡이라는 옛 이름을 사용하였을 것이다”¹¹⁷라고 생각했다. 기타 황실 사람들이 황제보다 먼저 무덤에 묻힌 경우는 당나라에 이미 선례가 있다. 예를 들어 장손황후가 태종보다 먼저 입장(入葬)된 후 능지(陵地)가 소릉이라고 불렸으며, 장손황후가 입장될 시기에는 이 능지를 아직 소릉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자치통감(資治通鑑)』 권194 당 태종 10년(636) 겨울 11월의 기록에 의하면 “帝復爲文刻之石, 稱…… 今因九嶷山爲陵, 鑿石之工才百餘人, 數十日而畢”¹¹⁸이라 하였다. 장손황후가 입장될 시기에 소릉은 구종산(九嶷山)이라고 불렸다.

정혜·정효공주가 황릉에 매장된 것으로 미루어보면 당나라 후기의 발해지역에서는 공주가 당나라 전기 공주와 마찬가지로 지위가 아주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중원지역에서는 안록산의 난 이후 공주들이 자신의 남편들의 장례형편을 따랐는데 발해 공주의 장례에는 아직 이와 같

115 延邊朝鮮族自治州博物館(1982. 1), 앞의 글, 180쪽.

116 王承禮, 「唐代渤海〈貞惠公主墓志〉和〈貞孝公主墓志〉的比較研究」, 183쪽.

117 羅繼祖(1983. 3), 앞의 글, 285쪽.

118 『資治通鑑』, 6122쪽.

은 영향이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중원지역에서는 유교와 남존여비의 질서체계를 중요시하는 사상이 시작됐지만 동북지역의 발해에는 아직 그러한 사상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2. 정효공주의 묘실배치에 관하여

안록산의 난 이전 서안지역의 당나라 무덤에는 엄격한 등급제도가 적용되고 있었다.¹¹⁹ 즉 묘실의 형제(形制), 관상(棺床)의 위치와 재료, 벽화의 내용과 위치는 모두 일정한 규범을 따랐다. 당나라 전기 공주의 묘장(墓葬)배치는 엄격하게 이러한 규제를 받았으며 후기의 공주묘, 즉 서안지역의 공주묘는 당나라 후기 묘장 규제의 일련의 변화를 드러낸다. 발해의 정효공주는 당나라 덕종 연간에 묻혔는데, 그 묘실배치는 당나라 전기 묘장의 특징과 후기 묘장의 변화를 융합하고 있으며, 그만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

1) 당나라 공주묘와 정효공주묘의 벽화 배치

당나라의 무덤벽화에 대해 어떤 학자는 “당나라 묘실벽화는 귀족문화에 속하는 것이고 당나라의 주류 문화 가운데 한 측면이며, 벽화의 형상은 당시의 전장제도(典章制度)·사회풍속·종교신앙·사상관념 등 문

119 齊東方(1990), 앞의 글, 286~310쪽; 「唐代的喪葬觀念習俗與禮儀制度」, 59~82쪽 참조.

화상화를 기록한 것이다. 벽화의 형상은 한편으로는 현존 문헌에 기재된 형상 해석과 관련된 것이며, 또 다른 측면에서는 문헌 중에 자세하게 서술하지 않은 것이나 공백으로 남은 부분의 증거와 보충에 대한 것으로서 ‘증사(証史)’·‘보사(補史)’·‘규사(糾史)’·‘사사(寫史)’ 등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¹²⁰고 말했다. 발해 정효공주의 묘실벽화¹²¹는 실제적으로 이러한 특징과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발해지역과 관련한 문자자료의 원본이 드물어 이 벽화는 더욱 중요하다.¹²² 정효공주의 묘실벽화는 발해의 사회풍속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정효공주묘의 묘실벽화에 대해 중국 학계는 화풍, 내용, 인물형상, 복식 등에 당나라 무덤 벽화의 양식이 들어 있다고 여겼다.¹²³ 이 결론은 정확한 것이지만 벽화를 더욱 분석해 들어가면 당나라 묘실벽화와 비교하여 차이점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당나라 벽화묘는 모두 129기이다.¹²⁴ 이 중 벽화

120 『唐代墓室壁畫研究』, 1쪽. 陝西唐墓壁畫의 주요 연구 성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宿白(1982. 2), 앞의 글; 賀梓城(1959. 8), 「唐墓壁畫」, 『文物』, 31~33쪽; 王仁波·何修齡·單暉(1984. 1), 「陝西唐墓壁畫之研究」(上)·(下), 39~52쪽과 『文博』(1984. 2), 44~55쪽에 나누어 기재; 李星明(2005), 앞의 글.

121 정효공주의 묘실벽화 및 그 연구에 대해서는 延邊朝鮮族自治州博物館(1982. 1), 앞의 글, 177~180쪽 참조; 池升元, 「渤海貞孝公主墓壁畫淺析」; 李殿福, 「唐代渤海貞孝公主墓壁畫與高句麗壁畫比較研究」, 『高句麗 渤海研究集成6·渤海卷』(三), 328~336쪽에 동일하게 수록.

122 정효공주묘의 묘실을 제외하고 정혜공주묘 등 소수의 발해 묘실 내부에서 출토된 벽화 잔편이 더 있다. 李殿福, 앞의 글, 333쪽 참조.

123 延邊朝鮮族自治州博物館(1982. 1), 앞의 글, 180쪽; 池升元, 앞의 글; 李殿福, 앞의 글, 331~332쪽, 335~336쪽에 수록.

124 李星明은 마감출판 전에 128기의 당나라 벽화묘를 통계했다. 李星明(2005), 앞의 글 부록 「唐代壁畫墓一覽表」, 409~426쪽. 2005년에 洛陽에서 2기(安國相王孺人唐氏墓·崔氏墓)의 당나라 벽화묘가 또다시 발굴되었다. 洛陽市

내용이 공개된 당나라 공주묘는 6기이다.¹²⁵ 이 6기 무덤과 발해 정효 공주묘의 묘실벽화 내용을 비교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당나라 공주묘와 발해 정효공주 묘의 벽화 내용

序列號	年代	墓主人	壁畫 主要內容				
			墓道	過洞	天障	前·後甬道	墓室
1	貞觀十七年(643)	長樂公主 ¹²⁶	東西壁：雲中車馬，儀仗隊 北壁：門樓	一(墓道北)，二(天井北)：門樓圖	一至四：拄儀刀的儀衛行列，內侍	一石門外：男侍一，二石門間：侍女	朱雀，天象
2	龍朔三年(663)	新城公主 ¹²⁷	東壁：門吏，前儀仗，鞍馬，擔子，後儀仗，門侍 西壁：門吏，前儀仗，牽馬，犢車，後儀仗，內侍 北壁：門樓，侍女	影作木構，頂平 碁一：男侍 二至五：侍女	一：6杆列戟架，侍衛 二至五：侍女	影作木構，侍女	影作木構，侍女

第二文物工作隊(2005-6), 「唐安國相王孺人唐氏·崔氏墓發掘簡報」, 『中原文物』, 19~36쪽. 나중에 洛陽師範學院·河洛文化國際研究中心(2007), 「洛陽考古集成·補編」, 北京：北京圖書館出版社, 393~411쪽에 수록.

- 125 「唐代墓室壁畫研究」에 의하면 高祖의 딸 淮南公主의 묘에도 벽화가 존재했다. 李星明(2005), 앞의 글, 413쪽. 다만 내용은 자세하지 않다.
- 126 昭陵博物館(1988, 3), 「唐昭陵長樂公主墓」, 『文博』, 10~30쪽. 長樂公主의 묘실 벽화는 昭陵博物館(2006), 『陝唐墓壁畫』, 北京：文物出版社, 36~45쪽 참조.
- 127 陝西省考古研究所·陝西歷史博物館·昭陵博物館(1997, 3), 「唐昭陵新城長公主墓發掘簡報」, 『考古與文物』, 3~38쪽; 陝西省考古研究所·陝西歷史博物館·禮泉縣昭陵博物館(2004), 『唐昭陵新城長公主墓發掘報告』, 北京：科學出版社. 新城公主墓의 묘실 벽화는 韓偉·張建林(1998), 『陝西新出土唐墓壁畫』, 重慶：重慶出版社, 3~62쪽; 周天遊(2002), 『新城·房陵·永泰公主

序 列 號	年 代	墓 主 人	壁畫 主要 內容				
			墓 道	過 洞	天 障	前·後甬 道	墓 室
3	咸亨四年 (673)	房陵公 主 ¹²⁸			三：侍女	前, 後甬 道：侍女	前, 後墓室 ：侍女
4	神龍二年 (706)	永泰公 主 ¹²⁹	東壁：儀仗武 士, 武士儀仗 隊, 胡人馬夫 西壁：存儀仗 武士	五：拾 簪子圖	一至四： 影作木構, 殘存人物 衣服色塊	前, 後：人 物	前, 後：影 作木構, 宮 年, 男侍, 北 壁東間似樂 隊
5	興元元年 (784)	唐安公 主 ¹³⁰				石門內, 外：男侍, 女侍	侍女, 男侍
6	貞元三年 (787)	鄴國公 主 ¹³¹		一, 二： 男侍	一, 二：牽 馬, 侍者, 侍女		東壁殘存伎 樂人
	唐德宗貞 元八年 (792)	貞孝公 主 ¹³²				門衛	侍衛, 內侍, 侍從, 西壁 繪樂伎

墓壁畫』, 北京：文物出版社, 16~43쪽; 『昭陵唐墓壁畫』, 60~95쪽 참조.

128 安崢地(1990. 1), 「唐房陵大長公主墓清理簡報」, 『文博』, 2~6쪽. 房陵公主의 묘실 벽화는 張鴻修(1995), 「中國唐墓壁畫集」(摹本), 廣州：嶺南美術出版社, 56~67쪽; 李國珍(1996), 「大唐壁畫」(摹本), 西安：陝西旅遊出版社, 3~5쪽; 『新城·房陵·永泰公主墓壁畫』, 44~61쪽 참조.

129 陝西省文物管理委員會(1964. 1), 「唐永泰公主墓發掘簡報」, 『文物』, 7~18쪽. 永泰公主의 묘실 벽화에 대해서는 『中國唐墓壁畫集』, 131~133쪽; 『大唐壁畫』, 15~26쪽; 『新城·房陵·永泰公主墓壁畫』, 62~70쪽 참조.

130 陳安利·馬詠鐘(1991. 9), 「西安王家塋唐代唐安公主墓」, 『文物』, 16~27쪽.

131 王仁波·何修齡·單暉(1984. 1), 앞의 글, 55쪽; 李星明(2005), 앞의 글, 90쪽.

표 4에서 보듯이, 어떤 측면에서 발해 정효공주묘의 벽화 배치는 당나라 공주의 벽화 규제와 뚜렷한 차이가 있다.

우선 벽화인물의 성별 및 배치된 위치를 보면, 발해의 정효공주묘와 당나라의 공주묘는 같지 않다. 정효공주묘의 벽화인물 전체는 남성이며,¹³³ 당나라 공주묘의 벽화에는 남녀 모두 그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정효공주묘의 벽화 중에 문지기는 용도(甬道) 뒤편의 동서벽에 위치하고 있으며, 묘실의 동·서벽에도 대칭되게 서 있는 시위(侍衛)가 1인씩 있다. 그러나 당나라 공주묘의 묘실 벽화 중에 시위와 무사(武士)는 모두 동(洞)을 지나 천장 앞에 있다. 용도와 묘실에는 시위와 무사의 형상이 보이지 않는다.

당나라 묘실벽화의 배치에 관해서 리싱밍[李星明]은 “당나라 초기, 경기(京畿: 수도 및 그 근방) 지역의 양식”, 즉 “당나라 초기 황실의 왕(王), 공(公), 대신(大臣), 고관(高官)의 묘장형제(墓葬形制)와 벽화 배치 방식은 일종의 경

132 延邊朝鮮族自治州博物館(1982. 1), 앞의 글, 177~178쪽.

133 池升元은 정효공주묘의 묘실벽화 가운데 樂伎와 內侍가 男裝한 여자라고 생각했으며, 이것이 唐代에 성행한 여자가 男裝하는 풍속과 일정한 관련이 있다고 여겼다. 「渤海貞孝公主墓壁畫淺析」, 『高句麗 渤海研究集成6·渤海卷』(三), 332쪽. 필자는 외모의 특징과 의복의 착용으로 묘실벽화의 인물의 특징을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풍속으로 보는 것에 찬성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묘실의 東西 벽의 남측에 그려진 서 있는 侍衛의 외모적 특징 및 착용한 의복(池升元은 남성이라고 생각했다)과 樂伎(池升元은 여성이라고 생각했다)는 서로 매우 비슷하다. 이외에도 唐代 안록산의 난(755~763) 이전에 여자가 男裝하는 풍속의 성행은 또한 여자가 男裝하는 도상에서도 고정된 밑그림이 있었다. 榮新江, 「女扮男裝-唐代前期婦女的性別意識」, 『唐宋女性與社會(下)』, 723~750쪽 참조. 그 외 吉林省地方志編纂委員會 編(1991), 「吉林省志」卷43 『文物志』,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203쪽에서도 세 樂伎가 한 폭의 男裝한 여인의 초상이라고 생각했다.

기지역의 보편적 유행이며, 등급이 엄격한 규범화된 묘장문화의 양식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리성명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당나라 초기 경기지역의 양식”은 당나라 초기를 거치면서 형성·발전했고 성당(盛唐) 시기에 연속되고 간략화되었으며, 당나라 중후기(숙종에서 당나라 말기까지)에 들어서 쇠약해졌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양식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다음과 같다.

벽화 내용은 墓葬 중에 분포되어 있고 묘장의 결구가 상징하는 宅院(뜰이 있는 주택)의 각 부분은 상호대응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墓道는 택원(혹은 宮苑)의 대문 밖을 상징한다. 동서 양쪽 벽에는 儀仗 行圖와 門吏 등을 그리며, 墓門의 上方(첫 번째 洞의 남쪽 출구를 지난 上方)에는 門樓圖(이미 벗겨져 있거나 아마 그리지 않은 것도 있다)를 그린다.

洞을 지나는 것은 廊을 지나는 것을 상징하고, 天障은 院落(뜰, 정원)을 상징한다. 墓道 근처의 洞을 지나면, 천장 동서 양벽에 儀衛 및 진열된 모습의 창과 창걸이 혹은 男侍를 그린다. 甬道 근처의 洞을 지나면, 천장은 집안의 깊숙한 곳에 접근했음을 표시하고 벽면에는 내시 혹은 太監, 시녀 혹은 궁녀를 그린다. 墓室은 주인이 생활하는 거실을 상징하는데, 네 벽에는 시녀 혹은 궁녀, 내시 혹은 태감, 伎樂과 舞女, 병풍화 등을 그린다.¹³⁴

당나라 후기에 이르러 이러한 특징들은 간략화되지만¹³⁵ “용도 근처

134 李星明(2005), 앞의 글, 56쪽.

135 예를 들어 李星明은 “초기 盛唐 벽화묘 가운데 묘주인의 신분지위를 나타내는 儀仗의 모습과 戟架를 진열한 것은 이미 중기 이후 晚唐 시기의 벽화묘 가운데 강조된 내용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李星明(2005), 앞의 글, 93쪽.

의 동(洞)을 지나면, 천장은 집안의 깊숙한 곳에 접근했음을 표시한다”는 특징은 변화되지 않았다. ‘내외유별(內外有別)’은 유교사회에서 성별우리의 두 줄기 가운데 하나인데, ‘당나라 초기 경기지역의 양식’이라는 것은 사실 ‘내(內: 부인)’, ‘외(外: 남편)’ 간의 관념이 묘장 공간의 형상으로 드러난 것이다. ‘내’, ‘외’의 관념은 선진(先秦)에서 기원하는데, 『주역·가인(周易·家人)』에 “여자는 집안에서 자리를 바르게 하며, 남자는 집 밖에서 자리를 바르게 한다. 남녀의 바름은 천지의 대의다”라고 하였다. ‘여자/내, 남자/외’라는 관념은 당연히 해야 할 직무의 내적 함의를 포함하며, 또한 당연히 있어야 할 공간적 의미를 포괄한다. ‘여자/내, 남자/외’라는 것에 대한 공간 구획은 설령 당나라 사람들이 송나라 사람 들처럼 그렇게 엄격하진 못했지만,¹³⁶ 당나라 사람의 저술에서 뚜렷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송씨 자매의 『여논어(女論語)』에는 여성에 대한 다음과 같은 요구가 나온다.

내외는 각각 자리를 달리하니, 남녀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담벽 밖을 몰래 내다보지 말며, 집안 뜰 밖을 나서지 말라. (『立身章』)

여자의 거처는 閨門이니, 어려서나 문 밖을 나서게 하라. (『訓男女章』)

136 鄧小南(2002), 「從考古資料發掘看唐宋時期女性在門戶內外的活動—以唐代吐魯番·宋代白沙墓葬的發掘資料為例」, 李小江, 『歷史·史學與性別』, 南京: 江蘇人民出版社, 119쪽; 鄧小南, 「“內外”之際與“秩序”格局: 兼談宋代士大夫對於《周易·家人》的闡發」, 『唐宋女性與社會』(上), 97~123쪽; 董佳貝(2007), 「唐人觀念與實踐中的“內外”之序」, 北京大學碩士研究生學位論文, 8~21쪽.

어떤 손님이 문 앞에 이르러도 집안에 家長이 없으면 마땅히 집안의 아이를 내보내 오신 곳을 물어야 한다. 손님이 만약 온화하다면 서로 통성명하며, 자신의 용모와 의관을 정리하고 큰 방으로 가서 머무르기를 청한다. 차를 끓여 건네고, 결례하지 말며, 성명을 묻고 찾아오신 용무를 묻는다. 돌아가시는 때를 기억해 두고 함께 대화하며, 손님이 돌아가시거든 걸음을 돌린다. (『待客章』)

여자가 방안에 있거든 집 뜰에 나서지 말며, 손님이 집안에 있거든 소리를 내지 말라. (『守節章』)¹³⁷

『여논어』는 남녀가 마땅히 각각 내외로 자리를 분별해야 함을 강조한다. 즉 어떤 손님이 문에 이르러도 남자 주인이 집안에 없을 때는 여자 스스로 접대해서는 안 되며, 집안의 어린아이를 내보내 오신 곳을 묻고 ‘내(內)’의 주부와 머물게 하는데, 당연히 가능하면 밖에서 온 남성의 얼굴을 바로 보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외공간의 구획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내실(內室) 경계 내의 도덕교육과 예를 차리는 행동은 알 수 없는 외부세계의 위험을 막아내는 안전장치를 제공하며, 여인이 만약 적당하지 못한 곳에 몸을 두면 사람들은 곧 그녀에게 순결한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¹³⁸고 하였다. 중국 전통사회에서 공간상 내외의 다름은 가족내 여성의 정결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137 載陶宗儀等 編(1988), 『女論語』, 『說郛三種』,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3291~3295쪽.

138 白馥蘭·江湄·鄧京力 譯, (2006), 『技術與性別: 晚期帝制中國的權力經緯』, 南京: 江蘇人民出版社, 110쪽.

당나라의 묘장에는 용도 근처의 동을 지나면, 천장은 집안의 깊숙한 곳에 접근했음을 표시했고 진열된 창을 그린 이후의 부분에 남녀시종을 많이 그렸으며, 기타 다른 남성은 없다.¹³⁹ ‘내외유별’의 이론에 근거하면 진열된 창을 그린 이후의 공간은 ‘내’에 속하며, 당나라 공주묘의 벽화 제작에 이런 점이 완벽하게 반영되었다. 속중 이후에 이르러 ‘당나라 초기 경기지역의 양식’은 간략화된 뒤의 당안공주묘와 담국공주묘이며, 여전히 진입 용도와 묘실에는 의장(儀仗)과 무사가 보이지 않는다.

정효공주묘의 벽화 배치를 보면, 이런 종류의 구획은 명확하지 않다. 즉, 용도 뒤편의 동서벽에는 머리에 투구를 쓰고, 몸에는 전포(戰袍)와 물고기 비늘 모양의 갑옷을 입고, 오른손에 철퇴를 쥐고, 왼손으로 검을 쥐고 있는 문위(門衛)를 그렸다. 묘실의 동서 양벽의 남쪽 편에는 왼손에 철퇴를 쥐고, 오른손에 검을 쥐고 있는 시위를 그렸다. 묘실 북벽에는 궁(弓), 요패궁(腰佩弓), 화살을 꿰어지고 있는 시종을 그렸다.¹⁴⁰ 묘실 동벽 중앙과 북쪽에는 물품을 받들고 있는 세 사람의 남시(男侍)를 그렸다. 정효공주묘의 묘실 벽화에는 여시(女侍)의 형상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이 묘의 이러한 배치와 성별의 비율은 당나라 시기 발해지역에서 전통적 유교에 대한 ‘내외유별’ 관념 및 묘장 가운데 ‘당나라 초기 경기지역의 양식’이 아직 완전하게 수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이런 측면에서 정효공주묘의 벽화 배치와 산서(山西)지역의 당나라 묘는 오히려 다소 비슷한 점이 있다. 산서 태원(太原) 지역에서는 7기의 당나라 벽화묘가 발굴정리되었다. 그 가운데 태원 남쪽 교외 금승촌(金

139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는 宿白(1982. 2), 앞의 글, 141쪽 참조.

140 貞孝公主墓의 묘실벽화 내용은 延邊朝鮮族自治州博物館(1982. 1), 앞의 글, 177~178쪽에서 인용.

勝村) 부근 5기의 묘는 확실한 연대가 없지만 그 특징이 태원 교외 지역의 동여장만세등봉원년(董茹庄萬歲登封元年 : 696) 조징(趙澄)의 묘와 서로 같은 점이 많은데, 이것은 묘의 조성 연대가 고종(高宗),¹⁴¹ 무주(武周) 및 그 전후 시기이기 때문이다.¹⁴² 즉, 태원 진원진(晉源鎮)에서 발견된 온신지(溫神智 : 上柱國, 吏部常侍)의 묘는 정확한 연대(開元18년 : 730)가 있다. 이들 7기 묘의 벽화 배치 상황은 표 5와 같다.

표 5 태원 진원진 발견 온신지 묘의 벽화 배치 상황

序列號	墓主人	墓室壁畫 ¹⁴³
1	趙澄墓 ¹⁴⁴	文武侍從, 男·女侍, 樹下男女老幼圖
2	金勝村第四號墓 ¹⁴⁵	佩劍持笏門衛, 侍女, 八扇屏風樹下褒衣人物(高士)圖
3	金勝村第五號墓 ¹⁴⁶	牛車和車夫, 馬夫牽馬和馮馮, 八扇屏風樹下褒衣人物圖
4	金勝村第六號墓 ¹⁴⁷	佩劍持笏門衛, 文史, 侍女, 樹(竹)下老人圖
5	金勝村焦化廠墓 ¹⁴⁸	執劍持笏門衛, 侍女, 執鞭胡人興騎, 馬, 樹下老人圖

141 發掘清理簡報推斷은 太原 金勝村 337호의 唐代 벽화묘의 연대를 高宗 시기라고 했다. 山西省考古研究所·太原市文物管理委員會(1990. 12), 「太原金勝村337號唐代壁畫墓」, 『文物』, 15쪽.

142 李星明은 金勝村의 4호묘·5호묘·6호묘·焦化廠 묘가 동일한 시기에 만들어졌으며, 武周 및 그 전후 시기라고 생각했다. 李星明(2005), 앞의 글, 111쪽.

143 묘실의 벽화 내용은 묘의 상부와 결구부분을 생략했다.

144 山西省人民政府文物管理委員會(1955), 「太原市西南郊新董茹村唐墓」, 『山西文物介紹』.

145 山西省文物管理委員會(1959. 9), 「太原南郊金勝村唐墓」, 『考古』, 473~474쪽.

146 山西省文物管理委員會(1959. 9), 위의 글, 476쪽.

147 山西省文物管理委員會(1959. 8), 「太原市金勝村第六號唐代壁畫墓」, 『文物』, 19~22쪽.

148 山西省考古研究所(1988. 12), 「太原市南郊唐代壁畫墓清理簡報」, 『文物』, 50~53쪽.

序列號	墓主人	墓室壁畫
6	金勝村 337號墓 ¹⁴⁹	佩劍持衛, 侍女, 女童, 樹下老翁圖
7	溫神智墓 ¹⁵⁰	佩劍持衛, 侍女群像, 牛車圖, 舂米圖, 六扇屏風樹下褒衣人物圖

표 5를 보면 진성촌 제5호묘를 제외하고 기타 6기의 묘실 벽화에는
은 균일하게 시위 혹은 시종(侍從), 마부(馬夫)와 수하노인도(樹下老人圖) 등이
그려져 있다. 어떤 학자는 묘실 남쪽 벽 아치형문 양쪽에 문위를 그린
것은 아마 묘도에 의장 관련 도상이 없어서이거나 묘장 규격이 너무 낮
아서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¹⁵¹ 정효공주는 공주의 신분으로 입장되었
는데, 벽화 배치의 어떤 측면은 오히려 산서 진성촌의 비교적 낮은 신
분의 묘장과 유사하며, 이것이 이 묘의 특수한 점이다.

2) 당나라 공주묘와 정효공주묘의 묘실 배치

서안지역의 당나라 묘장에는 관상과 기악의 배치에도 일정한 규범
이 있다. 묘실 규제에 관한 쑤바이(宿白)의 「서안지역의 당묘형제(西安地區
的唐墓形制)」¹⁵²에는 서안지역의 당 황실 구성원과 각급 관원의 묘장 결구
(磚室과 土洞), 평면과 묘실 치수 및 석곽, 관상 등의 설비와 등급이 상세하
게 설명되어 있다. 아울러 이런 배치의 서로 다른 특징에 의거해 서안지

149 山西省考古研究所·太原市文物管理委員會(1990. 12), 앞의 글, 11~15쪽.

150 李星明(2005), 앞의 글, 112~113쪽.

151 李星明(2005), 앞의 글, 112쪽.

152 宿白(1995. 12), 앞의 글, 41~50쪽. 서안지역의 唐墓 등급에 관해서는 齊東方(1990), 앞의 글, 286~310쪽 참조.

역의 당나라 묘의 형제를 4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여기에 우선 당나라 장락공주, 신성공주, 방릉공주, 영태공주, 당안공주묘와 발해의 정효공주묘의 묘실 형제를 표로 나타내보면 표 6과 같다.

표 6 당나라 공주묘와 발해 정효공주묘의 묘실 규제

墓主人	年代	墓室形制	墓室尺寸(單位:m)		石門	石棒	棺床	棺床位置	伎樂壁畫位置
長樂公主 ¹⁵³	643	弧方	4.2×4.2+?		√		√ (石)	墓室 西側	
新城公主 ¹⁵⁴	663	弧方	4.74×4.7+4.84		√		√ (石)	墓室 西壁	
房陵公主 ¹⁵⁵	673	弧方	前室 3.60× 3.54+4.44	後室 4.10× 4.16+5.20	√	√	√ (石)	墓室 西側	
永泰公主 ¹⁵⁶	706	弧方	前室 4.7×4.9+5.35	後室 5.3×5.45+5.5	√	√		後室 西側	主室北壁 東首
唐安公主 ¹⁵⁷	784	弧方	4.4×4.4+約3.35		√		√ (石)	墓室 西側	
郊國公主 ¹⁵⁸	787	弧方	不明		√		√ (磚)	墓室 西部	墓室東壁

153 昭陵博物館(1988. 3), 「唐昭陵長樂公主墓」, 11쪽.

154 陝西省考古研究所·陝西歷史博物館·昭陵博物館(1997. 3), 「唐昭陵新城長公主墓發掘簡報」, 4쪽.

155 安崢地(1990. 1), 「唐房陵大長公主墓清理簡報」, 2쪽; 劉向陽(2006), 앞의 글, 13쪽.

156 陝西省文物管理委員會(1964. 1), 앞의 글, 9쪽.

157 陳安利·馬詠鐘(1991. 9), 앞의 글, 16쪽; 宿白(1995. 12), 앞의 글, 43쪽注13.

158 王仁波·何修齡·單曄(1984. 1), 앞의 책(下), 55쪽; 李星明(2005), 앞의 글, 90쪽.

墓主人	年代	墓室形制	墓室尺寸(單位:m)	石門	石棒	棺床	棺床位置	伎樂壁畫位置
貞孝公主 ¹⁵⁹	792	長方	3.10×2.10+約3.40	√		√ (磚)	墓室中部	墓室西壁中·北部

표 6에 나열된 유형을 살펴보면 지금 알 수 있는 6기의 당나라 공주의 벽화묘는 3개의 등급으로 나눌 수 있다. 제1등급은 영태공주와 방릉공주묘이다. 이 두 기의 묘실 규격이 가장 높다. 쑤바이가 분류한 당나라 묘의 유형에 의하면 이 두 공주묘는 석곽을 갖춘 '1형 쌍실호방형전실묘(雙室弧方形須室墓)'에 속한다. 당제(唐制)에 의거해서 석곽·석관을 사용했는데, 모두 특별한 예우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육전』 권18 「사의서사의령(司儀署司儀令)」의 직조(職條)에는 “무릇 (5품 이상의) 장례에는 돌을 이용한 관곽(棺槨)의 사용을 금하고 그 관곽에 그림을 새기거나 그리는 것을 금하며, 문이나 창문·난간(欄干)에만 (장식을) 시행한다”고 기록되어 있다.¹⁶⁰ 방릉공주는 고조의 딸로 고종 함형 4년(673)에 사망했다. 방릉공주가 석곽을 갖추고 입장된 이유에 대한 기록은 역사서에 없다.¹⁶¹ 영태공주는 측천무후가 살해했는데, 중종이 “(영태공주의) 묘를 능으로 삼겠다”고 명령해 그 묘를 개장(改葬)했다. 쑤바이는 이에 대해 “묘를 능이라고 부른 것은 곧 능이 아니며, 마땅히 황제의 능에 비해 낮은 1등급이지만

159 延邊朝鮮族自治州博物館(1982, 1), 앞의 글, 176쪽.

160 廣池學園本, 365쪽. 이 항목은 『通典』卷45 「凶禮」7 「棺槨制」, 2299쪽 참조.

161 房陵公主의 묘가 石槨을 갖춘 것은 신분의 서열 때문이 아니다. 高祖의 열다섯 번째 아들 虢王鳳을 房陵公主의 사후 2년(675) 뒤에 장사지냈지만 묘실에서는 석곽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富平縣文化館·陝西省博物館·文物管理委員會(1977, 5), 「唐李鳳墓發掘簡報」, 『考古』, 313쪽.

신하의 품급 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조성한 것이다”라고 보았다.¹⁶²

기타 4기의 당나라 공주묘는 ‘II형 호방형전실묘(弧方形碑室墓)’에 속한다. II형 호방형전실묘 중에 “벼슬이 1~3품에 이른 묘는 마치 스스로 일급(一級)을 이룬 것 같아서 묘실이 약 4m²의 평방형이며, 당나라 척도로 환산하면 약 14척이다. 벼슬 2품 이상은 석관상, 석문을 사용할 수 있고, 3품 이상은 석문을 사용할 수 없다. 4품과 5품 벼슬의 묘실은 3.5m² 이하로 떨어지며, 당나라 치수로 환산하면 약 11척이다. 오직 전관상(碑棺床)으로만 지을 수 있다.¹⁶³ 표 5를 보면 장락공주와 신성공주, 당안공주는 상례(常禮)에 의거해 4m² 되는 전실묘(碑室墓)에 입장되었고 석관상, 석문을 사용했다. 담국공주묘는 묘실의 평면이 호방형(弧方形)을 이루고 있으며, 꼭대기 부분을 아치형으로 만들고, 묘실의 서쪽은 전(碑)으로 관상을 만들었으며, 용도는 묘실 남쪽벽의 동측에 위치한다. 용도와 묘실은 전으로 쌓아 결구했다. 이 묘는 묘도를 기울여 천장에 전을 쌓아 만든 호방형의 단실묘이다.¹⁶⁴ 비록 담국공주의 묘실 규모가 정확하지 않아도, 전관상을 사용한 것은 상제(常制)에 부합하지 않고, 그 묘장 규격도 공주 신분에는 낮은 것이다. 이것은 당나라 후기 묘장 형제(墓葬形制) 가운데 (직위의) 등급성분이 엷어진 것과 관계가 있다. 이 시기의 묘장형제와 묘 주인의 직위, 관품이 완전하게 서로 부합하지는 않았다.¹⁶⁵

발해 정효공주묘 역시 II형에 속한다. 다만 장방형의 전실묘(碑室墓)로

162 宿白(1995. 12), 앞의 글, 42쪽.

163 宿白(1995. 12), 앞의 글, 44쪽.

164 李星明(2005), 앞의 글, 90쪽.

165 李星明(2005), 앞의 글, 93쪽.

만들었기 때문에 묘장형제는 중원지역의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¹⁶⁶ 그 묘실 규격(3.10×2.10)에 대해서는 논할 것이 없지만 전상(磚床)의 배치 및 묘실벽화는 모두 알아볼 수 있으며, 정효공주묘의 규격과 ‘공주’라는 신분은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 그 묘장의 등급은 겨우 당나라의 4, 5품 관리의 규격에 해당한다. 당연히 정효공주묘의 묘장 규격은 또한 당나라 후기 묘장형제 중 (직위의) 등급성분이 떨어지는 흐름을 따르고 있는 것 같다.¹⁶⁷

이 밖에 표 5를 보면, 정효공주묘의 기악도(伎樂圖) 배치 역시 당나라의 영태·담국 두 공주묘와 차이가 있다. 영태공주묘의 기악도는 주실(主室)의 북벽 동편 윗부분에 위치하며, 관상은 후실(後室)의 서측에 위치한다. 담국공주묘의 기악도는 묘실의 동벽에 위치하며, 관상은 묘실의 서측에 위치한다. 두 공주묘의 기악도와 관상의 분포는 서안지역의 당나라 벽화묘의 기본배치와 서로 부합하며, ‘(절대적으로 많은 당나라) 벽화묘에서 기악도상이 묘실의 중앙에 위치하는 것은 상당히 통일되고 고정된 것이다. 기악도가 묘실의 동벽 혹은 북벽의 동측에 균등하게 그려져 있다. 침대의 관상을 상징하는 서벽 바로 옆은 동서(東西)에 대응하는 관계를 형성한다. 이것은 바로 생전에 귀족의 거실에서 주인이 침상

166 劉曉東(1996. 2), 『渤海墓葬的類型與演變』, 『北方文物』, 36~37쪽 참조; 李蜀蕾(2005. 1), 『渤海墓葬類型演變再探討』, 『北方文物』, 42~43쪽.

167 王俠은 정효공주묘와 당나라 揚州大都督府司馬 吳賁의 처 韓氏 묘를 비교하고 정효공주묘의 묘실과 中原의 전실묘는 일치하지만 정치·경제 등의 여러 조건으로 인해 중원 귀족묘의 크기가 비교적 작아졌다고 생각했다. 王俠, 「貞惠公主墓與貞孝公主墓」, 『學習與探索』, 142쪽. 吳賁의 처 韓氏는 겨우 4품의 등급으로 入葬되었지만 묘실의 크기(3.18×2.6+?)는 오히려 정효공주묘(3.10×2.10)보다 컸다. 宿白(1995. 12), 앞의 글, 45쪽.

위에 앉아 정면을 향하여 표현된 악무(樂舞)의 정경을 감상하는 일종의 입체공간 성질의 시뮬레이션이다.¹⁶⁸ 발해 정효공주묘에서 기악도는 묘실의 서벽 중앙과 북측에 위치하며, 관상은 묘실의 중앙부분에 위치한다. 이런 배치는 서안지역의 묘장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섬서지역에서 발견된 당나라 묘 중에는 기악도가 발견된 게 없으며, 또한 온신지 묘에서 벽돌을 쌓아 만든 관상이 서벽에 잇닿아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¹⁶⁹ 몇 기의 묘장 중 관상이 위치하는 곳도 서안지역과 다르다. 태원 초화창(焦化廟) 묘에는 묘실 동서 양측에 각각 벽돌을 쌓아 만든 장방형의 석상이 있고,¹⁷⁰ 기타 몇 기의 묘(조정의 묘,¹⁷¹ 진성촌 3호¹⁷²-6호 당나라 묘,¹⁷³ 337호의 당나라 벽화묘¹⁷⁴)에는 관상이 모두 묘실의 북측에 위치한다.

당나라 공주묘를 묘실형제 및 내부 배치를 정효공주묘와 비교하면 정효공주묘는 비록 당나라 제도를 이어받은 것이 많지만 전부 모방한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우리들은 또 다른 측면으로 묘실벽화의 '당나라 초기 경기양식' 과 서안지역의 당묘형제의 영향, 확산된 범위와 정도를 볼 수 있다.

168 李星明(2005), 앞의 글, 168쪽.

169 李星明(2005), 앞의 글, 112쪽.

170 山西省考古研究所(1988, 12), 앞의 글, 50쪽.

171 山西省人民政府文物管理委員會(1955), 앞의 글.

172 山西省文物管理委員會(1960, 1), 「太原南郊金勝村三號唐墓」, 『考古』, 37쪽.

173 山西省文物管理委員會(1959, 8), 앞의 글, 19쪽.

174 山西省考古研究所·太原市文物管理委員會(1990, 12), 앞의 글, 11쪽.

3. 덧붙이는 말

발해문화의 전승에 대해 동아시아 각국과 러시아는 각자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 학자들은 발해와 중국 중원문화와의 연관관계를 근본적으로 부인한다. 한 러시아 학자는 일찍이 “중국인의 의식 형태와 문화는 만리장성을 넘지 못했다”고 하였다.¹⁷⁵ 그리고 일본의 몇몇 학자들은 더욱 광범위하게 고대와 중세 시기의 중앙아시아 역사를 연구하였는데, 예를 들어 니시지마 사다오(西嶋定生)는 ‘동아시아의 세계화’를 말하였다. 그는 “동아시아 세계는 중국문명의 발생과 발전이 그 기초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이 문화권의 4대 요소는 한자문화, 유교, 율령제, 불교이다.¹⁷⁶ 또 다른 일본인 학자 호리 도시카스(堀敏一) 역시, “수당(隋唐)시대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그 주위의 위성과 같은 각 민족의 군주국가가 중국에 조공하였다”고 하였다.¹⁷⁷ 당나라 시대의 발해, 신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 혹은 지역은 모두 이러한 이유로 당나라 문화를 흡수하면서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 때문에 중국 대륙의 발해역사 연구에서 ‘당화(唐化)’는 항상 출현하는 단어이다.¹⁷⁸ 발해의 ‘당화’는 성당의 문명과 ‘헌상(憲象: 천문관측)’의

175 E·И·杰烈維揚科(1987), 「黑龍江沿岸的部落」, 林樹山·姚鳳 譯,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4쪽.

176 西嶋定生, 『東亞世界的形成』, 高明士 譯·劉俊文(1993), 「日本學者研究中國史論著選譯」第二卷, 北京: 中華書局, 88~103쪽.

177 「隋唐帝國與東亞」, 7쪽.

178 예를 들어 魏國忠 등이 쓴 『渤海國史』에는 ‘唐化’라는 단어가 자주 나타나는 데 429·431·451·463·464·479쪽 등에 보인다. 또한 제2장 제3절의 제2부분에는 “事唐恭謹 全面唐化”라는 제목을 달았다(103쪽). 다른 몇몇 학자들은 ‘唐化’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學習唐朝 爲立國之本”이라고 했

178 동북아 관계사의 성격

중원전장제도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인 것을 가리킨다. 문왕 대흙무 등은 문화교육을 중시하고, 중원문명을 갈구하여 발해지역이 문명예지의 국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 이는 적극적으로 학습하고 모방한 결과이다. 당 개원 26년(738), 발해왕 대흙무는 사절단을 당나라에 보내어 각종 전적(典籍)을 초록(抄錄)하게 하였다. 발해 사절단은 『당예(唐禮)』 및 『삼국지(三國志)』, 『진서(晉書)』, 『36국춘추(三十六國春秋)』를 구해 베꼈다.¹⁷⁹ 또한 몇몇 학생들을 (당나라) 수도의 태학(太學)에 보내어, 고금의 제도를 익히고 알게 했다.¹⁸⁰ 적어도 발해 상류층 사람들은 한자를 사용하였고 유교와 불교를 신봉했다. 이러한 내용은 정혜·정효 두 공주 무덤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정혜·정효 두 공주 묘비는 한자로 적혀 있으며, 문장의 곳곳에는 유가적인 사상이 충만해 있다.¹⁸¹ 정혜·정효공주 묘비는 모두 대흙무의 존호를 ‘대흥보력효감금륜성법대왕(大興寶歷孝感金輪聖法大王)’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여기서 ‘금륜(金輪)’과 ‘성법(聖法)’은 불교식 용어이다. 대흙무의 이 존호는 당나라 측천무후가 사용한 것을 모방한 듯하다.¹⁸² 또한 정효공주묘 위쪽에 탑을 건립하여 평범한 건축을 대신한 것은 불교가 발해에 전파된 것을 증명한다.¹⁸³ 이밖에도 발해의 통

다. 如王俠, 「貞惠公主墓與貞孝公主墓」, 142쪽.

179 『唐會要』卷36, 「華夷請經史」, 667쪽.

180 『新唐書』卷219, 「北狄·渤海」, 6182쪽.

181 王承禮(1985. 1), 앞의 글(上)·(中)·(下); 鄒秀玉, 「貞孝公主墓志反映出的儒家思想」.

182 武則天은 “金輪聖神皇帝,” “慈氏越古金輪聖神皇帝,” “越古金輪聖神皇帝,” “天册金輪聖神皇帝”라고 號를 덧붙였다. 『舊唐書』卷6 「則天皇帝傳」, 123~124쪽; 『新唐書』卷4 「則天皇后傳」, 93~95쪽.

183 王承禮(1985), 앞의 글(下), 55쪽. 발해의 불교 및 그 전파에 관해서는 『渤海國史』, 440~450쪽; 方學鳳(1986. 4), 「渤海以舊國·中京·東京爲王都

치기구는 당왕조의 제도를 모방하였다.¹⁸⁴

발해가 당나라 문화를 적극적으로 흡수하였는데, 그 정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정혜·정효 두 공주의 묘의 묘장형제에 대해 살펴보면 정혜공주는 당 대종 연간(777)에 묻혔으나 묘는 거칠게 쌓아올린 석실봉토분(속칭 大型石室墓)이다.¹⁸⁵ 이것과 당나라 공주의 전실묘(磚室墓)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종류의 묘장 형식은 고구려 등의 문화적 영향을 받은 것이다.¹⁸⁶ 또한 정효공주의 묘는 그녀의 배장, 무덤벽화의 배치, 관상, 기악도의 위치 등 모두 당나라 공주의 묘와 일정한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중국의 몇몇 학자들은 정혜·정효공주의 묘지문자를 통해 발해사회가 유교의 사상적 영향을 수

時期的佛教試探, 『延邊大學學報』, 126~130쪽; 何明, 「淺談唐代渤海의 佛教」, 『高句麗渤海研究集成5·渤海卷』(二), 64~68쪽 참조. 불교가 어디를 통해 발해에 傳入되었는가에 관해서는 중국과 다른 국가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중국 학자들은 중국의 중원지역을 통해 전입되었다고 생각하며, 한국과 북한의 학자들은 발해 불교가 고구려의 불교를 직접 계승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朱榮憲, 「渤海文化」, 郭素美, 「朝鮮建國以來的渤海國史研究」, 226쪽; 宋基豪, 「渤海佛教的發展過程及其特徵」, 李東源 譯, 楊志軍 (2001), 『東北亞考古資料譯文集』(高句麗·渤海專號), 哈爾濱: 北京文物雜誌社, 209쪽.

184 『渤海國史』附錄「渤海與唐三省六部對照表」, 607쪽.

185 孫秉根(1994), 「渤海墓葬의 類型與分期」,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漢唐與邊疆考古研究』, 北京: 科學出版社, 205·208쪽. 정상부분을 거칠게 번갈아 쌓은 석실봉토묘는 발해 왕실귀족의 묘장형제 가운데 하나이며, 발해의 초기부터 후기까지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鄭永振(1984. 2), 「渤海墓葬研究」, 『黑龍江文物叢刊』, 나중에 『高句麗渤海研究集成6·渤海卷』(三), 238·240쪽에 수록.

186 劉曉東은 고구려 적석묘의 영향을 강조했다. 劉曉東, 「渤海墓葬의 類型與演變」, 35쪽. 李蜀蕾는 고구려와 옥저문화의 영향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했다. 李蜀蕾, 「渤海墓葬類型演變再探討」, 42쪽.

용했다고 지적한다.¹⁸⁷ 그러나 정효공주묘의 묘실벽화의 배치를 놓고 보면 유교가 강조하는 내·외의 관념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는 유가 사상이 실제적으로 운용되는 과정에서 중원과 발해지역에 아직은 일정한 거리가 있음을 말해준다. 이를 통해 필자는 당나라 문화가 발해에 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하지만,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니시지마 사다오가 강조한 “공통성이 결코 민족 특수성을 없애지는 못하였다”¹⁸⁸는 관점이 우리를 지도해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187 王承禮(1985. 1), 앞의 글, 『博物館研究』, 57~60쪽; 『高句麗渤海研究集成 6·渤海卷(三)』, 308~310쪽; 「中國東北의渤海國與東北亞」, 334~335쪽. 魏國忠 등은 『渤海國史』에서 王承禮의 관점을 수용했다(423쪽).

188 劉俊文(1993), 앞의 글, 92쪽.

「서안지역의 당대 상장양식을 통해 본 발해 정혜공주와 정효공주묘」에 대한 토론

임상선 (동북아역사재단)

발표자의 글은 당과 발해의 묘장(墓葬), 특히 양국의 공주묘를 비교한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발표자는 서안지구 당대 공주묘의 장례형식, 가령 매장지점, 묘장형제, 묘실 배치 등을 설명하고, 이것과 발해의 정혜·정효 공주의 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당과 발해의 공주묘가 여러 점에서 비슷하고, 발해 정혜·정효공주묘의 묘장형제가 주로 중원의 제도에 근거한 것이지만, 몇가지 점에서는 중원과 발해지역에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당대 공주묘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받았다.

발표문을 읽어가는 가운데 느꼈던 몇가지 의문점과 함께 논평자의 의견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발표자의 설명을 부탁드린다.

첫째, 발해 공주묘의 배장은 당조 공주가 황릉에 배장되는 예제에서 기원한 것이며, 정혜공주는 그 남편(부마)이 먼저 조부인 무왕(武王)의 능(珍陵)에 배장되고 부왕인 문왕이 생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왕의 능에 배장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정효공주는 왜 조부의 능에 배장되지 않았으며, 정혜·정효 두 공주의 묘지에 부마의 출신에 대한 기술이 없는 이유는 무

엇인지 궁금하다.

둘째, 발해 정효공주묘는 그 묘실 배치가 당 전기 묘장의 특징과 후기 묘장의 변화를 융합하고, 아울러 자신의 특징, 즉 발해 나름의 ‘민족 특질’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민족 특질’은 당과 발해 간 문화적 차이가 ‘전체 속의 세부적인 특징’이 아니라 ‘별개의 본질적 특징’이라고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 가령 『신·구당서(新·舊唐書)』 「발해전(渤海傳)」은 고구려 주민의 일부가 나라가 멸망하고 당의 영주(營州) 지방에 옮겨와 있다가, 거란(契丹)의 반란을 기회로 말갈족(靺鞨族)과 함께 동쪽으로 이동하여 진국(震國, 혹은 振國)을 건국하였다고 전한다. 또한 ‘風俗與高麗及契丹同(舊唐書)’이라거나, ‘餘俗與高麗契丹略等(新唐書)’이라고 하므로, 당과 발해는 ‘별개의 울타리를 가진 독립된 국가’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셋째, 발표문에서는 규범상 정해진 장지에 매장되거나 부모에 매장되는 것을 ‘예’라 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장례절차가 법도에 맞고 예의를 갖추었다는 의미에서 ‘예’라고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가령, 중종의 딸 영태공주 묘지에 “帝追贈, 以禮改葬, 號墓爲陵”이라 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넷째, 발표문에서 아쉬운 점은 발해사 연구동향을 중국 학계 중심으로만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발해사 연구는 발표문에서 언급하였듯이 동아시아 각국과 러시아가 각각의 인식을 하고 있고, 동아시아에서는 중국 이외에 남북한이 연구논문, 연구자수 그리고 연구성과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 학계의 연구와는 상당히 다른 측면에서 발해사를 연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남북한 학계의 연구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덧붙여, 향후의 발해사 연구 시각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발해사는 국가나 연구자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많다. 발표문에서 다루고 있는

공주묘를 비롯한 발해의 문화에 대해서도 대략 말갈문화설, 고구려문화설, 당조문화설, 해문화설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학문 외적인 의도나 선입관에 사로잡히지 말고 발해국이 존속한 시기, 발해인의 입장에서 발해를 주체적으로 바라보아야 온전한 발해의 역사가 규명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려와 요·금·원
관계사의 특징

김 당 택 (전남대학교 역사교육과)

동북아역사재단

50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머리말

고려왕조가 존속한 기간 동안(918~1392) 중국에는 북방민족이 세운 나라들이 대륙을 점하였다. 거란(契丹)이 요(遼, 916~1125)를, 여진(女眞)이 금(金, 1115~1233)을, 그리고 몽골이 원(元, 1206~1368)을 세워 중국을 지배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고려의 대외관계도 주로 이들을 상대로 전개되었다. 물론 고려 초에는 오대(五代)와 송(宋), 고려 말에는 명(明)이 존재하였으므로 고려는 이들 국가와 관계를 맺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대나 명과의 접촉 기간은 극히 짧았으며, 송의 경우 요와 금에 밀려 고려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고려의 대외관계사는 일제식민주의 사학자들에 의해 많이 연구되었다. 고려에 대한 외국의 영향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원의 정치적 간섭에 대한 그들의 연구가 비정상적이라고 할 만큼 방대하였던 것이, 그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한편 해방 이후 고려의 대외관계사 연구는 한때 침체를 면치 못하였다. 한국의 학자들이 이를 외면하였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국제화라는 시대조류에 편승한 때문인지는 몰

1 이기백(1974), 「개요」, 『한국사』 8, 국사편찬위원회, 1쪽.

라도, 대외관계사 연구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 연구들은 주로 고려 태조의 대거란정책이나 요의 침입에 주목하였다. 고려와 금의 관계에서는 윤관의 여진정벌이나 9성의 위치 등이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고려와 원에 대해서는 몽골의 침입과 고려의 항전이 주된 연구 주제였다.

고려와 요·금·원의 관계사를 언급하는 것은 고려시대 대외관계 전반을 다루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한 만큼 이 글에서 고려와 요·금·원 관계사의 구체적인 사실 모두를 언급할 수는 없다. 이는 필자의 능력에 벽찰 뿐만 아니라 변잡스러울 가능성도 크다.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개별적인 주제들을 천착하기보다는 개괄적인 검토를 통해 고려와 요·금·원 관계사의 특징을 알아보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2. 고려와 요

고려는 건국 이후 줄곧 거란과 긴장관계를 유지하였다. 발해의 멸망으로 거란과 국경을 접하게 된 고려로서는 불가피한 일이었다. 이러한 양국의 관계는 송의 건국과 더불어 더욱 악화되었다. 송과의 연계를 의심한 요로부터 고려는 3차례에 걸쳐 대규모의 침입을 당한 것이다. 이후 고려는 요에 조공하고, 요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송과 간헐적으로 통교하였다. 송의 선진문화를 수용하고, 송을 이용하여 요를 견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1) 고려 초의 동북아 정세

고려가 건국할(918) 무렵 중국에서는 당이 망하고(907) 다섯 왕조, 즉 후량(後梁)·후당(後唐)·후진(後晉)·후한(後漢)·후주(後周)가 잇따라 교체되었다. 그리고 주변지역에서는 오(吳)·월(越)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분립하였다. 이른바 오대(五代, 907~960)가 시작된 것이다. 이 시기에 오늘날의 만주지방에서는 거란족의 야율아보기(耶律阿保機)가 부족을 통일하고 거란을 세웠다(916).

고려 태조는 거란과 평화적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는 다분히 후백제를 의식한 조치였다. 후백제가 거란에 사신을 파견하여 우호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려는 발해장군 신덕(申德)이 고려에 투항한 사실을 거란에 통보하기도 하였다(925).² 팽창하는 거란을 자극하기보다는 모든 군사 역량을 후삼국 통일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하였던 듯하다.³

그러나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키자(926), 고려는 거란보다는 후당과의 외교에 주력하였다. 고려 태조는 후당이 자신을 고려왕으로 책봉하자, 이제까지 사용해 왔던 독자적인 연호인 천수(天授)를 사용하지 않고, 후당의 장흥(長興) 연호를 사용하였다. 발해의 멸망으로 거란과 국경을 접하게 된 고려는 후당을 끌어들이어 거란을 견제하려 하였던 듯하다. 고려는 이를 위해 원교근공(遠交近攻) 정책을 추진하였다.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는 이후 후진(936~946)과 빈번하게 교류하였다.

2 한규철(1994), 『발해의 대외관계사』, 신서원, 150쪽.

3 정해은(2006), 『고려시대 군사전략』,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7쪽.

후진의 천복(天福) 연호를 사용한 것(938, 태조 21)은 그러한 사실을 입증해 준다. 그리고 고려인들 가운데는 후진에 유학한 인물들이 적지 않았다. 이는 후진에 유학하던 도중 거란의 포로가 된 최광윤(崔光胤)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양국 간의 통교에서 후진보다는 고려가 더 적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⁴ 거란을 견제하는 데 후진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후진 역시 고려로부터 군사적 도움을 기대하였던 듯하다. 일찍이 거란의 도움을 받아 후진을 세운 석경당(石敬瑭)은, 그에 대한 대가로 거란에 신하의 예를 취하고 북경 근방의 연운16주(燕雲十六州)를 넘겨주었다. 이로 인해 거란은 중국에 국가를 세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반면, 후진은 이를 되찾기 위해 거란과 끊임없이 갈등을 빚었다.

942년(태조 25) 거란은 고려에 사신을 파견하여 낙타 50필을 바쳤다. 고려가 후진의 연호를 사용하는 등, 자신들과 대립하고 있는 후진과 고려가 밀착되어 갔기 때문에 이를 막아보려는 의도였던 것 같다. 그러나 고려 태조는 거란이 발해를 까닭 없이 멸망시켰음을 지적하고, 이런 무도한 나라와는 교빙할 수 없다면서, 그 사신을 섬으로 귀양 보내고 낙타는 만부교(萬夫橋) 밑에 붙들어 매어 굶어죽게 하였다. 거란에 적대적인 후진 등 중국 국가와 발해의 유민을 의식한 행동이었다고 생각된다.⁵ 거란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거란에 적의를 품은 이들의 도움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후진은 거란과 전쟁을 시작하였으며, 발해의 유민들은 발해부흥운동을 일으켜, 후일 정안국(定安國)으로 이름을 바꾼 후발

4 이기백(1960), 「고려 초기 오대와의 관계」, 『한국문화연구원논총』 1; 이기백(1990), 『고려귀족사회의 형성』, 일조각, 133쪽.

5 한규철(1994), 앞의 책, 234~235쪽.

해를 세웠다. 태조가 발해의 유민 일부가 망명해 오자 이들을 적극 받아들여 토지와 가옥을 지급하고, 그 세자인 대광현(大光顯)에게는 왕계(王繼)라는 성명을 주고 종적(宗籍)에 넣어 조상에 대한 제사를 받들게 한 까닭도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거란은 후진을 멸망시키고, 나라 이름을 요로 바꾸었다(947). 그러나 후일 다시 거란이라고 일컫는 등, 국호로 요와 거란을 번갈아 사용하였다.⁶

요에 대한 태조의 강경책은 후대의 여러 국왕에게 그대로 계승되었다. 혜종은 후진과 통교하여 요를 견제하려 하였으며, 정종은 요의 침입에 대비하여 광군(光軍) 30만을 조직하기도 하였다(947, 정종 2). 이러한 고려와 요의 대립은 후주의 뒤를 이어 송이 건국함에 이르러(960) 더욱 심각해졌다. 송이 5대의 분열을 극복하고 중국을 통일하자, 고려는 사신을 보내 조공하고 송의 연호를 사용하였다(962, 광종 13). 고려가 송과 친선외교를 추진한 것은 정치적으로는 요와 여진을 견제하려는 것이었고, 문화적으로는 송의 선진문화를 수입하려는 것이었다. 송 역시 고려와 통하여 요와 여진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⁷

송은 후진이 요에 패어준 연운16주를 되찾기 위해 요를 공격하였다가 대패한 후, 다시 공격할 기회를 엿보면서 고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하였다. 어린 성종(聖宗)이 요의 황제로 즉위하자, 송은 다시 요에 대한 원정군을 일으키면서 고려에 원병을 요청하였다(985). 고려는 출병을

6 거란의 국호는 태조 때는 종족명을 그대로 사용하여 ‘대거란’이라 하였다가 태종 때 ‘대요’로 고쳤고, 聖宗 때 ‘대거란’으로 환원하였다가 道宗 때 다시 ‘대요’라고 하였다. 한편 『고려사』에는 요보다는 거란이라는 국호가 훨씬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허인욱(2007), 「『고려사』 세가 중 거란(요) 관계 기사 역주(1)」, 『한국중세사연구』 22, 282~283쪽.

7 이병도(1961), 『한국사』 중세편, 을유문화사, 392~393쪽.

거부하였다. 부질없이 요와 전단을 여는 것은 무모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⁸

송에 대한 공격을 목표로 하고 있던 요는 송에 앞서 고려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요는 고려 정토(征討) 준비 작업으로 고려 북쪽에 위치한 여진족을 공격하고, 이어 발해의 유민들이 압록강 중류 지역에 세운 후 발해, 즉 정안국을 멸망시켰다(985). 이 지역은 중국과의 해상교통이 매우 발달한 곳으로 바다로 송과 통하였다. 특히 정안국은 송의 제의를 받아들여 요를 협격하려는 움직임을 드러냈었다.⁹

2) 요의 침입

요는 소손녕(蕭孫寧, 恒德)을 사령관으로 하여 고려에 침입하였다(993, 고려 성종 12). 소손녕은 신라의 땅에서 일어난 고려가 자신들의 소유지인 고구려 땅을 침식하고 있으며, 자신들과 경계를 접하고 있으면서 바다 건너 송을 섬기고 있다는 점을 침략 이유로 들었다. 그리고 땅을 떼어 바치고 조공하면 무사할 것이라고 하였다. 고려 조정은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항복하자는 의견과 서경 이북의 땅을 떼어주자는 할지론(割地論) 등이 제기되었다. 성종(成宗)은 할지론을 따르려다, 서희(徐熙)가 그들과 승부를 겨루어 볼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자 그의 의견을 수용하였다. 서희는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임을 분명히 하고, 요의 수도인 동경(東京)도 고구려의 영토였다고 소손녕의 주장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고

8 김상기(1961), 『고려시대사』, 동국문화사, 75쪽.

9 박용운(2008), 『고려시대사』 수정·증보판, 일지사, 370쪽.

려가 요와 통하지 않은 것은 압록강 동쪽 주변을 여진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만일 여진을 쫓아내 도로가 통하면 조공하겠다고 하였다.¹⁰ 요의 침입 이유가 고려와 송의 교빙관계를 고려와 요의 그것으로 하려는 데 있음을 간파한 서희는, 고려와 요 사이에 국교가 통하지 않은 것을 여진의 탓으로 돌린 것이다.¹¹

고려는 송과의 통교를 끊고 요와 우호관계를 맺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요의 군대가 철수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소손녕으로부터는 고려가 청천강 이북에서 압록강 이남에 이르는 280리 지역의 땅을 개척하는데 동의하는 글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서희는 조공로(朝貢路)를 닦는다는 구실 아래, 군사를 이끌고 종래 여진의 거주지역에 흥화진(興化鎭), 용주(龍州), 통주(通州), 철주(鐵州), 귀주(龜州), 곽주(郭州) 등 6개의 성을 쌓았다. 이 6개의 성을 후대의 역사가들은 ‘강동6주(江東六州)’라고 부르고 있다.¹² 이로써 청천강 이북으로부터 압록강 이남의 280리에 이르는 지역이 고려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고려는 요에 대해 형식적인 사대(事大)의 예를 취하는 대신 강동6주를 확보하는 실리를 얻은 것이다.¹³

고려는 요에 사대의 예를 취하면서도 송과의 통교를 단절하지 않았다. 목종 때는 두세 차례 사신을 파견하여 요의 방해로 통교가 여의치 못함을 알리고, 송에 국경지대에 군대를 주둔시켜 요를 견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물론 이러한 고려의 대송제휴정책은 성공을 거둘 수 없었다. 송은 요와의 싸움에서 거듭 패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응하지 못하였

10 『고려사』 94, 「서희전」.

11 김상기(1959a), 「단구와의 항쟁」, 『국사상의 제문제』 2, 국사편찬위원회, 127쪽.

12 이병도(1956), 『국사대관』, 보문각, 195쪽.

13 박현서(1974), 「북방민족과의 항쟁」,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268쪽.

던 것이다.¹⁴ 특히 1004년에는 요와 ‘단연(澶淵)의 맹약’을 맺기에 이르렀다. 이 맹약은 송을 형으로, 그리고 요를 동생으로 한 반면, 송은 매년 10만냥과 비단 20만필의 세폐(歲幣)를 요에 바치는 것이었다. 송은 명분을, 요는 실리를 취한 셈이다. 그러나 요는 고려와 송의 관계에 여전히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강동6주의 전략적 가치를 깨닫게 되면서, 이의 반환을 고려에 요구하였다. 동여진 공략을 위해서는 이 지역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이다.¹⁵ 고려는 강동6주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요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여기에 불만을 품은 요 성종(聖宗)은 강조(康兆)가 정변을 일으켜 목종(穆宗)을 폐하고 현종(顯宗)을 옹립한 것을 계기로, 강조의 죄를 묻는다는 점을 내세워 자신이 직접 군대를 끌고 침입하였다(1010, 현종 1). 하지만 이것은 구실에 불과하였다. 강조에 대한 문죄를 위해 요의 황제가 직접 40만이나 되는 대군을 거느리고 고려를 침입하였다는 것은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 고려와 송의 통교를 철저히 차단하고 강동6주를 탈환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 같다.¹⁶

요군은 개경으로 진격을 서둘러 서북지방의 성들을 미처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개경을 함락시킨 그들은 보급로의 차단을 두려워하였다.¹⁷ 아울러 송이나 여진으로부터의 공격에도 대비해야 하였을 것이다. 송과의 연계를 꺼려 고려를 침입한 만큼, 후방을 비워둔 채 고려와의 전쟁에 전념할 수 없었다. 이에 요는 고려의 화전 제의를 받아들

14 김상기(1961), 앞의 책, 96~97쪽.

15 이용범(1977), 「고려와 거란과의 관계」, 『동양학』 7, 47~48쪽.

16 김상기(1959a), 앞의 글, 137~138쪽.

17 이병도(1956), 앞의 책, 192쪽.

여, 현종의 입조(入朝)를 조건으로 물러갔다.

이후 요는 현종의 입조와 강동6주의 반환을 누차 요구하였다. 이 두 가지의 요구가 실현되지 않자 인질로 잡아간 하공진(河拱辰)을 죽여 불만을 표시하는 한편, 강동6주 지역의 보주(保州)와 선주(宣州)에 성을 쌓아 고려를 침입하기 위한 군사기지로 활용하였다(1014).¹⁸ 이 시기에 고려가 송에 사신을 파견하여 교빙을 요청하고 송의 연호를 사용하자, 요는 다시 침입하였다(1018, 현종 9). 이때 소배압(蕭排押, 소손녕의 형)이 거느린 요군은 개경 가까이까지 진격하였다가 실패를 예감하고 퇴각하였는데, 귀주에서 강감찬(姜邯贊)의 공격을 받아 거의 전멸되다시피 하였다. 침략군 10만 중 살아간 자가 겨우 수천명밖에 안 되는 고려의 대승리였다. 이것이 유명한 귀주대첩이다. 이후 고려와 요 사이에는 강화가 이루어져 평화관계가 유지되었다(1019, 현종 10).

요와 강화가 이루어진 후에도 고려의 관리들 가운데 요에 대한 강경론을 주장하는 인물들이 있었다. 현종 때는 요에서 반란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요를 치자는 논의가 있었으며, 덕종(德宗, 1031~1034) 때도 일부 관리들에 의해 요에 대한 출병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요에 대처하기 위해 압록강 입구부터 동으로 영흥(永興)에 이르는, 길이가 1000여 리로 흔히 천리장성이라고 불리는 장성을 쌓기 시작하였다. 요에 대한 출병은 온건론자들의 반대 때문에 실현되지 않았으나, 고려의 대요 강경책은 양국 간 마찰을 불러일으켜 덕종 때 요가 정주(靜州)를 침입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대요 강경론을 주장한 인물들은 대체로 국왕의 측근들로, 이들은 대외관계를 이용하여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였다. 고려와

18 김상기(1961), 앞의 책, 113쪽.

요 사이의 긴장관계가 왕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¹⁹

3. 고려와 금

요가 쇠퇴할 무렵 고려의 북쪽에서는 여진이 흥기하였다.

그들은 한때 고려에 의해 정벌되기도 하였다. 고려의 숙종과 예종이 왕권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의도 아래 여진정벌을 단행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여진족은 곧 부족을 통일하고 금을 세웠다. 금은 고려에 군신관계를 강요하는 한편 송을 멸망시켜 중국을 차지하였다. 고려는 금으로부터 책봉을 받고 그들의 연호를 사용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1) 숙종·예종대의 여진정벌

고려시대의 여진족은 함경도 방면과 압록강 방면에 거주하였다. 이들은 고려에 의탁하기도 하고 침략을 하기도 하였다. 고려는 이들에 대해 응징과 회유를 함께하는 은위병용정책(恩威并用政策)을 펴나갔다.²⁰ 태조 때부터 여진족의 침범에 대비하여 군대를 파견해 변경을 지키게 하

19 김당택(2007), 「고려 현종·덕종대 대거란관계를 둘러싼 관리들 간의 갈등」, 『역사학연구』.

20 김상기(1959b), 「여진 관계의 시말과 윤관의 북정」, 『국사상의 제문제』 4, 국사편찬위원회 ; 김상기(1974), 「금의 시조」, 『동방사논총』, 서울대학교 출판부, 467~470쪽.

였으며, 해구 행위를 하던 동여진을 겨냥해서는 각지에 수군을 설치하였다. 현종(1009~1031) 때부터 나타나는 도부서(都部署)는 이를 통할하던 기관이었다.²¹ 고려가 천리장성을 오늘날의 동해안 도련포(都連浦, 廣浦)까지 연장한 것은(1055, 문종 9) 여진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여진족은 고려와 큰 갈등을 빚지는 않았다. 『금사(金史)』에 금의 시조가 고려에서 왔다고 기록되었는가 하면, 후일 동여진이 9성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면서(1109, 고려 예종 4) “우리 조종(祖宗)은 대방(大邦, 고려)에서 나왔다” 고 한 것을 보면, 그들은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인식하고 있었던 듯하다. 금의 태조 아골타(阿骨打, 아쿠타)가 고려에 형제의 맹약을 맺자고 요구하면서 보낸 국서(1117, 예종 12) 가운데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생각하여 정성껏 섬겼다”는 기록이 보이기 때문이다.²² 따라서 여진족 가운데는 원주지에 살면서 고려에 공물을 바치고 관직을 받은 향화인(向化人), 고려로 이주하여 온 투화인(投化人)이 적지 않았다. 이에 고려는 여진족 추장이 의탁해 오면 무산계(武散階)나 향직(鄉職) 등의 직계를 내려주고, 의탁해 온 여진인들에게는 가옥과 토지를 주어 그들의 생활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나 변경을 방비하는 군대에 편입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공물을 바칠 경우에는 회사품(廻賜品)을 후하게 내렸다. 그리고 여진의 거주지에 기미주(驪縉州) 정책을 시행하였다. 기미주는 고려에 귀순한 여진 촌락에 이름을 내려주고 여진 추장을 도령(都領)에 임명하여 다스리게 하는, 귀순 여진인의 자치주와 같은 것이었다. 이것은 요에 대한 사대관계와 대비되는 고려 중심의 주변 종족에 대한 포용정책

21 박용운(2008), 『고려시대사』 수정·증보판, 378쪽.

22 김상기(1974), 앞의 글, 274~288쪽.

이었다.²³

그러나 완안(完顔)이라는 부족에서 오아속(烏雅束, 우야수)이라는 추장이 나타나 여진족 전체가 통일되어 가는 새로운 기운이 일어나 정세가 변하였다. 오아속은 군대를 파견하여 이미 고려에 복속하고 있던 여진 부락을 경략하고, 고려에 의탁하려는 여진인을 추격하여 막았다. 이에 고려 숙종(肅宗)은 임간(林幹)을 보내 치게 하였다. 그러나 실패하고 돌아오자(1104, 숙종 9) 윤관(尹瓘)을 파견하여 싸우게 하였다. 그 역시 패배함으로써 정주(定州) 이북의 여진 부락은 모두 오아속의 통치 아래 들어갔다.

윤관은 패전 이유로 적은 기병인데 이군은 보병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에 고려는 기병인 신기군(神騎軍)과 보병인 신보군(神步軍), 승려로 조직된 항마군(降魔軍)을 포함한 별무반(別武班)을 조직하였다. 그리하여 예종 때에 윤관을 원수, 오연충(吳延寵)을 부원수로 삼아 다시 여진을 정벌토록 하였다(1107, 예종 2). 윤관은 여진을 공파하여 그 지역에 함주(咸州) 등의 성을 쌓고, 남쪽의 민을 옮긴 후 돌아왔다. 이른바 윤관의 9성이 그것이다. 그러나 멀리 떨어진 9성을 방비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오아속도 9성을 돌려줄 것을 애원하였으므로, 고려는 그들의 조공을 조건으로 9성을 돌려주었다(1109, 예종 4).

숙종·예종 대의 여진정벌은 많은 문신들의 반대 속에 이루어졌다. 숙종의 여진정벌에는 최사추(崔思詵) 등이 반대하였으며 예종 때는 김인존(金仁存) 등이 반대하였다. 간관(諫官)들은 여진정벌의 총사령관인 윤관을 “망령되게 명분 없는 군사를 일으켰다”고 탄핵하였다. 실제로 당시 여진과의 관계는 전쟁을 일으킬 만큼 심각하지 않았다. 여진은 자기

23 윤용혁(2007), 「대외항쟁사」, 『고려시대사의 길잡이』, 일지사, 238쪽.

의 부족이 고려에 의탁하는 것을 막는 정도였으며, 예종이 즉위함에 이르러서는 사신을 보내오는 등 싸울 뜻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기도 하였던 것이다. 특히 윤관의 9성 설치에 대해서는 여진정벌에 참여한 인물들마저도 반대하였다. 사실 9성의 설치가 꼭 필요하였던 것도 아니었다. 9성을 설치한 다음해에 그곳을 여진에 돌려준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여진정벌이 단행되고 9성이 설치된 것은 당시의 정치상황과 무관하지 않았다.

숙종은 11세인 조카 헌종(獻宗, 1094~1095)을 제거하고 왕위에 올랐는데 그 과정에서 관리들, 특히 문신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숙종은 군사적 기반을 강화하고, 전시체제를 이용하여 관리들을 장악할 필요성을 느꼈다. 여진정벌은 이를 위해 시도된 것이었다. 별무반의 징발 대상에 재상의 자손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별무반이 숙종의 시위를 담당했던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한편 예종이 여진정벌을 단행하고 9성을 설치한 것도 숙종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예종의 즉위 직후 국왕의 명령이 문신 관리들에 의해 무시되는 등 국왕의 권위는 여지없이 추락하고 있었다. 자신들에 대한 숙종의 견제에 불만을 품었던 문신들은 예종이 즉위하자 그와의 관계에서 기선을 제압하려 하였던 것이다. 이에 예종은 국왕에 대한 문신들의 지나친 간섭은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여진정벌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9성이 설치된 것은 이를 통해 전시체제를 유지하려는 예종의 의도 때문이었다. 9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군사작전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결국 숙종·예종대의 여진정벌은 전시체제의 유지를 통해 국왕의 권위를 높이고, 나아가 문신들을 장악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었다.²⁴

2) 조공 · 책봉관계의 성립

오아속을 이은 그의 아우 아골타는 금을 건국하고 스스로 황제라고 칭하였다(1115). 고려의 여진정벌이 그들의 통일을 추진시킨 셈이다. 아골타는 곧 요에 대한 군사행동을 개시하였다. 금의 공격을 받은 요는 고려에 구원병을 요청하였다. 고려의 예종은 관리들을 소집하여 이 문제를 논의하였다. 대부분의 관리들이 출병을 찬성한 가운데 척준경(拓俊京)과 김부식(金富軾)은 그들 사이의 분쟁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였다(1115, 예종 10).

금이 요를 격파하는 등 세력을 떨치자, 송은 금과 손잡고 요가 차지한 연운16주를 되찾으려고 하였다. 그리고 고려에도 후원을 부탁하였다. 고려는 금의 야만성을 지적하면서 송이 금과 연합하여 요를 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한편 금과 송의 공격을 받아 전세가 불리해진 요는, 그들이 일찍이 여진이 송과 통교하는 길을 끊기 위해 쌓은 전략상 요충지인 보주를 접수하라고 고려에 통보한 후 철수하였다(1117, 예종 12). 자신들과 금의 전쟁에 고려를 끌어들이려는 계책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고려는 보주를 점령하여 의주로 고치고, 방어사(防禦使)를 두어 국방상의 요충지로 삼았다. 아울러 요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요와의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종결지었다.

한편 금은 “형인 대여진 금국황제가 아우인 고려국왕에게 서신을 보낸다(兄大女眞金國皇帝 致書于弟高麗國王)”는 글로 시작하는 문서를 고려에 보

24 김당택(2000), 「고려 숙종 · 예종대의 여진정벌」, 『동아시아 역사의 환류』, 지식산업사.

내, 서로 형제관계를 맺고 화친하자는 내용의 제의를 하였다(1117, 예종 12). 김부의(金富儀)는 한(漢)이 흉노에, 당이 돌궐에 대하여 혹은 속국으로 칭하고 혹은 공주를 시집보낸 사실 등을 들어, 금의 요구를 들어주어 국가를 보전하는 것이 옳은 방책이라고 건의하였다. 그러나 예종과 고위관리들은 이를 무시하고, 대답을 유보함으로써 금의 제의를 묵살하였다.²⁵

송과 함께 요를 협공하여 멸망시킨 금은 고려에 군신관계를 강요하였다(1125, 인종 3). 금에 보내는 국서를 ‘표(表)’라고 하고 고려를 ‘신(臣)’으로 칭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금으로서는 요를 멸망시킨 마당에 더 이상 요를 의식하여 고려에 유화정책을 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던 듯하다. 고려의 관리들은 이 요구를 무례한 것이라며 분개하였으나 당시 정치의 실권을 쥐고 있던 이자겸(李資謙)은 금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고려는 금에 사신을 파견하여 신하라 칭하고 표를 올림으로써(稱臣上表) 군신관계를 성립시켰다. 이에 따라 고려는 금의 침략을 받지 않았다. 이자겸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는,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는 비난이 일반적인 가운데 고려의 현실적인 선택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²⁶

금은 요를 멸망시킨 여세를 몰아 도리어 자신에게 협력한 송을 쳤다. 송은 사신을 고려에 보내 위급함을 알리고 금에 대한 협공을 요구하였다(1126, 인종 4). 그러나 고려는 이미 금에 대해 사대의 예를 갖추기

25 김상기(1959c), 「고려와 금·송과의 관계」, 『국사상의 제문제』 5, 국사편찬위원회; 김상기(1974), 앞의 책, 570~571쪽.

26 박한남(1995), 「(고려의) 거란 및 금과의 통교」, 『신편 한국사』 15, 국사편찬위원회, 345~347쪽.

로 결정한 직후였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흥망을 걸고 송을 지원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금이 강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과연 금은 송을 쳐서 금을 백부(伯父)로 하고 송을 조카로 하는 숙질(叔侄)관계를 맺더니, 이듬해에는 송의 서울인 변경(汴京)을 함락시키고 휘종과 새로운 황제 흠종(欽宗)을 잡아가는 이른바 ‘정강(靖康)의 변(變)’을 일으켰다(1127, 인종 5). 이로써 송은 망하고, 그 일부가 양자강 이남으로 피신하여 명맥을 유지하였다.²⁷

중국을 차지한 금은 보주 문제를 들어 또다시 고려를 압박하였다. 자신들이 보주를 할양한 데 대해 고려가 감사를 표시해야 하며, 아울러 속국으로서 갖추어야 할 충성을 서약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고려의 인종(仁宗)은 금으로부터 책봉을 받고 금의 연호를 사용하는 등 금에 대해 충성을 맹세함으로써 이 문제를 매듭지었다(1142, 인종 20).²⁸ 이로써 고려와 금 사이에는 조공·책봉관계가 성립되어 커다란 외교적 갈등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다 할 외교적 갈등을 빚지 않았던 고려와 금은 무신란 이후 국왕의 책봉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었다. 무신들은 의종(毅宗, 1146~1170)을 내쫓고 명종(明宗, 1170~1197)을 옹립한 다음, 고주사(告奏使)를 금에 보내 왕위 교체 사실을 알렸다. 의종의 병이 깊어 제후로서의 도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금은 사전에 알리지 않고 국왕을 교체한 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낸 후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사신을 파견하였다. 따라서 명종이 금의 책봉을 받는 데에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랐다. 한편 무

²⁷ 이용범(1974), 「10-12세기의 국제정세」,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247쪽.

²⁸ 심재석(2002), 「고려와 금의 책봉관계」, 『고려국왕 책봉연구』, 해안, 152쪽.

신정권에 반기를 들고 서경에서 난을 일으킨 조위총(趙位寵)은 금에 사신을 보내어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였다(1174, 명종 4). 그러나 금은 조위총이 보낸 사신을 고려에 압송함으로써 그의 청을 거절하였다.

명종 이후의 왕들은 금에 즉위를 알리는 고주사와 책봉을 요청하는 청책사(請冊使)를 몇 차례에 걸쳐 파견한 이후에야 비로소 책봉을 받았다. 이는 정상적이지 못한 왕위계승 때문이었다. 예컨대 이의민(李義敏)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한 최충헌(崔忠獻)은 명종을 폐위하고 신종(神宗, 1197~1204)을 옹립하였는데, 그는 정권을 안정시키는 데는 금의 책봉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사신을 파견하여 금에 신왕의 책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금은 책봉을 유보하고, 사신을 파견하여 내막을 조사한 후에 신종을 책봉하였다. 따라서 무신정권기에 가장 심각하였던 외교현안은 신왕의 책봉 문제였다.²⁹ 그러나 강종(康宗, 1211~1213)을 마지막으로 이후의 고려 국왕은 금으로부터 책봉을 받지 않았다. 내부의 반란으로 인해 황제가 폐위되는 등 금이 무력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책봉을 요청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거란족이 일으킨 반란의 진압을 위해 금이 원병을 요청하였을 때도 고려는 이를 거절하였다. 결국 고려는 금의 연호 사용을 정지함으로써 금과의 외교관계를 마감하였다(1224, 고종 11).

29 박한남(1995), 앞의 글, 354쪽.

4. 고려와 원

1231년(고종 18) 몽골의 침입을 받은 고려는 강화도로 천도하고 약 40년 동안 항전하였다. 그러나 1270년(원종 11) 몽골에 항복함으로써 몽골, 즉 원의 정치적 간섭을 받았다. 이후 충혜왕이 원에 잡혀가서 사망한 것을 계기로 고려의 관리들 사이에는 반원적 분위기가 싹트고, 공민왕은 이러한 분위기를 바탕으로 반원정책(反元政策)을 수행하여 원의 간섭에서 벗어났다(1356. 공민왕 5).

1) 몽골의 침입과 고려의 항전

몽골족은 지금의 몽골 평원에 자리잡고 있던 유목민족이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요와 금에 예속되어 있었으나 차츰 내부에서 통일의 기운이 일어났다. 12세기 말 드디어 철목진(鐵木真, 테무친)이라는 자가 나타나 부족을 통일하고, 귀족들로부터 성길사한(成吉思汗, 칭기즈칸)이라는 칭호를 받고 황제가 되었다(1206). 칭기즈칸은 금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여 금의 장군 포선만노(蒲鮮萬奴)가 만주지방에 세운 동진국(東真國)을 복종시키고, 그들과 함께 거란족을 공격하였다. 당시 거란족은 금이 몽골의 공격에 시달리고 있는 틈을 타서 요동지방을 점령하고 위세를 떨치고 있었던 것이다. 몽골군에게 쫓긴 거란족은 압록강을 건너 고려의 영내로 침입하였다. 그들은 북방지역을 노략하고, 드디어는 수도 개경까지 위협하였다. 고려는 조충(趙冲)·김취려(金就礪) 등을 파견하여 그들을 저지하게 하였다. 고려의 공격을 받은 거란군은 평양의 동쪽에 있는 강동성(江東城)

으로 들어가 버렸다(1218).

고려가 강동성의 공략을 추진 중일 때, 거란족을 토벌하기 위해 동진국군과 함께 그곳에 도착한 몽골군은 강동성에 대한 공동작전을 고려에 제의하였다. 고려는 군량미를 보내어 그들의 요구에 응하는 한편, 조충·김취려로 하여금 강동성을 공격하는 몽골군을 돕도록 하였다. 강동성이 평정되자 몽골의 장군 합진(哈真, 카진)은 몽골이 형이고 고려가 동생이 되는 형제의 맹약을 고려에 강요하였다. 고려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고려는 몽골과 국교를 수립하였다(1218, 고종 5).³⁰

이후 몽골은 고려의 은인임을 자처하고 매년 사신을 보내 공물(貢物)을 취하여 갔다. 그런데 몽골이 요구한 공물의 양이 지나치게 많았을 뿐만 아니라 몽골 사신들이 고려 조정에서 취한 오만불손한 태도는 고려인들의 불만을 자아내기에 족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고려는 몽골의 요구에 불응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이를 계기로 고려와 몽골의 사이는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고려에 공물을 징수하러 왔던 몽골의 사신 저고여(著古與, 제구유)가 귀국하는 도중 압록강 부근에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1225, 고종 12). 고려는 이 사건이 금나라의 소행이라고 주장하였지만 몽골은 고려의 주장을 묵살하고 외교관계를 단절하였다. 이는 곧 몽골군의 출병을 암시하는 것이었다.³¹

칭기즈칸의 뒤를 이어 몽골의 황제에 오른 태종(窩闊台, 오고타이)은 금나라 정벌에 나서면서 살레탑(撒剌塔, 혹은 撒里台, 샤프타이)으로 하여금 고려

30 고병익(1969), 「몽고·고려의 형제맹약의 성격」, 『백산학보』 6; 고병익(1970), 『동아교섭사의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62~170쪽.

31 강진철(1973), 「몽고의 침입에 대한 항쟁」, 『한국사』 7, 국사편찬위원회, 340~342쪽.

를 침공토록 하였다(1231, 고려 고종 18). 고려의 무신집권자 최이(崔怡, 瑀)는 몽골군에 맞서 싸우기 위해 각도의 군사를 징집하였다. 그러나 대패하자 화의를 추진하였다. 살레탑이 여기에 응함으로써 화의가 성립되었다. 살레탑은 많은 공물을 고려에 강요하고, 서경을 비롯한 서북면 지방에 달로화적(達魯花赤)을 설치하여 행정을 감독하게 한 후 철수하였다. 그리고 도단(都壇, 도우단)이라는 자로 하여금 고려의 국사를 다스리게(都統)하였다. 이로써 다루가치가 수도인 개경에도 설치되었다. 그러자 최이(瑀)는 강화도(江華島)로의 천도를 결정하였다. 이는 몽골에 대한 항쟁을 선언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최이(瑀)가 천도를 결정한 이유는 몽골이 다루가치를 설치하여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다루가치가 설치되면 최씨정권이 몽골의 제재를 받게 될 것은 당연하였으므로, 설사 고려왕조가 존속되더라도 최이(瑀)에게 이로울 게 없었던 것이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몽골에 대한 항쟁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국왕과 대부분의 관리들은 천도에 반대하였다. 몽골군이 이미 물러간 상태에서 천도는 명분이 없는 것이었다. 또한 관리들로서는 자신들의 오랜 생활근거지를 떠난다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자 최이(瑀)는 반대한 인물의 목을 매달아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후 국왕과 관리들을 협박하여 강화도로의 천도를 단행하였다(고종 19년, 1232).³²

고려의 강화 천도가 몽골을 자극하였음은 물론이다. 이에 다시 침입한 몽골군은 고려 본토를 철저히 유린함으로써 강화도 정부로 하여금 스스로 항복해 오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그들은 멀리 경상도가

32 윤용혁(1977), 「최씨무인정권의 대몽항전자세」, 『사충』 21·22합집, 317~318쪽.

지 내려가, 현종 때 조판하여 대구 근처 부인사(符仁寺)에 간직해 왔던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을 불태우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의 주력부대가 수원 의 처인성(處仁城, 용인)을 치던 중 사령관 살레탐이 승려 김윤후(金允侯)의 화살에 맞아 전사하자 몽골군은 철수하였다(1232).

몽골은 남송에 대한 토벌을 진행하면서 고려에 다시 침입하였다(3차 침입, 1234, 고종 21), 고려가 남송과 연합체제를 구축하여 자신들의 배후를 위협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³³ 당고(唐古, 당구)에 의해 인솔된 몽골군은 강화도 정부와는 교섭을 벌이지도 않은 채 5년에 걸쳐 전 국토를 유린하였다(1235~1239). 경주의 황룡사 9층탑이 불탄 것은 이때의 일이다. 강화도 정부는 불법의 가호로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 새로운 대장경의 조판에 착수하였다(1236). 현재 해인사에 보관중인 팔만대장경의 조판이 이때 시작되었다. 아울러 몽골에 사신을 파견하여 철군을 호소하였다. 몽골은 고려 국왕의 입조를 조건으로 물러갔는데, 그러나 입조가 이루어지지 않자 다시 침입하였다. 아모간(阿母侃, 아무간)을 사령관으로 한 4차 침입이 그것이다(1246). 그들은 그들의 황제가 급서하자 곧 철군하였다.

1253년(고종 40) 몽골은 제5차 침입을 개시하였다. 이때 몽골군의 원수는 야굴(也窟, 혹은 也古, 예구)이었는데, 그는 군사적인 공격을 전개하는 한편 강화도에 사자를 보내 국왕의 출륙을 촉구하였다. 고려는 몽골의 군대가 철수하면 출륙할 것이라 하고, 몽골은 국왕이 출륙하면 회군하겠다고 하였다. 마침내 고종은 강화도를 나와 맞은편 연안의 새 궁궐에서 야굴이 보낸 사자를 접견하였다. 몽골과의 개전 이래 왕이 처음으로

33 유재성(1988), 『대몽항쟁사』,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17쪽.

출륙하였던 것이다.

몽골은 국왕이 출륙하였다 하더라도 당시의 집권자인 최항이 강화도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진정한 항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강화도 정부의 개경(開京) 환도를 요구하며 차라대(車羅大, 자랄타이)를 사령관으로 삼아 전후 6년에 걸쳐 4차례의 침입을 단행하였다(6차침입, 1254~1259). 그들은 사세를 관망하다가 출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침공하였던 것이다. 차라대가 고려 각지를 노략하고 있을 때, 동북면에서는 조휘(趙暉)·탁청(卓靑)이 반란을 일으켜 철령(鐵嶺) 이북의 땅을 가지고 몽골에 항복하였다. 이를 계기로 몽골은 화주(和州, 永興)에 쌍성총관부(雙城總管府)를 설치하고 이 지방을 몽골의 영토로 편입하였다(1258, 고종 45). 그리고 조휘를 총관(總管)에, 탁청을 천호(千戶)로 임명하는 한편 따로 다루가치를 파견하여 그 지역을 직접 지배하였다. 동북지방의 이 쌍성총관부는 후일(1270, 원종 11) 서북지방의 서경에 설치된 동녕부(東寧府)와 함께 몽골의 정치적·군사적 기반이 되어 고려를 압박하는 데 이용되었다.³⁴

몽골의 침입이 잦아지고 본토의 민심이 이반하자 강화도 내의 관리들 사이에는 개경으로의 환도 여론이 무르익었다. 이는 최항정권에 커다란 위협이었다. 출륙 환도는 정권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최항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몽골에 붙잡혀 갔다가 도망 온 군인들로 신의군(神義軍)을 조직하였다. 몽골에 대한 이들의 반감을 이용하여 환도 여론에 쐐기를 박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최씨정권은 최의(崔瑄)에 이르러 김준(金俊)·유경(劉敬) 등에 의해 타도되었다. 이 정변 직후 고려는 몽골과

34 방동인(1984), 「동녕부폐치소고」, 『관동사학』 2; 방동인(1997), 『한국의 국경획정연구』, 일조각, 102쪽 참조.

의 화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태자 전(腆, 뒤의 원종)을 입조시켜 항복의 뜻을 표하고(1259, 고종 46), 몽골의 요구에 따라 항전을 단념한다는 표시로 강화도의 성을 허물었다. 이로써 양국 간의 무력충돌은 막을 내렸다. 1263년(원종 4) 몽골은 고려에 왕족을 인질로 보내고, 호구조사를 실시하여 보고하고, 몽골군의 물자 보급과 연락을 위해 역참(驛站)을 설치하고, 정복사업에 군대를 파견하여 도와야 하며, 식량을 운송하여 몽골군의 군량을 보조해야 한다는 등 몽골이 복속국에 요구하는 기본사항을 이행하라고 통고하였다. 그리고 1268년(원종 9)에는 이들 조항에 다루가치의 설치가 추가된, 이른바 ‘6사(六事)’를 고려에 요구하였다. 일찍이 1232년(고종 19)에 설치된 바 있던 다루가치는 이렇다 할 행적을 남기지 못하고 철수하였는데 이때 다시 다루가치의 설치를 요구하였던 것이다.³⁵

그러나 고려 정부의 출륙 환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6사도 이행되지 않았다. 최씨정권의 뒤를 이어 무신집권자가 된 김준·임연 등도 몽골과의 항쟁을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고려의 출륙 환도는 임연의 아들 임유무가 정권을 장악할 때 비로소 이루어졌다. 이로써 무신정권은 막을 내렸고, 고려는 ‘6사’를 수용하고 몽골의 간섭을 받게 되었다(1270, 원종 11).³⁶

35 김호동(2007), 『몽골제국과 고려』, 서울대학교 출판부, 98쪽.

36 김호동(2007), 위의 책, 98쪽.

2) 여원연합군의 일본정벌

고려 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하자 장군 배중손(裴仲孫) 등은 왕온(王溫)을 왕으로 추대하고 삼별초(三別抄)를 이끌고 난을 일으켰다. 그들은 몽골과의 항전을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하여 근거지를 강화도에서 진도(珍島)로 옮겼다. 진도는 경상·전라지역의 세곡이 조운을 통하여 서울로 운송되는 길목이었기 때문이다. 진도지역을 장악함으로써 삼별초는 영·호남지역의 조세를 자신들의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그들은 일본에 사신을 보내어 자신들이 고려의 정통정부임을 주장하면서, 공동으로 몽골에 대항하자고 제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에서 발견된 「고려첩장불심조조(高麗牒狀不審條條)」라는 고문서를 통해서 확인된다. 이는 1268년에 고려 국왕이 일본에 보낸 서간과 1271년에 보낸 서간이 서로 어긋난 점을 기록한 문서인데, 후자는 진도의 삼별초가 보낸 것으로, 여기에서 삼별초는 일본에 자신들과 함께 몽골에 대항할 것을 요구하였다.³⁷

그러나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에게 진도가 함락됨으로써 삼별초는 배중손과 왕온 등 중심인물을 거의 잃었다. 그 나머지 무리가 김통정(金通精)의 지휘 하에 제주도로 들어가서 저항을 피하였으나,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에 의해 진압되어(1273) 전후 4년에 걸친 삼별초의 반항은 끝났다. 삼별초를 토평한 뒤 몽골은 제주도에 탐라총관부(耽羅總管府)를 설치하여 목마장(牧馬場)으로 이용하고, 다루가치를 주재시켜 그로 하여금

37 윤용혁(1994), 「삼별초의 대몽항전」, 『신편 한국사』 20, 국사편찬위원회, 254쪽.

다스리게 하였다. 제주도는 남송 및 일본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으므로 남송의 경략과 일본 정벌을 계획하고 있던 몽골은 일찍부터 여기에 주목해 왔던 것이다. 원사는 25사 가운데 유일하게, 고려와 별도로 탐라(제주도)의 외이(外夷) 열전을 설정하였다. 이는 몽골이 탐라를 중시하였음을 알려주는 구체적인 예일 것이다.³⁸

몽골은 일찍부터 일본을 복속시킬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일본과 해상무역을 하는 남송(南宋)을 고립시키고 일본을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권에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몽골은 고려를 향도로 삼아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성과를 얻지 못하자(1266, 원종 7) 일본에 대한 일은 고려에 일임한다고 하면서 고려의 사신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국서를 가지고 일본에 가게 하였다. 혹은 고려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사신을 파견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몽골의 태도에 고려는 적지 않게 당황하였다. 만일 일본이 몽골의 요구에 순순히 응한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 전쟁은 불가피하게 되며, 거기에 고려도 자연히 휩쓸려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려 조정에서는 차제에 몽골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자는 강경론까지 나왔으나 결국에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요구에 협조하기로 방침을 세웠다.³⁹ 당시 일본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가마쿠라 막부(鎌倉幕府)는 몽골 사신의 접견을 거부하고 회답을 주지 않았다. 몽골은 온건한 방법으로는 일본을 굴복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정을 결정하였다.

원(元)으로 나라 이름을 바꾼 몽골(1271)은 삼별초 난을 진압한 다음

38 주채혁(1989), 「몽골-고려사 연구의 재검토」, 『국사관논총』 8, 47쪽.

39 강진철(1973), 앞의 글, 375쪽.

해에 고려군과 함께 일본원정에 나섰다(1274, 원종 15). 여기에는 도원수 혼도(忻都, 忽敦)와 부원수 홍다구(洪茶丘), 그리고 유복형(劉復亨) 지휘하의 원나라 군대 2만 5000명과 김방경(金方慶) 지휘하의 고려군 8000명이 동원되었다. 그들은 쓰시마(對馬)와 이키(壹岐) 두 섬을 정복하고 규슈(九州)를 공격하였다. 그런데 홍다구는 고려인이고 유복형은 산둥(山東) 출신의 여진족 무장이었으며, 김방경은 얼마 전만 해도 몽골에 저항하여 싸운 인물이었다. 따라서 겉으로는 연합군이지만 내적으로는 지휘체계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⁴⁰ 이런 상황에서 태풍까지 만나 여원연합군은 큰 피해를 입고 말았다.

일본원정이 실패한 이후에도 원 세조(世祖)는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일본에 선유사(宣諭使)를 파견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일본의 태도 역시 매우 강경하여, 두 차례에 걸쳐 파견된 원의 사신을 모두 참수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후 원은 남송을 멸망시킴으로써(1279), 일본과 남송의 연결을 차단한다는 애초의 목표가 사라졌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사절이 모두 살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재차 침략을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1281년 원은 제2차 일본정벌에 나섰다. 혼도·홍다구 지휘하의 원군과 김방경의 고려군으로 구성된 여원연합군, 그리고 남송에서 징발된 강남군(江南軍)은 두 갈래로 나뉘어 일본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태풍을 만나 실패하고 말았다.

40 김위현(2004), 「여·원 일본정벌군의 출정과 여·원관계」, 『고려시대 대외관계사 연구』, 경인문화사, 476쪽.

3) 원의 정치적 간섭

1270년 고려는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출륙 환도함으로써 몽골에 항복하였다. 그러나 독자적인 정치체제는 그대로 유지되었는데, 이는 일찍이 원의 세조(世祖)에 의해 천명되었다. 1259년(고종 46) 고려는 몽골의 요구에 따라 항전을 단념한다는 표시로 강화도의 성을 허물고 태자(후일의 원종)를 몽골에 보냈다. 몽골에 들어간 태자는 헌종(憲宗)의 둘째 동생인 흘필렬(忽必烈, 쿠빌라이)을 만났다. 당시 몽골은 남송정벌을 지휘하던 헌종이 사망함으로써 그의 형제들이 황제의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었다. 몽골의 제위가 누구에게 돌아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고려의 태자가 쿠빌라이를 만나자, 그는 “고려는 만리나 되는 큰 나라(萬里之國)이다. (옛날) 당나라 태종이 친정(親征)하였어도 굴복시키지 못했는데, 지금 그 태자가 스스로 왔으니 이는 하늘의 뜻이다”라고 하며 크게 기뻐하였다. 결국 쿠빌라이가 황제(세조)가 되었는데, 그는 사신 편에 “고려의 의관(衣冠)을 고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곧 고려를 독립국으로 인정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⁴¹

원이 고려를 독립국으로 온존시키려 하였음은 여러 차례에 걸친 입성책동(立省策動)을 모두 무산시킨 사실로도 입증된다. 최초의 입성책동은 1298년 충선왕이 심양왕(瀋陽王)에 봉해진 데 불만을 품은 요양행성(遼陽行省)의 우승(右丞) 홍중희(洪重喜)에 의해 이루어졌다. 홍중희는 일찍이 몽골에 투항해서 그 앞잡이 노릇을 한 홍복원(洪福源)의 손자로, 그를 중심으

41 이익주(1996), 「고려·원관계의 구조에 대한 연구 - 소위 '세조구제'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론』 36, 6~10쪽.

로 한 흥씨일가는 대를 이어가며 요양 지방에 이주해 온 고려인들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는 충선왕을 모해함과 아울러 고려를 소멸시켜 원의 직할성으로 만들자는 입성(立省)을 원의 중서성에 건의하였다. 입성 요구는 1323년(충숙왕 10)에도 있었다. 충숙왕에게 불만을 품고 원에 정치적 망명을 한 유청신(柳淸臣)·오잠(吳潛) 등이 고려를 원의 직할성으로 삼아 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이후에도 고려를 원의 직할성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원의 관리들은 고려를 직할성으로 삼는 것이 세조가 언급한 “고려의 의관을 고치지 않는다”는 원칙과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였다.⁴² 물론 여기에는 원으로 하여금 이러한 원칙을 고수하게 한 고려의 외교적 노력이 숨어 있었다. 원의 관리들도 직할성을 설치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고려인들의 반발을 우려하였다.⁴³ 그리하여 고려만이 원의 제후국으로서 ‘자기의 백성과 사직을 가지고 왕위를 누릴’⁴⁴ 수 있었다.

그러나 고려가 원에 항복한 만큼 원의 견제는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 원은 고려인의 무기 소지를 금하고, 군대 지휘관인 만호를 원의 황제가 임명함으로써 고려의 군사력을 통제하였다. 원에 대한 고려인의 모반을 우려해서 취한 조치였다.⁴⁵ 그리고 고려의 왕실과 관련된 용어를 모두 격하시켰다. 고려의 국왕은 ‘조’나 ‘종’을 붙여서 묘호를 짓는 대신 ‘왕’자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 더구나 위에는 ‘충’자를 덧붙여서 원에

42 이익주(1996), 위의 글, 41쪽.

43 김당택(1993), 「고려 충숙왕대의 심왕 옹립운동」, 『역사학연구』 12 ; 김당택(1998), 『원간섭하의 고려정치사』, 일조각, 96쪽.

44 『고려사』 33, 충선왕 2년 7월 乙未 元降制追贈王三代制曰.

45 변동명(1989), 「고려 충렬왕대의 만호」, 『역사학보』 121, 115~117쪽.

대한 충성심을 표시하는 뜻을 나타냈다.⁴⁶ 그리고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이 통합되어 원의 지방정부기관인 첨의부⁴⁷로 명칭이 바뀌는 등 중앙의 관제도 모두 고쳐졌다.

원은 정동행성을 통해 고려를 감독하였다. 정동행성은 그 명칭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애초에는 정동, 즉 일본의 원정을 단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었다(1280, 충렬왕 6). 원은 외지의 통치를 위해 혹은 대규모의 군사행동을 위해 10여 개의 행성(行中書省)을 설치하여 중앙 중서성의 지휘를 받게 하였는데, 정동행성은 그 가운데 하나였다.⁴⁸ 정동행성은 이후 몇 차례의 치폐를 거쳐 충렬왕 13년(1287) 이후부터는 고려의 모든 관부 위에 군림하면서 고려의 내정을 감독하였다.

고려는 원의 부마국, 즉 사위나라가 되었다. 고려의 국왕은 원의 공주를 정비로 삼았고, 그 몸에서 난 아들이 원칙적으로 왕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원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 고려왕을 교체하는 등 왕위를 미끼로 고려 국왕을 철저히 통제하였다. 고려의 국왕이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 교체하였던 것이다. 충렬왕·충선왕·충숙왕·충혜왕이 모두 왕위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왕위에 오른 까닭이 여기에 있다. 따라서 충렬왕과 충선왕, 충선왕과 충숙왕, 충숙왕과 충혜왕은 부자관계였음에도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 간에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이러한 상황이었으므로 국왕과 관리들은 원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46 『고려사』 33, 충선왕 복위년 10월 丙申.

47 이개석(2007), 「대몽고국-고려 관계 연구의 재검토」, 『사학연구』 88, 61쪽.

48 고병익(1961·1962), 「여대 정동행성의 연구」, 『역사학보』 14·19 ; 고병익(1970), 앞의 책, 190~195쪽.

4) 고려의 반원정책

원이 왕위를 미끼로 고려 국왕을 통제한 데 대해 국왕과 관리들이 불만을 품었음은 물론이다. 그 가운데 두드러진 인물은 충혜왕이었다. 그는 시위군을 증강하는 등 권력기반을 강화하여 원에 맞서려고 하였다. 따라서 충혜왕이 취한 일련의 정책은 원에는 그들에 대한 모반과 다를 바 없는 행위로 비쳤다. 여기에 더하여 원 순제(順帝)의 비인 기황후(奇皇后)의 오빠 기철(奇徹)은 자신들에 대한 충혜왕의 제재(制裁) 조치에 불만을 품고, 원에 글을 올려 충혜왕을 잡아갈 것을 요구하였다. 결국 충혜왕은 원에 붙잡혀 갔고, 유배되는 도중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다.

고려 관리들은 충혜왕이 원에 잡혀가 사망한 데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왕의 죽음은 고려의 사직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었기에 그들이 위기의식을 느꼈음은 당연하다. 그들은 충혜왕의 실정(失政)은 측근의 잘못 때문이라고 변명함과 아울러 그의 무죄를 끈질기게 주장하였다. 그들은 원에 대한 자신들의 불만을 이렇게 드러냈던 것이다.

원은 고려 관리들의 불만을 방치할 수 없었다. 그들을 통해 고려를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무리가 아니다. 일찍이 정동행성의 관리인 활리길사(闊里吉思)가 노비법을 개혁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나,⁴⁹ 고려를 원의 직할성으로 삼으려는 4번에 걸친

49 충렬왕 24년 정동행성의 평장사인 활리길사는 고려의 노비제도를 몽골식 법제로 고치려고 기도하여 큰 물의를 일으켰다. 즉 노비의 부모 가운데 한쪽이 천인이면 천인으로 하는 ‘일천즉천(一賤則賤)’의 법을, 노비의 부모 가운데 한쪽이 양인이면 양인으로 하는 ‘일량즉량(一良則良)’으로 고치려고 했던 것이

입성책동이 모두 무산된 점, 그리고 충숙왕 때 심왕 고를 국왕에 옹립하려는 움직임이 실패로 끝난 것은 이에 대한 고려 관리들의 반대가 거셌기 때문이다. 원으로서는 고려 관리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한 만큼 충혜왕의 죽음에 따른 고려 관리들의 불만은 원에서도 정치문제화되었다. 기황후에 반대하는 원의 관리들은 그녀의 친족인 기철 등이 고려의 관리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점을 빌미 삼아 그녀를 공격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기황후를 비(妃)로 떨어뜨릴 것을 주장하였으며 기황후의 측근인 환관 고용보(高龍普)를 금강산에 유배하기도 하였다.

고려의 반원적 분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원은 충정왕(1348~1351)을 대신하여 고려 관리들로부터 신망을 얻고 있던 공민왕을 즉위시켰다(1351). 그런데 그의 즉위는 도리어 반원적 분위기를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원과 밀착되었던 인물들까지 반원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고려의 반원적 분위기를 의식한 행동이었다. 원과의 밀착보다는 반원을 내세우는 것이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 유리한 상황이 도래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를 위해 원을 이용하였듯이 이제는 이를 위해 원을 외면하였다.⁵⁰

공민왕은 1356년(공민왕 5)부터 본격적인 반원정책을 추진하였다. 원 기황후의 오빠인 기철을 비롯한 친원세력을 제거하고, 정동행성의 이

다. 이는 고려 지배층의 이익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활리길사가 고려의 노비제도를 고치려고 한 것은, 고려 지배층을 약화시켜 원의 통치를 원활히 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된다. 장동익(1994), 「여원관계의 전개」, 『신편 한국사』 20, 국사편찬위원회, 288쪽. 그러나 고려가 여기에 강하게 반발하자 활리길사는 부임한 지 1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갔다.

50 김당택(1995), 「원 간섭기말의 반원적 분위기와 고려 정치사의 전개」, 『역사학보』 146 ; 김당택(1998), 앞의 책.

문소를 혁파하였다. 아울러 원의 간섭과 더불어 고쳐진 관제(官制)를, 고려의 전통적인 관제로 인식되어온 문종대의 것으로 복구시켰다. 그리고 쌍성총관부를 무력으로 철폐하고 그 지역을 다시 회복하였으며 압록강 서쪽에 있던 원의 군사적 요충지를 공격하기도 하였다.

공민왕이 반원정책을 추진한 것은 원의 쇠퇴와 무관하지 않았다. 원은 장사성(張士誠)의 난을 토벌하기 위해 고려에 군대의 파견을 요청하였다. 여기에 응해 고려에서는 유탭(柳澤)·최영(崔瑩) 등 40여 명의 장상(將相)과 2000명의 군사를 파견하였는데, 이들은 그곳에서 원의 쇠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1354, 공민왕 3). 그렇다고 원의 쇠퇴가 공민왕이 반원정책을 추진한 배경의 전부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고려의 관리들이 원의 공격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고려에 반원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었던 것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고려가 반원을 표방하자 원은 고려의 사신을 가두는 한편 군대를 파견하여 토벌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러한 원의 태도에 불안을 느낀 고려는 다시 원의 연호를 사용하고 압록강 서쪽을 공격하였던 인당(印砀)을 베어 사과하였다. 원은 그곳에 머물고 있던 충숙왕의 아우 덕흥군(德興君)을 고려왕으로 삼아 최유(崔濡)와 함께 고려에 침입케 하는 등(1364, 공민왕 13) 계속 고려를 압박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1368년 명의 군대에 의해 대도(大都, 북경)가 함락되자 원의 순제는 북으로 도망하였다. 이를 계기로 고려는 원의 연호 사용을 중지하고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단절하였다.

5. 맺음말

고려는 발해의 멸망 후 국경을 접하게 된 요(거란)와 대립적이었다. 이와는 달리 중국 오대의 여러 나라나 송과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는 중국의 선진문물을 수입함과 아울러 그들을 끌어들이어 요를 견제하기 위함이었다. 한편 요는 송과 고려의 연계를 차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데, 그 때문에 3차에 걸쳐 고려에 침입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고려의 대요정책이나 요의 대고려정책은 다분히 중국 국가들을 의식한 것이었다.

금을 세운 여진족은 고려에 적대적이지 않았다. 그들의 조상이 고려에서 왔다는 인식과 아울러 고려와 연계하여 그들에게 적대할 만한 세력이 중국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요는 이미 멸망하였고, 송은 남으로 피신하여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금은 고려가 신하로 칭하면서 표를 올리자 고려왕을 책봉하고, 고려에 대한 군사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몽골은 금의 정벌에 나서면서 고려에 침입하였다. 고려가 강화도로 천도하며 항전을 계속하자 몽골은 무력을 시위하면서 출륙을 종용하였다. 고려 정부가 자발적으로 항복해 오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일본정벌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고려로부터 지원받기 위함이었다. 실제로 고려가 강화도에서 출륙 환도한 뒤 몽골, 즉 원은 고려와 함께 일본정벌에 나섰다.

고려와 원의 관계는 고려와 요·금과의 관계와는 전혀 다른 형태를 드러냈다. 몽골의 침략으로부터 비롯된 여·원관계는 고려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기보다는 원에 의해 강제된 것이었다. 원은 고려를 독립국

으로 온존시켰으나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체제도 강요하였다. 그리고 고려 국왕의 책봉 및 폐위도 원에 의해 결정되고 실행되었다. 원은 왕위를 미끼로 고려 국왕을 통제하였던 것이다.

원이 왕위를 미끼로 고려 국왕을 통제하자, 여기에 불만을 품은 충혜왕은 시위부대를 증강하는 등 왕권 강화에 힘썼다. 권력기반을 강화하여 원의 조종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었다. 충혜왕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원은 그를 잡아가 유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충혜왕은 사망하였다. 이에 고려에는 반원적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이를 계기로 공민왕은 반원정책을 수행하여 원의 간섭에서 벗어났다.

고려와 요·금·원 관계사는 양국의 필요에 의해서보다는 제3국을 의식해서 전개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요의 대고려정책은 송을 의식한 측면이 많았으며, 고려의 대요정책은 중국의 정세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고려와 몽골은 거란에 대한 공격 과정에서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몽골은 금의 정벌에 나서면서 고려를 침략하였다. 이후 몽골이 집요하게 고려의 항복을 받아내려고 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일본을 정벌하는 데 고려를 이용하기 위함이었다.

고려의 대외관계는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에 의해 약화되는 경우가 있었다. 현종 때 대거란 강경론을 주장한 인물들은 주로 현종의 측근들이었다. 그들은 거란과의 긴장관계를 통해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이를 왕권 강화에 이용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또한 숙종과 예종은 전신체제의 유지를 통해 국왕의 권위를 높이고 나아가 문신들을 장악할 목적으로 여진정벌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최씨 무신집권자와 김준·임연 등은 몽골과의 항쟁을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삼았다. 그들이 출륙 환도를 거부하고 강화도에서 항쟁을 지속한 까닭이 여기

에 있었다. 몽골과의 강화는 자신들 정권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고려와 요·금·원 관계사의 특징」에 대한 토론

당바오하이 (베이징대학)

김당택 교수의 논문은 고려(高麗)와 요(遼)·금(金)·원(元) 관계사의 개별적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이전 연구성과의 기초 위에서 개괄적인 고찰을 통하여 고려와 요·금·원 관계사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 논문을 통하여 한국사학계의 이 방면에 관한 연구 성과를 이해할 수 있었고, 동시에 일련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김 교수의 견해를 읽을 수 있었다.

김 교수는 많은 깨우침을 주는 관점들을 제기하였다. 가령, 학술사 전체의 발전 측면에서 고려 대외관계사 연구 중에 나타난 저조(低潮), 고조(高潮) 현상과 그 원인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논문에서 김 교수는 “많은 식민주의 사학자들이 고려의 대외관계사에 대해서 연구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고의적으로 외국의 고려에 대한 영향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의 고려에 대한 원조의 정치 간섭 연구는 사실과 맞지 않는 것이 많다. 해방 이후 한국 학자들의 냉대로 고려의 대외관계사 연구는 정체에 빠졌다. 그러나 최근에 국제화라는 시대 조류 속에서 대외관계사 연구도 새롭게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라고 하였다. 또 외교정책과 고려 내부의 정국 변화를 결

합하여 내정이 외교변화의 중요한 동인(動因)이라고 지적하였다. 고려의 요에 대한 정책을 분석하면서 “요에 대한 강경론을 주장하였던 인물은 대부분이 국왕의 친신(親臣)이었고, 그들의 목적은 대외관계를 이용해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고려와 요의 긴장관계가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현종(顯宗)시기 대(對) 거란 강경론을 주장한 인물들은 모두 현종의 친신이었다. 그들은 거란과의 긴장관계로 위기의식을 조장하여 고려왕의 권위를 높이려 하였다”고 보았다. 고려의 대금(對金)정책을 분석할 때도 “여진을 정벌하여 9성(九城)을 설치한 것은 당시의 정치상황과 무관하지 않았다. …… 숙종(肅宗)은 군사기반을 강화하고 전시체제를 이용하여 관리들을 제어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여진정벌은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 추진된 것이다. 별무반(別武班)의 정벌대상 중에는 재상의 자손도 포함되어 있었고 게다가 별무반의 직책은 숙종의 시위가 담당하였다는 것이 바로 그런 점을 증명하는 것이다. 예종(睿宗)이 추진한 여진정벌과 9성의 설치에 숙종의 사정과 별반 다르지 않다. 예종의 계위(繼位) 후 문신관리들이 국왕의 명령을 무시하여, 국왕의 권위는 거의 상실되었다. 숙종의 견제에 불만을 가졌던 문신들은 예종의 즉위 후에 국왕과의 관계에서 기선을 제압하고자 하였다. 여기에 대해 예종은 명확하게 국왕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표명하고 아울러 여진정벌을 추진하였다. 9성을 설치한 것은 예종이 이런 조치를 통하여 전시체제를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9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군사작전이 필요하였다. 요컨대, 숙종·예종시기의 여진정벌은 전시체제의 유지를 통하여 국왕의 권위를 강화하고 문신들을 제압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고려의 원에 대한 정책을 분석하면서는 “최씨 무신집권자들과 김준(金俊), 임연(林衍) 등은 몽골과의 항쟁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그들이 출륙 환도(出

陸邊都)를 거부하고 강화도에서 계속 항쟁한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들은 몽골과의 강화가 자신들의 정권의 종식임을 매우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견해를 펼쳤다.

나아가 김 교수는 논문에서 일련의 새로운 사료들을 제시하였다. 가령 “진도지역을 장악한 삼별초가 영·호남의 조세를 자신들의 자원으로 이용하였고, 그들이 일본에 사자를 보내 자신들이 고려의 정통정부임을 주장하고 아울러 공동의 대몽골항쟁을 제안하였다. 이런 사실은 일본에서 발견된 『고려첩장불심조조(高麗牒狀不審條條)』라는 고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논문 중 다음의 몇 가지 부분은 토의가 필요한 듯하다.

첫째, 송은 후진(後晉)이 거란에 할양한 연운16주(燕雲十六州)를 회복하기 위해 요로 진공하였으나 참담하게 패하였다. 그 후에 한편으로 재차 진공 기회를 기다리면서 다른 한편으론 고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하였다. 송은 요의 ‘주소국의(主少國疑)’, 즉 성종(聖宗)이 어려서 승천태후 소씨(承天太后 蕭氏)가 섭정하는 기회를 틈타 다시 군대를 보내 북벌을 시도하고 아울러 고려에 사자를 보내어 거란을 공격하도록 회유하였다(諭).

둘째, 거란의 국호는 태조 시기에는 종족명을 사용하여 대거란(大契丹)으로 칭하고, 태종 시기에는 중국식의 명칭인 요(遼)로 바꾸었으나 성종 시기에 다시 대거란으로 바꾸었다.

셋째, 고려의 금에 대한 칭신(稱臣)은 “당시 실권을 가진 이자겸이 금의 요구에 응한 것이다. 고려는 마침내 사자를 금에 보내 칭신을 아뢰고 군신 관계를 확립하였다. 바로 이 때문에 고려는 금의 침략을 받지 않았다. 이자겸의 이 조치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어 질책을 받았다. 그러나 어떤 이는 이것이 고려의 현실에 부합하는 선

택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정책의 주요 결정자는 고려왕 인종이라는 점이다.

넷째, “충혜왕이 원에 잡혀가 사망하는 것을 계기로 고려 대신들은 반원(反元)을 시작하였다. 공민왕은 이런 분위기를 이용하여 반원정책을 추진하여 원의 간섭에서 벗어났다”에서 충혜왕의 죽음이 계기가 되었다기보다는 원말 농민전쟁이 계기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다섯째, “충혜왕은 시위군을 확충하여 권력 기반을 강화해 원조에 대항하려 하였다. 원은 충혜왕이 취한 일련의 정책을 그들에 대한 모반행위로 간주하였다”고 하였는데, 만약 그렇다면 충혜왕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려야 하는 것인지? 충혜왕이 정말 원조에 대항한 것인가?

여섯째, “몽골이 집요하게 고려의 항복을 요구하였던 것은 일본정벌에 고려를 이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단편적인 원인일 뿐이다. 몽골의 대외확장에서 보이는 일관된 정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원은 일본을 정벌하지 않았더라도 고려에 출병하였을 것이다.

사료 인용에 몇 가지 착오가 있다.

1. 蕭孫寧曰：“汝國興新羅地，高句麗之地，我所有也，而汝侵蝕之。又與我連壤而越海事宋，故有今日之師。若割地以獻而修(超)[朝]聘，可無事矣。”
2. 금이 고려를 치하하여 “兄大女真金國皇帝，致書于[弟]高麗國王”으로 시작되는 국서, 화친을 제의하여 형제동맹 관계가 결성된다(1117, 예종 12).
3. 의문점：“고려와 연합하여 일본으로 진군(1274, 원종 15)하였다. 도원

수(都元帥) 혼도(忻都, 忽敦), 부원수 홍다구(洪茶丘), 유복형(劉復亨)이 지휘한 2만 5000의 원조 군대와 김방경(金方慶)이 지휘하는 8000의 고려군을 동원하였다”고 하였는데 혼도와 흘돈(忽敦)을 1인으로 본 것은 어떤 사료에 근거해서인가?

동북아역사재단

500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활기만주의 고려 가족과 청초의 전쟁

쉬 카이 (베이징대학 역사학과)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
역사
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7세기 초기 이래 동북아 지역에서는 명 왕조, 몽골, 여진 및 조선 등의 세력이 상호 부침을 거듭했다. 특히 건주(建州) 여진이 흥기하여 후금(後金)을 세움으로써 240여 년 동안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던 명대(明代) 동북지구의 국면이 깨졌다. 그 결과 이 지역의 민족들은 대규모로 분화되어 구성을 재조직하고 재형성되었다. 정치·경제·문화·지역 등의 영향으로 민족들 간에 상호 접촉하고 융합하여 새로운 민족 공동체가 형성되어 동북아지역 역사 발전의 틀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누르하치, 황태극(皇太極)은 여진 제부(諸部), 그들과 습속이 비슷한 흑룡강(黑龍江) 유역의 색륜(索倫) 등의 부족 및 몽골, 조선, 이감(尼堪, 漢人)의 일부를 흡수하여 새로운 만주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고 정치·군사적 실력을 강화하여 명 왕조와 각축하는 데 필요한 자본을 늘렸다. 나아가 전체 동북지구를 장악하고 입관(入關)하여 중원을 장악하기 위한 튼실한 기초를 마련했다. 고려 가족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 하에서 만주족에 섞여 들어갔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팔기만주 기분좌령(旗分佐領) 속에 편성되어 청초 조선 정복과 요서 진출, 중원 장악, 강남(江南) 통일, 삼변(三藩) 진압 등 일련의 중요한 전쟁에 참가했다. 또한 청초의 정권 수립과 공고화에 탁월한 공헌을 세움으로써 만주 귀족의 깊은 신뢰와 중시를 받았다. 이

에 따라 고려 가족의 만주화(滿洲化)도 촉진되었다.

1. 고려 43성 가족의 팔기만주 편입

건륭(乾隆) 9년(1744)에 완성된 『팔기만주씨족통보(八旗滿洲氏族通譜)』(이하 『통보(通譜)』라고 약칭한다) 권72에서 권73까지의 기록에 따르면 청 태조의 천명(天命), 태종의 천총(天聰) 연간에 스스로 후금에 투항한 조선 가족은 43개 성씨였다.¹ 이들은 김(金), 한(韓), 이(李), 박(朴), 장(張), 부(傅), 홍(洪), 최(崔), 유(劉), 황(黃), 강(岡), 양(楊), 오(吳), 진(陳), 문(文), 손(孫), 정(丁), 임(任), 이(伊), 주(朱),² 서(徐), 차(車), 만(萬), 강(江), 변(邊), 하(何, 실제로는 河의 오류, 조선인은 何라는 성이 없다), 민(閔), 임(林), 동(佟), 와(瓦), 경(耿), 송(宋), 마(馬), 정(鄭), 조(曹), 곽(郭), 심(沈), 방(方), 진(秦), 맹(孟), 전(田), 신(辛) 씨이다. 『통보』에 전기(傳記)가 실려 있는 사람은 모두 157인(戶, 각 사람이 하나의 가정으로 성년의 자손은 여기에 예측된다)이다. 이들은 잇따라 군정합일(軍政合一), 병민혼일(兵民混一)의 만주팔기 속에 편입되었고 일부 사람(호)들은 팔

1 『通譜』에서는 일부 고려 가족의 “귀순 연도를 알 수 없다”고 표기하고 있지만, 열전에 기록된 일련의 사적을 볼 때 그들은 기본적으로 천명, 천총 시기에 후금에 귀부한 것이다. 고려 가족의 상황에 관해서는 徐凱(2000), 「八旗滿洲旗分佐領內高麗姓氏」, 『故宮博物院院刊』 2000年 5期 참조.

2 欽定, 『八旗滿洲氏族通譜』總目, 권73. 子目的 李氏와 徐氏의 사이에 ‘朱氏’라고 되어 있지만, 권73 正文에는 ‘宋氏’라고 잘못 쓰여 있어서 이 권에 두 개의 ‘宋氏’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 전자는 ‘朱’자의 잘못이다. 이 책이 만들어진 이후의 『皇朝通志』 권1 「氏族略」의 總目과 分卷에는 모두 ‘朱氏’를 ‘宋氏’라고 잘못 옮겨 쓰고 있어서 두 책의 교감이 소홀함을 엿볼 수 있다. 『欽定八旗通志』 권60 「氏族志七」은 황제의 뜻을 받들어 李氏를 고려 성씨의 첫머리에 두었다.

기만주 기본좌령 내에 두어져 정식 군대에 편제되었으며, 대부분의 사람(호)들은 팔기만주 포의좌령(包衣佐領)에 소속돼 황제와 귀족 집단에 봉사하며 만주 사회 조직의 일원이 되었다.

『통보』를 보면 조선 가족의 24인(戶)은 정황(正黃), 정백(正白), 정홍(正紅), 양홍(鑲紅), 정람(正藍), 양람(鑲藍)의 6개 기(旗) 속에 각각 편제되어 있었다. 정황기(正黃旗)에 10인(호)으로, 김씨가 3인(호), 즉 김천보(金天保), 옥이필(玉爾弼), 천봉니(天鳳尼)이며, 한씨가 1인(호)으로 악납미(岳拉米)이며, 부씨(傅氏)가 2인(호)으로 삼소(三蘇), 섭루(攝樓)이고, 유씨가 1인(호)으로 살목길(薩穆吉)이고, 양씨가 1인(호)으로 소파제(蘇巴濟)이며, 이씨(伊氏)가 1인(호)으로 명초니(明楚尼)이고, 주씨가 1인(호)으로 중격(仲格)이다. 정백기(正白旗)에는 홍씨가 1인(호)으로 모이금(牟易金)이다. 정홍기(正紅旗)에는 10인(호)이 있었는데 한씨가 4인(호)으로 한운(韓雲), 한니(韓尼), 서목해(舒穆海), 한제리(韓齊里)이고, 이씨(李氏)가 1인(호)으로 방새개(龐塞凱)이고, 장씨가 1인(호)으로 이마(尼瑪)이며, 최씨가 1인(호)으로 강나미(江那米), 삭양서(朔陽西)이고, 오씨가 1인(호)으로 오대방(吳岱榜)이고, 조씨가 1인(호)으로 조국상(曹國相)이다. 양홍기(鑲紅旗)에는 1인(호)으로 김씨 계선(金繼先)이다. 정람기(正藍旗)에는 1인(호)으로 장씨 단제니(檀濟尼)이다. 양람기(鑲藍旗)에는 2인(호)으로 이씨 동안(東安), 석태(石泰)이다. 25인(호) 중에 상삼기(上三旗)가 11인(호)으로 44%를 점하는데 10인(호)이 정황기에 속해 있다. 하오기(下五旗)는 14인(호)으로 56%를 점하는데 9인(호)이 정홍기에 들어 있다. 그리고 팔기에 편제된 25인(호)은 총수 157인(호)의 16%를 점하고 있다. 귀화한 고려 가족 중에 매우 적은 수의 사람(호)들이 팔기만주의 정식 기본좌령 내에 들어가 정규 군사 편제의 성원이 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은 만주족, 몽골인과 같은 권력을 누리고 의무를 졌다.

이 밖에 총 인원수의 84%를 차지하는 조선 가족 133인(호)은 팔기만 주의 포의기(包衣旗) 내에 편제되어 있었다. 이들 중 양황기(鑲黃旗) 포의기 6인(호)인데 김씨가 3인(호)으로 도뢰(都賚), 호석의(胡錫義), 초내(楚鼐)이며, 이씨(李氏)가 1인(호)으로 도랍미(都拉米)이고, 최씨가 1인(호)으로 복희(福羲)이고, 황씨가 1인(호)으로 황류(黃琉)이다. 정황기 포의 63인(호) 중 김씨가 20인(호)으로 신달리(新達理), 가리합(嘉理哈), 석공의(石孔儀), 나목수(那穆壽), 안손니(顔孫尼), 왜혁(倭赫), 김남(金楠), 김산(金山), 섭례필(聶禮弼), 천포기(天布基), 중십니(仲什尼), 파안대(巴顔岱), 김성(金聲), 춘사(春社), 김나밀(金那密), 김포길(金布吉), 김춘(金春), 고동수(顧東遂), 액색리(額色理), 임청(林淸)이다. 한씨는 6인(호)으로 섭니(聶尼), 석도고(席圖庫), 등의필(鄧義弼), 박룡의(博龍義), 첩례필(帖禮弼), 액이사(額爾社)이다. 이씨는 5인(호)으로 이인걸(李仁杰), 승휘(僧輝), 이당정(李黨鼎), 객이살(喀爾薩), 삼배(三拜)이다. 박씨는 5인(호)으로 서길리(舒吉理), 파보제(巴普濟), 만사길(滿社吉), 아량의(阿良義), 걸림필(杰臨弼)이며, 장씨는 1인(호)으로 곽필(郭弼)이다. 부씨는 1인(호)으로 모제니(謨齊尼)이며, 백씨가 1인(호)으로 백운(柏雲)이며, 홍씨는 4인(호)으로 경문(敬文), 홍의인(洪義仁), 홍등남(洪鄧南), 홍안림(洪顔林)이다. 최씨는 2인(호)으로 최예필(崔禮弼), 종격니(鍾格尼)이며, 유씨는 1인(호)으로 살목길(薩穆吉)이며, 황씨는 1인(호)으로 법보(法保)이며, 강씨(岡氏)는 2인(호)으로 제이밀희(齊爾密喜), 덕엽미(德葉米)이며, 양씨는 1인(호)으로 걸한니(杰漢尼)이다. 차씨는 1인(호)으로 조해(調亥)이며, 만씨는 1인(호)으로 만춘니(滿春尼)이며, 강씨(江氏)는 1인(호)으로 계희(桂羲)이며, 변씨는 1인(호)으로 변남(邊南)이며, 하씨는 1인(호)으로 하용보(何龍普)이며, 송씨는 3인(호)으로 애남(愛楠), 송류(宋琉), 걸석(傑碩)이다. 정씨는 1인(호)으로 정의남(鄭義南)이며, 곽씨는 1인(호)으로 등나미(鄧那米)이고, 심씨는 1인(호)으로 걸림벽(傑林璧)이며, 방씨는 1인(호)으로 덕극

십(德克什)이며, 진씨는 1인(호)으로 낭필자(囊弼紫)이다. 정백기 포의 8인(호) 중 김씨가 1인(호)으로 특극진(特克秦)이며, 장씨가 1인(호)으로 석례(碩禮)이고, 황씨가 3인(호)으로 목소(穆蘇), 최망우(崔莽牛), 걸니(傑尼)이다. 동씨는 1인(호)으로 동좌(佟佐)이며, 와씨는 1인(호)으로 제례(濟禮)이고, 신씨는 1인(호)으로 성가나밀(星嘉那密)이다. 정흥기 포의 5인(호) 중 김씨가 1인(호)으로 덕순(德純)이며, 장씨가 1인(호)으로 번덕주(番德柱)이고, 홍씨가 1인(호)으로 덕극손(德克孫)이며, 정씨가 1인(호)으로 고이마흔(古爾馬渾)이고, 조씨가 1인(호)으로 조기(曹基)이다. 양백기 포의 18인(호) 중 김씨가 4인(호)으로 김등(金登), 대합니(戴哈尼), 애석(愛錫), 만주(滿住)이고, 이씨가 1인(호)으로 노격(老格)이며, 박씨가 2인(호)으로 동안(東安), 이극제리(伊克濟理)이다. 또 장씨는 1인(호)으로 승눌미(僧訥米)이며, 유씨는 2인(호)으로 삼내(三廬), 유문선(劉文宣)이고, 오씨는 1인(호)으로 오나해(吳那海)이며, 진씨는 1인(호)으로 진도(陳都)이며, 문씨는 1인(호)으로 문서(文瑞)이다. 임씨는 1인(호)으로 외랑(外朗)이며, 서씨는 1인(호)으로 서대용(徐大勇)이며, 민씨는 1인(호)으로 철령의(鐵令義)이고, 맹씨는 1인(호)으로 나대(羅岱)이며, 전씨는 1인(호)으로 흥니벽(興尼璧)이다. 양흥기 포의 2인(호)은 김씨로 명색니(明色尼), 김덕룡(金德龍)이다. 정람기 포의 6인(호) 중 김씨가 1인(호)으로 탕색(湯色)이고, 최씨가 2인(호)으로 최태(崔泰), 매릉(梅楞)이며, 유씨가 1인(호)으로 유평(劉平)이고, 경씨가 1인(호)으로 경세니(耿世尼)이며, 마씨가 1인(호)으로 마니(馬尼)이다. 양람기 포의 24인(호) 중 김씨가 13인(호)으로 덕배(德倍), 김덕배(金德裴), 해고니(海古尼), 제고니(濟古尼), 산룽이(山隆伊), 영특기(永特基), 정해길(定海吉), 석색(碩色), 혁기(赫基), 김성(金誠), 제도수(齊都隨), 서의(書義), 정액리(精額理)이다. 또 한씨가 1인(호)으로 부랑아(傅朗阿)이며, 이씨가 2인(호)으로 등나필(騰那弼), 이사격(李四格)이고, 장씨가 1인(호)으로 장봉익(張鵬翼)이며, 강

씨(岡氏)가 2인(호)으로 무사(茂思), 비사고(費查庫)이며, 진씨가 1인(호)으로 패안(霸顔)이고, 손씨가 1인(호)으로 옥란(玉蘭)이며, 임씨(林氏)가 1인(호)으로 임상례(林尙禮)이고, 마씨가 1인(호)으로 고리(高理)이며, 정씨(鄭氏)가 1인(호)으로 사기(謝基)이다. 상술한 만주팔기 포의의 편제에서 상삼기 포의, 즉 내무부(內務府) 삼기(三旗)에 소속되어 황제 측근이나 황실에서 복무하는 사람이 77인(호)으로 조선 가족의 포의기(包衣旗) 총수인 132인(호)의 58%를 점하고 있다. 이 중에서 정황기의 포의가 63인(호)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제왕(諸王)을 위해 복무하는 하오기의 포의는 55인(호)으로 42%를 차지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양백기에 18인(호), 양람기에 24인(호)으로 두 기에 집중되어 있고 이 밖의 기에는 비교적 적었다.

설명해야 할 것은 만주 포의기에 편입된 고려 가족원들은 황제와 제왕에게 복무하였지만, 그들이 만주 사회의 최하층 포의, 아합(阿哈)과 같이 착취와 억압을 많이 받았던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만주 귀족이 긴급히 힘을 확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 이들 고려 가족은 후금에 귀부하였고 적극적으로 만주와 하나로 융합되어 만주족, 몽골인 등과 함께 영토를 개척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힘써 싸워 그 공로가 혁혁하였다. 고려 가족은 후금 사회에서 일정한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이민족이라고 해서 관작 승급에서 차별받거나, 만주인으로서 교육을 받고 과거 시험을 치르고 황족(皇族)과 혼인을 맺는 등 응당 받아야 할 대우와 의무에서 영향을 받는 일이 없었다. 일부 고려 가족은 또한 상층 관료 집단에까지 올라가 만주 상층의 세가대족(世家大族)이 되었고, 많은 고려 가족원들은 중·하급 문무(文武) 관리를 맡아 적절하게 안치되었고 생활은 안정되었으며 더욱 적극적으로 만주 귀족이 벌이는 사업에 헌신하였다.

이들테면 대대로 역주(易州)에 살았던 김씨 가족의 신달리(新達理)는 만

주 정흥기 포의의 사람으로 천총 원년(1672)에 둘째 동생 음달리(音達理), 셋째 동생 삼달리(三達理), 넷째 계달리(季達理) 등의 자제를 이끌고 귀부했고 후금은 통사관(通事官)을 제수했다. 당시 새로 귀부한 고려 통사관 등 납미(登納米)가 비밀리에 조선 국왕에게 글을 보내서 만주 군대의 허실을 보고하고 조선 국왕이 출병하여 수로(水路)로도 아울러 진군하도록 유도하고 자기는 내용하고자 했다. 신달리가 그 글을 가로채 조정에 보고하였다. 조정은 등납미를 처벌하고 그 집의 재산을 신달리에게 상으로 내렸다. 예친왕(睿親王) 도르곤의 노복인 고려인 은니비(恩尼比)가 늘 고려를 왕래했는데 몰래 딴 뜻을 품어 그의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으나, 이 역시 신달리가 편지를 가로채 고발하여 곧 처벌되었다. 신달리의 이러한 행동은 그들 가족이 만주 귀족과 긴밀히 협조하고 온 가족이 한마음으로 후금의 새 주인에게 충성을 바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고려를 정복하는 전쟁 중에 그들은 길잡이가 되었으며 조선의 국왕 등을 사로잡아 강제로 항복 협정을 승인하도록 하였다. 청 태종 황태극은 포로로 잡아온 고려인들로 좌령(佐領)을 나누어 편성하여 신달리에게 통할하도록 명하고 아울러 내무부 삼기 화기영(火器營)의 총관사(總管事)를 겸하도록 하였다. 그의 장자 갈포랍(曷拏立)은 3등 시위(侍衛)에 임명되었고, 차자 호주(胡住)는 2등 시위에 임명되었으며 참령(參領)에 좌령을 겸하였다. 셋째 아들 화주(花住)는 원외랑(員外郎)에 임명되었고 좌령을 겸하였다. 화주의 아들 상명(常明)은 어전대신(御前大臣), 영시위내대신(領侍衛內大臣), 판리상사원사무(辦理上駟院事務), 내무부총관(內務府總管)을 맡았고 좌령을 겸하였다.³ 셋째 동생 삼달리의 증손 김간(金簡)은 내무부총관대신(內務府總管大臣), 『사

3 『通譜』卷72, 「金氏·新達理」.

고전서(四庫全書)』 부총재(副總裁), 호부시랑(戶部侍郎), 양황기한군부도통(鑲黃旗漢軍副都統), 공부상서(工部尙書), 양황기한군도통(鑲黃旗漢軍都統), 이부상서(吏部尙書) 등 요직을 역임했다. 김간의 아들 온포(溫布)도 일찍이 남령시위(藍翎侍衛)가 되어 내무부총관대신, 무영전총재관(武英殿總裁官), 양황기한군부도통, 공부시랑(工部侍郎), 정홍기몽고부도통(正紅旗蒙古副都統), 병부시랑(兵部侍郎), 공부상서, 양홍기한군도통(鑲紅旗漢軍都統), 정람기만주부도통(正藍旗滿洲副都統), 서호부상서(署戶部尙書) 등을 역임하였다.⁴ 김간의 여동생은 ‘수녀(秀女)’에 선발되어 고종(高宗) 흥력(弘曆)의 황귀비(皇貴妃)가 되었고 네 명의 황자를 낳아 고종의 총애를 많이 받았다.⁵ 가정(嘉慶) 초에 인종(仁宗)이 명을 내려 정황기 포의 김씨를 ‘상삼기’로 끌어올리도록 하고 김가씨(金佳氏)의 성을 하사했고 아울러 ‘옥첩(玉牒)’을 하사한 성으로 고쳐 쓰도록 함으로써 김씨 가문에 대한 은총을 보여주었다. 일부 고려포의의 세가 대족은 만주 사회의 상층 귀족이었고 결코 일반 팔기만주 포의의 사람들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2. 독립적으로 편성된 조선과 고려의 좌령

팔기만주 중에는 습속이 비슷한 민족 혹은 영역 밖의 민족으로 독립적으로 편제한 좌령이 있었다. 이를테면 주변 소수민족으로

4 『國朝大臣列傳』 正編 卷176, 「金簡列傳」, 臺北故宮博物院藏; 『國朝者獻類徵』 卷90, 「金簡傳」.

5 唐邦治輯, 『清皇室四譜·二后妃』.

편성한 색륜좌령(素倫佐領), 석백좌령(錫伯佐領), 회자좌령(回子佐領), 액로특좌령(厄魯特佐領)과 영역 밖의 민족으로 단독 편성한 고려좌령, 조선좌령, 안남좌령(安南佐領), 아라사좌령(俄羅斯佐領) 등이 그것으로, 고려 가족으로 편성한 좌령의 수가 가장 많았다. 고려와 조선 가족으로 좌령을 단독 편성하는 데에는 세 가지의 원칙이 있었다. 첫째, 국초(國初)에 조선에서 귀부한 인원으로 편성했다. 이른바 ‘국초’란 천명(天命) 시기를 가리키며 황태극의 천총 연간도 포함하고 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팔기만주 기본좌령(旗分佐領) 내에 편성되어 들어갔는데 만주도통(滿州都統) 제4참령(參領) 제9조선좌령 등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둘째, 일부 귀부해온 사람들과 포획한 고려의 인호(人戶)로써 좌령을 나누어 편성했다. 김씨 신달리등과 같이 자진해서 귀부한 경우는 정황기 만주포의 제4참령 제2고려좌령에 편입시켰다. 이들은 통상 만주 삼삼기(上三旗)의 포의좌령(包衣佐領)에 편입되어 내무부 관할하에 예속되었고, 일부 조선의 투항민은 하오기(下五旗)의 포의좌령 내에 분산 편제되었다. 정묘(丁卯), 병자(丙子) 두 차례의 호란(胡亂)으로 광산군수(郭山郡守) 박유건(朴有建), 정주목사(定州牧使) 김진(金楮) 등과 같은 일부 관원들이 “항복하여 변발할 것을 요청하였고” 성(城)이 함락되자 “변발하여 노(奴)가 되었다.”

또한 조선의 “군민(軍民)들은 모두 사로잡혀 끌려가 머리를 깎이고 편성되었고 호복(胡服)을 입고 앞잡이가 되었으며,” “사로잡힌 젊은이들은 변발을 시켜 말과 갑옷을 지급하여 선봉으로 삼았다.”⁶

전쟁이 끝난 뒤 대부분은 팔기만주 포의좌령 내에 편입되었다. 셋

6 (朝鮮) 李肯翊, 「丁卯虜亂」, 『燃藜室記述』 27, 潘喆 等編(1984), 『清入關前史料選輯』 제1집, 中國人民大學出版社에 수록된 내용 참조.

째, “좌령 내에 인원이 늘어나자 하나의 좌령을 나누어 편성하였다.”
 정황기 만주도통 제4참령 제10조선좌령과 같은 것은 바로 그 기(旗)의
 제4참령 제9조선좌령의 늘어난 인원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다. 청 왕
 조가 중원을 장악한 뒤 고려좌령의 인원이 늘어나자 강희 전기에 확대
 하여 편성하였는데 그 속에는 만주 기분좌령과 포의좌령을 포괄하고
 있었다.

『팔기통지(八旗通志)』 초집(初集) 『기분지(旗分志)』의 기록에 따르면 고려
 43성으로 단독 편성한 만주 6개 좌령은 만주 정황기와 정흥기 내에 집
 중되어 있었고, 포의좌령 2개는 정황기의 포의좌령 속에 편제되어 합
 계 8개 좌령이었다. 만주기분(滿洲旗分)에 편제된 것을 일반적으로 조선좌
 령이라고 하고, 포의기에 편제된 것은 고려좌령이라고 불렀다. 여기서
 『흠정팔기통지(欽定八旗通志)』, 『통보』의 열전(列傳)을 근거로 8개 좌령의 설
 치와 관리에 대해 대략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황기 만주도통 제4참령 소속의 18좌령 중 제9, 10이 조선좌령이었다

제9좌령은 조선좌령으로 『흠정팔기통지』(이하 『통지(通志)』라고 약칭한다)
 권5 「기분지5(旗分志五)」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제4參領 제9佐領은 國初 조선에서 귀부해온 인원으로 편성한 것이
 다. 처음에 納林이 관리하고, 納林의 연고로 그의 아들 達敏이 관리하
 였다. 達敏은 일로 인해 물러났고 그의 동생 阿達哈哈番 達爾胡다가

관리하였다. 이후 達爾胡大로 하여금 阿達哈哈番을 전담하게 하자 그의 동생 戴都가 관리하였다. 戴都의 연고로 그의 장자 戴寧이 관리했다. 戴寧의 연고로 그의 동생 戴文이 관리하였다. 戴文이 3등 阿達哈哈番을 계승하자 戴寧의 아들 副都統 戴林布가 관리하였다. 戴林布가 江寧將軍으로 승진하자 그의 동생 富泰가 관리하였다. 富泰의 연고로 그의 조카의 아들 羨昌이 관리하였다. 羨昌의 연고로 그의 아들 恒泰가 관리하였다. 恒泰가 일로 인해 직위가 박탈되자 그의 叔曾祖의 손자인 佟德이 관리했다. 이어서 騎都尉 常福이 관리하였다.⁷

건륭 9년에 완성한 『통보』 권11 「타탐라씨(他塔喇氏)·납림(納林)」에도 아래와 같이 기록되었다.

納林은 正黃旗 사람으로 대대로 納殷工 지방에 거주하였다. 天聰 때에 형 葉臣巴圖魯와 함께 만주족 14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귀부하자 佐領으로 편성하여 그들을 통할하도록 하였고 다시 騎都尉를 제수하였다. 北京을 평정할 때 山海關을 들어와 流賊의 기·보병 20만 명을 공격하여 공적이 있었고 다시 一雲騎尉를 더해 주었다. 그가 죽자 그의 아들 達敏이 그 직을 이었다. 세 번의 은전을 받아 직이 추가되어 1등 輕車都尉에 이르렀다. 일로 인해 은전으로 더해진 직은 삭탈되었고 나머지의 騎都尉는 一雲騎尉와 아울러 그의 친동생 達爾瑚達이 이어받았다. 廣東 정벌에 수종하여 新會縣에서 賊將 李定國의 군대 1만여 명을 격파했고 3등 輕車都尉에 제수되었다. 그가 죽자 그의 아들 達爾布富喀, 손자 富昌이 잇달아 계승하였다. 富昌이 죽자 그의 작은 할아버지의 아들 達綬가 그 직을 이었다. 그가 죽자 그의 아들 奇昌이 직을 이었다. 일로 인해 물러났고 그의 작은 할아버지의 아들 岱(戴

7 (清) 紀昀等, 「旗分志五」, 『欽定八旗通志』卷5, 李洵等 校點本(2002), 吉林文史出版社.

자와 같은 음으로 아래 문장에서도 같다)文이 직을 이었다. 그가 현임 좌령이다. 또한 納林의 아들 岱都는 전임 좌령이다. 손자 岱興은 전임 7품관이며, 陳特은 전임 員外郎이고, 岱寧은 전임 좌령이다. 증손인 什德도 역시 전임 좌령이고, 啓祿이 현임 좌령이며, 啓承額이 현임 長史이고, 岱林布가 현임 江寧將軍이며, 富泰는 현임 蔭生이며, 啓明은 현임 庫使이다.⁸

『통보』는 이 좌령에 대한 기술이 비교적 상세한데 그것은 태종 천축 연간에 설립되어 만주인 납림이 관할하였다. 천축 때에 납림은 그의 형 葉新(葉臣)과 함께 만주족 140명을 이끌고 후금(後金)에 귀부하여 “좌령으로 편재되어 그것을 통솔하였다.” 팔기의 제도에 따르면 하나의 우록(牛錄, 佐額)은 300명으로 되어 있었다. 당시 만주로 투항한 부족은 일반적으로 모두 전 가족을 데리고 왔다. 납림이 통솔한 140명 중에는 분명히 노인, 부녀자, 아동을 포함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청장년만으로는 따로 좌령을 편성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좌령은 귀순한 조선 장정을 위주로 하고 일부 납림이 통솔하는 만주 타타라씨의 장정을 편입하여 그가 통솔한 것이다. 이 좌령은 팔기 중의 ‘세관좌령(世管佐額)’, 즉 그 족내(族內)에서 좌령을 계승하는 것에 속한다. 두 개의 사료를 종합하면 그 좌령을 관리하는 자의 세계(世系)는 납림 → (아들) 달민(達敏) → (동생) 달이호대(達爾胡大) → (동생) 대도(戴都) → (아들) 대영(戴寧) → (동생) 대문(戴文) → (寧의 아들, 조카) 대포림(戴布林) → (동생) 부태(富泰) → (조카의 아들) 선창(羨昌) → (아들) 항태(恒泰) → (叔曾祖의 손자) 동덕(佟德) → (騎都尉) 상복(常福)이다.

8 『通譜』 卷11, 「各地方他塔喇氏·納林」.

제10좌령은 조선좌령으로 『통지』의 같은 권에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제4참령 제10좌령은 제9좌령 안에서 늘어난 인원이다. 강희 6년 戴都가 좌령을 관할할 때 좌령 하나를 나누어 세우고 達爾胡大의 아들 戴敏의 繼子 福喀이 관리하였다. 福喀의 연고로 그의 아들 福長이 관리하였다. 福長의 연고로 戴敏의 次子 達壽가 관리하였다. 達壽의 연고로 그의 아들 奇常이 관리하였다. 이후 바꾸어 戴興의 아들 石德에게 관리하도록 하였다. 石德이 일로 인해 물러나고 그의 아들 奇祿이 관리하였다. 奇祿의 연고로 그의 아들 佟泰가 관리하였다. 佟泰가 일로 인해 물러나자 그의 할아버지의 3세손인 佟德이 관리하였다.⁹

이 좌령은 강희 6년(1667) 제9조선좌령에서 늘어난 인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계속해서 타탐라씨 남림의 자손이 관할하였다. 『통보·납림전』은 제9, 10 두 개의 좌령의 세습 관리 세계를 하나로 섞어 말하고 있어 분간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팔기통지』의 기술은 더 분명하여 제10좌령이 바로 조선좌령이며, 이 좌령은 여전히 팔기 중의 ‘세관좌령’에 속하며 또한 족내(族內)에서 좌령을 계승하는 것이었다. 그 관리 세계는 (戴敏의 繼子) 福喀(福喀) → (아들) 福長(福長, 또는 福昌이라고도 쓴다) → (戴敏의 次子) 달수(達壽, 또는 綬라고도 쓴다) → (아들) 기상(奇常, 또는 昌이라고도 쓴다) → (戴興의 아들) 석(또는 什이라고도 쓴다) 덕(德) → (아들) 기(奇, 또는 啓라고도 쓴다) 목(祿) → (아들) 동태(佟泰) → (祖三世孫) 동덕(佟德)이다.

9 『通志』 卷5, 「旗分志」 5.

2) 정홍기 만주도통 제1참령 소속 4개의 조선좌령

『흙정팔기통지』 권8 「기분지팔(旗分志八)」은 제1참령 제12좌령을 기록하고 있다.

제1참령 제12좌령은 國初에 조선에서 와서 귀부한 인원으로 편성한 것이다. 처음에 馬富塔이 관리하였고, 馬富塔의 연고로 그의 손자인 1등 阿達哈哈番이자 一拖沙喇哈番, 步軍總尉 邦那密이 관리하였다. 邦那密이 늙어서 사퇴하자 參領 阿祿이 관리하였다. 阿祿이 足疾로 사퇴하자 그의 동생인 1등 阿達哈哈番이자 一拖沙喇哈番, 副都統 常來가 관리하였다. 常來가 일로 인해 물러나자 그의 동생 常祿이 관리하였다. 常祿도 역시 일로 인해 물러나자 다시 阿祿이 관리했다. 阿祿이 사퇴하자 그의 손자 德靑이 관리하였다. 德靑의 연고로 그의 아들 靑山이 관리하였다. 靑山の 연고로 그의 叔曾祖의 손자 八十三이 관리하였다. 八十三의 연고로 그의 삼촌의 손자인 岱凌阿가 관리하였다.¹⁰

『통지』 권11 「타답라씨·마부타」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瑪富他是 正紅旗 사람으로 대대로 瓦爾喀 지방에 거주하였다. 이후 조선에 들어가 거기에 예속되었다. 조선을 평정할 때에 다시 133인을 거느리고 조선을 떠나 돌아왔다. 騎都尉를 제수하였다. 그 소속민으로 좌령을 편성했고 그의 손자 邦那密에게 통솔하도록 하였다. 瑪福他가 죽자 그의 騎都尉도 역시 邦那密에게 잇도록 하였다. …… 죽자 그의 아들 常賴가 있었는데 전임 副都統이었으며, 일로 인해 은전으

10 『通志』 卷8, 「旗分志」 8.

로 더해진 직을 식탈당했고 나머지의 3등 輕車都尉는 그의 친형인 尙祿이 있었는데, 전임 城守尉이자 佐領이었고, 그가 일로 인해 물러나자 그의 친형의 손자 德淸이 현재 그 직을 이었다. 또한 瑪福他的 손자 巴克勤은 전임 郎中이다. 증손 常祿은 전임 좌령이고, 阿魯, 法克 짝은 모두 현임 좌령이다. 元孫인 郎圖는 전임 護軍校이며, 明阿는 전임 좌령이다.¹¹

두 사료를 통해 이 좌령은 국초에 조선에서 와서 귀부한 인원으로 편성한 것이며, 그 시기는 ‘조선을 평정할 때’, 실제로는 태종 황태극이 칸을 칭하던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황태극은 두 번 조선에 출병하였는데 한 번은 천총 원년(1627) 정월에서 4월초까지이고, 다른 한 번은 승덕(崇德) 원년(1636) 12월부터 다음해의 2월초까지이다. 두 번째로 조선을 침공할 때에 “호장(胡將) 마부대(馬夫大, 바로 瑪福他)가 수백의 철기(鐵騎)를 이끌고 제홍원(濟興院)에 이미 도착하여 일부 군대로 양강천(陽江川)을 막아 강도(江都)로 길을 끊었다.”¹² 이로써 보건대 이 좌령이 승덕 원년에 편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좌령은 팔기 중의 ‘세관좌령’에 속하며 또한 족내에서 계승하는 좌령이다. 그 관리 세계는 마부탑(馬富塔, 또는 瑪福他)라고 쓴다 → (손자) 방나밀(邦那密) → (아들, 증손) 아록(阿祿, 魯라고도 쓴다) → (동생) 상래(常來, 賴) → (동생) 상록(常祿) → (형) 아록(阿祿) → (손자) 덕청(德淸, 淸이라고도 쓴다) → (아들) 청산 → (叔曾祖의 손자) 팔십삼(八十三) → (叔의 손자) 대릉아(岱凌阿)이다.

『통지』 같은 권에 제1참령 제13좌령이 기록되어 있다.

11 『通譜』卷11, 「他塔喇氏·瑪福他」.

12 『燃藜室記述·丙子胡亂』.

제1참령 제13좌령은 바로 제12좌령 내에서 늘어난 인원이다. 강희 23년 阿祿이 좌령을 관할할 때 좌령 하나를 나누어 편성하여 阿祿의 동생인 3등 阿達哈哈番 兼護軍參領 尙祿이 관리하도록 하였다. 尙祿이 錦州 副都統 街城守尉로 승진하자 그의 아들 明安이 관리하였다. 明安의 연고로 그의 族叔인 法克進이 관리하였다. 法克進의 연고로 그의 백부의 손자인 常德이 관리하였다. 常德의 연고로 그의 숙부의 아들 巴克進이 관리하였다. 巴克進의 연고로 그의 아들 興貴가 관리하였다. 興貴의 연고로 그의 아들 勒京阿가 관리하였다.¹³

이 사료와 「마부타전」을 분석하면 이 좌령은 강희 23년(1694) 아록이 제12조선좌령을 관할할 때에 늘어난 인원으로 편성한 것이며 계속해서 팔기 중의 ‘세관좌령’에 속했고 역시 족내에서 계승하는 좌령이었다. 그 관리 세계는 (阿祿의 동생) 상록(尙祿) → (아들) 명안(明安, 阿라고도 쓴다) → (族叔) 법극진(法克進, प्이라고도 쓴다) → (백부의 손자) 상덕(常德) → (숙부의 아들) 파극진(巴克進) → (아들) 흥귀(興貴) → (아들) 늑경아(勒京阿)이다. 이로써 보건대 『통보·마부타』의 두 개의 좌령 세계에 관한 기술은 뒤얽혀 있는 것이며 『통지』와 대조해야만 그 맥락이 소통될 수 있는 것이다.

『통지』 같은 권에 제1참령 제14좌령에 대한 기록이 있다.

제1참령 제14좌령은 원래 國初에 조선에서 와서 귀부한 인원으로 반개의 좌령을 편성하여 처음에는 韓運이 관리하였다. 韓運의 연고로 그의 아들 韓季가 관리하였다. 韓季의 연고로 韓泥의 아들 那秦이 관리하였다. 那秦이 寧古塔協領으로 승진하자 韓季의 손자인 2등 哈思尼哈番 鈕鈕가 관리하였다. 강희 33년에 인원이 번성하자 완전한 하

13 『通志』 卷8, 「旗分志」 8.

나의 좌령으로 확정했고 계속해서 鈕鈕가 관리하였다. 鈕鈕의 연고로 그의 아들 阿達哈哈番 韓都가 관리하였다. 韓都가 일로 인해 물러나자 那秦의 동생의 아들인 1등 哈達哈哈番이자 托沙拉哈番 進德이 관리하였다. 進德이 일로 인해 물러나자 그의 伯祖의 3세손 韓占이 관리하였다. 韓占의 연고로 副都統 明圖가 관리하였다. 이어서 그의 아들 鄂爾克圖가 관리하였다.¹⁴

『통보·한운(韓運)』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韓雲은 正紅旗 사람으로 대대로 易州 지방에 거주하였다. 國初에 동생인 韓尼와 함께 와서 귀부하여 2등 輕車都尉를 제수하였고 좌령을 편성하여 이에게 통속시켰다. …… 공을 서훈하여 1등 輕車都尉를 제수하였다. 그가 죽자 그의 아들 韓基가 그 직을 이었고 3번 은전을 받아 2등 男까지 가해졌다. 그 元孫 韓都가 직을 이었다. …… 그가 죽자 그의 숙부의 아들 韓占이 직을 이었다.¹⁵

『통보·한니』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韓尼는 國初에 형인 韓雲과 함께 와서 귀부하였고 3등 輕車都尉를 제수하였다. 3번 은전을 받아 1등 輕車都尉에 이르렀고 一雲騎尉도 겸하였다. 그가 죽자 그의 다섯째 아들인 傑海가 직을 이었고 防禦를 맡았다. 그가 죽자 그의 손자 晉德이 직을 이었고 현임 長史이자 좌령을 겸하고 있다. 또한 韓尼의 장자인 傑林은 전임 장사이자 좌령을 겸하였다. …… 또한 韓尼의 여섯째 아들인 星韶는 전임 좌령이다.¹⁶

14 『通志』卷8, 「旗分志」8.

15 『通譜』卷72, 「韓氏·韓雲」.

16 『通譜』卷72, 「韓氏·韓尼」.

『청태조무황제실록(淸太祖武皇帝實錄)』 권4에 기록된 바, 천명 10년(1625) 정월, 조선의 한운(韓潤, 雲), 한의(韓義, 尼)가 “탈주하여 와서 귀부했다.” 그런데 이 형제를 ‘潤과 조카 義’라고 속질 관계로 오해하고 있다. 『만문노당(滿文老檔)』은 이 두 사람을 형제라고 하여 『무황제실록(武皇帝實錄)』에 속질 관계라고 기록되어 있는 오류를 바로잡았다.¹⁷

위에서 언급한 사료에 따르면 이 좌령은 천명 10년에 처음 편성되어 처음에는 반개의 우록(牛錄, 佐領)이었다. 강희 33년 ‘인원이 번성하여’ 완전한 하나의 좌령으로 확대 편성되었다. 팔기 중 ‘세관좌령’에 속하며 족내에서 계승하는 좌령이기도 했다. 이 좌령의 관리 세계는 한운(韓雲, 運이라고도 한다) → (아들) 한계(韓季, 基라고도 한다) → (韓尼泥라고도 한다)의 아들, 중형제) 나진(那秦) → (季의 손자) 뉴뉴(鈕鈕) → (아들) 한도(韓都) → (那秦의 동생 傑海의 아들) 진(進, 晉이라고도 한다) 덕(德) → (尙祖 3세손) 한점(韓占) → (副昭統) 명도(明圖) → (아들) 악이극도(鄂爾克圖)이다. 「한니전(韓尼傳)」에는 그 장자인 걸림(傑林), 여섯째 아들 성소(星韶)가 전임 좌령이라고 쓰고 있지만, 『통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통지』 같은 권에는 제1참령 제15좌령이 기록되어 있다.

제1참령 제15좌령은 강희 40년 阿祿, 尙祿의 두 좌령 내에서 늘어난 인원으로 하나의 좌령을 나누어 편성하였고 監察御史 阿世坦이 관리하였다. 阿世坦의 연고로 大理寺卿 苗壽가 관리하였다. 苗壽가 일로 인해 물리나자 郎中 覺羅綸達禮가 관리하였다. 綸達禮가 福建按察使로 승진하자 御史 齊輔이 관리하였다. 이어서 副參領 永山이 관리하

17 『淸太祖武皇帝實錄』 卷4, 『滿文老檔譯注』 천명 11년 정월부터 3월까지, 중화서국, 1990년판 참조.

였다. 永山이 승진하자 同善이 관리하였다. 同善이 승진하자 3등 侍衛 和珅이 관리하였다. 和珅이 승진하자 3등 侍衛 宗室 福色鏗額이 관리하였다.¹⁸

이 좌령은 강희 40년(1701)에 본기(本旗)의 같은 참령 하의 아록이 관할하는 제12좌령과 상록이 관장하는 제13좌령 내에서 늘어난 인원을 합쳐서 편성한 것으로, 팔기 중의 ‘공중좌령(中公中佐領)’에 속한다. 역대의 좌령의 관리자들은 (감찰어사) 아세탄(阿世坦) → (대리시경) 묘수(苗壽) → (낭중) 각라륜달례(覺羅倫達禮) → (어사) 제식(齊軾) → (부참령) 영산(永山) → (?) 동선(同善) → (3등 시위) 화신(和珅) → (3등 시위) 종실(宗室) 복색갱액(福色鏗額)이다.

상술한 6개 조선좌령의 특징은 3개는 만주인이 통할하고 3개는 조선인이 관리한다는 것이다. 정홍기 만주도통 제1참령 제15좌령 하나가 ‘공중좌령’인 것을 제외하고, 5개 모두 ‘세관좌령’이며¹⁹ 점차 일족(一族) 내에서 ‘좌령을 계승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팔기만주로 편제된 정규군이 되었다.

18 『通志』卷8, 「旗分志」8.

19 (清) 吳振棫, 『養吉齋叢錄』卷之一에 기록하기를, “國初에 각 부락의 장이 소속을 거느리고 귀부해 오면 그에게 좌령을 제수하여 그로써 그 무리를 통솔하는 경우를 勳舊佐領이라고 했다. 무리를 이끌고 귀순하여 공이 旂常에 있고, 戶口가 하사된 자를 優異世管佐領이라고 했다. 단지 형제와 족인들과 함께 귀부해 와서 직을 제수한 경우를 世管佐領이라고 했다. 戶와 장정의 수가 적어서 합쳐서 좌령을 편성하여 두 姓, 세 姓이 번갈아 이 관직을 맡는 경우를 互管佐領이라고 했다. 각 좌령이 여분의 장정을 뽑아서 좌령을 증편하면 이것이 中公中佐領이다.” 吳振棫(1983), 『養吉齋叢錄』卷之一, 北京古籍出版社.

3) 정황기 만주포의 제4참령 소속의 제1, 2 고려좌령

『통지』 권5 「기분지5」에 제1고려좌령이 기록되어 있다.

제4참령 제1고려좌령은 강희 34년 花色이 관할하는 고려좌령의 인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인해 하나의 좌령을 나누어 내어 內務府總管, 嚮領侍衛內大臣, 散秩大臣 겸 管奉宸苑 常明이 관리하였다. 常明의 연고로 內務府大臣 塔克圖가 관리하였다. 塔克圖의 연고로 郎中 福成이 관리하였다.

이 좌령은 같은 참령 소속의 제2고려좌령에서 늘어난 인원을 나누어 설치한 것으로, 그 시기는 화색(花色)이 좌령을 맡은 강희 34년(1695)이다. 내무부총관 등의 요직을 겸한 상명(常明)이 처음으로 제1고려좌령을 맡았다. 그는 천명(天命) 연간에 조선의 족인(族人)들을 이끌고 와서 귀부한 요좌(遼左)의 대가(大家) 김씨 신달리의 손자, 화색의 아들로서 이후 어전대신(御前大臣), 영시위내대신(領侍衛內大臣)의 관직에 이르러서 그 관위가 매우 화려했다. 이 좌령은 ‘세관좌령’에서 ‘공중좌령’으로 바뀌었다. 그 좌령의 관리자는 (김씨 화색의 아들) 상명 → (內務府大臣) 탑극도(塔克圖) → (낭중) 복성(福成)이다.

제2고려좌령에 관해 3개의 사료 기록이 있는데, 『통지』 권5 「기분지5」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제4참령 제2고려좌령은 國初에 편성되었다. 처음에 新達理가 관리했고 新達理의 연고로 그의 동생 尹達理가 관리하였다. 尹達理의 연고로 新達理의 아들 胡住가 관리하였다. 胡住가 일로 인해 물러나자 그

의 동생 花住가 관리하였다. 花住의 연고로 계속해서 胡住가 관리하였다. 胡住의 연고로 호주의 아들 他穆保가 관리하였다. 他穆保는 병으로 사퇴했고 그의 아들 花色이 관리하였다. 화색의 연고로 그의 族人 三保가 관리하였다. 삼보가 公中佐領을 관할하는 것으로 옮기자 常明의 동생인 藍翎侍衛 雙保가 관리하였다. 雙保의 연고로 兵部侍郎 金輝가 관리하였다. 金輝의 연고로 郎中 福克精額이 관리하였다.²⁰

『설극심비록(雪履尋碑錄)』 권12 「皇清誥贈光祿大夫佐領兼總理內務府三旗火器營事務金公神道碑」(「金公神道碑」라고 약칭한다)에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공은 성이 金이고 諱는 新達禮, 조선의 翼(易)州 사람이다. 성품이 과감하고 민첩하며 幹略이 많았다. 우리 太祖 高皇帝가 遼海에서 발흥하여 그 神武함은 하늘이 내린 것이었으니 강역을 확대하였고 현능한 자를 임용하여 그 꾀와 힘을 다하도록 하셨으니 한때의 人心이 모두 이에 따랐다. 공은 天聰 원년에 그의 동생 音達禮, 三達禮, 季達禮를 이끌고 귀부해 왔다. 太宗 文皇帝는 通事官 하나를 임명하여 奸弊를 적발하고 그 機互를 꺾으니 간첩이 설치지 못하였다. 2년이 지나 조선에서 귀부하는 인호가 더욱 많아지자 좌령을 나누어 설치하였다. 태종 문황제는 공의 충성스러움을 잘 아시어 특별히 명하여 內務府에 들어오도록 하고 좌령을 제수하고 總理三旗火器營事務를 겸하도록 하였다. …… 다음의(둘째아들) 胡住는 2등 侍衛, 參領兼佐領, 總理內務府三旗火器營事務를 맡았다. 다음(셋째아들)의 花住는 좌령을 계승하였고 都虞司員外郎, 總理內務府三旗火器營事務를 맡았다. 손자 7인은 …… 다음(다섯째 손자)인 常明은 좌령으로부터 累昇하여 散秩

20 『通志』 卷5, 「旗分志」 5.

大臣에까지 이르렀고 內務府總管, 奉宸苑正卿을 겸하였다.²¹

『통지·김씨(金氏)·신달리』에도 기록되어 있다.

新達理가 聖意를 받들어 (조선 국왕을) 잘 保全하였다. 태종 문황제가 특별한 상을 내렸고 포획한 고려 人戶를 나누어 佐領을 편성하여 신달리에게 특명을 내려 통할하도록 하고 아울러 內務府三旗火器營總管事도 겸하도록 하였다. …… 둘째 아들 胡住는 전임 2등 侍衛로 참령과 좌령을 겸하였다. 셋째 아들 花住는 전임 員外郎으로 좌령을 겸하였다. 화주의 아들 常明은 전임 御前大臣, 領侍衛內大臣, 辦理上駟院事務, 內務府總管으로 좌령을 겸하였다. …… 신달리의 둘째 동생 音達理는 전임 좌령이며, 셋째 동생 三達理는 전임 通事官이다. 그의 손자 三保는 현임 巡視長蘆鹽政, 武備院卿으로 좌령을 겸하고 있다.²²

위의 사료에서 언급된 것을 종합하면 이 좌령의 설치 시기로는 세 개가 있다. 하나는 ‘국초에 편성된 것’으로 『통지』 중의 ‘국초’는 천명 연간을 가리킨다. 그러나 「김공신도비(金公神道碑)」에서는 또한 그가 천총 원년에 귀부해 왔다고 말하고 있어서 분명히 『통지』가 부정확하다. 하나는 천총 3년(1629)으로 역시 「김공신도비」에 근거하여 “2년이 지나 조선에서 귀부하는 인호(人戶)가 더욱 많아져서 좌령을 나누어 설치하였다.” 하나는 승덕(崇德) 2년(1637)으로 황태극이 조선 정벌에 공이 있다고 해서 “특별히 상을 내리고 포획한 고려 인호로 좌령을 나누어 편성하였

21 (淸) 盛昱(1985), 「皇清誥贈光祿大夫佐領兼總理內務府三旗火器營事務金公神道碑」, 『雪履尋碑錄』卷12, 『遼海叢書』第5冊, 遼瀋書社.

22 『通譜』卷72, 「金氏·新達理」.

다.” 천총 3년에서 승덕 2년까지는 전후로 9년이 이어지는데 사료 분석에 따르면 이 좌령은 천총 3년에 조선의 인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선 반개의 우록으로 편성하였다. 승덕 2년에 조선을 정복하여 포획한 인호로 완전한 하나의 우록으로 확대 편성하고 정황기의 내우록(內牛錄), 즉 포의우록(包衣牛錄)에 소속시켰다. 청초에 준군사조직인 내무부가 설립된 뒤에 만주 상삼기 정황기의 포의좌령에 예속되었다. 이 좌령도 역시 일족 내에서 ‘계승하는 좌령’에 속한다. 그 관리 세계는 신달리(禮라고도 한다) → (동생) 음(音, 尹이라고도 한다) 달례(達禮) → (조카, 新達理의 아들) 호주(胡住) → (동생) 화주(花住) → (형) 호주 → (아들) 타목보(他穆保) → (아들) 화색(花色) → (族叔, 三達禮의 손자) 삼보(三保) → (新達理의 曾孫, 常明의 아들) 쌍보(雙保)이다.

청초에 비록 이 두 개의 고려좌령은 황가(皇家)에 복무하는 내무부의 상삼기 정황기 포의 내에 편제되어 내정(內廷)의 행주(行走)로 근무했지만, 이 준군사조직 속에 있으면서 다른 팔기만주 기분좌령의 조선좌령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여전히 무거운 군사 활동의 임무를 지고 있었고 영토를 개척하고 청 왕조의 확립과 발전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분전하였던 것이다.

3. 고려 가족과 청초의 전쟁

후금(後金)이 성경(盛京)에 수도를 정하고부터 청초 중원을 통일하고 통치를 공고히 하기까지 근 40년 동안 전쟁이 빈발했는데, 황태극이 임단한(林丹汗)을 격파하고 막남(漠南)과 막북의 몽골을 정복한 것 외에도 3종류의 정복 전쟁이 있었다. (1) 조선 정복, (2) 요서

진출, (3) 중원의 통일과 공고화가 그것이다. 팔기 만주좌령과 포의좌령에 편입된 고려 43성 가족의 성원은 입관(入關) 전후의 일련의 거의 모든 중대한 전투에 참가하였다. 그들은 요하(遼河)의 동서, 대강(大江)의 남북을 누비며 선봉에 서서 적진을 휘젓고 앞에서 쓰러지면 뒤에서 달려들면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고 만주 귀족의 신뢰와 중시를 받았다.

1) 조선 정복

후금 건국 후에 주변의 형세는 매우 위태로웠다. 서쪽으로는 명 왕조의 군대가 국경을 압박하고, 북쪽으로는 명과 우호적인 막남 몽골의 찰합이부(察哈爾部) 및 임단한 등의 강적이 막아섰고, 동쪽으로는 명의 번국인 조선이 호응하였으며, 동남쪽의 해상에는 명의 장수 모문룡(毛文龍)이 주둔해 지키는 반도의 견제가 있어서 사방이 포위 형세로 “사면에서 압박을 받았다.” 태종 황태극은 칸의 자리를 이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명 조정과의 항쟁에서 배후의 염려를 해결하고 경제적 곤궁을 완화하기 위해 천총 원년(1627, 정묘년)과 승덕 원년(1636, 병자년)에 대규모의 조선 침략 전쟁을 일으키고 “8도(八道)가 크게 놀랐다.” 전쟁은 조선 인민에게 크나큰 재난이었으며 당시 이를 ‘정묘노란(丁卯虜亂)’이나 ‘병자호란’이라고 불렀다. 일찍이 천명 시기에 조선에서 귀부해온 사람인 강홍립(姜弘立)과 한운(韓潤)이 곧 계책을 올려 군대를 내어 조선을 진공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노이적(奴爾赤, 즉 누르하치)이 그 근본을 배신하는 것을 싫어하여 꾸짖고 물리쳤다.” 황태극이 칸을 칭하자 그들은 “끊임없이 간청하여 결국 이 화(禍)가 미쳤다.”²³

두 번의 조선 침략 전쟁 중에 귀부한 조선인들은 모두 청군의 길잡이가 되었고 선봉에 서서 싸웠다. 그들이 조선 산천의 지세에 익숙하고 각지의 허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청군은 두 번의 진군을 신속하게 펼쳐 조선을 복속시켰다. 첫 번째 ‘정묘노란’에서 후금의 목적은 명확하였다. 우선 조선을 제압하여 조선과 피도의 모문룡의 연계를 차단하여 영원히 명 왕조와의 관계를 끊고, 또 모문룡을 기습하여 동남쪽 해상의 장애물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대패륵(大貝勒) 아민(阿敏)이 대장을 맡고 패륵(貝勒) 제이합랑(濟爾哈朗), 아제격(阿濟格), 악탁(岳託), 두도(杜度) 등이 원정을 수행하여 청군 3만명을 거느렸고 한윤, 강홍립, 박난영(朴蘭英), 오신남(吳信男) 등은 모두 군중에 있으며 선두의 길잡이가 되었다. 처음에 청군은 한윤의 건의를 받아들여 일단 의주(義州)를 침범하여 조선의 군세를 시험하자 전조선 군대는 청군의 위세에 눌려 쉽게 무너졌다. 한윤 등은 “중국인의 옷으로 갈아입고 몰래 사냥대를 따라 적들을 이끌고 성(城)에 들어와 군장비를 불태우자 온 성이 크게 어지러워졌다.” “항복한 군졸들이 강홍립, 박난영, 오신남, 한윤이 와서 성들 사이에 있는 것을 보았다.”²⁴ 청군은 가는 곳마다 오늘의 일은 오직 이전 왕에 대한 복수이며 일이 끝난 뒤에는 각도(各道)의 군병들에게 10년 동안 복호(復戶)할 것이라고 선전하였다. “이는 모두 적인 한윤이 그렇게 말하도록 가르쳐준 것이었다.”²⁵ 강홍립, 박난영 등은 누차 청 조정의 대표로서 조선과 담판을 진행하고 자신들의 말대로 하도록 압박하였다. 청군은 파죽지세로 곧바로 王京까지 내달랐고 조선을 압박하여 ‘형제의 약속’을 맺고 「강

23 『燃藜室記述』卷27, 「丁卯虜亂」.

24 『燃藜室記述』卷27, 「丁卯虜亂」.

25 『燃藜室記述』卷27, 「丁卯虜亂」.

도(江都)의 약속, 「평양(平壤)의 약속」을 체결하였다.

두 번째 ‘병자호란’은 태종 황태극이 직접 조선을 친정(親征)하고 친왕(親王) 대신(代善), 다이곤(多爾袞), 다탁(多鐸), 패륵 악탁, 호격(豪格), 두도 등에게 원정을 수행하도록 했는데, 조선인 마복타(瑪福他), 신달리 등도 그 중에 있었다. “적병(賊兵)이 널리 펼쳐져서” 그 성세가 대단했다. 호부승정(戶部承政) 마복타, 전봉대신(前鋒大臣) 석옹과라파도로(碩翁科羅巴圖魯) 노살(勞薩) 등은 선봉대 300명을 이끌고 상인으로 가장하여 한밤중에 가서 조선의 수도 왕경을 포위하였다.²⁶ 조선 국왕 이종(李祿)이 강도(江都, 강화도)로 피란하고자 할 때, 마복타가 거느린 수백의 철기가 이미 홍제원(弘濟院)에 도달하여 강도로 통하는 길을 끊었다. 승덕 2년 원정에 수종한 신달리는 조선의 복병을 만나자 피로써서 그들을 물리쳤다. 청군이 강화둔(崗花屯)까지 진군하자 황태극은 조선 국왕의 처자식을 해치지 말도록 명하였다. 신달리는 황제의 이 뜻을 받들어 잘 보호해 주었고 황태극은 이에 특별한 상을 내렸다.²⁷ 결국 국왕 이종을 압박하여 남한산성을 나와 황태극에게 명 왕조가 하사한 왕전(王篆)을 바치도록 하고, 다시 ‘남한산규칙(南漢山規則)’을 체결하고 머리를 숙여 신복(臣服)하도록 하였다. 두 차례의 조선 정복 전쟁에서 자기 동포들을 앞두고서 팔기만주에 편성되어 들어간 조선의 군사들은 심리와 행동에서 이종의 혹독한 시험을 계속 거쳐야 했다. 그들은 몸과 마음을 다해 만주와 하나로 융합되었고 후금 통치집단의 인정을 받았다.

26 『清太宗實錄』卷32, 崇德 元年 12월 癸酉.

27 『通譜』卷72, 「金氏·新達理」.

2) 요서 진출

후금이 나라를 세우고 ‘7대한(七大恨)’을 명분으로 군대를 일으켜 명에 항쟁하여 일거에 주변의 무순(撫順), 동주(東州), 마근단(馬根丹) 등의 성과 500여 곳의 보채(堡寨)를 점령하였다. 명의 총병(總兵) 장승명(張承勳)의 구원병을 격멸하고, 또한 무안(撫安) 등의 11개 보(堡)를 연이어 함락하고 청하(淸河)를 점령하였다. 이에 “요(遼) 지역 전체가 놀라 들썩였고”, “온조정이 놀라 두려워했다.” 살이호(薩爾滸)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 태조 누르하치는 멀리 내다보고서 신속히 요심(遼沈) 지역을 장악하여 혁도아랍(赫圖阿拉, 興京)에서 요양(遼陽, 東京)으로, 다시 심양(沈陽, 盛京)으로의 세 번의 천도, 달리 말하면 후금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세 번의 전략적 대이동을 완성하였다. 이는 황태극이 전체 동북지구를 차지하는 기초를 다져주었다. 바로 황태극이 요서로 진출할 때에 고려의 43성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송금(松錦) 전투는 황태극이 요서를 정복하는 관건이 되는 전투였다. 명이 요동을 잃은 뒤, 명군은 여전히 요서의 군사 중진인 금주(錦州), 영원(寧遠), 산해관(山海關)으로 이어지는 전선을 굳건히 장악하여 경사(京師)를 에워싸서 지키며 청군의 서진을 막고 있었다. 황태극은 중원에 진주하려면 반드시 요서에서 산해관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열어야 하며, 게다가 전략적 요충지인 금주를 빼앗는 것이 또한 가장 급선무임을 잘 알고 있었다. 대·소멸하(大·小凌河) 사이에 위치하는 금주성(錦州城)은 사방 40리 전후의 송산(松山), 행산(杏山), 탑산(塔山), 해구(海口) 등과 더불어 지세가 험준한 방어 체계를 이루고 있었다. 승덕 4년(1639) 2월부터 7년(1642) 4월까지 황태극은 송백대전(松錦大戰)을 일으켰는데, 처음에 청군은 금주

를 포위하고 구원군을 공격하는 책략을 취하여 주로 송산 등의 성을 공격하였다. 만주 정황기 풍의 고려좌령 겸 내무부삼기화기영총관 신달리가 이끄는 부대는 송산 전투에 나가서 “용감하게 추격하여 70명을 참획(斬獲)하고 말 40여필을 얻었다.” “또한 바다가의 반적(叛賊)을 섬멸하는데 공이 있어 다시 상을 받았다.”²⁸ 이어서 금주성을 공격하여 성을 지키던 명의 총병관(總兵官) 조대수(祖大壽)의 성원(聲援)이 끊기자 송정제(崇禎帝)는 계료총독(薊遼總督) 홍승주(洪承疇)에게 명하여 13만 명군을 이끌고 긴급히 금주로 달려가 구원하도록 하였다. 정황기 만주도통 제1참령 제14좌령 한운(雲)이 군대를 이끌고 참전하여 “세 겹으로 금주를 포위하고 송산의 병마를 쳐서 패배시켰다.”²⁹ 이 전투에서 명군은 참패하여 대장 홍승주가 사로 잡혔고, 청군은 대승하였다. 송백의 전투 이후 명 왕조는 요서를 잃었고 결국 동북에서의 통치권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청군은 요서로 성큼 진출하였다. 성조(聖祖) 현엽(玄燁)은 이 전투를 높게 평가하여 “태종이 한번 싸워서 제업(帝業)이 결정되었다”³⁰ 고 했으니 송금 전투의 큰 의의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선인들은 이 전투에서도 적극적인 공헌을 했던 것이다.

28 『通譜』卷72, 「金氏·新達理」.

29 『通譜』卷72, 「韓氏·韓雲」.

30 「太宗皇帝大破明師于松山之戰書事文」(滿漢合璧), 李鴻彬, 『滿族崛起與清帝國建立』 제2장 제5절의 「皇太極與松錦之戰」에서 재인용.

3) 중원 통일과 공고화

순치(順治) 원년(1644) 4월, 명의 총병관 오삼계(吳三桂)가 청에 항복하여 산해관의 대문을 열었고 청군이 입관하여 중원을 장악하는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만주 귀족들이 중원을 평정하는 결전이 시작된 것이었다.

(1) 산해관 전투

순치 원년(송정 17, 1644) 4월 13일, 이미 북경을 공격하여 점령한 대순(大順)의 농민군 수령 이자성(李自成)이 직접 약 10만의 기·보병을 이끌고 항복을 거부하는 명의 산해관 주둔 총병 오삼계를 공격했다. 이때 기의군의 압력 하에 오삼계는 급히 관외의 청의 섭정왕(攝政王) 다이곤에게 항복을 청하고 구원을 요청하였다. 21일, 이자성, 오삼계 두 군대는 산해관성(山海關城) 아래에서 전투에 한창 몰두하고 있었다. 오삼계의 군대가 버티기 어려워졌을 때, 청군이 진중으로 밀고 들어와 대순의 군대를 쳐서 무너뜨렸다. 참전한 청군 중에는 3개의 조선좌령이 있었다. 하나는 정황기 만주 제4참령 제9좌령으로 좌령 납림의 인솔 하에 여러 기(旗)의 군대와 함께 “산해관을 들어와 유적(流賊)의 기·보병 20만을 쳐서 공을 세우고 다시 일운기위(一雲騎尉)가 더해졌다.”³¹ 둘째는 정홍기 만주 제1참령 제12좌령으로, 瑪福他的 손자 방나밀(邦那密)의 통할 하에 산해관에서 대순의 군대를 격살하고 “경도현(慶都縣)까지 추격하여 다시 그들을 패배시켰다.”³² 세 번째는 같은 기 제14좌령으로 한운(韓雲)의 통섭

31 『通譜』 卷11, 「他塔喇氏·納林」의 문장에는 “流賊의 騎·步兵 이십만을 쳤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譜에서는 이 숫자를 많이 언급하지만 관찬이어서 과장된 칭송이며 사실이 아닌 문구이다.

하에 역시 산해관에 참전하여 공이 있었고 1등 경거도위(輕車都尉)가 제수되었다.³³

(2) 전국 정복 전쟁

산해관 전투 이후 이자성은 군대를 이끌고 북경으로 퇴각하였고 다 이곤은 2/3의 만주 팔기 장병을 통솔하여 승세를 타고 추격하여 북경을 점령했다. 아울러 곧바로 군대를 두 갈래로 나누어 영친왕 아제격을 대상으로 하여 북쪽으로 나가서 내몽고 토목특부(土默特部)를 돌아 연안(延安)으로 진공했고, 예친왕(豫親王) 다탁을 주장(主將)으로 하여 남쪽으로 군대를 발하여 산서(山西), 하남(河南)으로부터 동관(潼關)을 공격하여 두 방향에서 포위하여 합공하였는데, 명의상으로는 명 조정을 대신하여 농민군을 진압하여 “군부(君父)의 원수를 갚는다”고 했지만, 실은 이미 민족 정복 전쟁의 서막을 연 것이었다. 다탁이 예봉을 돌려 남경(南京)의 홍광(弘光)의 작은 조정을 겨눴을 때, 만주 귀족은 전국 통일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정홍기 사람인 한니의 차자 걸은(傑勝)은 아제격의 북로군(北路軍)을 따라서 “군대가 유림(榆林)에 이르러 연안 등지를 평정했고 군무(軍務)에 참찬(參贊)하여 공로를 쌓아 특별히 기도위(騎都尉)가 제수되었다.”³⁴ 정황기 포의 사람인 계달례(季達禮)는 호군교(護軍校)로 복건(福建) 원정을 수행하여 해적을 공격하다 전사했고 운기위(雲騎尉)가 추증되었다.³⁵ 양황기 포의 사람인 도뢰(都賚)의 아들 호선(浩善)은 위서호군교(委署護軍校)로서 절강

32 『通譜』卷11, 「瑪福他」.

33 『通譜』卷72, 「韓氏·韓雲」.

34 『通譜』卷72, 「韓氏·韓尼」.

35 『通譜』卷72, 「金氏·新達理」.

(浙江), 복건(福建) 정복을 따라가 누차 전공을 세웠고 운기위가 제수되었다.³⁶ 정황기(正黃旗) 포의(包衣) 사람인 섭니(聶尼)의 손자 석석(碩石)은 위서 효기교(委署驍騎校)로서 “절강, 복건 정복에 따라가 전공을 쌓아 운기위가 제수되었다.”³⁷ 한니의 셋째 아들 걸도(傑都)는 호군참령(護軍參領)으로서 복건 정복에 따라가 “하문(廈門) 지방에서 해적(海賊) 정성공(鄭成功)의 해군을 쳐서 물리쳤다.” 또 사천(四川) 정복에 따라가 “조천관(朝天關)에서 적의 총병 시존례(施存禮) 등의 군대 1만 7000여 명을 쳤다.” “또한 반룡산(盤龍山)에서 적장(賊將) 왕병번(王屏藩) 등의 군대를 쳤고 후군에서 전사했고”, 특별히 기도위 겸 일운기위가 추증되었다.³⁸ 납림의 아들 달이호달(達爾瑚達)은 관동(廣東) 정복에 따라가 신회현(新會縣)에서 “적장 이정국(李定國)의 군대 1만 여 명을 격파하여” 3등 경거도위가 제수되었다.³⁹ 방나밀은 타탁을 따라 남로로 출정하여 “유적(流賊)을 격파하여 복왕(福王)을 멸했고 허난, 강남 등지를 평정하여 누차 도적 무리를 물리쳤다.” 운남(雲南)을 정복할 때, 먼국(緬國)으로 진군하여 아와성(阿瓦城)에 이르러 계왕(桂王)을 생포했다.⁴⁰ 공을 서훈하여 일운기위를 더해 주었다.

(3) 삼번의 반란과 포이니의 난 평정

강희 12년(1673) 11월, 운귀(雲貴), 광둥, 복건을 진수하던 3명의 번왕(藩王) 오삼계, 상지신(尙之信), 경정충(耿精忠)이 잇따라 공공연히 반청의 기

36 『通譜』 卷72, 「都賚」.

37 『通譜』 卷72, 「韓氏·聶尼」.

38 『通譜』 卷72, 「韓尼」.

39 『通譜』 卷11, 「他塔喇氏·納林」.

40 『通譜』 卷11, 「瑪福他」.

치를 들었고 반란의 불길은 남부지역을 불태웠다. 성조(聖祖) 현엽은 이번의 대규모 삼번(三藩)의 난을 평정하기로 결심하고 팔기 정예와 정예 녹영병(綠營兵)을 집결하여 남하하여 난을 평정했다. 8년의 시간을 들여 서야 강남의 전화는 비로소 잦아들었다. 이 중대한 전쟁에 팔기 중 적지 않은 고려 병사가 참전했다. 정황기 포의의 백운의 손자인 해석니는 위서호군교로서 “절강, 복건의 정벌에 따라가 역적 경정충의 군대를 물리쳤다.” 또한 “천주의 포위를 풀고 낙양교(洛陽橋)를 탈취했으며 상처를 입고 죽자 특별히 기도위가 추증되었다.”⁴¹ 이 기간에 정홍기 사람인 한니의 차자 걸은(傑殷)은 군대를 이끌고 유림으로 가서 연안 등지의 반란을 평정하고 군무를 도왔으며 공적을 쌓았다.⁴² 강희 14년(1675) 3월, 삼번의 반란 세력의 기세가 한창이었는데, 막남 몽골 찰합이부장(察哈爾部長), 임단한의 손자 포이니(布爾尼)가 내만(乃曼) 등 부(部)와 연합하여 기회를 틈타 청에 반기를 들었다. 당시 “여러 금시(禁施)가 모두 남정(南征)하고 있어 숙위(宿衛)가 거의 비어 있었다.” 장군 도해(圖海)가 팔기의 가노(家奴) 중에서 건용(健勇)한 자들을 뽑을 것을 청하자 각 가문의 노복들이 싸울 것을 적극적으로 청했고 적지 않은 고려 노복들도 역시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징집에 응했다. 단숨에 수만 명을 얻었다. 그는 명령을 내려 출정 중에 약탈한 금백(金帛)은 자기가 소유할 수 있도록 했고, 청군은 찰합이에 이르러 “일당백이 아닌 자가 없었고” 싸우자마자 곧 포이니를 사로잡고 신속히 반란을 평정하였다.⁴³ 이 전투 중에 양람기 포의의 덕배(德倍)의 차자인 기방의(幾蚌伊)가 “사고(司庫)로서 찰합이의 포이니

41 『通譜』卷72, 「柏氏·柏雲」.

42 『通譜』卷72, 「韓氏·韓尼」.

43 昭禔, 『嘯亭雜錄』卷2, 「圖文襄公用兵」 참조.

를 정벌하는 데에 따라가 대로(大鹵) 지방에서 적을 치다 전사했고 운기위에 추증되었다.”⁴⁴ 걸은은 호군통령(護軍統領)으로서 찰합이 정벌에 따라가 “적을 친 공이 있었다.”⁴⁵

후금에 귀부한 고려 성씨들은 만주와 하나로 융합되어 청조의 천하 탈취와 정권의 부단한 공고화를 위해 희생을 무릅쓰고 분전했고 목숨을 버리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그 공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일련의 모든 중대한 전투에 고려 43성의 장졸들이 참전했다. 이를테면 강희 중기에 서북 몽골 준가르부의 반란 평정에 양람기 포의의 이씨 등나필(騰那弼)의 손자 만달(滿達)은 호군교(護軍校)로서 “준가르 정벌에 따라가 호통호이합뇌이(和通呼爾哈腦爾) 지방에서 적을 치다 전사했고 운기위에 추증되었다.”⁴⁶ 이후 고려 장졸로 참전 출정하는 인원수가 감소한다. 이것은 만주 팔기병이 점차로 부패하여 전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 것과 관계가 없지 않다. 이에 대해 청 세조 복림(福臨)도 언급하기를 꺼리지 않았다. 순치 14년(1657) 정월, 상론(上諭)에서 “지금 팔기의 인민은 무사(武事)를 태만히 하여 결국 군대가 타락·부패하여 과거에 미치지 못한다”⁴⁷고 했다. 강희 12년 말 삼번의 난이 일어났다. 팔기병은 이미 전투력을 상실하여 결국 세 명의 서북의 한족 장군인 장용(張勇), 왕진보(王進寶), 조양동(趙良棟)이 녹영병(綠營兵)을 이끌고 용맹히 나아가 반란을 평정하였다. 이어서 서북, 서남 평정 및 5성의 백련교(白蓮教) 기의(起義) 탄압 등의 전쟁도 역시 악종기(岳鍾琪) 등 일단의 유명한 한족 장

44 『通譜』卷72, 「金氏·德倍」.

45 『通譜』卷72, 「韓氏·韓尼」.

46 『通譜』卷72, 「李氏·騰那弼」.

47 『清史稿』卷5, 「世祖本紀」2.

군에게 많이 의지했다. 청 중기부터 만주팔기 병정(兵丁)은 나날이 부패하여 무비(武備)를 소홀히 했다. 가정 초에 인종이 명령을 내려 경영(京營) 팔기를 동원하여 남쪽으로 내려가 백련교 기의를 진압하도록 하자 팔기의 어른신들은 매일 힘들게 35리를 행군했는데 기의군은 하루에 200여리를 내달았다. 청 조정은 수모를 당할 것을 우려하여 그들을 신속히 베이징으로 철수시켰다. 이러한 상황의 팔기병에는 당연히 ‘기인(旗人)’으로서 고려 성씨의 자제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15세기 초기에서 17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동북아 지역의 각 민족들은 상당히 큰 규모의 이동, 결합의 역사적 단계에 놓여 있었다. 그들은 정치·경제·문화의 여러 방면에서의 교류가 부단히 증가하고 민족간의 상호 융합도 이미 역사 발전의 일종의 추세가 되고 있었다. 18세기 전기에 이르러 동북지구의 각 민족의 구조와 활동 구역이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민족의 융합도 대체로 완성되었다. 청초에 후금에 투항한 고려 가족들은 팔기 기분좌령과 포의좌령 속에 각기 편입되거나 혹은 단독으로 조선좌령, 고려좌령을 설치하거나 기타 좌령 속에 분산 편재되어 후금이 군사적 실력을 강화하고 만주의 사회적 기초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들은 요동지구와 중원을 장악하는 기나긴 정복 전쟁 중에 청조가 분투하는 전체적 전략 목표를 자신의 평생 사업으로 삼아 청왕조 정권의 건설과 공고화에 지울 수 없는 역사적 공적을 세웠다. 따라서 청 조정의 주목을 받았고 고려 43성은 만주와 동일시되어 만주 민족의 정체성 인식에 있어서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팔기만주씨족통보(八旗滿洲氏族通譜)』에 편입된 것이다. 고려 43성씨가 점차 만주에 융합되어 가는 과정은 이 14세기부터 17세기까지 동북아 지역의 각 민족들이 상호 융합하고 함께 발전하였던 역사적 증거의 하나이다.

「팔기만주의 고려 가족과 청초의 전쟁」에 대한 토론

노기식 (동북아역사재단)

쉬카이(徐凱) 선생은 한중수교 이전부터 한국학계와 학술교류를 시작하였으며, 청대사 연구자로서 한중관계사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여 호란(胡亂)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¹ 또 건륭 9년(1744)에 편찬된 『팔기만주씨족통보(八旗滿洲氏族通譜)』에 실려 있는 고려 성씨 기록을 처음으로 발굴하여 이를 분석한 논문을 발표하였고² 이어서 팔기만주 내의 몽골 씨족과 니칸 씨족에 대한 연구로까지 시각을 확대하였다.³ 토론자가 베이징대학에서 선생님의 지도를 받은 지 15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다시 만나 선생님의 발표를 직접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쉬카이 선생의 글은 ① 고려 43성 157인(戶)이 후금(後金) 천명(天命)·천

- 1 徐凱(1994), 「論“丁卯虜亂”與“丙子胡亂”－兼評皇太極兩次用兵朝鮮的戰略」, 『當代韓國』 1994年 3期; 徐凱(1999), 「清先世與朝鮮(提要)」, 『第二屆國際滿學研討會論文集(上)』.
- 2 徐凱(2000), 「八旗滿洲旗分佐領內高麗姓氏」, 『故宮博物院院刊』 2000年 5期.
- 3 徐凱(2002), 「蒙古氏族與八旗滿洲旗分佐領」, 『第三屆國際滿學研討會論文集』; 徐凱(2004), 「尼堪姓氏與八旗滿洲旗分佐領」, 『中國史研究』 2004年 1期.

충(天聰) 시기에 팔기만주의 기본좌령(旗分佐領)과 포의좌령(布衣佐領)에 편재된 상황, ② 6개의 만주인 관할 조선(旗分)좌령, 2개의 조선인 관할 고려(布衣)좌령의 존재, ③ 청조가 초기 조선, 요서(遼西), 중원(中原)에서 치른 전쟁에서 이들이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청초의 거대한 역사 전개 속에서 미미하다고 할 수도 있는 고려 43성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그 존재와 위상을 찾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또한 팔기만주 속에 편입된 조선인들의 존재에 대한 정보로서뿐만 아니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예컨대 만주 또는 청조의 흥기, 조선과 청(여진, 후금)의 관계, 동아시아 역사 속에서 17세기 국가와 민족, 국가 간의 관계 등 다양한 주제를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입관(入關) 전 만주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토론자로서는 남다른 계시와 자극을 받았다. 이하 크고 작은 문제 몇 가지를 제기하여 가르침을 받고자 한다.

1. 청조가 조선인으로 구성된 좌령의 명칭을 고려와 조선으로 구별한 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만주어로는 조선을 solho라고 하였는데 만주어로 조선과 고려는 어떻게 구별하였나?
2. 정홍기(正紅旗) 만주도통(滿洲都統) 제1참령(參領) 제12좌령을 관할하는 마부탑(馬富塔, 瑪富他)은 조선 사료에 용골대(龍骨大)와 함께 등장하는 호장(胡將) 마부대(馬夫大)임이 분명한데, 본문에서는 ‘대대로 와이객(瓦爾喀) 지방에 거주하다가 조선에 들어가 예속되어 있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하였고, 병자호란 때에 출병한 자들 중 ‘조선인 마복타(瑪福他)’라고 하였는데 과연 그를 ‘조선인’이라 할 수 있나?

3. 본문에서는 팔기만주의 고려 43성에 대해 ‘조선인의 만주화(滿洲化)’라는 관점에서 논지를 전개하고 있는데 토론자 생각에는 ‘조선인의 팔기민화(八旗民化)’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수많은 조선인이 전란 중에 포로가 되어 만주인의 노복으로 전락했던 사실과 비교하면 팔기에 소속된 자들은 그나마 고려·조선좌령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들의 원류(源流)를 기억하고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또한 청조의 민족정책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강력하게 통합된 팔기체제를 조직해나가면서 조직 내에서는 만주, 몽골, 니칸, 고려·조선 등의 민족 구분을 하였던 점, 청이라는 하나의 왕조로 통합체제를 만들려고 하면서도 그 속에서 민족과 지역에 따라 민족성을 유지하게 하고 다양한 지배 방식을 채택한 점 등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시간이 허락한다면 중국 학계에서는 이러한 만주족의 민족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설명해주길 바란다.

4. 조선인이 각종 전쟁에서 큰 활약을 하였다고 소개하였는데 전쟁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모든 팔기민의 생계 수단이고, 직업이기 때문에 사실 조선인만 특별하게 활약한 것은 아니었다고 볼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발표자는 팔기만주의 몽골 씨족과 니칸 성씨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니 이들과 비교하여 고려·조선좌령의 상황이 어떤 특수성을 갖고 있었는지 설명해주길 바란다.

5. 고려 43성이 참여했던 청초의 전쟁을 ‘정복조선(征服朝鮮)’, ‘정진요서(挺進遼西)’, ‘통일여공고중원(統一與鞏固中原)’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현

재 중국에서는 새롭게 청사(淸史)를 쓰기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용어와 개념은 현재 중국의 청사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인가?

6. 본문 말미에 15세기 초~17세기 중엽 동북아 각 민족은 이동, 결합의 역사적 단계, 교류의 증가와 민족간 상호 융합의 역사 발전 추세에 있었다고 말하고 고려 43성의 만주 융합을 그 증거 중 하나라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동북아 또는 동아시아 역사에서 이동과 교류를 보려는 발표자의 방법론에 계시를 받아 마지막으로 동아시아사에서 1600년 전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자의 소박한 견해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한다. 1600년 전후의 동북아에서는 전쟁을 포함한 대규모의 교류와 인구 이동이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일일이 예를 들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 이후 재편된 청·조선·일본의 국가체제는 더욱 강고해져서 통합된 국가 내에서는 역동성이 존재했지만 국가 간 경계를 넘나드는 이동과 교류는 이전에 비해 더욱 폐쇄적으로 되어갔고 국가 간의 경계는 뚜렷해졌다.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이때부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중·일의 구분이 고착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앞으로 동아시아사 전개 과정에서 1600년 전후가 갖고 있는 시대적 의미를 좀 더 생각해보고자 한다.

조선중화주의에서
한청조약까지

— 근대적 한중관계의 성립 —

이 태 진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머리말

한·중·일 3국은 현재 역사분쟁 중이다. 한·일, 한·중, 중·일 간에 삼각적인 상호 충돌전이 빚어지고 있다. 이 상황은 학문적이기보다 정치적 문제로 부각되는 측면이 강하지만, 학문과 정치의 연관성을 부인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분쟁은 궁극적으로는 학문으로 풀어야 한다. 즉 학문적 진실만이 해결의 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3국의 학자들은 이에 대한 논의를 기피하지 말아야 한다.

조공책봉체제는 전근대 동아시아 세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국제관계의 틀이었다. 한국은 이의 주체인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이 체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따라서 이 체제의 행로에 대한 역사적 정리는 한국사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조선시대는 한국사에서 조공책봉체제가 가장 전형적으로 적용된 시기였다. 그러나 한편 명·청 교체기를 거치면서 청조의 책봉조공체제에 대해 조선중화주의를 내거는 등 국가적·문화적 자존심의 부지(扶持)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모색하거나 새로운 사유를 경험하게 된다. 그 끝에 서구 열강세력이 동아시아 세계에 대해 국제법과 이에 의한 질

서를 요구하였을 때, 한국은 이에 근거해 중국과의 전통적인 관계를 청산하려는 노력을 특별하게 강구하였다. 여기서도 많은 고초가 따랐지만 결국은 1899년 9월에 대청 황제와 대한제국의 황제가 동등한 위치에서 국제법에 근거한 국교로서 한청조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새로 규정된 양국의 국제관계는 불행하게도 일본의 침략으로 일시 중단 당하지만 그 후 중국 정부가 이를 부정한 적은 없다. 1919년 9월 대한민국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된 뒤, 중국의 민국정부가 보여준 우호관계는 이 조약의 정신을 잇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공책봉체제에서 국제법적 관계로 나아간 한국사의 경험은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변천에 대한 바른 인식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돌이켜 보면, 19세기 서세동점의 형세에서 동아시아 3국에 던져진 시대적 과제는 서양의 우수한 기계문명의 수용과 국제법에 근거한 새로운 국제질서의 확립이었다. 전자는 지난 1세기 반에 걸쳐 3국이 각기 제 방식으로 실현하고자 노력하여 모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형식만 갖추었지 의식면에서는 여전히 옛 것에 머무는 상황이다. 3국 간의 역사분쟁도 이 결함의 한 발현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국제법 질서에 대한 바른 인식과 충실한 실현, 그것은 동아시아 미래의 평화적 관계를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이 관점에서 조 선중화주의를 거쳐 1899년의 한청조약에 이르는 한국사의 경험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2. 명-조선 간의 책봉조공체제

중국은 역사적으로 동아시아에서 규모가 가장 큰 나라로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중국은 최대강국으로 자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위하여 주변국과의 관계를 책봉조공(冊封朝貢)의 형식으로 정립하고, 이 체제에 근거하여 특유의 자존의식으로 중화주의를 표방해왔다.

책봉은 책립봉작(冊立封爵)의 뜻으로 중국 한(漢)나라 때 시작됐다. 한나라가 36군 외에 남쪽 오(粵)의 땅을 얻어 남월왕을 새로 봉한 것이 효시였다. 이후 역대의 왕조가 주변 ‘4이(四夷)’의 나라들에 회유책을 쓰면서 내부(來附)하여 조공하는 자에 대한 우대책으로 왕후(王侯)로 봉하였다. 이 제도는 특히 ‘외정외교(外征外交)’를 많이 한 한·당·명·청에서 두드러졌다.

책봉제도는 조공제도를 동반하였다. 즉 책봉된 제후나 주변국이 중국 왕조의 천자에게 정기적으로 사신을 보내어 공물을 바쳤다. 이에 대해 하사(下賜) 명목의 답례물이 내려져, 이 관계가 국가 간의 공무역(公貿易) 형태로 발전하였다. 다시 말하면 책봉조공은 대영토국인 중국의 역대 왕조가 주변국을 상대로 시행한 대외정책의 한 형식이었다.

조선왕조의 책봉조공 관계는 명나라를 통해 먼저 이루어졌다. 13세기 중반에 중국 남방의 군웅들이 일어나면서 세계 제국 원나라가 동요하였다. 남방 군웅 중 주원장(朱元璋)과 장사성(張士誠)이 최대의 경쟁자였다. 그 가운데 주원장이 장사성을 패멸시킨 뒤, 1368년 정월에 남경에서 황제를 칭하고 국호를 대명(大明)으로 공포하였다.¹ 고려 공민왕(恭愍王)은 중국의 형세가 이렇게 바뀌자 11월에 사절단을 먼저 보냈고, 주원

장은 예기치 않은 고려 사절을 맞아 후대하고 곧바로 자신의 즉위를 알리는 사신을 고려로 보냈다. 당시 동아시아의 형세는 명의 우세가 확실해졌지만 절강성(浙江省)에 있는 장사성의 잔여세력, 북원(北元), 그리고 요동의 여러 세력이 아직 활거하고 있었다. 이 균용할거의 상황에서 고려는 두 차례에 걸쳐 홍건적(紅巾賊)을 격퇴한 실적으로 위상을 높인 가운데 다면외교(多面外交)를 취해왔다. 즉 합중연형(合縱連衡)의 원리로 상호 견제의 한 축을 이루었다. 절강성의 장사성이 주원장에게 패하여 동아시아의 형세가 달라지고 있었지만, 아직 다면외교의 유효성이 잔존한 가운데 승자 주원장에게 먼저 사절단을 보냈던 것이다.²

명의 주원장은 예기치 않은 고려 사절단의 내방을 접하여 후대하고 곧바로 자신의 즉위를 알리는 사신을 공식적으로 보냈다. 공민왕은 이렇게 주원장이 스스로 즉위를 알려오는 상황을 만든 뒤, 명 사절단이 도착하자 원나라의 연호[至正] 사용을 중단하여 성의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다시 명 황제의 등극을 축하하는 사신을 답례로 보냈다. 뒤이어 명 황제가 고려왕(高麗王)을 책봉하고 고려가 명의 연호(洪武)를 사용하는 순서가 따랐다. 공민왕의 기민한 외교력은 최종적으로 원나라와의 관계에서 부마국(駙馬國)이던 지위를 친왕(親王)의 서열로 올리는 성과로 나타났다. 명나라가 요구한 조공물이 겨우 말 24필과 노새 2필에 그치게 한 것도 성과였다.³

1 박원호(2005), 「고려말 조선초의 대명외교의 우여곡절」, 『한국사시민강좌』 26.

2 李泰鎮(1996), 「14世紀 東아시아 國際情勢와 牧隱 李穡의 외교적 역할」, 『牧隱 李穡의 생애와 사상』, 목은연구회.

3 李泰鎮(1996), 위의 글.

명과의 관계는 1374년(공민왕 23) 9월에 공민왕이 시해되고, 11월에 명의 칙사(勅使)가 국경지역에서 살해되는 잇따른 불상사로 인해 급변하였다. 명나라 측은 두 사건을 모두 친원세력(親元勢力)이 반명(反明)의 기치 아래 준동하여 저지른 것으로 간주하였다. 명은 이후 공민왕의 시호(謚號) 내리기와 신왕(新王)의 승계 인정 두 가지 건을 담보로 고려에 대해 압박을 가하였다. 공민왕의 뒤를 이은 신왕의 혈통을 문제 삼거나 엄청난 양의 조공물을 요구하여 고려를 곤경으로 몰아넣었다. 사행(使行) 횡수도 3년 1회로 줄여 고립시키려 하거나 남쪽 연안세력과의 제휴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바닷길을 이용한 사행을 금지하였다.⁴

이 즈음 명으로서는 요동에 대한 적극 공략이 과제로 부상하였다. 즉 북원을 완전히 패멸시키기 위해서는 요동에서 활동 중인 여러 군웅들을 먼저 퇴치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이들을 상대로 하던 고려의 다면외교를 무력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공민왕 시해사건과 명사 살해사건이 그 계기를 만들어 주었던 것이다. 고려는 1388년에 요동정벌군(遼東征伐軍)을 일으켜 이에 맞서고자 하였지만, 우군도통사(右軍都統使) 이성계(李成桂)가 회군(回軍)을 단행함으로써 실패하였다. 이성계는 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그는 내정개혁을 통한 민생 안정을 우선 과제로 표방하면서 역성혁명(易姓革命)을 일으켜 조선왕조를 세우는 길로 들어섰다.

왕조가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면서 책봉조공은 새롭게 행해졌다. 명은 그 과정에서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친원세력의 거두(李仁任)의 아들이라며 새 왕실을 곤경에 몰아넣었다. 명으로서는 요동이 안정될 때까지

4 李泰鎮(1996), 앞의 글.

지 조선을 외교적으로 압박해 둘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조선은 새 왕조의 국호로 조선과 화령(和寧) 두 가지를 준비해 명 태조에게 하나를 선정해 주기를 청할 정도로 저자세를 취했지만 명의 압박외교는 바뀌지 않았다.

조선과 명의 이런 불편한 관계는 한때 요동정벌론이 다시 일어나게 했다. 그러나 명의 대내외적 안정세가 날로 높아가는 상황에서 전쟁은 더 많은 불리를 자초할 것이 불을 보듯 하여 설득력을 잃었다. 오히려 명의 여진족 구축(驅逐)에 발맞추어 압록강·두만강을 넘어오는 여진족을 격퇴하는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두 강을 영토의 경계로 확정짓는 실리를 챙겼다. 양국은 명 태조가 사망한 뒤 유화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1509년에 편찬된 『대명회전(大明會典)』에 태조 이성계의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그대로 실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선의 외교는 다시 곤경으로 빠져들었다. 이의 수정 요구(宗系辨別)가 1588년에 받아들여질 때까지 조선은 명의 처분을 기다리는 외교를 할 수밖에 없었다. 왕실의 혈통을 담보로 한 명의 압박외교는 결국 고려 말부터 200년간 계속된 셈이다.

3. 18세기 조선중화주의와 열하의 충격

17세기는 동아시아의 대혼란기였다. 1592년에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조선과 명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고, 1616년에 후금(後金)을 세운 여진족이 명과의 전쟁을 선포하여 동아시아는 전란 상태에 빠졌다. 후금은 중국 본토로 진입하기 전에 배

후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 1627년, 1636년 두 차례에 걸쳐 조선의 국경을 넘어 들어왔다. 그후 1644년에 산해관을 돌파하여 북경으로 들어가 이곳을 국도로 삼고 한족(漢族) 평정의 대업을 펼쳤다. 후금은 1636년에 조선의 국경을 넘을 때 국호를 다시 대청(大清)으로 바꾸고 연호(崇德)를 사용하고, 중원의 새 왕조로서 성공을 위해 만(滿)·한(漢)·몽(蒙)의 다민족국가를 표방하였다. 이 대격동기에 조선은 가장 큰 수난을 당한 나라였다.

조선의 수난은 기존 명과의 관계를 쉽게 버리지 못한 데서 비롯하였다. 명의 기미책(鷄麻策)에 묶여 많은 모욕을 당한 조선으로서는 이 대격동기에 명에 등을 돌리고 청의 흥기를 이용할 만하였다. 실제로 1618년에 후금과 명이 첫 대전을 벌일 때 조선의 군주(光海君)는 명이 요청한 지원군을 보내면서도 형세가 불리하면 후금에 투항하여 후환이 없도록 하라는 밀지를 내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런 실리외교(實利外交)는 단명(短命)하였다. 이를 추진한 군주가 오히려 명분을 잃고 반정(反正)을 당하기까지 하였다. 조선은 결국 명과의 관계를 지키다가 큰 수난을 자초하는 꼴이 되었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 침략 때 명나라가 보낸 지원에 대한 의리를 저버릴 수 없었다. 명 황제(神宗)가 보내준 지원군에 대한 '보은(報恩)'으로 명을 배신할 수 없었다.

한편, 후금의 여진족은 왕조 초기 이래 문화적·정치적 우위에서 통제를 가하던 족속으로서, 그 추장이 장차 책봉주가 된다는 사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늘 아래 최고의 도덕 윤리라고 평가한 유교로 나라를 세운 자부심에서도 '오랑캐' 책봉주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변민 속에 이루어진 조선의 선택은 대군을 이끌고 온 청의 황제(太宗) 앞에 군주(仁祖)가 산성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는 굴욕으로

끝났고, 이 치욕은 향후 260여년간 조선을 짓누르는 멍에가 되었다.⁵

조선의 군주는 1637년 항복한 후, 청나라 황제로부터 책봉을 받고 조공을 바치는 존재가 되었다. 이 ‘치욕’은 엄연한 현실이었지만, 어떤 형태로든 변명 또는 변호가 따라야 했다. 그렇지 않고서는 왕정의 내치(內治)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군사적 설욕을 표방한 북벌론(北伐論), 조선이 중국의 유교문화를 진정하게 계승하는 나라라는 소중화론(小中華論) 또는 조선중화주의(朝鮮中華主義)를 내세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북벌의 주장은 고려 시대에 장기적으로 행해졌던 다면외교와 맥이 닿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주위에 복수의 경쟁자가 있을 때 가능한 것으로, 청초가 중국 본토 평정에 성공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용한 것이었다. 왕자 시절 심양(瀋陽)에 볼모로 잡혀가 온갖 고초를 겪은 적이 있는 군주(孝宗, 재위 1650~1659)가 먼저 북벌을 내세워 군비 확장에 힘썼지만 기회는 쉽사리 오지 않았다. 1673년에 삼변(三藩)의 난이 일어났을 때 이를 기회로 간주하여 다시 북벌을 위한 군비 확장을 꾀하였지만 이것도 난이 쉽게 진압되어 허사로 돌아갔다.

결국 북벌의 주장은 내정용(內政用)으로 흘러갔다. 한 정치세력은 북벌론과 소중화론을 동시에 외쳐 집권적 지위를 연장하려 하면서 왕권을 위축시키는 상황을 빚기까지 하였다. 1704년 왕실은 대보단(大報壇)을 설치하여 명나라 신종을 매년 제사하면서 조선의 군주가 명에 대한 보은과 그 중화의 문명을 계승하는 주체라는 것을 선명하게 표시하여 신하층의 발호를 억제하였다. 국가적 차원에서 조선중화주의가 선언된 것이다. 군주 측은 대보단의 의식이 명나라 신종의 은덕에 대한 보답만

5 오수창(2005), 「청과의 외교실상과 병자호란」, 『한국사시민강좌』, 36.

이 아니라 왕조 자체의 군신의리 확립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말하였다.⁶

조선중화주의 아래서 조선 군주의 청나라 황제에 대한 신종(臣從)은 이중적인 것이었다. 겉으로는 복종, 속으로는 배반심(背反心)을 안고 있었다. 이 이중성은 군주만이 아니라 사대부들도 모두 동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왕조 안에서 이를 빌미로 한 정치적 균열현상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외교적으로도 조선과 일본 간의 국교에서는 1636년 이래 이미 책봉조공체제가 배제되고 있었다.⁷ 조선의 군주가 중국 천자로부터 책봉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일본과의 외교적 절차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에 서로 합의하였다. 일본에서도 18세기에 조선의 중화주의처럼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천황가(天皇家)를 가진 일본이야말로 신국(神國)이요, 화(華)라는 주장이 표방되었다. 주목되는 것은 다민족 국가로서의 청조가 중화를 스스로 재해석한 점이다. 즉 옹정제(雍正帝, 재위 1723~1735)는 만·몽·한의 제국을 표방하면서 한족의 문덕(文德), 만주족의 무공(武功)을 함께 실현하는 것이 곧 진정한 중화라고 하였다. 18세기 동아시아에서 각국 중화주의는 곧 국가에 대한 주체의식의 자각 현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것이 얼마나 상호 공존의 변론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가 문제였다.⁸

조선중화주의는 기본적으로 북벌의식 속에서 나온 것이므로 북벌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오면, 허구성 논란이 제기되게 마련이었다.

6 李泰鎮(1994), 「조선후기 對明義理論의 변천」, 『아시아문화』 10, 한림대.

7 孫承喆(1999), 『근세조선의 한일관계연구』, 국학자료원.

8 孫承喆(1999), 위의 책 ; Yi Taejin(1994), “Separating Fact from Fiction about Pre-Modern Sino-Korean Trade”, 『社會科學과 政策研究』 16-3,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청나라 황제의 치적 실황은 1년에 4차례 이상 이루어지는 사행을 통해 쉽게 전달되었다. 18세기 청나라의 경제는 역대 어느 왕조보다도 안정되고 풍요를 누렸다. 이 정보는 청조를 ‘오랑캐’로 지목한 조선중화주의자들을 곤혹스럽게 하였다. 박지원(朴趾源)을 필두로 하는 일단의 지식인들(北學派)이 조선중화주의의 협소한 시각을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박지원의 『열하일기(熱河日記)』는 그 기념비적 저작으로 남았다.

박지원은 1780년에 건륭제의 70회 생일을 축하하는 조선 사행단의 일원으로 연경과 열하를 다녀와 이 책을 저술하였다. 그는 압록강을 건너 요동, 요서를 지나 연경에 이를 때까지는 주로 고구려와 관련되는 지역에 대한 역사의 회상, 중국인들이 사는 모습, 특히 벽돌로 집을 짓거나 수레와 선박을 많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하였다. 조선의 실정과 비교해 어느 것이나 다 편리하고 앞선 점을 높이 평가하고 ‘오랑캐’의 것이라도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박지원이 이 저술에서 더 힘주어 강조한 것은 열하에서 목격한 특별한 광경이었다.

연경 북방 400여리 지점의 열하(熱河, 현 勝德)는 강희제(康熙帝)가 피서산장(避暑山莊)을 지어 개발한 군사 요충의 신도시였다. 청조는 한쪽을 평정한 뒤에도 주위의 몽골족, 티베트족, 러시아 등으로부터의 위협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였다. 몽골족 가운데 서부에 근거를 둔 준가르(准噶爾)부는 강한 결속력을 발휘하면서 청조에 대해 저항적이었다. 청조가 염려한 것은 준가르부가 티베트족과 유대하여 대항하는 상황이었다.

몽골족은 16세기 이래 티베트의 라마 불교(藏傳佛敎)를 믿기 시작하여 양자의 결속이 쉬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에 순치제(順治帝), 강희제 때에 이미 티베트의 불교 지도자(달라이라마=達賴喇嘛, 판첸라마=班禪喇嘛)를 상대로

회유정책을 폈다. 18세기에 들어와 준가르부의 지도자 갈단(噶爾丹)이 뛰어난 지도력으로 청조를 위협하자 건륭제가 대군을 보내 토벌하였다. 준가르부를 평정한 뒤에도 청조는 티베트의 불교 지도자를 우대해야 했다. 영국이 청조의 광주(廣州) 공행(公行) 제한정책에 부딪히자 티베트를 통하여 중국으로 진입하려 했기 때문이다. 건륭제는 자신의 70회 생일을 열하에서 열어 막남북(漠南北)의 몽골 왕공(王公)과 서장(西藏)의 준가르 수령들이 모두 와서 축수하는 자리를 만들고 여기에 판첸(6세 班禪)이 와 줄 것을 기대하였다.

박지원은 열하에서 건륭제가 판첸을 위해 행궁(須彌福壽之廟)을 짓고 평등례로 우대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하늘 아래 최고의 지존으로 알았던 천자(天子)가 이국(異國)의 불승(佛僧)에 대해 평등례를 행하는 광경은 조선의 선비 박지원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그는 청 황제가 이렇게 국익의 보전을 위해 황제로서의 존엄을 낮추면서 이국의 지도자에 대해 회유외교를 벌이는 장면을 보고 북벌이나 조선 중화를 내세워 명분에 매달리고 있는 조선은 너무나 협착한 기국(器局)의 나라라고 보았다. 이 점을 조선의 위정자와 지식인들에게 알리는 것이 그의 중요한 저술 동기였던 것이다. 폐쇄와 자존을 버리고 선진문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아니면 나라의 장래가 염려스럽다는 것이 그가 열하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소득이었던 것이다.

4. 1880년대 책봉조공체제의 갈등과 1899년 한청조약의 체결

19세기에 동아시아 3국은 모두 서양 열강으로부터 국제법에 근거한 조약 체결을 강요받았다. 중국은 1840년에 남경조약(南京條約), 일본은 1858년에 미국과 수호통상조약(修好通商條約)을 각각 처음 체결하였다. 이에 비해 조선은 지리적 조건으로 서양 열강과의 접촉이 늦게 이루어지면서 1875년에 일본과 처음으로 수호조규(修好條規)를 체결하였다.

그런데 조선과 중국 사이에는 오랜 책봉조공 관계 때문에 서양식 조약체제로의 진입이 순탄하지 않았다. 1881년 1월에 조선 고종(高宗)은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의 체결을 앞두고 두 명의 신하를 천진으로 파견하였다.⁹ 조선이 이 조약을 체결하면 미국과 이미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청국과의 관계가 대등하게 되므로 향후의 체제에 관해 협의하라는 밀명이 신하들에게 내려졌다. 미국과의 조약은 북양대신(北洋大臣) 이홍장(李鴻章)이 권장하던 것이기도 하였으므로 조선 정부의 협의는 당연한 것이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이 조약이 체결되면 기존의 왕래 사신제도(往來使臣制度)가 주차사신제도(駐劄使臣制度), 곧 공사제도(公使制度)로 대체되지 않는가를 물었다. 청국 정부의 수뇌부는 이 문의에 대답하지 않았다. 조선의 문의가 이치상 어긋난 것이 아니지만 이를 받아들일 경우 조선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감소할 것을 우려하였다.

9 李泰鎮(2004), 「19세기 한국의 국제법 수용과 중국과의 전통적 관계 청산을 위한 투쟁」, 『역사학보』 181.

1882년 4월에 조미수호통상조약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관세자주권(關稅自主權)을 실현한 조약이란 평가를 들을 정도로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¹⁰ 그러나 2개월 뒤 군주의 개화개국(開化開國) 정책에 반대하는 대원군(大院君)의 군사 쿠데타(壬午軍亂)가 일어났다. 청국 정부는 연경에 체류하던 조선 대신에게 이 군란이 조선 군주가 원하는 것인지를 굳이 묻고, 책봉주 청국 황제는 피책봉 군주가 원하지 않는 변란을 좌시할 수 없다는 구실 아래 주모자 색출을 이유로 4000여명의 군사를 서울로 파견하였다. 그러나 청군은 대원군을 천진으로 호송한 뒤에도 철수하지 않았다. 같은 해 9월에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朝鮮商民水陸貿易章程)을 발표하면서 조선을 속국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 장정은 조약이 아니라 천자의 칙명(勅命) 형식을 취한 것이었다. 뒤이어 청조는 원세개(袁世凱)에게 ‘주차조선총리교섭통상사의(駐劄南洋總理交涉通商事宜)’란 직책을 내려 속국화 정책을 주도하게 하였다.

청국은 서쪽의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조선이 다시 어느 서양국의 식민지가 된다면 자신들이 당할 불리가 너무나 커진다고 판단하여 조선에 대한 속국화 정책을 펴게 되었던 것이다. 청국은 이때 서양 열강을 상대로 조선에 대한 자국의 전통적인 관계를 종주(宗主)로 설명하여 기득권을 확보하려 하였다. 책봉조공체제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외교적 형식으로 내정간섭이 배제되어 있었던 만큼 청국의 종주국론(宗主國論)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었다. 조선 군주는 청의 이런 속국화 정책에 맞서면서 서양 열강국과의 조약 체결에서 ‘대군주(大君

10 이 조약은 2개월 뒤 壬午軍亂이 일어났을 때 일본이 敎官 被殺 및 公使館 被禍를 구실로 關稅率의 引下와 함께 最惠國 條款을 요구하여 미국도 동시에 이를 요구함으로써 기본 틀이 무너지고 말았다. 李泰鎮(2004), 앞의 글.

主'란 새로운 호칭을 쓰거나 중국 천자의 깃발에 사용하는 태극팔괘(太極八卦)를 자신의 '어기(御旗)'의 도안으로도 사용하여 대등의식을 의도적으로 표시하였다. 태극사괘(太極四卦)의 국기는 이 도안을 간략화한 것이다.

1880년대는 조선으로서는 개화를 서둘러야 하는 시기였다. 이 시기에 일본은 내각총리제도(內閣總理制度)의 시행(1885)과 제국헌법(帝國憲法)의 반포(1889)를 차례로 달성하여 부국강병(富國強兵) 정책 실현으로 진입하기 시작한 사실을 상기하면 조선으로서는 한시도 헛되이 할 수 없는 시점이었다. 당시 조선 고종(高宗)은 박지원의 개방적 선진문화 수용론의 노선에서 개방, 개화가 살 길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여 개화정책을 펴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개방주의는 아버지의 선준비후개방(先準備後開放) 주의의 반발을 사 청국의 속국화 정책을 자초하여 표류하는 형세가 되었다.

1880년대 후반, 일본은 제2차 징병제(徵兵制) 시행을 비롯해 군비 확장에 총력을 기울여 청국이 양무운동(洋務運動)으로 확보했다는 100만 병력에 도전할 수 있는 군사력을 양성하여 1894년에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청국을 이긴 일본이 이번에는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들려고 나섰다. 조선 정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 대통령(클리블랜드)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삼국간섭에 힘입어 독립국의 지위를 다행히 유지할 수 있었다. 일본은 1896년부터 청일전쟁의 전리품으로 유일하게 남은 대만에 대한 식민지배 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이 기간은 조선으로서는 독립국의 기반을 닦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간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저지하거나 위협하던 청국과 일본이 다 같이 물러났기 때문에 미루어진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었다. 조선 군주는 실제로 1876년 2월에 일본의 구속을 떨쳐버리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 군주권을 회복하고 근대화에 필요한 제반 개혁 조치를 취

하면서 이듬해 10월에 대한제국을 출범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조선 군주는 이웃의 일본까지 황제국을 칭하였는데 조선만 군주국으로 남아 있는 것은 백성의 격을 스스로 낮추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조선’이란 국호는 명나라가 선정해준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더 이상 사용할 것이 못된다면서, 상고(上古) 이래 우리 민족에 대한 호칭으로 조선만큼 많이 사용해온 ‘한(韓)’을 택해 국호로 삼자고 제안하였다. 대한제국은 그 국호 자체가 이처럼 중국으로부터의 독립 의식을 강하게 지닌 것이었다.

대한제국 황제는 1899년 2월에 한청의약(韓淸議約, 韓淸通商條約)의 의정(議訂)을 위해 청국 전권대사(全權大使) 서수봉(徐壽朋)이 내한했을 때, 헌법 전문(前文)에 해당하는 ‘국제(國制)’ 심의위원회를 동시에 발족시켰다. 대한제국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과 청국 전권대사 서수봉은 8차에 걸친 협상을 가지고 9월에 드디어 이 조약을 체결, 발표하였다.¹¹ 협상은 7월 28일에 열린 8차 회의로 사실상 마무리되었는데 그 후 8월에 ‘세계 민방에 공인된 자주 독립제국’임을 명시한 ‘국제’가 반포되었다.

조선은 1882년 미국과의 수호통상조약을 필두로 서방 열강과 독립국 간의 조약을 이미 여럿 체결하였다. 그러나 가장 가깝고 전통적으로 깊은 관계를 유지해온 청국과는 이때서야 비로소 대등한 독립국으로서 서로를 인정하는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황제국의 법적 기초를 동시에 마련해 반포한 것은 청국과의 전통적인 관계 청산을 완전한 국가주권 확립의 요건으로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

11 殷正泰(2005), 「1899년 韓淸通商條約 체결과 대한제국-조약체결의 수속과 쟁점을 중심으로」, 『歷史學報』 186.

을 의미한다. 이 조약의 체결은 수백년 계속된 책봉조공체제에 종지부를 찍는 것으로 그 역사적 의의가 지대하다. 1880년대에 표방된 조선 군주의 강렬한 국가주권 의식이 이때 완전한 실현을 보게 된 것이다.

5. 맺음말

조선·대한제국의 500년간 국제관계는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책봉조공체제가 근대적인 외교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의 역사에서는 체제에 대한 일탈성(逸脫性)이 한 차례 이상 나타나는 반면, 한국의 경험은 체제의 근본에 대한 묵수성(默守性)을 보이는 차이가 있다. 중국은 서구의 조약체제가 요구되었을 때 자국 중심의 기존 책봉조공체제가 해체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저항적이거나 소극적이었다. 그리고 일본은 14세기 무로마치[室町] 막부 때 일시 책봉조공체제를 받아들였으나 그 후에는 그 일원(一員)이 되기를 거부하거나 소극적이었고, 조약의 시대에서는 국제법을 약육강식의 법으로 인식하여 자국의 팽창주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면을 보였다.

조선·대한제국의 경험은 기본적으로 초강대국인 중국과 이웃한 상황에서 자기보전을 위한 궁여지책에 불과한 것일지도 모른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명, 청 교체의 대격동에서 보여준 조선의 국가의리(國家義理)는 단순히 굴종주의로 치부해 버리기 어려운 면이 있다. 형세로 보아서는 반청(反淸)의 기치(旗幟)가 불리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도요토미 침략전쟁 때 명 나라가 대규모의 지원군을 보내

준 것에 대한 의리로 명을 버리지 않아 고난의 길로 접어들었다. 도요 토미의 침략이 명을 최종 공격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선이 명에 힘입어 최대의 국가위기를 모면한 것에 대해 변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전근대 국제관계에서 표시된 이러한 의리론은 조선중화주의를 거쳐 조약의 시대에 성신외교론(誠信外交論)으로 이어졌다. 조약체제의 근거인 국제법을 접하여 그 자연법 정신을 유교의 이념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새로운 국제관계 정립에서 국가 간의 신의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성신외교를 표방하였다. 조선·대한제국도 국제법이 약속강식의 법으로 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약소국의 위치에서 살아남는 길은 국가 간 약속의 성실한 이행이라고 판단하였다. 한번 맺어진 약속은 불리한 것이라도 성실하게 지키면 상대방도 우호적 관계를 지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표방하였다.¹²

한국의 국가윤리의식과 성신외교론은 일본의 팽창주의에 무참하게 짓밟혔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고초를 겪었다. 그 속에서 조선·대한제국의 역사를 매도하는 풍조가 대세를 이루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국제관계에서 보면 한국의 경험은 결코 허망한 소행(所行)이 아니었다. 한국이 일본에 국권을 빼앗길 때, 국제법의 세계는 자연법 정신을 존중하는 규범주의(規範主義)가 힘의 논리인 국가실행주의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다. 국제 정의의 규범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 후 국제연맹(國際聯盟)을 탄생시켰으나 곧 무력해지고 제

12 李泰鎮(2003), 「1904~1910년 한국국권 침탈 조약들의 절차상의 불법성」, 『한국병합 불법성의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시점에서야 비로소 그 입지가 확고해져 국제연합(United Nations)을 탄생시켰다. 한국의 경험에서 특색으로 나타난 국가의 리와 성신외교론은 곧 국제연합의 창설 정신에 닿는다.

동아시아 3국이 현재 겪고 있는 역사분쟁은 3국이 걸어온 역사적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역사적 산물이다. 역사분쟁의 구도는 한국을 대상으로 중국, 일본이 각기 공세를 취하는 형태이다. 그 공세성(攻勢性)은 책봉조공체제의 중화의식이나 국제법을 약육강식의 법으로 해석하던 팽창주의와 통하는 면을 가지고 있다. 책봉체제의 발현 내지 추구(追驅)는 한족(漢族)의 명과 여진족의 청 사이에 차이가 있다. 전자는 부당한 기미의 구실을 만들어 이를 이용하면서 패권의식을 발휘한 반면, 후자는 한족을 포함한 다수 종족 끌어안기에 주력하는 유희주의(宥和主義)의 성향을 보였다. 현재 중국이 한국에 대해 일으키고 있는 고구려사(高句麗史) 분쟁은 전자의 유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서양의 근현대에는 우수한 기계문명과 국제법적 질서 두 가지를 세계에 제시한 공로가 있다. 서양의 열강국도 제국주의 경쟁에서는 국제법의 규범주의 정신을 망각하고 힘의 논리를 내세워 과오를 범하였다. 그러나 그 끝에 국제연합을 탄생시켜 인류에게 평화공존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동아시아의 현재와 미래도 이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동아시아 3국은 기계문명 수용을 통한 경제발전이 못지않게 규범주의의 국제법적 질서 확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조선중화주의에서 한청조약까지 —근대적 한중관계의 성립」에 대한 토론

왕위안저우 (베이징대학)

이태진 교수는 조선·대한제국과 명·청 500년의 관계 변화를 독특한 시각으로 폭넓게 개괄하면서 서술하였다. 이 교수가 최근 한국 근대사에 대해 제출한 견해들의 전반적인 취지는 대한제국의 역사를 망국사로부터 근대화의 창업사(創業史)로 고쳐 쓰는 것, 고종을 한국 역사상 보기 드문 걸출한 대군주로 확립하는 것이다. 이 토론문은 이러한 관점하에 작성한 것이다.

논문에서 제기된 몇 가지 관점은 모두 이 교수의 독자적인 견해가 반영된 것으로, 토론자는 이 관점이 한국사 학계 전체에 일정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문의 의의에 대해 토론자의 학식이 일천하여 어렵게 발언하는 것이니 양해를 구한다. 이제 가르침을 구하는 태도로, 미숙한 의견 몇 가지만 제기할까 한다.

1. 만일 토론자의 독해가 틀리지 않았다면, 이 교수가 본문에서 진술한 주요한 관점은 1899년 이전의 500년간, 조선·대한제국과 명·청 관계의 변천이 전통의 동아시아가 전통적 조공책봉관계에서부터 근대 외교관계로 변화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행간을 읽어보면 이 교수의 조공

책봉관계와 근대 외교관계 인식 내면에 매우 짙은 가치판단의 색채가 보이는 것 같다. 토론자는 절대로 근대적 국제관계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여기서 한마디 환기하고 싶은 것은, 근대의 외교관계는 절대 우리가 상상하듯이 국가 대 국가의 완전한 평등함에 기반해서 건립된 이상적 국제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그 시대에말로 무수한 사상가들이 ‘약육강식’이라는 말로 형용해 낸 제국주의의 시대였다. 따라서 이 간단명료한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청 정부가 1899년 대한제국과 새롭게 조약을 체결하고 양국이 평등한 국가임을 승인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대한제국이 번영과 부강의 밝은 미래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표지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도리어 대한제국은 일본과 러시아의 침략과 압력으로 1905년에 강제로 보호조약을 체결하게 되어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고, 1910년에는 결국 일본에 병탄되어 식민지가 된다. 조공책봉관계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든, 또 근대 청 정부의 조선에 대한 간섭정책의 인식이 어떠한든 결국 청 정부의 주요한 의도는 조선이 일본이나 러시아에 병탄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우리는 역사를 평가할 때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기본적 역사 사실에 대해서는 당시의 한국인들도 잘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이 교수는 고려말기 고려와 명의 관계 및 명·청 교체기 조선과 명의 관계에 대해 서술하였는데 관계 변화의 요소에 관한 서술이 종종 명에 치우쳐 있고, 고려나 조선 내부 관점의 분기에 대한 서술은 매우 적다. 예를 들어 명·청 교체기 조선과 명조의 관계에 대한 서술에서 이 교수는 조선이 명조와의 관계 속에서 지긋지긋할 정도로 모욕을 당하였으니 반드시 기회를 봐서 명조와의 관계를 단절해야 했다고 기본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교수가 말하는 모욕이라는 것이 종계변무(宗系辨誣)의 문제인지는 모르겠

으나 이 교수 또한 명조의 ‘재조지은(再造之恩)’을 제기하고 있다. ‘재조지은’과 비교하여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무엇이 가볍고 무엇이 무거웠을까? 이 교수는 당시 사람들이 명조가 구원한 은혜를 저버리지 못하여 청군의 침입을 초래했다는 측면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 교수는 이러한 견해를 비판하고 광해군의 실리외교를 격찬하고 있다. 토론자는 이런 관점이 최근 몇년간 한국에서 매우 유행하여 거의 주류가 될 정도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날에도 외교에서 전적으로 실리만을 좇고 도의를 무시해버릴 수는 없다는 점이다. 전통시대에는 대의명분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어서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치곤 하였다. 광해군의 폐위 사건 자체가 이러한 점을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옛 사람들을 평가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오직 이익만 꾀하고 다른 것에는 관심도 없는 국가가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국가일까?

3. 이 교수는 조공책봉관계가 동아시아의 전통적 외교관계였음을 강조하고, 나아가 그것이 무역관계였다고 규정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토론자는 이 교수가 말하는 동아시아의 전통적 외교관계의 성격이 분명히 파악되지 않는다. 사실 이러한 관계가 근대 국제관계와 비교했을 때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명확한 조약에 의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가와 시기에 따라 그 관계의 성격이 달라진다. 이 교수는 청 정부가 조선의 정책에 간섭한 것은 서양 제국주의로부터 배운 결과라고 하였다. 사실 조공책봉관계는 명확한 조약이라는 기초가 없고, 간섭/불간섭은 관계에 의한 것이 조약에 의한 것은 아니다. 조선에 대신을 파견하여 감독하게 하자던 최초의 주장도 원조(元朝)의 전례를 따른 것이었지 서양의 예를 따른 것은 아니었다.

4. 사소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해 이 교수에게 가르침을 얻고 싶다. 예를 들어 ① 이 교수는 후금(後金)이 1636년 조선 국경으로 들어올 때 국호를 대청(大清)으로 바꾸었다고 하였다. 후금은 출병을 하는 동시에 국호를 개칭했다는 것 같은데, 사실 후금이 국호를 바꾼 것이 먼저이고, 출병은 뒤의 일이었으며, 그들이 황제를 칭하는 것을 조선이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침략한 것이었다. 토론자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② 이 교수는 여진족이 흥기하는 과정에서 조선이 가장 큰 재난을 입었다고 하였다. 조선과 어느 나라를 비교한 것인지? 아니면 병자호란과 이 때의 전란을 비교해서 얻은 결론인지? 만일 조선과 명조를 비교하였다면 분명 그렇지 않으리라고 본다. 만일 후금(淸)의 두 차례 침입을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 비교한 것이라면 재난 피해의 정도는 사실상 훨씬 적다. 토론자의 생각에는 여기에 감정적인 요소가 비교적 많이 개입된 것 같다. ③ 이 교수는 논문에서 건륭제가 반선(班禪)을 접견할 때 반선을 이국의 불승으로 보았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분명한 착오이다. 박지원의 『열하일기』에도 이런 이야기는 없다. 박지원은 수미복수(須彌福壽)의 묘(廟)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 성해응(成海應)의 『연중잡록(燕中雜錄)』의 기재에는 다른 점이 있으니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④ 근대, 조미(朝美)조약의 체결 후 조선은 사절을 파견하여 북경에 상주하기를 희망했지만, 청과 평등한 관계를 건립하자고 제안한 일도 없고 조공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자고 제기한 일도 없으며, 단지 상주하는 사절을 통해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랐을 뿐이다. 혹시 이 교수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사료를 발견한 것인지? ⑤ 대원군은 임오군란을 이용해 다시 권력을 잡았으나 대원군이 이 변란을 일으켰는가를 명확히 증명해줄 수 있는 사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교수가 임오군란을 대원군의 정변으로 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말한

것인지? 혹시 신빙성이 있는 새로운 사료를 발견한 것인가? ⑥ 이 교수는 조선중화주의를 강조하는데 조선중화주의를 명확히 정의 내려줄 수 있는 지? 한국 학계는 줄곧 중국인에게 중화주의가 잔존해 있음을 비판해왔는데, 그렇다면 이 교수는 조선의 중화주의가 한국인에 미친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중국의 중화주의를 비판함과 동시에 조선의 중화주의를 제창하는 것의 현실적인 의의는 어디에 있을까?

실례를 무릅쓰고 삼가 이러한 의견을 드리니, 참고해주면 감사하겠다.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지정조격』의 성격과 영향에 대한 시론

당바오하이 (베이징대학 역사학과)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
역사
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002년 한국 경주에서 유일본 『지정조격(至正條格)』이 발견되었다. 거기에는 조격(條格) 12권, 단례(斷例) 약 13권 및 단례 목록 전부가 포함되어 있다. 조격 부분은 374조의 문서를 포함하고 있어 원서(原書) 조격 총수의 약 22%를 점한다.

단례 부분은 426조로 원서 단례 총수의 약 40%를 점한다.¹ 2007년 8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이 책을 영인 출판하였고, 한국학자 이개석·김호동·김문경 교수의 표점 주석본도 동시에 출판되었다.² 주석본의 표점은 기본적으로 정확하고 전문 용어에 대한 다양한 주석 작업을 하였는데, 특히 몽골어 어휘에 대한 주석이 상세하고 정확하여 다른 학자들의 열독과 연구에 매우 편리하다. 한국 학자들의 이러한 노고에 감사한다.

이렇게 세상에 나온 『지정조격』이 비록 잔본이긴 하지만 그 내용은 중국과 동아시아 법제사 연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원조 후기의 조격과 단례가 많이 수록되어 당시 법률의 실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지정조격』의 구체적 법률 조문들을 통해 원조 통치 집

- 1 여기서는 베이징대학 역사계 張帆 교수의 통계를 이용했다. 張帆(2008), 「論韓國學中央研究院「至正條格」校注本」, 『文史』 2008-1, 221·224~225쪽 참조.
- 2 影印本·校注本(2007), 『至正條格』, 한국학중앙연구원.

단의 입법관념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학술가치는 여러 번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편쪽의 제한으로 이 글에서는 『지정조격』의 성격과 영향을 중심으로 간략히 『지정조격』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3가지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글의 미숙한 견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의 지정(指定)을 바란다.

1. 『지정조격』과 『통제조격』의 관계

원조 전기에는 줄곧 법전을 편찬하지 않았다. 다만 필요에 따라 전문적인 조획(條劃), 법령(法令) 등을 반포했을 뿐이다.

원 인종(仁宗) 즉위 이후에야 관원을 임명하여 연우(延祐) 3년(1316) 5월에 『대원통제(大元通制)』를 편찬하였다. 이것은 조제(詔制), 조격, 단례, 영류(令類, 別類라고도 한다)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³ 『대원통제』는 편찬 이후 즉시 반포된 것이 아니라 수년간 보류해 두었다가 영종(英宗) 지치 3년(1323) 2월에야 새롭게 심의를 거쳐 정식으로 반포되었다.⁴ 비록 『통제조격(通制條格)』이 원조의 중요한 법률 문헌이기는 하나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은 조격 부분의 잔본(殘本)뿐이다. 즉 명청내각대고(明清內閣大庫)에 잔존해 있던 『조격』 22권인데, 명초(明初)의 목격사본(墨格寫本)이다. 일찍이 1930년대에 전북평도서관(前北平圖書館)에서 『통제조격』이라는 명칭으로 영인 출판하였다. 『대원통제』는 연우 3년 5월에 편찬이 완성되었기에

3 『元史』 권102, 「刑法志」 1, 중화서국 표점본.

4 『元史』 권28, 「英宗紀」 2, 至治3年2月辛巳條.

비록 지치 3년에 간행되었더라도 그 속에 실린 문건의 가장 늦은 시기는 연우 3년 3월이다.⁵

이처럼 『대원통제』에 수록된 조문은 연우 3년까지여서 이후 “조정에서는 계속 조조(詔條)를 반포하고, 법사(法司)는 격례(格例)를 계속 논의하여 세월이 오래되자 간독(簡讀)이 더욱 번거로워지는”⁶ 상황이 출현하여 이들 조례를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사법상 관리들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다시 새롭게 정리해야 하는 필요성이 절박해졌다. 순제(順帝) 즉위 초에 대신(大臣) 소천작(蘇天爵)은 상소를 올려 다음과 같이 『통제(通制)』의 속편(續編)을 요청하였다.

영종황제가 비로소 중서성에 명하여 『통제』를 완성하고 사방에 반행하여 관리들이 준수하였습니다. 그러나 延祐에서 지금까지 다시 20여년이 흘러, 무릇 人情의 萬狀을 어찌 一例로 능히 바로잡을 수 있으며, 게다가 一時 관리의 才識에도 高下의 차이가 있어 사람들의 죄상을 의논하는 데 輕重의 다름이 초래되고 條目이 변쇄하여 날마다 늘어납니다. 매번 죄 하나를 벌하거나 사건 하나를 판단함에 유사가 인용하는 것을 일일이 다 들 수가 없습니다. 만약 類編하여 中外에 반행하지 않는다면, 진실로 원방의 민이 혹여나 몰라서 잘못을 저지르거나, 간사한 吏만 알고는 법을 희롱할까 염려됩니다. 일이 여기에 이르러 매우 불편하오니, 마땅히 都省에서 서둘러 상주하여 경술에 통효하고, 治本에 밝고, 민정에 숙달된 문신을 精選하여 둘러앉아 읽게 하여 버리고 취할 것을 심의하여 『통제』를 잇게 하시고, 이를 판각하여 반행하소서.⁷

5 현존 『통제조격』 속의 일자가 가장 늦은 것은 延祐 3년 3월이다(『통제조격』 권3, 「戶令」, “交換公使人隸”條). 張帆(2008), 앞의 글, 231쪽 참조.

6 歐陽玄, 「至正條格序」, 『圭齋文集』 卷7(『四庫叢刊』 本).

지원 4년(1338) 중서성의 관원들도 순제에게 다음과 같이 상주하였다.

『대원통제』는 延祐의 乙卯년에 편찬하여 至治의 癸亥년에 반행되어 지금까지 20여년이 흘렀습니다. 조정에서는 계속 詔條를 반포하고, 法司는 格例를 계속 논의하여 세월이 오래되자 簡牘이 더욱 번거로워지고 因革은 무상하고, 전후가 상충하나 유사는 바로잡는 바가 없습니다. 반복하여 쌓이고 간소한 관리들은 법을 유린합니다. 여사대 관원들도 누누이 이것을 보고하니, 청컨대 연세가 있으면서 문학법리에 통달한 신하를 택하여 새로 刪定함이 마땅합니다.⁸

대신들의 간청과 토론을 거쳐 원조는 『대원통제』 기초 위에서 다시 새롭게 조령격례(詔令格例) 총집을 만들었다. 지원 4년(1338) 3월 26일 기사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上이 이에 칙을 내려 중서 專官이 일을 주관하고, 樞府·憲臺·大宗正·翰林集賢 등의 章程과 典故에 밝고 익숙한 자들을 선발하여 故府에 소장된 新舊 조격을 두루 편람하고 다양하게 논의하고 널리 듣고, 비교 참작하여 넣을 것은 넣고 빼는 것은 빼서 힘써 하도록 했다.⁹

『원사(元史)』 「순제기(順帝紀)」 같은 날 즉, 지원 4년(1338) 3월 신유(辛酉, 즉 이달의 26일¹⁰) 기사에 “중서평장정사 아길라(阿吉剌)에게 『지정조격』의

7 蘇天爵(1997), 「乞續編通制」, 『滋溪文稿』 卷26, 中華書局.

8 歐陽玄, 앞의 글.

9 歐陽玄, 앞의 글.

10 洪金富(2004), 『遼宋夏金元五朝日曆』,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440쪽.

감수를 명하였다”¹¹라고 기록되어 있다. 지원 4년에 이 작업이 개시될 때 『지원조격』이라는 책 제목이 출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상술한 ‘감수(監修) 『지정조격』’ 운운하는 것은 명대인들이 부적절하게 사용한 수사(修史) 어휘이다. 그러나 한편에서 보면 이것은 명 초년에 『원사』를 편찬한 사관들이 이미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식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때의 감수 작업이 바로 이후 다년간 지속된 『지정조격』 편찬 작업이었다. 구양현(歐陽玄)이 「지정조격서」에서 서술한 『지정조격』의 편찬과 이곳의 “아길라(阿吉剌) 감수 『지정조격』” 기록은 동일한 사건의 다른 측면으로 서로 보충할 수 있다.

편찬 작업은 매우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이것은 원조의 모든 법령 집성 작업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원사』 지원(至元) 6년(1340) 7월에 “한림학사승지(翰林學士承旨) 전합(腆哈)과 규장각학사(奎章閣學士) 기기(岐巒) 등에게 『대원통제』를 산수(刪修)하라고 명하였다”¹²라는 기사가 있다. 김문경 교수는 “『대원통제』의 산수 작업과 『지정조격』의 편찬은 별개의 일이다”¹³라고 보았으나 실제로는 구양현이 이미 「지정조격서」에서 명확하게 언급했듯이 『지정조격』 편찬 작업은 지원 4년에 개시되어 지정 5년에 종료될 때까지 중단된 적이 없다. 이 작업을 개시한 것은 무엇보다 원 정부가 『대원통제』의 한계를 인식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시간이 흘러 “조정에서는 조조를 계속 반포하고, 법사는 격례를 계속 논의하는” 상황에 대처해 새롭게 산정해야만 했다. 이런 고려

11 『元史』 卷39, 「順帝紀」 2.

12 『元史』 卷40, 「順帝紀」 2.

13 金文京(2007), 「有關慶州發現元刊本至正條格的若干問題」, 『至正條格校』 注本, 한국학중앙연구원, 479~480쪽.

에서 원조가 『대원통제』의 기초 위에서 ‘오래된 것을 빼고 새로운 것을 집어넣는’ 작업방법은 결코 간단히 『대원통제』 내용을 빼거나 줄여서 편찬하는 것이 아니라 ‘고부에 소장된 신구 조격을 두루 편람하고’, ‘비교 참작하여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빼는’ 작업이었다. 원 조정의 목표는 『대원통제』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조례(條例) 모음집을 편찬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원조가 단독으로 『대원통제』에 대한 산수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산수 『대원통제』’는 『지정조격』 편찬 사업에 대한 단편적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¹⁴

지정 5년(1345) 11월에 이르러 ‘『지정조격』이 완성’ 되었다.¹⁵ 편찬을 하령(下令)한 때부터 최후 완성까지 7년이 걸렸다. “제조(制詔) 150, 조격 1700조, 단례 1059조. 지정 5년 11월 14일에 우승상 아록투(阿魯圖)…… 등이 입주(入奏)하여, 『지정조격』이라 명명할 것을 청하자 황제가 ‘좋다’ 라고 하셨다.” 김문경은 이미 이 점을 지적하였다.¹⁶

이렇게 황제의 재가를 얻었음에도 『지정조격』 책 제목을 둘러싸고 논쟁이 일어났다. 증서참지정사 도르지발(朵爾直班)은 “위로는 조종(祖宗)의 제고(制誥)가 있는데 어찌 금일의 연호로 독칭(獨稱)할 수 있는가? 또한 조격은 율(律)의 한 부분일 뿐인데 어찌 단독으로 그것을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가. (그러나) 당시의 재상(時相)은 이를 따르지 않고 단지 제고를

14 陳高華 선생은 원조가 두 종류의 성격이 같은 법전 수정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지정조격』이 『대원통제』를 수정 보완하여 완성한 것이라고 보았다. 陳高華(2008), 「『至正條格·條格』 初探, 『中國史研究』 2008-2, 136쪽 注7.

15 『元史』 卷41, 「順帝紀」 4.

16 金文京(2007), 앞의 글, 477쪽.

삭제할 뿐 이었다”¹⁷라고 하였다. 『지정조격』이 책 제목이 된 것은 집정관원들의 건의에서 나온 것이다. 책 제목에 지정 연호를 사용한 것은 편찬 연대를 나타내는 것이다. 중국 고대에도 이런 선례가 적지 않다.¹⁸ 그러나 ‘조격’을 책 제목으로 삼은 것은 확실히 쉽사리 쟁론을 일으킬 수 있다. 왜냐하면 『조격』은 책 전체 내용 중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재상[時相]’은 당연히 아룩투이다. 그는 스스로 “평소 한인(漢人)의 문서를 읽지 않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¹⁹고 했다. 비록 우리가 조격에는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있음을 고려하여 광의의 조격은 ‘조격과 단례의 통칭’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분명 『지정조격』이라는 책 제목은 『대원통제』만큼 흠잡을 곳이 없지는 않다. 김문경 교수는 『사람광기(事林廣記)』에 근거해 ‘조격, 단례’를 포함하는 광의의 ‘조격’이 널리 사용되는 통속적 용법이라고 언급했다.²⁰ 대신들의 책 제목 논쟁 끝에 나온 절충적 결과는 『지정조격』이라는 이름으로 반행하고 다만 그중의 ‘제조’부분을 없애는 것이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지정조격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다.

곧 群臣들이 “「制詔」는 국가의 典常이니 받들어 두는 것이 禮입니다. 「條格」·「斷例」는 有司들이 받들어 시행하는 事입니다. …… 청컨대 「制詔」 3본으로 하나는 宣文閣에 두어 聖覽하시고, 하나는 중서성에 보존하시고, 또 하나는 國史院에 보관하게 하소서. 「조격」·「단례」는 관각하여 만방에 알리도록 명하십시오”라고 건의하자 황제가 그의

17 『元史』 卷139, 「朶爾直班傳」.

18 金文京(2007), 앞의 글, 477쪽.

19 『元史』 卷139, 「阿魯圖傳」.

20 金文京(2007), 앞의 글, 477쪽.

논이 옳다고 하였다.²¹

지정 6년(1346) 4월에 『지정조격』은 조격과 단례 두 부분으로 반포되었다.²² 『대원통제』와 비교해 『지정조격』만의 특징이 있다.

우선, 『대원통제』에는 보이지 않는 많은 조문이 수록되었는데, 그 절대 다수의 조문은 연우 3년 이후의 것이며 시기적으로 『대원통제』에 수록된 조문과 전후로 연결된다. 『대원통제』에 수록되었던 일부분의 조목(條目)이 『지정조격』에 수록되고, 다시 새로운 조목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정조격』의 내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천가오화 선생은 조격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연구하였다. 편목(篇目)의 비교에서 시작하여 그는 『지정조격·조격』의 내용이 『대원통제·조격』(『통제조격』)보다 훨씬 많음을 지적하였다. 천가오화 선생의 추정에 따르면, 『통제조격』은 35권 혹은 그보다 많아야 하고, 『지정조격·조격』은 42권 혹은 그보다 훨씬 많아야 한다. 권(卷)질에서 본다면 후자가 전자보다 많다.²³ 『대원통제』와 『지정조격』 조격의 수량은 각각 1151조, 1700조로 후자가 전자보다 549조 많다. 수량 차이와 권목(卷目)의 차이는 매우 큰 상관관계가 있다. 『대원통제』의 단례 부분은 전하지 않지만, 기록에 따르면 그 총수는 717조이다. 그러나 『지정조격』은 1059조²⁴로 342조가 많다. 전체적

21 歐陽玄, 앞의 글.

22 『元史』卷41, 「順帝紀」4.

23 陳高華(2008), 앞의 글, 138~139쪽, 155쪽.

24 『대원통제』 단례 數字는 『元史』卷28, 「英宗紀」2, 至治3年2月辛巳條, 卷102 「刑法志序」에 보이고, 『지정조격』 단례 수는 歐陽玄의 「至正條格序」에 보인다. 『지정조격』 목록 계산에 따르면 조격은 1050~1052조로 「지정조격서」에 기록된 것보다 7~9조가 적다.

으로 볼 때 『지정조격』에 실린 조격과 단례는 각각 『대원통제』보다 거의 50%나 많아 편폭이 현저하게 증가되었다.

다음으로, 『지정조격』 편찬자는 『통제조격』 조목 편입 문제를 조정하였다. 가령 『지정조격』 단례 부분의 몇 가지 조목은 『대원통제』의 조격에서 온 것이다. 현존하는 잔본과 대조한 결과에 따르면 『지정조격』에 있는 10조의 단례가 『대원통제』의 조격에서 온 것이다.²⁵ 일반적으로 조격은 행정방면의 규범으로 대체적으로 당송시대의 ‘영(令)’과 같다. 그 내용은 중앙 관서가 진준(奏准)한 명령 및 판례와 사례를 모은 것이다.²⁶ 단례와 조격의 성격이 다르므로 『대원통제·조격』은 『지정조격·단례』에 편입되어서는 안될 것 같다. 그러나 ‘조격’과 ‘단례’를 구분하는 기준에는 상당한 주관성이 있다. 시대가 바뀔에 따라 사람들의 공문에 대한 이해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조격의 단례 편입을 통하여 『지정조격』을 편찬할 당시에 과거 『통제조격』의 분류방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판단이 생겨났음을 알 수 있다. 순제 시기 격례(格例)의 집성에 보이는 어떤 이념들은 인종 시기와는 다른 것이다.

세 번째, 『지정조격』은 조목의 안배상 『대원통제』와 일정한 차이가 있다. 내용이 같은 몇몇 법령 조문이 두 책에서 분류 조목이 각기 다르다. 대부분 같은 조문은 같은 목류(目類)에 속하지만 배열 순서는 결코 같지 않다.²⁷ 『대원통제』 조격 부분의 많은 목류의 격례가 연대의 선후에

25 『지정조격』 교주본의 단례 부분에서 『통제조격』과 同源 조문을 4개 찾아냈다(金文京·李玠爽, 469~470쪽, 477~478쪽, 482쪽). 張帆도 대조하여 6조를 찾아내 합계 10條이다(張帆(2008), 앞의 글, 230~231쪽).

26 殷嘯虎(1999), 「論「大元通制」“斷例”的性質及其影響」, 『華東政法學院學報』 1999-1, 65쪽 注 1.

27 金文京(2007), 앞의 글, 482쪽 ; 『지정조격』 역주본, 360~366쪽.

따라 배열되지 않고 순서가 뒤섞여 사람들에게 혼란스러운 느낌을 준다. 그러나 『지정조격』의 동일한 목류에 있는 격례는 연대에 따라 배열되었다.²⁸ 이것은 『지정조격』이 『대원통제』를 단순히 증보(增補)한 것이 아니라 비교적 큰 조정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네 번째, 『지정조격』은 구체적인 조목 내용에서 『대원통제』와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주로 『지정조격』이 최초의 공문들을 더 많이 압축했다는 점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두 책의 편찬 방법은 같다. 즉, 원조가 반포한 공문을 편집하고 그것을 가공한 것으로 핵심 내용은 남겨두고 정부 공문서에 자주 보이는 ‘첩정신송(牒呈申送)’ 류의 왕복 협의 부분들을 생략하였다. 그러나 『지정조격』은 공문의 압축적 편찬·집필 면에서 『대원통제』보다 철저하고 문자도 더욱 간략하다.²⁹ 『지정조격』은 원발 공문서의 일반적인 방법을 바꾸어 먼저 ‘모부의득(謀部議得)’을 쓰고, 이어서 ‘도성의득(都省議得)’을 서술하였다. 원발 공문서의 시작 부분에 기록하는 문서 제정 사유에 대한 설명도 많이 생략되었다. 『통제조격』에서는 문서 시작 부분의 발급 기관을 표시하는 ‘중서성(中書省)’, ‘상서성(尙書省)’ 등의 문구가 『지정조격』에서는 대부분 삭제되었다.³⁰

『지정조격』과 『대원통제』 사이에 많은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입법 정신, 편찬체례 및 주요 내용면에서 양자는 일맥상통한다.

첫째, 『지정조격』의 조격과 단례는 『대원통제』보다 50% 가까이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격례의 집성으로 사례(事例)·통례(通例)가 행정과 안건 판결에서 주요한 근거가 된다. 개괄·귀납 정도가 충분하

28 陳高華(2008), 앞의 글, 154~156쪽.

29 陳高華(2008), 앞의 글, 156~157쪽.

30 金文京(2007), 앞의 글, 482쪽; 張帆(2008), 앞의 글, 220~223쪽.

지 않아서 조목의 수가 많아지게 되자 당시 사람들이 “경중(輕重)이 적합하지 않고 이(吏)가 이것을 이용하여 간사한 짓을 한다”³¹고 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원조에는 단례의 미비함과 폐단을 해결할 만한 법전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원조에서는 곧 ‘국률(國律)’ 편찬 움직임이 있었고 비교적 정규적이고 안정적인 법전 편찬을 계획하였다.³² 이 작업의 결과는 알 수가 없지만, 격례와 율의 현저한 구별을 볼 수 있다.³³

두 번째, 편찬체례·전서(全書)의 구조를 보면 『대원통제』와 『지정조격』에는 뚜렷한 선후 계승 관계가 있다. 원말 심중위(沈仲緯)는 『형통부소(刑統武疏)』에서 『대원통제』의 조격과 단례의 목록을 열거하였고, 『사고전서총목(四庫全書總目)』에 기록된 『지정조격』 조격 목록과 『지정조격』 잔본의 단례 목록을 서로 대조해 보면 『지정조격』의 구조가 전적으로 『대원통제』를 따랐음을 알 수 있다.³⁴ 천가오화 선생은 『지정조격』의 조격 부분을 『통제조격』과 대조한 후 “전자가 후자의 많은 조목을 보유하고 있고, 일련의 조정이 있어 조목들이 문자상에서는 각기 다른 정도의 개정이 있었다. 그러나 조격의 기본 구조와 각 편의 주요 내용에는 결코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한다.³⁵ 책 전체의 구조를 보면 『지정조격』은 『대원통제』의 편찬체례를 계승하였고 『대원통제』를 수정·보충하여 완성된 것이다.

31 『元史』卷187, 「烏古孫良楨傳」.

32 安部健夫(1972), 「元史·刑法志と「元律」の關係に就いて」, 『元代史の研究』; 金文京(2007), 앞의 글, 450~451쪽.

33 格例와 律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殷嘯虎(1999), 앞의 글, 64~65쪽 참조.

34 자세한 것은 李玠奭(2007), 「「至正條格」의 편찬과 법제사상의 의의」, 『至正條格』校注本, 한국학중앙연구원, 465~466쪽; 陳高華(2008), 앞의 글, 154쪽 참조.

35 陳高華(2008), 앞의 글, 154~158쪽.

세 번째, 구체적 조문의 내용에서도 『대원통제』와 『지정조격』에는 명백한 선후 계승 관계가 있다. 『대원통제』의 단례 부분은 현존하지 않아서 『지정조격』의 조격 부분과 『대원통제·조격』(『통제조격』)만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전자는 후자의 내용과 직접적인 계승 관계가 있다. 먼저, 조목의 내원에서 『지정조격』의 많은 조목들이 『대원통제』에서 왔고 심지어 어떤 조목은 문자까지 완전히 동일하다. 『지정조격』 교주본에서 양자의 밀접한 관계에 주목하여 전문적으로 『지정조격』의 조격 부분과 『통제조격』의 동문(同文)에 대한 대조표를 만들어 모두 159조를 얻었다.³⁶ 장판(張帆)의 연구에 따르면 166조가 되어야 한다.³⁷ 현존 『지정조격』 총수는 374조로 같은 부분이 44.3%를 점하는 것이다.³⁸

다음으로, 『지정조격』의 편찬자가 『대원통제』에서 바로 조목을 골랐기 때문에 『통제조격』의 착오들이 『지정조격』에서도 그대로 재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장판은 『지정조격』 조격 권25 「전령(田令)」 ‘권농근타(勸農勤耨)’ 제1조(교주본 조격 제76조)와 『통제조격』 권16의 「전령」 ‘농상’ 제4조는 문자는 완전히 같지만, 관건이 되는 내용에서 양자는 모두 24자의 탈루(脫漏)가 있었다. 장판은 문자 탈루에 대해 『지정조격』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통제조격』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당연히 『통제조격』 편찬자가 공문을 베껴 쓸 때 발생한 탈오이며 『지정조격』이 『통제조격』을 그대로 옮겨 적었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발생한 착오라고 지적했다.³⁹ 한편 『지정조격·조격』 권26 「전령」 ‘금요농민(禁撓農民)’ 제5

36 한국학중앙연구원(2007), 『至正條格』校注本, 360~366쪽.

37 한국학중앙연구원(2007), 위의 책, 229~230쪽.

38 만약 『지정조격』에 『대원통제』에서 취한 조격 부분의 10조의 단례를 더한다면, 양자간 같은 조목 수는 176조에 달한다.

조(교주본 조격 제84조) 두 곳에 상수(桑樹), 과목(果木) ‘절탁(折拆)’의 문구와 『통제조격』 권16 「전령」 ‘사농사례(司農事例)’ 제4조는 같아서 실제로 양자는 모두 ‘절절(折折, 절단하다의 의미)’을 ‘절탁’이라고 잘못 썼다.⁴⁰ 조격에서 직접 베껴 썼으므로 『지정조격』은 사실상 『대원통제』의 기초 위에서 증보한 결과물이라고 판단된다.

편목의 구조와 구체적 내용의 분석을 통하여, 구양현이 「지정조격서(至正條格序)」에서 언급한 편찬 방법에 대한 개괄은 매우 정확함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대원통제』의 기초 위에서 ‘조정에서는 계속 조조를 반포하고, 법사는 격례를 계속 논의하는’ 상황에 직면해 다시 새롭게 산정하여 ‘고부에 소장된 신·구 조격을 두루 편람하고’, ‘비교 참작하여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빼서’ 최종적으로 편찬하여 새로운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는 새로운 법률 집성의 탄생과 함께 그것이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대원통제』를 충분히 대체할 만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편사의 근본원칙·편찬체례에서 본다면 『지정조격』과 『대원통제』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대원통제』와 마찬가지로 원조의 행정규범·사법판례의 분류 집성이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성문법전이라고는 할 수 없다.⁴¹

한국 학자들은 『지정조격』의 명명(命名)이 통치집단 상부의 노선 투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정조격』의 편찬이 ‘보수파’ 혹은 ‘현실절충파’가 ‘한화파’를 누른 것을 반영한다고 보았다.⁴² 그러나 『지정조격』

39 張帆(2008), 앞의 글, 216쪽.

40 張帆(2008), 앞의 글, 219쪽.

41 殷嘯虎(2008), 앞의 글, 63~67쪽.

42 李玠奭(2007), 앞의 글, 469~470쪽; 金文京(2007), 앞의 글, 477~478쪽.

의 편찬 과정 및 『대원통제』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통하여 『지정조격』이 비록 『대원통제』를 대체했지만, 그것은 단지 『대원통제』에 대한 침삭과 개정판일 뿐이다. 『지정조격』의 편찬체례와 구체적 시행 내용은 전적으로 『통제조격』을 계승한 것이지 그 속에 보수파와 한화파의 투쟁 노선이 관철되어 있지 않다.

2. 원조 입법 관념의 발전

『지정조격』은 지정 6년에 간행되어 원조 말기까지通行되었다. 여기서는 그중 몇 가지 조격과 단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특히 『지정조격』과 이전의 동류 조례를 비교함으로써 『지정조격』의 편찬 당시 원조 통치자의 입법 관념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음을 살펴보겠다. 편폭의 제한으로 여기서는 그중 3가지 주의할 만한 변화만을 언급하겠다.

1) 몽골 귀족에 대한 제약의 강화

원조의 역참(驛站) 교통은 참호(站戶)의 징발을 기초로 건립되었다. 무상으로 마필을 제공해야 하는 참호의 수량은 막대하였다. 게다가 권귀(權貴)와 관료들이 역참을 남용하여 많은 참호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경제적 파탄으로 곤궁한 생활을 하게 되면 국가의 불안요소가 될 수 있기에 역참 문제는 점차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다.⁴³

역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원조는 설치 초기부터 역참 남용행위를 제한하였다. 『지정조격』 속에서 원조 후기에 반포된 관련 법령을 볼 수 있다. 「단례」 권5 직제(職制)의 범람급역(泛濫給驛) 제2조(『지정조격』 교주본 단례 117조, 아래에서는 직접 조수를 표시)에 이런 기사가 있다.

元統 2年(1334) 5月 25日, 刑部議得 : 금후 각 투하에 軍情이 긴급한 公事가 있으면 聖旨에 의거해 圓牌를 지급한다. 그 나머지 필히 馳驛에 합당한 公事는 마땅히 起馬聖旨를 급부하며 역참의 남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를 어기면, 해당 王傅·正官은 태 27하, 수령관리 및 파견자는 감등하여 斷決한다. 居民·여객의 마필을 강제로 빼앗아 역마에 충당하여 자기 일을 처리한 자는 笞 47下에 처한다.⁴⁴

이 단례 조문은 주로 투하의 사신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긴급한 군정 공사(公事)를 담당하는 투하의 사자는 반드시 원조에서 발급한 승역 원패(乘驛圓牌)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일반 공사를 처리하는 사자는 반드시 포마성지(鋪馬聖旨, 조문 중의 '起馬聖旨'를 어떤 문헌에서는 鋪馬札子라고도 한다)를 휴대해야 한다. 만약 투하 인원이 규정을 위반하고 함부로 역마를 이용하면 투하 수령 관리와 사자를 처벌하고 투하의 중요 관원인 왕부(王傅), 정관(正官) 등은 더욱 무겁게 처벌하였다. 이전의 단례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이다. 이 단례는 한편으로는 제왕 투하가 원 후기까지 여전히 특권을 남용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며, 원 정부의 투하에 대한 제한과 관리가 강화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43 黨寶海(2006), 『蒙元驛站交通研究』, 崑崙出版社, 126~135, 272~277쪽.

44 都省准擬. 한국학중앙연구원(2007), 앞의 책, 207~208쪽.

이전에도 원조는 잦은 법령의 반포를 통해 제왕 투하의 역참 남용을 금지했다. 가령 성종 대덕 10년(1306)에 “제처(諸處)의 참적(站赤)이 소핍(消乏)해졌는데 대개 제왕, 부마, 공주 및 내외 관부가 일의 완급(緩急)과 거세(巨細)를 헤아리지 않고 걸핏하면 역참을 이용하여 참호의 도이(逃移)를 초래했다. 금후에는 군정(軍情), 전량(錢糧) 등 긴급한 사무로 승역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함부로 파견할 수 없다”⁴⁵고 하였다. 대덕 11년(1307)에는 “제왕·부마 입관자(入觀者)는 성지 없이 역전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⁴⁶고 하였다. 무종 지대 원년(1308)에는 “누구든 역마를 이용하는 사신은 그들의 성지를 확인하고 말을 주어라. 제왕·부마의 인신문자(印信文字)로 가면 그들의 문서를 우리에게 보고하라”⁴⁷고 규정하고 지대 3년(1310)에는 다시 “만약 자급(自給) 영지(令旨)를 가지고 역마를 사용한 자는 말을 준 사람과 함께 치죄(治罪)하고 또한 어사대로 하여금 규찰하게 하라”⁴⁸고 규정하였다.

이처럼 되풀이하여 명령을 내렸지만 제왕 투하의 역참 남용 상황은 근절되지 않았다. 이것은 주로 위법자들이 근본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황경(皇慶) 원년(1312) 8월의 안건에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중서성이 받은 섬서행성의咨 : 奉元路 脫脫禾孫의 母 : 亦都護 高昌王位下에서 都事 雷澤과 宣使 朶兒只 2인을 보내 말 2필로 본 위하의

45 『成憲綱要』, 「驛站通例」, 7276쪽上(『永樂大典』卷19425에 수록, 중화서국, 1986년 영인본).

46 『元史』卷22, 「武宗紀」1, 483쪽.

47 『成憲綱要』, 「給驛凭驗」, 7279쪽下; 黨寶海(2006), 앞의 책, 229~230쪽 참조.

48 『成憲綱要』, 「投下船馬須思」, 7281쪽下·7282쪽上.

王傳差札을 가지고 하례표장을 올리려 대도에 가려고 합니다. 만약 요구에 응해주게 되면, 잘못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兵部에 사안을 보내어 심의한 즉: “금후 出使 인원이 만약 御寶聖旨 · 圓牌를 친히 갖고 있지 않으면 역마를 사용할 수 없다.” 都省准 目⁴⁹

원조는 “금후에 출사(出使) 인원이 만약 어보성지(御寶聖旨) · 원패(圓牌)를 직접 갖고 있지 않으면 역마를 제공하지 말라” 고만 강조했을 뿐 투하 사신은 처벌하지 않았다. 위에서 살펴본 『지정조격』의 사례를 통해, 원 순제 시기 투하가 위법으로 역참을 사용한 사안에 대한 처벌이 매우 분명하게 바뀌었고 처벌 대상도 직접 책임자와 투하의 최고장관에게까지 이르렀다.

가중 처벌 외에도 원조는 서북제왕 투하의 역참 남용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책을 취하였다. ‘범람급역’ 제3조 단례(118조)에는 후지원(後至元) 3년(1337)에 중서성은 순제의 성지를 인용하여 “서부지역의 제왕 부마들은 어떤 일로 파견되는 사신 · 포마든 모두 벨게테무르 대왕이 관장하며, 또한 각 투하는 군정의 긴급한 중사(重事)를 제외한 기타 전량 최판(催辦) 업무로 원패를 가지고 역마를 남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⁵⁰ 하였다. 원조는 서북제왕 중 차가타이의 후예인 벨게테무르 대왕으로 하여금 승역 사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게 하였는데, 그 목적은 그 지역 몽골제왕에 대한 제압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벨게테무르 대왕에게 알리지 않고 마음대로 역참을 사용한 투하 인원에 대해 원조는 가중 처

49 『永樂大典』 卷19420, 「站赤」 5, 7228쪽下.

50 한국학중앙연구원(2007), 앞의 책, 208쪽.

별하였다.

원조에서는 역참을 사용할 때 반드시 2종류의 관방 증명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했다. 하나는 승역신분 증명으로서 승역원패 혹은 포마성지이다. 다른 하나는 승역 사유 문서로 원대의 명칭은 ‘포마차찰(鋪馬差札)’이고 몽골어로는 ‘벨게(belge, 뜻은 증거·증명이다)’이다. 이 두 종류의 관방 증명서를 반드시 함께 구비해야만 원조의 역참을 사용할 수 있었다.⁵¹

이 두 가지 외에는 기타 어떤 관부와 투하의 문서도 역참을 사용할 수 있는 효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 몽골제왕의 영지도 효력이 없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지정조격』 단례에도 있다. 앞에서 인용한 후지원 3년(1337)의 단례(118조)를 보자.

去年에 怯伯(Kebeg) 肅王 位下에서 파견된 也的迷失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圓牌를 지니고 있고 습습에는 ‘爭取營盤草地’라고 적혀 있었으나 베르케에게 “軍情 사무로 추밀원에 가서 보고해야 한다”며 베르케 대왕을 거치지 않고 파견되었다. 이 때문에 也的迷失을 처벌했다.⁵²

즉, 숙왕위하(肅王位下)에서 온 사자는 숙왕의 영지를 갖고 있었지만 원패도 지녀야 했다. 이는 영지도 결코 법적으로 승역 기능을 갖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위에서 인용한 『지정조격』 단례는 원 정부가 집권 후기에 특권계층

51 黨寶海(2006), 앞의 책, 208~223쪽.

52 한국학중앙연구원(2007), 앞의 책, 208~209쪽.

의 승역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통치 질서를 수호하고 사회모순을 줄이려는 중앙정부의 의도가 입법 방면에 직접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몽골제왕, 공주, 부마의 역참 남용행위는 처음에는 위법으로 여겨지지 않았고, 비록 위법으로 간주하더라도 처벌이 가벼웠다. 원조에서 명령을 내려 제왕, 공주, 부마의 역참 남용을 금지하였어도 소극적으로 패부(牌符)와 성지·영지를 몰수하였을 뿐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정조격』 순제조(順帝朝)의 관련 규정을 통해 볼 때 후기에는 이미 비교적 명확한 처벌 단례가 있다. 이것은 원대 관련 법률제도가 중앙정부의 통치 질서에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지정조격』 교주본 정리자인 이개석·김문경 등은 “『지정조격』을 편찬한 가장 큰 목적은 바로 몽골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대원통제』의 조문을 산수하여 몽골과 관련된 조문을 삽입하고 …… 몽골통치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 목적은 몽골, 색목인의 법문화 전통을 새 법전 속에 수용하여 그들의 공동이익을 옹호하는 것이다”, “『지정조격』은 몽골 혹은 다민족에 편향된 성질을 갖고 있다”⁵³고 보았다. 그럼에도 앞에서 인용한 『지정조격』 단례에 대해 그것과 다른 견해를 갖게 된다. 즉 원조 후기에는 몽골 통치 집단의 이익을 힘써 보장하지 않았고 도리어 권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억제하였다. 앞서 인용한 단례 117조의 규정에 따르면 투하 인원이 역마를 함부로 사용하면 정부는 투하 수령관과 사자를 처벌할 뿐 아니라 투하의 왕부, 정관에게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 이는 원조 전기의 단례

53 李玠奭(2007), 앞의 글, 464쪽 ; 金文京(2007), 앞의 글, 480쪽.

에서는 보기 드문 경우로 원조 정부의 투하에 대한 제한과 관리 강화를 여실히 반영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지정조격』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⁵⁴ 천가오화 선생은 한국 학자들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고, 『지정조격』 조격 부분은 정부가 타마초료(駝馬草料)·겍설오자(怯薛襖子)·발사전토(撥賜田土)·범람상사(泛濫賞賜)·투하횡과(投下橫科) 등 각각의 방면에서 몽골, 색목인의 법외 특권에 대한 제한을 강화했음을 표명하는 것이고, 이런 조치들은 중원의 전통적 법제를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일 뿐 ‘유목민족적 법문화전통’과는 무관하며 나아가 『지정조격』의 몽골적 요소를 강조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⁵⁵ 장판 교수도 『지정조격』에서 보충된 케식과 투하와 관련된 조문은 대부분 케식과 투하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가령 「전령」 중의 ‘금요농민(禁擾農民)’은 명백히 몽골인의 요민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지정조격』의 편찬은 원조 통치 집단이 통치 위기를 만회하기 위한 것이며, 거기에 내재한 정신은 몽골 귀족의 특수한 통치 지위를 보증한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한 사회모순을 완화하고 조절함으로써 원조의 장기적 안녕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파악하였다.⁵⁶ 『지정조격』에 대한 관련 역할교통 조목의 분석은 이런 견해를 더욱 뒷받침한다.

54 『지정조격』에서 특권계층을 제한하는 다른 규정으로는, ‘조격’ 부분의 케식에 게 지급하는 襖子와 馬匹草料에 대한 甄別, 원통 2년 제왕·공주·부마·백관·사원이 가진 撥賜토지의 회수, 제왕투하의 세량에 대한 통제 강화, 관원의 寶貨 중매 금지, 賞賜 남발을 제한하거나 금지, 사원 승도들의 民田 매입 금지, 후지원원년 이후에 增置된 田地를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조치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김호동(2007), 「『至正條格』의 편찬과 원 말의 정치, 『至正條格』校注本, 한국학중앙연구원, 158쪽 참조.

55 陳高華(2008), 앞의 글, 158쪽.

56 張帆(2008), 앞의 글, 238~241쪽.

2) 색목인의 관습법에 대한 강력한 관여

원조의 전통적 사법정신은 각기 다른 민족들이 자신들의 법률 규범을 연용(沿用)한다는 이른바 ‘각의본속(各依本俗)’이다.⁵⁷ 그러나 원조 말기에 이르러 원조법률에서 색목인의 관습법에 대하여 강력한 간섭이 있었음이 주목된다.

『지정조격』 단례 중 호혼에 ‘금속백성혼(禁叔伯成婚)’ 조문(246조)이 있는데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至元 6年 11月 甲寅(初5日⁵⁸) 중서성의 상주: 어사대가 가져 온 南臺 御使의 문서에서 말하길 “普顏篤皇帝 때 答失蠻, 回回, 主音인들의 叔伯成婚을 금지하였는데, 근년에 이들이 여전히 숙백간에 서로 혼인을 하므로 금지하는 것이 도리에 합당합니다” 라는 문서를 보내와 (문서를 다시 보내어) 형부와 예부에서 심의하길 “夫婦는 곧 인륜의 본이고 형제는 진실로 골육의 親이다. 동성이 결혼할 수 없는데 숙백이 어찌 부부가 될 수 있는가. 금후 이렇게 결혼하는 자는 同姓爲婚의 예에 해당되어 二等을 가하여 各杖 67下에 처하고 아울러 이혼시킨다. 혼인을 중매한 자는 笞 47하에 처한다. 관에 신고한 사람들은 聘財 내에서 중통초 拾定을 포상으로 갖는 것을 허락한다. 널리 例로써 준수해야 한다” 라고 보고해 왔다. 형부와 예부에서 “定擬한대로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상주하여 성지를 받드니 “그렇게 하라” 하였다.

‘보안독황제(普顏篤皇帝) 때’ 는 바로 인종(仁宗) 시기를 가리킨다. 이 조문 중 지원 6년은 순제 지원 6년(1340)이다. 이 법령은 『원사』 권40 「순

57 白翠琴(1998), 「略論元朝法律文化特色」, 『民族文化』 1998-1, 52쪽.

58 洪金富, 『遼宋夏金元朝日曆』, 422쪽.

제기(順帝紀) 3에도 보이는데 시기도 일치한다.⁵⁹ 답실만(答失蠻)은 페르시아어 ‘Danishmand’의 음역으로 본래의 뜻은 학자, 총명한 사람이다. 원대에는 전문적으로 이슬람교 선교사를 가리켰다. 회회(回回)는 원대의 중앙아시아, 서아시아의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각국 사람에 대한 통칭이고, 주오(主吾)는 유대교도를 가리킨다.⁶⁰ 이른바 ‘숙백성친(叔伯成親)’은 사실상 사촌간의 통혼이다. 이슬람교도, 유대교도들 중에는 동성혼인, 심지어 숙백통혼 습속도 있었다.⁶¹ 이들은 중국에 정착해 살면서 인구수가 비교적 적어 선택할 수 있는 혼인 대상의 범주가 협소해지자 동성혼, 숙백혼을 더욱 보편적으로 하게 되었다. 세조 시기 원조에서는 회회인의 동성혼인을 금지하지 않았다. 『원전장(元典章)』 권18 「호부사(戶部四)·혼인(婚姻)·가취(嫁娶)·동성부득위혼(同性不得爲婚)」 기사에⁶²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온다.

至元 25年(1288) 10月 16日, 尙書省이 상주한 안건의 하나 : 요양행 서에서 문서를 보내와 보고하길 “義州의 劉義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

59 『元史』 卷40, 「順帝紀」 3, “11月甲寅, 監察御使世圖爾言, 宜禁答失蠻, 回回, 主吾人等叔伯爲婚姻.”

60 관련 법령에 대한 상세한 해설은 張帆(2007), 「讀「至正條格斷例」戶婚條札記—與「元典章戶部婚姻」相關條文的比較」, 『紀念許大齡教授誕辰八十五周年學術論文集』, 北京大學出版社, 65~66쪽 참조.

61 원대 무슬림의 숙백혼에 대해서 陶宗儀(1959), 『南村輟耕錄』 卷28 ‘嘲回回’ (중화서국 1959년 표점본)에 “그 혼례는 중국과는 매우 달라 伯叔姊妹라도 상관하지 않았다”는 기사가 있다. 세계 각지 무슬림의 숙백혼에 관해서는 E. A. Westermarck · 李彬 等(2002), 「漢譯本」 第2卷, 『人類婚姻史』, 商務印書館, 541~543쪽. 유대인의 숙백혼에 관해서는 王靈桂 等(2006), 『一脈相傳猶太人』, 中國友誼出版公司, 274쪽 참조.

62 같은 기사가 『通制條格』 卷3, 「戶令·婚姻禮制」 至元 25年 10月條에도 있다.

가 劉氏 姓을 가진 남자를 맞이하여 養老女婿로 삼고 함께 10년을 살면서 아이 둘을 낳았습니다. 이처럼 同姓끼리 부부가 되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라고 보고하자, 예부관인들이 定奪하길 “羊의 해(즉 지원 8년)에 반포된 성지에 정월 이전에 부부가 된 사람들은 예전대로 하고, 정월 이후에 부부가 된 사람들은 성지 체례에 따라 이혼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혹은 부부가 불화하여 때리고는 ‘同姓’이라고 핑계대며 빠져 나갑니다. 그럼, 동성으로 부부된 자들을 이혼하지 않게 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상주하자 “이 규정은 변함이 없다. 이전에 부부가 된 사람들은 이혼시키지 말고, 그 이후(지원 8년)에 동성으로 부부가 된 자는 단속하고 금하라. 단속하고 금하지 않는다면 회회인들처럼 그런 체례(本俗)를 가진 경우이다”라는 성지가 있었다. 欽此.

이 공문서는 세조 시기에 동성혼인을 금지할 당시의 평론을 인용하고 있다. “단속하고 금하지 않는다면 회회인들처럼 그런 체례를 가진 경우이다”라는 데서 당시 회회인 중에 동성끼리 결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음과 그것이 위법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원조가 회회인의 속백통혼을 금지한 주요 법률 근거는 원조의 ‘동성불혼’에 관한 규정이다. 이런 유의 금령은 매우 일찍 원조에서 시행되었다. 『원전장』 권18 「호부사·혼인·혼례·혼취빙재체례」 3번째 조항은 “동성은 결혼할 수 없다. 지원 8년(1271) 정월 25일을 기점으로 그 전에 결혼한 자는 기혼(己婚)으로 승인하고 그 이후는 법에 따라 단죄하고 이혼시킨다”고 규정하였다.

앞에서 전문을 인용한 ‘가취·동성부득위혼’도 한인 동성불혼에 관한 중요한 사례이다. 영종 지치 연간에 이르러 원조는 거듭 동성혼인 금지를 천명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처벌 내용까지 규정하였다. 『지정조격』 단례 호혼(戶婚) 중의 ‘동성위혼(同姓爲婚)’ 조(224)를 보자.

至治二年十一月, 형부 議得 : 東平路의 劉成은 딸을 劉海男의 처로 시집보냈다. 동성이므로 당사자들은 각 笞 47下에 처하고 이혼시키며 예물로 준 재물은 沒官한다. 중매인은 태 27하에 처한다. 都省准擬.

동성불혼에 관한 금령은 주로 한인들에게 실행되었다. 이는 한지의 사회윤리를 집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당률(唐律)』 중에 이미 명확하게 동성불혼에 관한 금령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규정하였다.⁶³ 이런 한지 법률의 전통은 원조에도 계승되었다. 『지정조격』에 의거하면, 한법 중 ‘동성불혼’은 순제 지원 6년에 회회인의 속백혼을 금지하는 법률적 근거가 되었다. 원조의 형부와 예부에서 ‘부부(夫婦)는 곧 인륜의 본(本)이고 형제는 실로 골육의 친(親)이다. 동성이 결혼하지 않는데 어찌 속백이 부부가 될 수 있는가?’라고 했는데, 이러한 혼인에 대한 인식은 분명 회회인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판결한 사안은 한법의 동성불혼을 근거로 한 것이다. 위에서 인용한 『지정조격』 중 ‘금속백성혼’ 단례는 동성이 결혼하면 태형(笞刑) 47하를 기본으로 2등을 가중하였는데, 이는 원조의 이 법령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다.

3) 전통 한법에 대한 인정과 옹호

원대 제 민족 간의 경제·문화 교류 증가에 따라 그들 간의 상호 이해도 더욱 깊어졌다. 원대 중·후기에 이르러 몽골의 풍속과 관습을 강

63 『唐律疏議』卷14, 「戶婚·同姓爲婚」, 262~263쪽(중화서국 점교본, 1983년).

제적으로 시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 한법과 한지의 사회규범을 인정하고 옹호하였다. 그중 수계혼(收繼婚)의 존재는 매우 두드러진 사례이다. 수계혼은 과부가 그 망부(亡夫)의 아들(다른 처첩 소생, 조카, 형제 등 친족과 결혼하여 그 처가 되는 것이다. 원대 몽골족 사이에는 수계혼이 유행하여 당시 한족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세조 쿠빌라이는 지원 8년(1271)의 성지에서 한인 자(子)가 부첩(父妾)을, 동생이 형수를 수취(收娶)하는 것을 허락하였다.⁶⁴ 이후 오랫동안 수계혼은 원대 한족 과부가 재가할 때 합법적이고 심지어는 우선적인 혼인 형식의 하나가 되었다. 『원전장』 「호부·혼인」에 이런 안건이 많이 기재되어 있다. 원대 수계혼을 연구한 장관 교수는 이런 ‘수계미수(收繼未遂)’ 사례 중에서 친속관계의 소원(疏遠), 남녀의 연령 차이가 너무 많은 경우 외에도 한족 과부가 수계를 피할 수 있었던 주요한 수단(手段)의 하나가 바로 수절(守節)을 선서하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것은 과부가 자신의 재가 권리를 영원히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재가를 하면 법률적으로 징벌을 받고 아울러 응당 수계되어야 하는 자는 다시 수계된다.⁶⁵

수계혼에 관한 법률 규정은 원조 후기에 이르러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원사(元史)』 권34 「문종기3(文宗紀三)」 지순 원년(1330) 9월 기해(己亥)에 문종은 “그 본속(本俗)을 어기고 감히 형수를 취하는 자, 자신의 서모를 취하는 자는 논죄한다”는 칙령을 내렸다. 이 금령의 전문은 『지정조격』

64 『元典章』 卷18, 「戶部四·婚姻·收繼·收小娘阿嫂例」, 至元 8年 12月, 中書省中: 今月初八日, 答失蠻, 相哥二箇文字譯該, “小娘根底, 阿嫂根底, 休收者. 行了文字來,” 奏呵, 聖旨, “疾忙交行文書者. 小娘根底, 阿嫂根底收者.” 麼道, 聖旨了也. 欽此.

65 張帆(2007), 앞의 글, 67~69쪽; 陳高華(2008), 「『元典章·戶部』簡論」, 『中華文史論叢』 2008-2, 37쪽.

에 잘 보존되어 있다. 즉 단례 호혼의 ‘금수서모병수(禁收庶母并媾)’ 조(교주본 제241조)로 다음과 같다.

至順 元年(1330) 9월 23日, 中書省의 상주 : 어사대가 감찰어사들의 문서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고했습니다 : “漢人是 형이 죽고 나서 형수가 수절하는 기간에 형제들이 收娶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도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청건대 通例를 헤아려 금지해야 합니다” 라는 문서를 보내 왔습니다. 이를 禮部가 定擬하여 ‘今後 한인·남인이 서모와 형수를 수계하는 것은 금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예부의 결정대로 시행하면 어떤지 상주하자 “그렇게 하라”는 성지를 내렸다. 欽此. 형부가 議得하길 “금후 이를 어기는 남자·부인은 각 杖 87下에 처하고, 主婚者는 笞 57下, 媒合人은 47下, 聘財의 절반은 몰권하고, 절반은 신고인에게 포상으로 준다. 비록 大赦를 만나더라도 이혼해야 한다”고 하였다. 都省准擬.

수계혼은 한인의 전통적 윤리 도덕관과는 맞지 않는다. 원조 초기에 몽골은 정복자로서 법률적 강제력을 사용하여 한인들에게 몽골 고유의 수계혼을 시행하라고 하였다. 사회 교류와 문화 교류의 증가에 따라 몽골 통치계층의 다른 문화, 풍속습관에 대한 태도는 경시하는 쪽에서 이해하는 쪽으로 발전하고 최후에는 법률적 형식으로 이를 인정하고 옹호하게 되었다. 몽골 통치자의 수계혼에 대한 태도가 이런 과정을 분명하게 반영한다.

그런데 원조는 수계혼과는 정반대로 회회인의 속백혼을 강고하게 단속하였다. 이것은 매우 주의할 만한 현상이다. 그것은 원조의 입법자들이 이런 유의 안건을 처리할 때 처음의 각의본속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태도로 바뀌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앞에서 분

석한 것처럼 회회인의 숙박혼을 단속한 원조의 입법 의거는 한법의 ‘동성불혼’이다. 이것은 한법이 원조 입법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음을 반영한다.

이상에서 서술한 3가지 측면은 다음의 사실을 증명한다. 원조 후기에 몽골 군주와 귀족을 필두로 하는 통치집단은 국가의 장기적 안녕을 도모하고 계급 모순, 민족 모순을 줄이기 위하여 광범위한 특권을 향유하는 몽골 귀족을 강력하게 관리하고 그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처벌 규정을 마련하였다. 4등인 중 제2등급인 ‘색목인’에 대해서도 원조 정부의 법률정책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한문화의 영향하에서 회회인의 관습법에 관여한 것이다. 전기에 회회인이 마음대로 회회법을 적용하는 상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지정조격』에서는 더욱더 한법을 인정하면서 한인의 혼인법을 대대적으로 조정하고, 한문화 고유의 관념에 근거해 합법적 수계혼을 금지하였다. 이런 새로운 규정들은 민족의 융합과 문화 교류에 따라 한법의 영향이 원조 통치집단, 특히 몽골 통치자에게 부단히 증가되었음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몽골의 집법자들이 안건을 처리하고 구체적인 안건을 판결할 때 이용하는 법률지식, 가치기준, 의식은 한법의 법률규칙, 한문화의 가치기준, 한지 전통의 도덕관·가치관이었다. 『대원통제』와 비교해 볼 때 『지정조격』은 원조 통치자가 한법을 이용하고 한법을 옹호하며 한법으로 고유의 관습법을 개조하는 과정에서 다시 일보 전진하였음을 반영한다.

3. 『지정조격』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

1) 명대 입법에 끼친 영향

원조에는 성문법전이 없었고 명조에 이르러 태조 주원장이 신하를 조직하여 법전을 편찬하였다. 현재 가장 자주 보는 홍무 30년(1397) 『대명률(大明律)』은 반복인 편찬을 거쳐 완성된 최종본이다. 이 장에서는 『지정조격』의 발견을 계기로 원대 법률을 이해하기 위해 『지정조격』이 명률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는가를 살펴보겠다.

먼저, 편찬체례 측면에서 볼 때 『지정조격』은 『대명률』의 모범이 아니다. 『대명률』의 편찬을 주도한 명 태조는 원조의 법률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 오(吳) 원년(1367, 지정 27) 태조는 “당·송에는 모두 성률단옥(成律斷獄)이 있었으나 원은 고제(古制)를 따르지 않고 일시 소행(所行)되는 사(事)를 조격으로 취하여 서리들이 간폐(姦弊)하기 쉬웠다”며 무창(武昌)을 평정한 이후 곧 정률(定律)을 논하였다.⁶⁶ 태조는 율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원조에서 조격만을 사용하여 폐단이 많은 것을 바로잡기 위해 명률(明律)의 편찬을 매우 중시하였다.

오 원년에 주원장은 신하들에게 율령 편찬을 명하였고 홍무 원년에 정식으로 반행되었다. “당률의 옛것을 모범으로 하여 그것을 증손(增損)하였는데, 합계 285조이다. 이율(吏律) 18, 호율(戶律) 63, 예율(禮律) 14, 병률(兵律) 32, 형률(刑律) 150, 공률(工律) 8조이다.” 이 율은 두 가지 점에

66 『明太祖實錄』 卷26, 吳元年10月甲寅, 臺灣: 中央研究院歷史言語研究所校印本.

서 주의할 만하다. 먼저 원조의 입법방식을 바꾸었고, 율의 내용을 ‘당(唐)의 옛것을 기준으로 증손한 것’으로 총조목은 겨우 285조로 『당률(唐律)』(502조)보다 훨씬 적었다. 비교적 개괄적이고 간결한 성문법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편찬체례 측면에서 볼 때 편목을 이율·호율·예율·병률·형률·공률의 6부로 나누었다. 이 체례는 아마도 『원전장』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원전장』은 조령(詔令)·성정(聖政)·조강(朝綱)·대강(臺綱)·이부(吏部)·호부(戶部)·예부(禮部)·병부(兵部)·형부(刑部)·공부(工部)의 10목이다. 이런 유의 분류 편찬방식은 법률 자료의 수집·분류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사법자가 내용을 파악하고 집행하는 데도 편리하다.

이후 홍무7년율(洪武七年律)은 “편목은 당의 것을 모범으로 하여 명례(名例), 위금(衛禁), 직제(職制), 호혼(戶婚), 구고(廩庫), 친흥(擅興), 적도(賊盜), 투송(鬪訟), 사위(詐僞), 잡률(雜律), 포망(捕亡), 단옥(斷獄)이다. 이미 반행된 구율(舊律) 288조, 속률(續律) 128조, 구령(舊令)을 개율(改律)한 것이 36조, 인사(因事)로 만든 율이 31조, 『당률』에서 취하여 보유(補遺)한 것이 123조로 합계 606조, 30권으로 되어 있다.” 오 원년의 율이 6부 분류로 편찬된 체례를 바꾸었고 율문이 크게 증가하여 오원년율보다 321조가 많고 당율보다 104조가 많다.

홍무7년율의 반포에서 22년율의 편찬까지 이 시기의 명률에 다시 일련의 변화가 생겼다. 홍무22년율은 전체적 구조에서 6부 분류 편찬 형식이 부활하였다. 첫 편명은 명례율(名例律)이고 그 다음은 차례대로 이율·호율·예율·병률·형률·공률이다. 율서는 모두 30권, 460조이다. 대부분의 법 조문은 당률의 조항을 합병하여 완성되었다. 이때 이르러 명률의 체례와 편목이 확정되었다. 홍무 30년 『대명률』은 단

지 이들을 기초로 약간 조정했을 뿐이다.⁶⁷ 홍무 연간의 모든 율서의 편찬 체례는 『지정조격』과 다르다. 만약 반드시 원조에서 유사한 법률 문헌을 찾아야 한다면, 겨우 분방법에서 오원년·홍무22년·30년명률과 『원전장』이 비교적 유사하고, 그것들의 주요 내용은 모두 6부 분류에 따라 집성되었다는 점뿐이다. 왜냐하면 『원전장』은 6부 분류 체제하에서 기본적으로 『단례』를 수록한 것이지 범죄구성 요건과 처벌조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아닌 추상법조(抽象法條)이다.

다음으로, 내용면에서 볼 때 『대명률』은 단순히 『지정조격』내용을 받아들이고 개편한 것이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명률이 수차례 편찬된 것과 관련해 다음의 3가지 점이 주목된다. 첫째, 율서의 편찬체례는 주로 『당률』을 참조한 것이고, 6부 분류방식은 『원전장』의 영향을 받은 듯하다. 6부 분류 편찬에 따른 것은 명조에서 가장 초기의 편찬방식이다. 두 번째, 명률은 비록 수차례 편찬되기는 했지만 전적으로 성문법전의 노선을 따랐고 원조의 조례집성 양식을 버렸다. 세 번째, 명률의 조문은 전후로 증감이 있었고 맨 처음에는 285조, 제일 많을 때는 606조였고 최종적으로 460조로 압축되었다. 이들 조문의 내원은 ‘당의 옛것을 기준으로 증손한 것’으로 명조에서 이미 반포한 구율 외에 속률·구령개율(舊令改律)·인사제율(因事制律)·보유한 『당률』이다. 이들 법조문 중 주요 부분은 명조의 실제 상황에 부응하는 것이었고, 아울러 일정 정도 사법적 시행을 거친 조문이다. 적어도 관련 입법 과정에 참여했던 명대인들의 진술로 볼 때 홍무 시기의 입법자는 당 이후부터 원

67 명초 법률 편찬에 대해서는 楊一凡(1992), 「『大明律』修訂始末考」, 『政法論壇(中國政法大學學報)』, 1992-2期 참조.

대까지의 법전이나 법률 모음집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다.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홍무 30년 『대명률』의 어떤 조목과 『지정조격』의 내용이 아주 비슷하여 마치 『대명률』이 『지정조격』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인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당률』에서 『대명률』까지 700년이 경과했다. 경제·정치·사회생활 등 모든 방면에서 당시에는 없던 새로운 상황이 출현하였다. 낡은 법령은 현실의 실제적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 당에서 원대까지 각 왕조마다 모두 시대적 요구에 따라 거기에 상응하는 법전·칙서·단례·조격 등을 편찬하였다. 명 초년에 통치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법률 종류는 비교적 많았고 『지정조격』은 그중 하나일 뿐이었다. 『대명률』의 어느 조목은 『지정조격』과 유사하다. 그렇다고 그것이 반드시 전자가 후자를 직접적으로 계승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내원도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원조와 명조가 시간적으로 전후로 이어져 사회의 공통요소가 많아서 이들 사회의 공통성이 법률의 유사성을 초래했을 것이다. 왕조 교체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사회생활 등의 영역은 『대명률』과 『지정조격』의 비슷한 조목이 비교적 많고, 왕조의 교체에 따라 변화가 비교적 큰 행정 등의 영역은 『대명률』과 『지정조격』 간의 유사한 조목이 그에 상응해서 감소하였다. 가령 호훈 중의 혼인 관련 조문은 양자가 매우 유사하다. 그리고 ‘우역(郵驛)’ 부분은 내용면에서 서로 중첩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점도 매우 많다.⁶⁸ 이는 명초에 백성들의 혼인에 큰 변화가 없었고, 우역제도는 원조와 매우 큰 차이점이 있어서 명조에서 비교적 큰 조정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지정조격』은 의심할 여지없이

68 懷效鋒 點校(1998), 『大明律』, 法律出版社, 59~66·126~132쪽.

『대명률』의 편찬 과정에서 일정 정도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그 역할이 얼마나 큰지는 두 책의 법조문에 대한 상세한 비교연구가 이뤄져야 알 수 있다. 분명 이것은 이 글에서 완성할 수 없는 과제이다.

요컨대 편찬체례 면에서 『지정조격』이 『대명률』에 끼친 영향은 없다. 둘 사이에 직접적인 계승관계도 없다. 내용면에서 양자 간에는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는데, 『대명률』의 같은 부분 혹은 유사한 부분의 내용이 『지정조격』 혹은 원대, 심지어 더 이른 시기의 다른 법률 문헌에서 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후일의 연구를 기다려야 한다.

2) 고려와 조선에 끼친 영향

원조의 법령격례(法令格例)는 원조의 번속국이던 고려에서도 시행되었다. “용형시(用刑時)에 원조의 법으로 판단한 즉, 유사(有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감히 말할 수가 없다”, “고려조는 역대의 법을 취하고자 했으나 원을 섬긴 이후 원율(元律)을 전용(專用)했다.”⁶⁹ 『지정조격』이 반행된 이후 곧 고려에 전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고려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오히려 원조가 멸망한 이후인 신우 3년(1377)이다. 그해 2월에 고려는 “중외(中外)의 결옥(決獄)에 『지정조격』만을 따를 것”⁷⁰을 명하였다. 왜 원조 멸망 이후에 『지정조격』이 고려의 기본 형

69 李穀, 「策問·刑法」, 『稼亨先生文集』 卷1;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人事篇·治道類·律書辨證說, 『至正條格』 교주본, 322~323쪽에서 재인용. 고려의 원조법률 검용에 대해서는 李玠奭(2007), 앞의 글 참조.

70 『高麗史』 卷84, 「刑法志一」과 卷133, 「辛禡傳一」.

법이 되었을까?

고려의 이러한 정책이 고려에서 『지정조격』이 실질적인 지위를 획득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때의 조치는 당시 정치 상황의 산물이었고, 그 정치적 상징 의의는 실제 법률 의의보다 훨씬 큰 것이다. 1368년 명이 대도를 점령한 이후 원조의 잔여 세력은 막북, 서북과 요동으로 퇴거하였다(史稱‘北元’). 고려는 원의 ‘지정(至正)’ 연호 대신 ‘홍무(洪武)’ 연호를 사용하여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명조의 번속이 되었다. 그러나 고려 국내의 친원(親元)세력은 여전히 세력이 강대했고 장기간 북원과 암중으로 왕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1372년 북원의 장령 쿠쿠테 무르, 나하추가 각각 막북과 요동의 전장에서 명군을 격파하여 정치형세가 크게 변화하였다. 이로써 고려의 친원세력은 더욱 활기를 얻게 되었다. 1374년 공민왕이 피살되고 양자(養子) 신우(辛禔)가 국왕에 추대되었다. 국내 정세를 안정시키고 명조의 출병과 문죄를 막기 위해 고려는 북원에 칭신(稱臣)하였고, 1377년 2월에 북원은 정식으로 신우를 정동행성좌승상·고려국왕에 책봉하였다. 고려는 다시 북원 소종(昭宗)의 ‘선광(宣光)’ 연호를 사용하였다. 『지정조격』으로 고려의 내외 형국을 판결한다는 명령은 이런 시기에 선포된 것이다. 그러나 고려는 완전히 북원으로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 명조와도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 차례 악화된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였다. 신우 즉위 후에 고려는 명에 부고를 알려 명조가 공민왕에게 시호를 내릴 것과 신우의 왕위 계승을 승인할 것을 청하였다. 1378년 북원 소종 사후에 몽골의 국력은 더욱 쇠퇴하였다. 고려는 정세 변화에 따라 북원과 소원해지고, 그해 9월에 ‘홍무’ 연호를 회복하였다.⁷¹ “중외의 결속에 『지정조격』만을 따를 것을 명한다”는 정령(政令)은 바로 고려 국왕이 북원의 책봉을 받은 날에 하달된 것이다. 그

러나 이런 상황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고려·북원·명 관계의 변화에 따라 『지정조격』은 고려국가의 기본 법률로서의 외적 조건이 이미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지정조격』의 중요성도 고려와 북원의 관계 악화에 따라 신속하게 감소되었다. 신우 14년(1388) 9월에 전법사(典法司) 대신(大臣)이 갓 즉위한 어린 국왕 신창(申昌)에게 건의하여 법전은 『대명률』을 따라야 함을 건의했다.⁷² 공양왕 4년(1392) 2월 갑인(甲寅)에 정몽주는 『대명률』, 『지정조격』, 고려의 법령을 참작하고 삭제·정정하여 새로운 율을 찬술하여 올렸다.⁷³ 상술한 기사에서 추측컨대 『지정조격』은 고려에서 이미 결속의 근거가 되는 유일한 법전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다.

고려 사신이 본국 옛 법전의 부족한 점을 언급하면서 “완형(緩刑)과 수사(數赦)가 제대로 펼쳐지지 않아 간흉한 무리가 빠져나가 제멋대로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원조의 법률도 매우 큰 결함이 있어 ‘법리(法吏)가 예(例)를 다용(多用)’하여 관리가 판례를 조정하고 사사로운 정에 얽매어 불법을 자행하는 폐단을 피하기 어려웠다. 옛 법전과 원조 격례의 결합으로 인해 고려는 새로운 법전의 편찬이 절실하였다. 이것이 공양왕 4년에 정몽주가 새로운 율을 편찬한 주요한 원인이다. 기록에 따르면, 새로운 율이 진상된 후 “왕이 지신사(知申事) 이첨(李詹)에게 입조를 명하여 6일간 강론하게 하고는 누차 그 미(美)에 감탄하고”, “왕이 매우 기뻐하며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한다.⁷⁴ 정몽주는 신율(新律)을 편찬할 때 본조의 법령과 『지정조격』을 이용하는 외에 『대

71 『高麗史』 卷133, 「辛禡傳」 1.

72 『高麗史』 卷84, 「刑法志」 1.

73 『高麗史』 卷117, 「鄭夢周傳」; 『高麗史』 卷46, 「恭讓王世家」 2.

74 『高麗史』 卷46, 「恭讓王世家」 2.

명률』을 참조하였다. 이때의 『대명률』은 당연히 지금 가장 흔히 보는 홍무 30년 『대명률』 이전의 판본 중 하나이다. 『대명률』이 고려에 전 입된 후 고려 법제사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 1392년 조선 건국 초에 태 조 이성계는 “지금부터 경외(京外)의 결옥관(決獄官)은 무릇 공사죄범에 반 드시 『대명률』을 갖추라”고 선포하였다. 태조조의 대신 정도전은 『조 선경국전(朝鮮經國典)』에서 “우리 전하의 덕이 인(仁)에서 돈독하고 예(禮)가 차례를 얻었으니 가히 덕이 정치의 근본이라 할 것이다. 그 의형(議刑), 단옥(斷獄)으로써 정치를 보좌하는 것은 한결같이 『대명률』에 의거하였 다”⁷⁵고 하였다. 이것은 『대명률』이 이미 조선왕조의 유효한 법률이 되 어가고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⁷⁶ 하지만 조선에서 『지정조격』은 명조 처럼 그렇게 신속하게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지 않고 많은 방면에서 영향을 발휘하였다.

먼저, 『지정조격』은 조선 관원이 소송과 형사 안건의 심리(審理) 등에 서 사법업무를 처리할 때 보는 참고서였다.⁷⁷ 세종 13년(1431)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월급(越級) 상소하는 것을 허락할 것인지를 군신들이 토론할 때도 “남의 죄를 고하는 자는 모두 반드시 연 월을 명확히 기록하고 사 실을 지적하여 진술하되, 의심스러운 것은 말하지 말 것이며 무고지는 반좌죄(反坐罪)에 해당된다. 본관(本管) 관사를 고발할 때에만 직접 상사(上 司)에게 나아가 고하는 것을 허락하며 그 외에는 모두 월소(越訴)할 수 없

75 『朝鮮王朝實錄』太祖 卷1, 元年7月28日丁未; 鄭道傳, 「朝鮮經國典·憲典總書」, 『三峰集』卷7.

76 조선에서 『대명률』이 차지하는 법률적 위치에 대해서는 文亨鎭(2000), 「『大明律』轉入朝鮮考」, 『中央民族大學學報』2000-5; 李靑(2007), 「『大明律』與中朝法文化交流」, 『比較法律文化論集』, 中國政法大學出版社 참조.

77 김문경 교수가 여기에 대해서 언급했다. 金文京(2007), 앞의 글, 472쪽.

다”⁷⁸는 『지정조격』 중통연간의 성지조획의 사례를 참고하였다. 세종 20년(1438) 강준덕(姜峻德)이 부모·형님 및 지방관을 상해(傷害)한 안건을 처리할 때, 조선 관원은 『지정조격』 중 2개의 안건을 인용하였다. 최후 토론 결과 “본인이 수금(囚禁) 중에 사망하였으나 그 시체를 저자에서 지해(支解)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지정조격』의 판결에 따라 수금 중 사망한 강준덕은 “형(刑)을 가(加)하여 기시(棄市)되었다.”⁷⁹ 세종 28년(1446) 친상(親喪), 국상(國喪)에 슬퍼하지 않는 자의 처벌에 대해 관리들은 『당률』, 『지정조격』, 『대명률』의 관련 규정을 조사하고 ‘본율(本律)에 따라 논죄하는’ 외에 ‘제명하고 서용(敍用)하지 않음으로써 박속(薄俗)을 징벌하고자 결정하였다.’⁸⁰ 성종 21년(1490) 한환(韓擘)이 자신의 처와 장인을 구타한 안건에 대해서도 “사위가 장인을 욕하면 그 아내와 이혼한다”는 『지정조격』의 사례에 근거하여 “한환을 외방(外方)에 부처(付處)하고 그 아내와 이혼시켜라”라고 판결하였다.⁸¹ 성종 24년(1493)에는 한월령(漢月令)과 『지정조격』의 기재를 참조하여 ‘입춘 때 행춘어사(行春御史)를 분견(分遣)하여 억울한 옥사를 심리하는’ 방안을 토론하였다.⁸² 관원들의 이러한 법률 격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정조격』은 조선 율학(律學) 참고서의 하나가 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 세종은 일찍이 율학교육에서 중국 법률전적(法律典籍)에 대한 학습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며 “인법(人法)은 병용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은 예전과 같지 않기에 부득이 율문을 비부

78 『朝鮮王朝實錄』 世宗 卷53, 13年7月4日丙寅.

79 『朝鮮王朝實錄』 世宗 卷82, 20年7月25日丁未.

80 『朝鮮王朝實錄』 世宗 卷112, 28年6月7日癸未.

81 『朝鮮王朝實錄』 成宗 卷247, 21年11月4日壬午.

82 『朝鮮王朝實錄』 成宗 卷285, 24年12月22日壬午.

(比附)하여 시행한다. 그러나 한이문(漢吏文)이 섞여 있어 비록 문신이라 하더라도 모두 알기가 어려운 것인데, 하물며 율학생도(律學生徒)들이야? 지금부터는 문신 중에서 정통한 자를 택하여 훈도관(訓導官)을 따로 두고 『당률소의』, 『지정조격』, 『대명률』을 강습하는 것이 옳다”⁸³고 하였다. 『지정조격』을 『당률소의』, 『대명률』 등의 중요한 법전과 병렬한 것은 명백히 세종이 이것을 원조법률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조선의 율학생도들이 『지정조격』 등을 학습교재로 삼아서 안건을 심리할 때 숙련되게 인용하고, 대조하는 것은 결코 신기한 일이 아니었다.

다음으로, 『지정조격』은 관제와 행정관리 방면에서 조선 관원들이 유사시 참고하기 위해 비치하는 문헌의 하나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⁸⁴ 세종 30년(1448) 조선은 이전(吏典)의 승천(升遷) 문제에 관해 『지정조격』 연사(掾吏)의 승전조례(升轉條例)를 참고하여 이전의 승차(陞差) 체계를 결정하였다.⁸⁵ 문종 원년(1451)에 대신 안송선(安崇善)은 『지정조격』, 『대명률』을 근거로 상주를 올려 전문적인 포도관(捕盜官)을 설치하여 치안과 도적의 색출을 강화할 것을 청하였다.⁸⁶ 성종 20년(1489)에 대신들은 지초(紙鈔) 교환법에 관해 토론하고 『지정조격』을 참조하여 신구화(新舊貨)를 통용하는 구체적 방법을 제정하였다.⁸⁷

세 번째, 예의제사(禮儀祭祀) 방면에서 조선의 대신들은 자주 『지정조

83 『朝鮮王朝實錄』世宗 卷34, 8年10月27日丁亥.

84 李玠奭(2001), 「元朝中期法制整備及系統」, 『蒙元の歴史與文化』(下冊), 臺北: 學生書局, 495쪽.

85 『朝鮮王朝實錄』世宗 卷112, 30年4月22日丁丑.

86 『朝鮮王朝實錄』文宗 卷8, 元年6月4日辛未.

87 『朝鮮王朝實錄』成宗 卷226, 20年3月17日乙亥.

격』을 참고하여 구체적 건의와 처리 방안을 제기하였다. 정종 2년(1400) 봉상소경(奉常少卿) 김첨(金瞻)이 “본조는 국학에서는 춘추의 두 정일(丁日)에 문선왕을 제사하는데 참람되게 대뢰(大禱)를 쓰니 이는 예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지정조격』의 제 군현 품식(品式)에 의거하면 단지 양 세 마리만 사용할 뿐입니다”라고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도리어 김첨이 문하부의 탄핵을 받았다. 문하부는 “본조에서 대뢰를 쓴 지 오래인데, 김첨이 경솔하게 고치고자 한다”며 김첨을 탄핵하였다.⁸⁸ 조정 전례(典禮)에 사용되는 음악에 관하여, 조선 세종조의 관원은 『지정조격』을 열람하고 “중국의 『대성악보(大成樂譜)』 및 『지정조격』을 보건대, 모두 아래에서는 고세(古洗)를 연주하고 위에서는 남려(南呂)를 노래합니다”, “봉상의 악장으로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의례시악(儀禮詩樂)』 풍아(風雅) 12편, 『지정조격』 및 임우(林宇)의 『석전악보(釋奠樂譜)』 17궁(宮)뿐입니다”⁸⁹라고 하였다. 이외 문선왕(文宣王) 공자 제사 전례 날짜 변경문제, 계조(繼祖)와 계조모(繼祖母)의 상복 문제, 풍우신(風雨神)의 제단 설치 문제 등에 관하여 조선은 모두 『지정조격』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 방법을 찾았다.⁹⁰

끝으로 『지정조격』은 조선에서 한어 인재를 배양하는 데 중요한 교과서였다.⁹¹ 조선에서 한훈(漢訓), 이문(吏文)을 담당하는 정부 기구는 승

88 『朝鮮王朝實錄』 定宗 卷3, 2年1月24日己丑.

89 『朝鮮王朝實錄』 世宗 卷32, 8年4月25日戊子; 『朝鮮王朝實錄』 世宗 卷50, 12年閏12月1日丁酉.

90 『朝鮮王朝實錄』 世宗 卷67, 17年2月15日丁巳; 『朝鮮王朝實錄』 世宗 卷86, 21年7月18日甲子; 『朝鮮王朝實錄』 世宗 卷77, 19年5月20日己酉; 『朝鮮王朝實錄』 世宗 卷83, 20年12月19日己巳.

91 金文京(2007), 앞의 글, 472쪽; 安承俊(2007), 「『至正條格』의 소장 및 보존경

문원(承文院)이다. 승문원은 한어 교육과 인재 고핵(考核) 문서에서 자주 『지정조격』을 언급하는데, 그것은 당시 한이학(漢吏學) 교재의 일종이었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당시 한이학과 관련 있는 교재로 『서(書)』·『시(詩)』·사서(四書)·노재(魯齋) 『대학(大學)』·『직해소학(直解小學)』·성재(成齋) 『효경(孝經)』·『소미통감(少微通鑑)』·전후한서(前後漢書)·『이학지남(吏學指南)』·『충의직언(忠義直言)』·『동자습(童子習)』·『대원통제(大元通制)』·『지정조격(至正條格)』·『어제대고(御製大誥)』·『박통사(林通事)』·『노걸대(老乞大)』·『사대문서(事大文書)』·『예록(譽錄)』 등이다.⁹² 세종 13년(1431) 승문원은 한어 교학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 “관원 중 혹자는 나이가 많고 혹자는 입이 둔하여 한어를 익히기 힘든 자를 일체로 성효(成效)를 물을 수 없습니다. 『이문등록(吏文謄錄)』 및 『지정조격』, 『대원통제』 등은 향훈(鄉訓)으로 습득하게 하고 제조관(提調官)이 날마다 그 입을 바의 대의를 물어 근만(勤慢)을 살피게 하고, 학생들이 재실(齋室)에 들어와 우리말로 얘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한어만을 사용하게 하고 만약 언어가 숙달되고 음의(音義)까지 통한 자가 있다면 제조관이 실재를 검증하여 계문(啓聞)하여 직(職)을 더하게 하소서”⁹³라고 건의하였다. 세종 23년(1441) 승문원은 다시 “이문을 배우는 생도 중에서 문리(文理)가 통달한 자를 선택해 매일 이상(李相) 처(處)를 내왕하면서 『지정조격』, 『대원통제』 등을 학습하게 하소서”⁹⁴라고 청하였다. 교학 과정에서 승문원은 수준이 서로 다른 학습자에게 다른 심사방법을 채택했다. 승문원은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다.

위에 대한 고찰, 『至正條格』校注本, 한국학중앙연구원, 490쪽.

92 『朝鮮王朝實錄』世宗 卷47, 12年3月18日戊午.

93 『朝鮮王朝實錄』世宗 卷51, 13年1月21日丙戌.

94 『朝鮮王朝實錄』世宗 卷94, 23年11月6日己亥.

관원 중에서 부교리 이상 교대 임명(遞差)하는 것이 無常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박사 이하의 어리고 총명한 자를 택하여 임명하여 5, 6년이 되어 去官하여 (그 직무에) 오래 있으면서 심혈을 기울여 습득하게 하면 漢學에 정통할 수 있습니다. 금후에 9품에서 8품으로 승진할 때는 『老乞大』·『朴通事』를, 8품에서 거관하는 자는 『直解小學』, 『至正條格』 등의 책을 습득하게 하여, 장부를 두어 매 절기의 중간 달(四仲月)에 都提調, 提調가 장부에 따라 3곳을 강독하여 (3곳) 모두 略 이상인 자를 例에 따라 升轉시키고, 만약 한 곳이라도 대략 통하는(相通) 자는 殿最의 중등 예에 의거해 천전시키지 않으며, 通略 이상인 자에게는 그 직임을 승진시키고, 不通인 자는 啓聞하여 파직하게 하소서.⁹⁵

그러므로 『지정조격』은 적어도 중급 이상의 한어 교재였다. 승문원이 『지정조격』의 교학에서 취했던 주요 방법은 “젊고 총명한 문신을 간택하여 이문(吏文)을 전업으로 삼도록 하여 『지정조격』 가운데 문의(文義)가 통하지 않는 것을 기록해 두었다가 매번 베이징에 갈 때 습독관(習讀書)으로 하여금 따라가서 질문하여 한문(漢文)으로 번역해 오도록 하는”⁹⁶ 것이었다. 『지정조격』, 『대원통제』, 『이문등록』 등 이문과 관련된 것을 매일 10장 이상 읽도록 하고, 상사제조가 날마다 장부를 기록하고, 매

95 『朝鮮王朝實錄』世祖 卷20, 6年5月19日甲午. 이 밖에 『朝鮮王朝實錄』成宗 卷5, 元年5月8日乙酉條의 기사에 “금후 9품에서 8품으로 승진하면 『老乞大』, 『朴通事』를, 8품에서 7품으로 승진하면 『直解小學』, 『至正條格』 등의 책을 습득하여 날마다 置簿하여 매년 四中朔때 都提調가 모여 위의 독서한 바를 세 차례 考講하여 모두 略 이상이면 例에 따라 승진하고, 相通인 자는 殿最 中等의 예에 따라 遷轉하지 말며, 不通인 자는 罷黜하도록 하소서”라고 하고 있는데, 세조 시기의 것과는 다르다. 그러나 의심의 여지없이 『지정조격』의 考覈은 여전히 비교적 높은 수준의 한문을 대표한다.

96 『朝鮮王朝實錄』成宗 卷97, 9年10月3日辛卯, 9年11月13日庚午.

절계마다 한 차례 도제조가 한달 동안 읽은 내용에서 3곳을 골라 읽히고, 그 읽은 장수를 각각의 이름 아래에 기록하게 하는 것 등이다.⁹⁷ 주목할 점은 『지정조격』이 교과서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조선에서 한어교재를 편찬할 때의 소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유명한 한어 교과서인 『박통사』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온다.

金字圓牌. 『지정조격』云: 원시기 중서성에서 상주하길: 諸王駙馬各投下들이 軍情 등의 긴급한 重事가 있을 때 원래 내린 銀字圓牌를 지니고 鋪馬 이용을 요구하는 것을 허락한다. 기타 差使 인원은 긴급한 軍情重事가 있을 때 金字圓牌를 지니고 포마를 청하는 것을 허락한다. 기타 평범한 업무는 임시로 내린 성지를 領受하는 것만 허락하다.

즉, 비교적 낮은 수준의 교재를 집필할 때 조선의 교학관들은 『지정조격』에서 소재를 택했음을 알 수 있다.⁹⁸ 이처럼 『지정조격』이 한어 교육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자 조선에서는 『지정조격』을 간행하였다. 세종 5년 승문원이 『지정조격』 15권, 『이학지남』 15권, 『어제대고』 15권의 인쇄를 청하였다. 최종적으로 각각 50권을 인쇄하였다.⁹⁹ 세종 16년(1434) 조선에서는 다시 『지정조격』을 문신에게 나누어 주었다.¹⁰⁰ 적어도 15세기 전기에 『지정조격』은 조선에서 보기 드물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의 중국에서는 벌써 매우 희소해졌을 것이다.

97 『朝鮮王朝實錄』成宗 卷97, 9年10月3日辛卯; 『朝鮮王朝實錄』成宗 卷98, 9年11月13日庚午.

98 『朴通事集覽』中 1-2. 『지정조격』 교주본 331쪽에서 재인용.

99 『朝鮮王朝實錄』世宗 卷66, 16年2月28日辛未.

100 『朝鮮王朝實錄』世宗 卷22, 5年10月3日庚戌.

4. 결론

편찬 과정, 편찬체례와 내용을 볼 때 『지정조격』은 『대원통제』를 계승하고 그것을 보충한 것이다. 원조 말기에 『지정조격』은 『대원통제』를 대신하여 국가 행정·경제·사회생활의 새로운 규칙이 되었다. 『지정조격』을 내용면에서 분석하면 원조 통치집단의 정치와 문화는 원대 말기에 주목할 만한 변화를 겪었다. 원조 통치집단은 국가의 태평과 안정을 위하여 몽골귀족의 특권을 비교적 강력하게 구속하였다. 한문화의 영향으로 회회인의 관습법을 구속하였다. 이는 한법을 더욱 인정하고 옹호한 것이다.

『지정조격』은 원대의 입법(立法)이 격례(格例)의 집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고유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대원통제』와 마찬가지로 『지정조격』도 정연한 성문법전이 아니다. 이런 종류의 법률 편찬방식은 명조에 의해 파기되었다. 『지정조격』의 일련의 내용은 『대명률』 중에도 나타나는데, 이는 당시 사회발전 상황이 객관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원조와 명조가 전후로 시기가 맞물리면서 상호간에 많은 사회현상을 공유하기 때문에 전대의 법률을 후대에서 거울로 삼거나 빌려 쓴 것이다. 그러나 『대명률』의 입법 주지(主旨)와 편찬 구조 등에서 보면 『대명률』은 『지정조격』과 직접적 계승관계가 없다.

『지정조격』은 한 차례 고려의 기본법이 되기도 했지만 그것은 당시의 국제관계를 고려한 때문이지 사법적인 필요에서 나온 조치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아주 단기간만 시행되었다. 명조와 달리 조선은 『지정조격』을 비교적 중시하였다. 그 결과 적어도 15세기에 『지정조격』은 조선의 소송과 안건심리·행정·예의제사·한어문의 교학 방면에서 일정 정도 기여를 하였다.

『『지정조격』의 성격과 영향에 대한 시론』에 대한 토론

이개석 (경북대학교)

당바오하이(黨寶海) 교수의 발표에 대한 토론을 맡아, 이 방면 신예 학자(學者)의 참신한 지견(知見)을 나누어 갖게 해준 동북아역사재단에 먼저 감사한다. 특히 토론자의 출문(拙文)을 포함한 『지정조격(至正條格)』 교주본(校注本)/연구편(研究篇)에 실린 한국 학계의 연구 성과에 대해 호의를 가지고 진지하게 검토해 주고, 최근 장판(張帆) 교수 등에 의해 중국 학계에서 이루어진 『지정조격』에 대한 뛰어난 연구 성과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지정조격』의 동아시아 법제사상의 지위를 검토한 새로운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토론자의 우견(愚見)을 일깨워 주고, 『지정조격』에 대하여 새롭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당바오하이 교수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발표자는 글에서 1. 『지정조격』과 대원통제(大元通制)의 관계, 2. 원조 입법 관념의 발전, 3. 『지정조격』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 세 측면에서 『지정조격』의 성격과 영향에 대한 시론을 상세히 검토하였다. 먼저 『지정조격』의 편찬을 『대원통제』의 속수(續修)로 본다는 점에서 구양현(歐陽玄) 이래 한족(漢族) 학자의 견해를 계승하고 있다. 제2장은 『지정조격』 내의 역참(驛站) 관련 조문 중 몽골 귀족의 불법을 단속하는 조문, 색목인의 혼속(婚俗) 규

제 조문, 한족의 수계혼(收繼婚) 금지 조문 등을 검토함으로써, 『지정조격』 편찬을 통해 몽골 통치집단의 공동이익을 지키려 했다는 토론자의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밝히고, 나아가 이러한 조문(條文)들이 『지정조격』에 새로 삽입된 것은 한문화(漢文化)가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발표자 역시 장관 교수와 같은 관점에서 있음을 보여 준다. 제3장의 연구는 고려, 조선, 명의 법제에 대한 『지정조격』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점에서 『지정조격』 연구에서 발표자가 이룩한 또 하나의 중요한 기여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당바오하이 교수의 연구가 새로운 면에서 토론자 등 한국 학자의 연구가 가지는 문제점을 보정하고 있지만, 중요한 논지는 이미 발표된 장관 교수와 천가오화(陳高華) 선생의 논지에 크게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토론에서는 두 학자가 이미 발표한 논문의 주장을 염두에 두면서 토론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두 학자의 논문이 역시 본 토론자와 『지정조격』 교주본/연구편에 실린 김호동 교수와 김문경 교수의 논문을 비판하는 것을 매개로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토론자와 한국 학계의 연구결과가 가진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는 점도 불가피하게 이러한 형식의 토론을 요청하고 있다.

우선 『지정조격』 교주본에 대한 본 토론자 등 한국학자의 표점과 연구에 대한 장관 교수 등 중국 학계의 보정과 비판에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하며, 이러한 중국학계의 노력이 원대사 연구, 특히 『지정조격』 연구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또 앞으로 교주본 편찬자는 물론 한국 학계의 『지정조격』 연구를 진척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다. 특히 존경하는 천가오화 선생이 논문¹에서 보여

1 陳高華(2008), 『『至正條格·條格』初探』, 『中國史研究』 2008-2.

준 토론자에 대한 깊은 배려와 가르침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한다. 그러나 중국 학계의 노장청(老壯靑) 3대(三代)를 대표할 만한 세 학자의 이러한 비판과 가르침에 대하여, 논점을 소개하고 이 기회에 나름의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

위에 인용한 논문의 결론에서 토론자가 “대원통제(大元通制, 지정조격의 오타) 편찬의 최대 목적은 몽골적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대원통제』의 조문을 산수(刪修)하고 몽골과 관계가 있는 조문을 삽입하여 법전을 통해 몽골 통치집단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으며”, “『지정조격』 편찬은 유목민족의 법문화 전통을 한족의 법문화전통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하여, 토론자가 쓴 논문의 행간에 표현된 문제의식과 주장까지 천가오화 선생이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대원통제』 잔본(殘本) 조격(條格) 편목(篇目)과 공통되는 『지정조격』의 조격 9편목을 중심으로 ① 상응하는 편목의 동이(同異), ② 조문을 새로 늘린 배경과 의의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뒤에, (적어도) 조격을 통해 볼 경우 『지정조격』의 기본 구조와 각 편の内容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지정조격』은 『대원통제』의 수정(修正)이고, 신법전(新法典)의 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매우 신중하게 결론짓고 있다. 그러나 몽골 통치집단의 이익은 대부분 『대원통제』에 이미 나와 있어, 몽골이익의 보장은 새로운 인소(因素)가 아니며, 중원전통법제(中原傳統法制)의 체현(體現)이어서, 토론자 등이 『지정조격』에서 유목민족의 법문화 전통과 몽골적 인소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158쪽).

『지정조격』 교주본이 출판된 이후 맨 처음 이를 학계에 소개하고, 예리한 안광으로 검토하여, 매우 훌륭한 비판적 논고(論考)를 발표한 학자는 천가오화 선생을 좌장으로 하는 북경의 원전장연구반(元典章研究班)의 효장

인 장관 교수였다. 그의 『지정조격』 교주본에 대한 비판과 가르침은 다소 직설적이지만 더욱 간명하다. 그는 『지정조격』/단례(斷例)의 사료를 이용해 쓴 「讀『至正條格·斷例』婚姻條文札記—與『元典章·戶部·婚姻』相關條文的比較」² 외에 『지정조격』 교주본에 대한 본격적인 비평문인 「評韓國學中央研究院『至正條格』校注本」을 발표하였다.³ 이 외에 그는 새로 발견된 『지정조격』의 복원영인본(復原影印本)과 교주본에 대해 간결하면서도 요령을 얻은 소개문인 「重現于世的元代法律典籍—殘本『至正條格』」(『文史知識』2008-2)을 발표하였다. 장관 교수의 평문(評文)은 특히 교주(校注)의 오류를 보정하는 데에서 돋보이는 학문적 능력을 보여주지만, 연구편의 각 논문을 꼼꼼히 검토한 평문 역시 끝까지 냉정함과 날카로움을 잃지 않고 있다. 그는 ① 법전 명칭에 숨은 뜻, ② 법전 내용의 총괄로 나누어 각 연구자들의 논문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먼저 김호동 교수가 당시 특토(別題)를 이어 『지정조격』 편찬을 주도한 베르케 부카(別兒怯不花)가 몽·한(蒙·漢) 두 세계의 가치관을 공유한 현실주의자여서 『지정조격』의 서명(書名)에 ‘대몽골국’의 의미를 가지는 ‘대원(大元)’을 붙이는 것에 반대했다고 보는 것과 김문경(金文京) 교수와 토론자가 법전 명칭을 둘러싼 대립의 배경을 몽·한 문화 충돌의 관점에서 한화된 몽골귀족과 보수파 몽골귀족 사이의 갈등으로 보는 것에 대하여 지나친 천착과 건강부회라고 비판한다. 곧 제고(制誥)는 조문의 수도 적고 반행(頒行)의 의의가 미미하며, 지정조격이란 이름을 붙인 것은 『지정조격』이 임시적인 법률 조문의 휘편(彙編)에 불과했기 때문이고, 따라서 뒤이어 독도가 안정적인 한법적 법전인 국률(國律)의 제정을 시도했

2 『紀念許大齡教授誕辰八十五周年學術論文集』(2007).

3 『文史』2008-1.

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그는 법전의 명칭을 둘러싼 대립을 권력투쟁의 차원으로 이해하고, 몽골통치자의 법률 관념의 진보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역시 주관적 견해로 볼 수 있다. 또 두 법전의 관계에 대해서 한국 연구자들이 『대원통제』와 『지정조격』의 차이를 강조(이개석)하고, 심지어 대립시키고(김문경) 있지만, 그는 오히려 몽골본위(蒙古本位) 또는 반한화(反漢化)와 상반된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장판 교수의 비판과 가르침의 중심 역시 토론자의 논문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그는 김호동 교수의 분석을 이용하여 반론을 입증하는 재치를 보여주고 있다. 장판 교수는 『지정조격』에 새로 늘어난 몽골, 색목인과 관계되는 조문은 몇 조문에 불과하고, 겁설 및 투하 등 몽골인과 관련된 조문 역시 몽골인의 요민행위(擾民行爲)를 단속하는 내용의 것이어서, 몽골 이익과 무관하다고 보고 있다. 또 금령(禁令)은 한족 사대부의 오래된 요구이며, 회회(回回)와 유대인의 숙백혼인(叔伯婚姻)을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색목인의 법문화 전통을 체현하는 것과 반대되므로 몽골색목인의 이익질서를 지정조격 안에 구현하려 했다는 토론자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토론자가 논문에서 『지정조격』에 포함된 조종가법(祖宗家法) 관련 조문이 감소한다고 서술한 것도 유목민족의 법문화 전통의 수용과 논리적으로 모순된다고 비판한다.

당바오하이 교수를 비롯한 세 분 학자가 보여준 토론자의 논문에 대한 관심과 비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며, 토론자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먼저 특히 중문본에서 필자의 논증이 소략하고,⁴ 거칠었으며, 또 논리 전개에 부분적으로 비약이 있었던 점도 인정한다. 또 일부 기술에서 색목인

4 『至正條格』校注本에는 필자의 한글본과 중문번역본 논문이 실려있다. 당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정·보완된 한글원고를 중문본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과 몽골인을 구분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몽골색목인’이라고 기술함으로써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하여도 실수를 솔직히 인정한다.

그러나 『지정조격』의 몽골 관련 조문도 일부 조문을 제외하면, 쿠빌라이 카간 이후 통치 과정에서 발출(發出)된 몽골 귀족과 몽골족의 특권적 관행과 불법을 단속하는 내용의 조령(詔令)을 조문화(條文化)한 것임을 토론자 역시 충분히 알고 있었다. 당시 비록 철저히 준수되지 않았다고 해도, 법제화를 통해 통치행위가 이루어지는 것(法治)이 『대원통제』 제정 이후 이미 추세가 된 상황에서, 몽골 귀족과 몽골족을 여타 민족 집단과 따로 규율 하였던 조령을 통제(通制)의 법률 규정에 포함시키는 것도 궁극적으로 몽골 통치집단의 이익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토론자는 보고 있다. 또 검설(怯薛)이나 제왕(諸王), 공주(公主), 부마(駙馬), 백관(百官), 사관(寺觀)에 대한 과도한 특전을 제한하고, 상사(賞賜)의 범람(泛濫)을 금지하는 조문을 포함한 것도 무종 이후 추진된 원조의 재정개혁 과정에서 출현한 재정의 합리화 방식 중 하나이며, 역시 몽골 통치집단의 공동이익을 보증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토론자가 말하는 몽골 통치집단의 공동이익 질서를 그들에 대한 배타적 특권 보장으로 상정하는 것은 논리적 단순화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

토론자는 또한 1346년에 간행된 『지정조격』에 색목인의 혼인습속을 규제하고, 한족의 수계혼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이 궁극적으로 한 문화의 영향이라는 중국 학계의 비판에 설득력이 있음을 인정한다. 토론자는 『지정조격』 편찬 과정의 우여곡절이 『지정조격』에 반영된 것을 충분히 유의하지 않은 것이 토론자가 전고(前稿)에서 범한 오류의 원인이며, 편찬을 주도한 정권의 성격 변화와 『지정조격』 조문의 착종한 성격에 주목한 김호동 교수와 김문경 교수의 견해를 수용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바안(伯顏) 정권이 최초 편찬을 시작할 단계의 『지정조격』의 성

격과 베르케 부카 정권에 의해 반포돼 착종된 내용의 『지정조격』의 성격은 다르다고 토론자는 최근 견해를 바꾸었다. 장관 교수와 당바오하이 교수가 비판하고 있지만, 토론자는 김문경 교수가 “(1340년 툽토 정권이) 덴카[騰哈 Denha]와 코코[嚶嚶 Nunu]에게 『대원통제(大元通制)』의 산수를 명한 것과 (1338년 삼월 바얀 정권이) 평장정사 아길라[阿吉刺]에게 『지정조격(至正條格)』 감수(監修)를 명한 것을 ‘양회사(兩回事)’라고 한 것”은 탁견이라고 보고 있다. 또 색목인 풍속을 제한하는 조문의 문제는 몽골적 이해를 반영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로, 영종(英宗) 이후 원조 통치집단 내부에서 증폭되고 있었던 색목인 귀족과 몽골 귀족 사이의 정치적, 종교문화적 갈등이 반영되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끝으로 토론자는 『지정조격』의 성격을 논할 때 두 가지를 특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첫째, 『대원통제』 제정 이전의 새로운 법전 편찬의 내용과 성격과 관련하여 칭기즈칸 이후의 9000여조의 조령에서 조문을 취할 것인가, 쿠빌라이 이후의 조령에서 조문을 취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벌어진 통치집단 내부의 토론과 갈등이 『대원통제』 제정 과정에서 어떻게 수렴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법을 적극 수용한 인종대 새로 편찬된 법전의 심정(審定)이 보수적인 몽골 귀족의 반대로 유예되었고, 영종 말기에 중신회의의 심정을 거쳐 반포되었으나 초원 전통에 소홀했던 영종의 개혁정권은 이내 붕괴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대원통제』의 효력도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법문화 전통과 관련된 좀 더 깊이 있는 토론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토론자는 생각한다.

둘째, 조격과 단례(斷例)의 집합체인 대몽골국 법전을 근거로 결안(決案)하고, 형(刑)을 집행한 행형권력(行刑權力)의 소재와 기구가 어떻게 운용되었

는가에 대한 보다 더 주의 깊은 검토가 역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원통(元統) 2년(1334) 3월 정사(丁巳)에 새 황제는 몽골인과 색목인이 간도사위(奸盜詐僞)의 범죄를 저지르면 중정부(宗正府)가 처벌하고, 한인과 남인의 범죄는 유사(有司)가 처벌하리⁵는 조(詔)를 내리는데, 이 무렵 한법적(漢法的) 개혁 분위기가 급격히 고조된 가운데, 행형권력을 조정하여, 대종정부(大宗正府)의 권한을 축소하고 한족에 대한 최종 형벌권도 중정부에서 떼어내어 유사로 돌린 것을 알 수 있다.⁶ 이렇게 조정된 행형권력은 물론 1335년 7월 바얀의 집권 직후 곧바로 재조정되고 있다. 먼저 10월에 중정부의 관원을 각도에 파견하여, 염방사(廉訪司)의 관원과 함께 결안에 참여시키고, 그해 윤12월에는 중정부를 대종정부로 다시 격상시키고, 1336년 3월에는 안희(按灰)를 예커 자르구치(大斷事官)에 임명하여, 천하의 간도사위에 대한 판결을 관할케 하고 있다. 요컨대 한법에 적극적인 행형권력의 등장과 급격한 한화(漢化)의 분위기 속에서 정체성을 위협받은 보수적인 몽골귀족의 바얀 정권이 등장한 뒤에 인종 시기 『대원통제』 제정 당시 몽골귀족의 비협조로 인해 몽골 통치집단의 이익질서가 법조문에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통제조격의 개정과 『지정조격』의 편찬에 적극 나서게 했다고 필자는 보고 있다.

5 『元史』 卷38, 順帝本紀, (元統2年2月) 丁巳, 詔: 蒙古色目犯奸盜詐僞之罪者, 隸宗正府; 漢人南人犯者, 屬有司, 821쪽.

6 토론자는 李玠(2007), 「『至正條格』의 편찬과 법제사상의 의의」, 『至正條格』校注本/研究篇, 한국학중앙연구원, 392~413쪽에서 이 사료를 증거로 중정부가 1334년까지 몽골인과 색목인에 대한 최종 형벌권을 가졌다고 보았으나(409쪽), 엘 테무르의 사망을 전후하여 이때부터 정책 기초가 급격히 몽골적·유목적 전통에서 이탈하여, 문신 중심의 관료정치가 시도되고 있었던 당시의 사정에 주목하게 되었고, 이러한 조치가 발령된 배경은 반대로 당시 중정부의 권한이 약화된 결과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20세기 초 한·중 간의 상호인식

— 쑨원의 한국 인식과
한국인들의 쑨원 이해를 중심으로 —

배 경 한 (신라대학교 사학과)

동북아시아학연구원

동북아
연구

동북아시아학연구원
NORTHEAST ASIAN STUDY FOUNDATION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머리말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근현대 시기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사도 격동의 시기로 외세의 침입 아래 두 나라는 모두 수많은 전쟁과 개혁·혁명이 겹쳐 일어나는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어서 그야말로 망국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 시기에 양국 관계는 이러한 어려운 역사적 환경에 덧붙여 양국 사이의 전통적 관계인 조공 책봉관계의 변화까지 맞물려 더욱 복잡다단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갔다.¹

이러한 근현대 한중관계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려고 할 경우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크게 구분해 본다면 ‘교류와 관계’라는 측면과 ‘상호인식’의 측면이라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교류와 관계’의 측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국가 대

1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걸친 한·중 간의 책봉 조공관계의 변화과정에 대해서는 권혁수(2000), 『19세기말 한중관계사연구』, 백산자료원 ; 이영옥(2005), 「조공질서의 붕괴와 청조관계의 변화 1895~1910」, 『한중외교관계와 조공책봉』, 고구려연구재단 ; 한규무(2002), 「19세기 청·조선 간 종속관계의 변화와 그 성격」, 『근대 동아시아국제관계의 변모』, 혜안 등 참조.

국가의 관계, 곧 국제관계(외교관계)를 비롯하여 양국 혹은 양 지역 간의 경제적·문화적 교류관계, 그리고 양국 혹은 양 지역의 민간 사이에 이루어진 교류라고 할 여행과 이민(韓僑와 華僑) 및 이민사회의 성립이라는 문제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상호인식의 측면에는 앞에서 말한 교류관계 속에 나타나고 있는 상호인식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문제와 함께 그러한 인식 틀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가라는 문제가 포함될 것이다. 특히 전통적 인식 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중화주의-사대주의’의 인식 틀이 ‘근대적 변모’를 겪으면서 어떤 양상으로 바뀌어 갔는가라는 문제 또한 상호인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근현대 한·중 간의 상호인식 양상과 그 변화를 다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근현대 중국을 대표하는 정치지도자인 쑨원(孫文)과 한국인들 간의 교류관계와 거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한·중 간의 상호인식의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쑨원은 근현대 중국을 대표하는 정치지도자로서 근현대 중국의 최대 목표였던 부강하고 독립적인 근대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공화혁명과 반제민족운동에 평생을 바쳤던 인물이다. 그런데 쑨원이 평생을 바쳤던 공화혁명과 반제민족혁명은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여타 국가와 민족들에게도 최고의 목표였다. 그런 점에서 쑨원의 정치적 주장과 활동은 동시대의 모든 아시아인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쑨원이 활동하던 시기, 곧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에 중국과 한국은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 아래 망국의 위기를 겪는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처지에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고, 한국인들에게 쑨원과 쑨원으로 대표되는 중국혁명은 한국의 독립

과 혁명에 대한 하나의 교과서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이런 까닭에 기존의 연구들에서 한국과 쑨원의 관계는 긍정적인 측면만 강조되기 쉬웠다. 이를테면 “쑨원의 반제반봉건 주장이 한국의 독립운동 내지 혁명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고 당시의 한국인들에게 쑨원은 ‘아시아의 위대한 혁명가’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식으로 서술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쑨원과 한국인들과의 관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史實)들을 자세하게 추적해 볼 경우 이러한 ‘우호적 관계’만을 강조할 수 없게 된다. 쑨원과 한국인들 간의 교류 속에는 한·중 간의 전통적 상호인식 틀이라고 할 ‘중화주의-사대주의’의 틀이 상당 부분 온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20세기 초 한·중 간 상호인식의 실상에 접근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쑨원과 한국인들 간의 교류, 쑨원의 한국 독립 문제에 대한 태도, 그리고 한국인들의 쑨원에 대한 이해와 평가라는 문제를 차례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2. 쑨원과 한국인들 사이의 교류

쑨원과 한국인들 사이의 교류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밝혀져 있지 않다. 여기에서는 필자가 발굴한 새로운 자료들을 통하여 밝혀본, 쑨원 및 중국 혁명파와 한국인들의 교류의 두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그 교류관계의 실상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신해혁명(辛亥革命)을 전후하여 중국으로 망명해 갔던 한국 독립운동가들과 쑨원 및 혁명파 사이의 교류관계이며, 둘째는 1919년 상해(上海)에 만들어진 한국임시정부와 쑨원 중심의 광동호법정부(廣東護法政府) 간의 교류

관계에 대한 것이다.

1911년 10월의 무창기의(武昌起義) 직후부터 한인들이 본격적으로 중국으로 망명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일본의 한국 강점 이후 조국의 광복을 최고의 목표로 가지게 된 한인 지사들이 중국 공화혁명의 성공에서 한국 독립과 한국혁명의 가능성을 찾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중국으로 망명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중국혁명으로 중국이 강성해진다면, 또 그 혁명을 한국인들이 지지하여 중국 쪽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간다면, 그 중국의 힘을 빌려 장차 한국의 독립과 혁명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²

중국혁명에 대한 한인들의 이러한 기대와 지지는 우선 무창기의와 뒤이은 토원운동(討袁運動)에 대한 참여와 지지로 나타났다. 중국혁명에 대한 한인들의 지지와 참여는, 남경(南京)에 유학 왔던 일부 한인 학생들이 무창기의 직후 상해에서 조직된 학생군에 가담하여 활동한 것과 1912년 초에 남경에 도착한 신규식(申圭植)과 조성환(曹成煥) 등 한인 망명자들이 남경임시정부 측의 인사를 면담하여 지지의 뜻을 표시하며 수백 원(元)의 군비를 기부한 것, 그리고 이어서 전개된 대외채무를 갚기 위한 국민모금운동(國民捐運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실 등을 통해 확인된다. 또 1913년 7월 이후 전개된 토원전쟁(討袁戰爭)에도 일부 한인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그를 위한 군비 지원에 가담한 것을 볼 수 있다.³

한편으로 신규식 등 한인 망명자들은 쑨원, 황싱(黃興), 쑹자오런(宋教

2 武昌起義에 대한 당시 한국인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민두기(1994), 『신해혁명사 - 중국의 공화혁명(1901~1913)』, 민음사, 15~19쪽.

3 裴京漢(2001), 「韓人參與辛亥革命의史實 - 安昌浩書簡資料中的幾個事例」, 『近代中國』第145期, 臺北, 48~58쪽.

仁, 천치메이[陳其美], 다이지타오[戴季陶] 등 혁명과 인사들과의 교류에도 적극적이었다. 또 이러한 교류관계를 보다 더 체계화하기 위하여 한인들의 ‘연락기구’와 한·중 연대조직을 만들게 되었으니, 1912년 5월 이후 만들어진 한인단체 동제사(同盟社)와 동제사를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한·중 연합단체인 신아동제사(新亞同盟社)는 바로 이러한 한·중 연대 움직임의 결과물이다.⁴

다만 이 시기 한인들의 교류 대상에는 혁명과 이외의 인사들, 예컨대 비교적 온건한 입장의 입헌파 인사들이나 심지어는 공화혁명을 반대하고 진압하는 입장에 섰던 위안스카이[袁世凱] 측 인사들도 들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국혁명이 좌절과 부침을 거듭하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조국 독립의 성취를 위해서는 중국 내에서 중국 측과 연대활동을 계속해야만 했던 당시 한인 망명자들의 고뇌 어린 입장의 표현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당시 한인들로서는 혁명파나 위안스카이 정부를, 그 이념적 지향을 가지고 구분하기에 앞서 무엇보다도 조국의 독립 도모를 최우선시해야만 했던 것이다.

아울러 지적하여야 할 것은 1912년 4월 중순 신규식의 쑨원 면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일부 한인들의 중국 내지 중국 혁명파에 대한 태도 속에서, 지지와 찬양을 넘어서는 지나친 중국 의존적 태도가 섞여 있음을 보게 된다는 점이다.⁵ 일부 한인들의 이러한 과도한 중국 의존적 태도는 당시 한인사회 내에서 사대적 입장의 잔재라는 비판을 불러

4 김희근(1995), 『중국관내 한국독립운동단체연구』, 지식산업사, 69~71쪽; 孫安石(1996, 7), 「1920年代上海の中朝連帶組織」, 『現代中國』, 70號, 東京.

5 신규식은 孫文이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준 것을 ‘同胞’에 대한 博愛로 표현하고 있었다. 신규식, 「拜謁孫文記」, 『民權報』(1912. 4. 18), 11쪽 참조.

을 소지를 안고 있었으며 사대를 둘러싼 이러한 논란이 한인사회를 분열로 몰아가는 한 가지 요인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동안의 연구에서 쑨원이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한 가장 중요한 사례로 언급되어온, 1921년 9월에 있었던 상해한국임시정부 국무총리 신규식의 광동호법정부 방문과 쑨원과의 회담은 당시 미국의 주도로 열리게 된 워싱턴회의(太平洋會議)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 한국임시정부의 외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었다. 한국임시정부는 워싱턴회의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광동정부나 다른 중국 대표의 임시정부 지지 표명이나 워싱턴회의에서의 협력을 기대하고 신규식을 광주(廣州)에 파견했던 것이다.⁶

신규식의 광주 방문 직전에 사전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광주에서 만들어진 한·중 협력 단체인 중한협회는 주로 워싱턴회의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⁷ 기관지로 월간지 『광명(光明)』을 발행하고 있었다. 필자가 발굴한 『광명』 창간호의 내용으로 보아 중한협회의 실제적인 주도세력은 노동운동이나 사회혁명에 많은 관심을 가진 비교적 진보적 성향의 인물들이었다고 생각된다.⁸

신규식의 광주 방문 일정은 몇 가지 자료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6 「韓人要求入太平洋會」, 『上海民國日報』(1921. 8. 22), 3장 10면; 「太平洋會議に對する獨立運動者の運動報告の件」(1921. 8. 20), 金正明 編(1967), 『朝鮮獨立運動 II』 明治百年叢書, 東京: 原書房, 164쪽.

7 「協助韓人之中韓協會」, 『上海民國日報』(1921. 10. 1), 2장 6면.

8 『光明』 창간호(1921. 12. 1)에 실린 陳公博(1921), 「對於韓國新建設的我的希望」; 耘公(1921), 「光明運動的前途」; 楚沈(1921), 「中韓的光明運動」; 劍耘(1921), 「壯烈哉韓國的人民」; 擎霄(1921), 「韓人應具的覺悟」; 李大能(1921), 「告韓國的朋友」; 何俠(1921), 「我對於韓國獨立的大希望」; 惠僧(1921), 「社會革命與韓國獨立」 등 참조.

하나로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몇 가지 자료들을 종합해 본다면 1921년 9월 말에 광주에 도착하여 10월 초에 쑨원을 만났고 10월 10일쯤에 정식 쑨원 접견, 곧 국서봉정(國書奉呈) 의식이 있었으며 그 후 두 달여의 체류 끝에 11월 말 상해로 돌아갔을 것으로 추정된다.⁹ 신규식 광주 방문의 이러한 일정은 훗날 신규식의 사위 민필호(閔弼鎬)가 쓴 회고록인 『한중외교사화(韓中外交史話)』의 내용과 약 한 달간의 시간적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적 차이를 이유로 『한중외교사화』의 사료적 가치를 부정해서는¹⁰ 안 될 것이다.

신규식과 쑨원 사이에 있었던 회담의 구체적 내용은 『한중외교사화』에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이 회담에서 신규식이 제시한 5개항의 요구 가운데 임시정부와 광동정부 간의 상호 승인 문제는 양측 모두 엄격한 의미에서는 합법성을 결여한 일종의 ‘사실상의 승인’을 한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임시정부 측에서는 신규식의 광주행에 맞추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광동정부를 중국의 정통정부로 승인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신규식을 통하여 그것을 공식 전달했다고 하나 임시의정원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거나 통과된 흔적을 확인할 수는 없다. 광동정부 측에서도 신규식과의 회담에서 쑨원이 사실상의 승인 의사를

9 「申圭植氏의動靜」, 『獨立新聞』(1921. 11. 11), 上海, 3쪽; 「廣州電」, 『四民報』(1921. 10. 16), 上海, 1장 3면; 「大韓民國臨時政府法務總長の廣東訪問に關する件」, 前掲 『朝鮮獨立運動』, 168~169쪽;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編(1970), 『朝鮮治安狀況(大正11年)』, 『獨立運動史資料集』 제9집(臨時政府資料集),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영위원회, 897쪽.

10 일본 학자 森悅子는 『韓中外交史話』의 내용이 당시 상황과 일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그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森悅子(1991), 「孫文と朝鮮問題」, 『孫文研究』(日本 神戸) 第13號 所收論文 참조.

구두로 표시하고 또 임시정부의 대표를 광주로 파견하여 상주하도록 하는 외교적 관계를 인정함으로써 ‘사실상의 승인’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광주 비상국회(非常國會)에서 ‘임시정부 승인안’이 아닌 ‘한국 독립 승인안’이 상정돼 통과된 것으로 보아 한국임시정부에 대한 합법적 승인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¹¹ 그러나 광주 비상국회에서의 한국 독립 승인은 그 자체로서 국가 승인이라는 더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비상국회에서의 한국 독립 승인안 통과는 그 목적이 한국 독립에 대한 지지 의사를 워싱턴회의에 전달하는 데에 있었고 신규식의 광주 방문도 워싱턴회의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는 데에 있었기 때문이다.

워싱턴회의에 대한 쑨원과 광동정부 측의 태도는 한국임시정부의 그것과는 달리 처음부터 매우 신중한 것이었다. 그것은 북경정부가 중국의 공식대표로서 워싱턴회의에 참가하도록 초청을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광동정부의 워싱턴회의 참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현실적인 예상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¹² 따라서 광동정부의 지지를 얻어서 워싱턴회의에 참가하려던 한국임시정부 측의 노력은 처음부터 달성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쑨원의 태도에서도 일부 부정적 측면과 한계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즉 쑨원은 한국임시정부에 대한 사실상의 승인을 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한국 독립을 시모노세키(馬關) 조약의 온전한 실현에 의하여 가능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었

11 「國會中朝鮮獨立提案」, 『上海民國日報』(1921. 12. 5), 1장 3면.

12 梁碧瑩(1992), 「孫文與華盛頓會議」, 『中山大學學報論叢』1992-5(孫文研究論文集 9).

다.¹³ 한국인의 입장에서 볼 때 시모노세키조약의 실현은 한국의 객관적인 독립을 이루는 것이라기보다는 일본의 지배에서 다시 중국의 지배로 옮겨가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동맹회 성립 무렵부터 신해혁명, 광동호법정부에 이르는 시기에 걸쳐서 진행된 한인 지사들과 쑨원 및 중국 혁명파 인사들과의 교류관계는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 맞서 국가적 독립을 도모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그러나 양자 사이 교류관계의 현실은 그러한 목표와는 얼마간의 거리도 있었다. 그 까닭은 중국혁명의 진전 자체가 한국 독립운동 세력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만큼 순조롭지 못하였고, 그래서 쑨원과 혁명파에게 한국 독립운동을 도와줄 여력이 충분치 못하였던 탓도 있지만 쑨원의 시모노세키조약 회복에 대한 주장에서 드러나는 것과 같은 양자의 입장 그 자체에 기본적인 차이가 존재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중국혁명 내지 혁명파의 지원에 대한 한인 지사들의 지나친 기대는 중국 의존적인 혹은 사대적인 태도로 비칠 소지조차 안고 있었던 것이다.

3. 한국 문제에 대한 쑨원의 입장

다음으로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약소민족에 대한 쑨원의 입장을 알아보기 위하여 그의 정치이념인 삼민주의(三民主義) 가운데 첫 번째 주장인 ‘민족주의(民族主義)’와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13 孫文, 「支那人の日本觀」, 『大正日日報』(1920. 1. 1).

할 수 있는 아시아민족 연합 주장, 곧 ‘대아시아주의’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그간에 알려져 온 대로 식민지 상태에 있던, 혹은 (쑨원의 표현을 빌린다면) 아식민지(亞植民地)의 처지에 놓여 있던 중국의 국가적 독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던 쑨원의 ‘민족주의’는 중국과 같은 식민지 내지 아식민지의 상태에 놓여 있던 한국을 비롯한 많은 아시아 약소민족들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대변해 줄 수 있는 주장으로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만주족(滿洲族)의 이민족(異民族) 황제를 몰아내고 공화체제를 수립하는 신해혁명을 통하여, 중국이 이민족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민족주의 혁명을 달성해가는 과정 속에서도 쑨원과 혁명과 인사들은 몽골과 같은 주변 약소민족의 중국으로부터 독립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몽골의 독립 요구에 대한 쑨원과 혁명과 인사들의 이러한 태도는 공화혁명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있던 위안스카이를 비롯한 보수적 정치집단의 그것과 전혀 다른 것이 없었다. 쑨원과 혁명파는 몽골이 계속하여 독립을 주장한다면 군대를 파견하여 정벌해야 한다는 정몽(征蒙) 주장에서도 위안스카이 쪽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었다.¹⁴

뿐만 아니라 쑨원이 신해혁명 직후부터 주장하고 있던 오족공화(五族共和)의 주장, 곧 한족(漢族)·만주족·몽골족(蒙古族)·장족(藏族)·회족(回族)의 오족(五族)으로 대표되는 중국 내 여러 민족이 공화혁명의 공동 주체라고 하는 주장도 만주 왕조를 몰아내는 신해혁명이 단순히 한족(漢族)만

14 血兒, 「社論: 征蒙議」, 『民立報』(1912. 9. 7), 2면; 猿臂, 「論蒙古和局之非」, 『民權報』(1912. 10. 9), 2면.

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여 주변 민족의 독립 주장을 무마하려는 의도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쑨원은 몽골 측 인사들에게 독립을 취소하도록 설득하는 장면에서 오족공화 주장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었다.¹⁵ 이를테면 한국이나 몽골과 같은 주변의 시각에서 볼 때 오족공화의 주장은 주변 민족의 분리 독립 주장과 그에 따른 ‘과분(瓜分)의 위기(危機)’에 대응하기 위해 제기한 임시적인 주장이었지 민족 간의 호혜와 평등을 강조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쑨원의 오족공화 주장이 얼마 후인 1920년대에 가서는 한족 중심의 민족 융화 주장으로 대체되고 있음을 볼 때¹⁶ 오족공화 주장이 가지는 ‘임시적 성격’은 더욱 분명해진다.

주변 약소민족 문제에 대한 쑨원의 이러한 입장은 그의 영토관념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 즉 쑨원은 한국이나 필리핀, 베트남을 포함한 주변 약소민족들의 영토를 회복해야 할 중국 의 영토로 간주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다.¹⁷ 뿐만 아니라 쑨

15 「致貢桑諾爾布等蒙古各王公電(1912. 1. 28)」; 「復蒙古聯合會蒙古王公電(1912. 2. 13)」; 「在北京五族共和合進會與西北協進會的演說(1912. 9. 3)」; 「在張家口各界歡迎會的演說(1912. 9. 7)」, 『孫中山全集』 제2권, 48·89·438~439·451쪽.

16 예컨대 1920년 11월의 한 강연에서 쑨원은 “清朝가 이미 망했지만 제국주의 열강에 대항하기 위하여 민족주의가 계속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제는 五族共和를 그만두고 각 민족이 융화되어 하나의 中華民族이 되어야 비로소 민족주의가 완성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在上海中國國民黨本部會議的演說(1912. 11. 4)」, 『孫中山全集』 제5권, 394쪽. 또 1921년 3월의 연설에서도 거의 같은 논조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在中國國民黨本部特設駐粵辦事處的演說(1921. 3. 6)」, 『孫中山全集』 제5권, 473~474쪽. Marie-Claire Bergere(Trans. from the French by Janet Lloyd)(1998), *Sun Yat-sen*, Stanford Univ. Press, p. 358.

원은 장차 중국이 다시 강대국의 지위를 회복한다면 이들 약소민족들은 스스로 중국에 복속해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도 했다.¹⁸ 한국을 비롯한 중국 주변의 약소민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쑨원의 이러한 입장이나 영토관념은 한족 우월주의로 대변되는 전근대적 중화주의 내지 중화주의적 영토관념과 구별되기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쑨원의 ‘민족주의’는 열강의 지배로부터 중국의 해방과 독립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저항적인 면모를 가짐과 동시에, 전통시대에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주변 약소민족들의 해방과 독립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강대국으로서의 입장에 서서 반대하는, 이를테면 양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¹⁹

한편으로 아시아 민족들 간의 대연합을 내세운 쑨원의 대아시아주의도 아시아 민족들 간의 호혜 평등을 전제로 한 아시아인의 연합이라는 명분과는 달리 그의 민족주의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 측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쑨원의 아시아 민족 연합 주장이 가장 핵심적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할, 1924년 11월 말 일본 고베에서 행한 ‘대아시아주의’ 강연은 그의 일본 방문 배경만큼이나 내용에서도 복잡한 그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당시 쑨원의 일본 방문은 베이징에서의 정치 협상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하여 일본의 지원을 얻기 위한 것이었으나 실제로 일본 정부의 지지를 얻는

17 「在桂林對演贛粵軍的演說(1921. 12. 10)」, 『孫中山全集』 제6권, 16쪽.

18 「在廣州全國學生評議會的演說」, 『孫中山全集』, 8·117~118쪽; 「民族主義第四講」, 『孫中山全集』 제9권, 228쪽.

19 배경한(2000), 「19세기말 20세기초 중화체제의 위기와 중국민족주의」, 『역사비평』 51집, 234~249쪽.

데에는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니 ‘대아시아주의’ 강연은 바로 이러한 쑨원의 고충이 표출된 것이었다.

쑨원은 이 강연에서 일본의 성공을 치하하고 중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지도하는 아시아 민족들의 연합을 강조함으로써 당시 배일이민법(排日移民法) 문제로 반미감정이 고양되어 있던 일본 국민들에게 자신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호소하였다. 또 쑨원은 자신이 북상(北上)의 목표로 내세웠던 불평등조약의 철폐 요구를 유보한 채 치외법권과 관세 자주권의 회복만을 당장의 목표라고 말함으로써 일본 정부와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자기규제적’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쑨원의 이러한 입장은 물론 전략적 선택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²⁰

그러나 주변적 시각에서 볼 경우 ‘대아시아주의’ 강연에서는 아시아 민족들 간의 연합과는 정면으로 상반되는 제국주의 침략자로서의 일본에 대한 비판은 간과될 수밖에 없었으니, 이를테면 한국의 독립 문제나 일본의 한국 지배가 가지는 부당성에 대한 언급은 그의 ‘대아시아주의’ 속에 들어갈 자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중국과 일본이 주도권을 가지는, 혹은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민족 연합만이 강조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²¹

쑨원의 일본 방문과 일본에서의 ‘대아시아주의’ 강연에 대한 당시 한국인들의 관심은 매우 큰 것이었다. 이것은 쑨원의 아시아 민족 연합

20 桑兵(1994), 「試論孫文的國際觀與亞洲觀」, 廣東省孫文研究會 編, 『“孫文與亞洲” 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廣州: 中山大學出版社, 40~59쪽.

21 藤井昇三(1985), 「孫文の“アジア主義”」, 辛亥革命研究會 編, 『中國近現代史論集』, 東京, 415~421쪽.

주장이 한국 독립에 대한 지지를 당연히 포함할 것이라는 한국인들의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쑨원은 일본에서 불평등조약의 철폐를 내세우지 않은 것처럼 ‘대아시아주의’ 강연에서도 한국 문제, 곧 일본의 한국 지배의 부당성에 대한 언급을 회피함으로써 한국인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이에 대하여 당시 한국 언론들은 쑨원의 아시아 민족 연합 주장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일본에서 쑨원의 활동을 ‘경솔한 행동’이라고 맹렬하게 비난하였다.²² 쑨원에 대한 한국 언론들의 이러한 비판의 배경에는 일본과 같은 제국주의 열강과 중국이나 한국과 같은 식민지 약소민족 간의 연합이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라는 분명한 현실인식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대아시아주의’ 강연에 나타나 있는 한국 문제에 대한 쑨원의 입장은 그의 ‘민족주의’에 관한 평가에도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간의 연구들에서는 1919년 이후 단계에 가게 되면 쑨원이 반제국주의를 제대로 인식하게 되며 그런 의미에서 1919년 이후의 ‘민족주의’를 새로운 단계의 ‘민족주의’라고 말해 왔다. 그러나 반제인식의 뒷면을 이룬다고 할 식민지 혹은 약소민족들에 대한 그의 태도를 검토해 본다면, 또 그가 말년까지 가졌다고 보이는 열강(특히 일본)에 대한 의존적 태도를 고려해 본다면 1919년 이후 단계에 가서 그가 과연 객관적 수준의 반제인식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일단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2 「英文評論：孫中山의講演(上,下)」, 『東亞日報』(1924. 12. 6), 3면; (1924. 12. 7), 3면.

4. 한국인들의 쑨원 이해

여기서는 1920년대 한국인들의 쑨원에 대한 이해나 평가에 접근하기 위하여 두 가지 문제를 다루어 보려고 한다.

첫 번째는 20세기 초 한국 최고의 언론인이요, 역사학자이며 독립운동가였던 박은식(朴殷植)의 중국 내 언론활동과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박은식의 중국을 보는 관점 및 쑨원에 대한 이해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두 번째는 1925년 초 쑨원의 사망을 전후하여 한국 내 언론에 나타났던 쑨원 사망설 관련 보도와 그의 사망 이후 한국 내에서 전개된 쑨원 추도회 개최 노력과 무산 과정을 다룸으로써 당시 한국인이 쑨원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는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일제의 탄압으로 국내에서의 언론활동이 불가능해진 다음인 1911년 5월 서간도로 망명해간 박은식은 망국으로 경험하게 된 군주체제에 대한 회의로부터 공화주의를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 박은식의 이러한 공화주의 수용은 서간도 망명 직후 일어난 중국의 공화혁명, 곧 신해혁명의 영향에 의하여 촉진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913년 12월에 홍콩에서 창간된 『향강잡지(香江雜誌)』는 박은식이 중국에서 가지게 된 첫 번째 언론활동의 기회이자 공화주의를 본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기회였다. 『향강잡지』는 무창기의 이전부터 광둥에서 혁명운동에 가담하고 있던 한인지사 김규홍의 주선과 혁명파의 지원, 그리고 박은식의 집필과 편집으로 만들어진 월간 잡지였다.²³ 필자

23 金奎興은 1908년쯤 廣東으로 亡命 와서 신해혁명 기간 동안 혁명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었으며 陳炯明이 廣東都督이 된 이후 都督府의 顧問員에 임명되었던 인물이다. 廣東에서의 김규홍의 활동과 『香江雜誌』의 내

가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던 『향강잡지』는 창간호뿐이지만 창간호의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이 잡지가 비록 중국 혁명파의 지원으로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게재된 글들의 대부분을 박은식을 비롯하여 조소앙(趙素昂), 신채호(申采浩), 정인보(鄭寅普) 등 한인 지사들이 쓰고 있었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박은식의 글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²⁴

정치적 입장에서 『향강잡지』는 공화체제에 대한 위안스카이의 탄압을 비판하고 민국(民國)의 존재를 옹호하는 것을 기본적인 입장으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향강잡지』의 논설에 보이는 박은식의 위안스카이 비판은 민국 실종의 책임을 자격을 갖추지 못한 국민에게 돌리는 것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어디까지나 원론적이고 온건한 것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위안스카이에 대한 박은식의 이러한 입장은 이 시기에 함께 활동했던 중국 혁명파 인사들에 대한 실망과 함께 자신의 최대 목표인 한국 독립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정치적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위안스카이와의 협력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현실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1914년 봄부터 시작된 박은식과 강유웨이(康有爲)의 교류는, 당시 공교회(孔教會)의 조직과 관련하여 강유웨이와 밀접한 교류를 하던 이병헌(李炳憲), 이승희(李承熙) 등 한인 유학자들의 소개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1917년 10월에 창간된 공교회 계통의 일간지인 『국시보(國是報)』에 박은

용에 관해서는 裴京漢(2007. 11), 「中韓合作的“香江雜誌”與廣東地區的討袁運動」, 澳門, “孫文與華人世界” 國際學術研討會 발표논문 참조.

24 『香江雜誌』創刊號는 현재 중국의 復旦大學圖書館, 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도서관, 홍콩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식이 참여하게 된 것도 Kangyuewei의 추천 덕분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1921년 10월, 상해에서 창간된 『사민보(四民報)』도 공교회 계통의 일간지로 Kangyuewei의 영향력 아래 있었는데, 박은식이 여기에 참여한 것도 Kangyuewei의 소개를 통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현재 남아 있는 『사민보』에서 박은식의 것으로 확인되는 논설들은 모두 37편에 이르는데, 그 핵심적인 주장은 반군벌(反軍閥) 민치주의(民主主義)에 모아져 있다. 박은식은 신해혁명이 일어난 지 10여 년이 지난 1920년대 초 중국의 최대 문제는 군벌들의 발호와 무력통치에 의한 민국의 실종이라고 보고 정치적 자각을 가진 국민의 힘, 곧 민력의 증진을 통해서만 군벌체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²⁵ 박은식은 이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민중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노동계급의 힘에 주목하기도 하였으며 러시아혁명의 성과와 세계주의적 주장에도 관심을 표명하였다.²⁶ 박은식의 이러한 민치주의 주장과 민중에 대한 발견은 오사운동 이후 중국의 진보적 지식인들에게 널리 나타난 인식의 변화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박은식은 쑨원이나 중국 혁명파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신규식을 비롯한 당시 많은 한인 지사들과 어느 정도 다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박은식은 『항강잡지』의 논설들이나 『사민보』의 논설들에서 쑨원이나 혁명파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을 뿐만

25 朴殷植, 「民力進展之希望」, 『四民報』(1922. 1. 17), 3면; 「國民思想之進步」, 『四民報』(1922. 5. 16), 3면.

26 朴殷植, 「民衆運動之時代」, 『四民報』(1922. 2. 12), 3면; 朴殷植, 「勞動階級之向上進展」, 『四民報』(1922. 3. 7), 3면; 朴殷植, 「勞動界正義之行動」, 『四民報』(1922. 5. 5), 3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정면으로 혁명파를 비판하기도 하였다.²⁷ 다만 위안스카이 비판이나 민국의 옹호, 민치주의 주장 등을 통하여 쑨원과 혁명파에 대한 원칙적인 지지 입장은 짐작할 수 있다. 말하자면 박은식은 쑨원이나 혁명파에 대하여 일면 비판과 일면 지지를 동시에 표명한 셈이다.

쑨원과 혁명파에 대한 박은식의 이러한 입장은 당시 한국 독립운동을 위하여 중국의 지원을 얻고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경계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그 자신의 중국관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박은식 자신도 중국의 지원을 기대하여 중국에 망명한 직후에도 중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사대주의나 소중화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다. 또 박은식은 한국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중국의 원조를 얻는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만일 중국이 강성해진다면 교만해질 것이며 (한국에 대한) 야심이 생겨 (중국의) 동정을 얻을 생각은 할 수도 없을 것이다”라는 날카로운 지적을 하였다.²⁸ 박은식의 중국에 대한 이러한 입장은 중국 혁명파로부터 지원을 얻는 것에 사활을 걸고 있었던 상당수 한인 지식들의 입장과는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이다.

쑨원에 대한 1920년대 한국인들의 이해를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자료는 1924년 11월 쑨원의 일본 방문과 그에 이은 발병, 사망에 대한 당시 한국 언론의 관심과 보도이다. 쑨원이 간암 수술을 받은 1925년 1월 26일 직후 나온 『조선일보』의 쑨원 사망 보도는 일본의 동방통신사

27 朴殷植, 「與島山安昌浩書」, 『朴殷植全集』 제5권(1914. 1. 7), 149쪽.

28 朴殷植, 「與島山安昌浩書」, 『朴殷植全集』 제5권(1914. 2. 6), 155쪽.

(東方通信社)의 보도를 받아서 낸 완전한 오보였다.²⁹ 쑨원 사망 이전에 나온 각종 사망설은 사실 1월 말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의 주요 도시나 일본, 그리고 한국 내에서 그 존재가 확인되고 있는데 그러한 사망설의 진원지는 일본의 통신사인 동방사의 사망보도였던 것이다.³⁰ 쑨원의 발병과 사망설에 대한 한국인들의 이러한 지대한 관심은 민족적 독립을 지상의 목표로 삼고 있던 한국인들에게 쑨원의 존재 자체가 가장 중대한 관심사였음을 확인해준다.

한편으로 쑨원 사망 이후 일부 민족주의적 단체들을 중심으로 계획되고 준비된 쑨원 추도회는 서거 100일을 기념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된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시 전 중국에 걸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던 5·30운동에 대한 한국인들의 지지 표명을 목표로 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³¹ 당시 한국인들에게 5·30운동은 국내에서는 금지되어 있는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해주는 무대가 되어 주었던 것이다.³² 일제 경찰의 불허로 추도회 자체는 열리지 못했지만³³ 만화와 같은 보다 더 간접적이고 은밀한 방법으로 이에 대한 항의와 5·30운동에 대한 지지가 표명되고 있었다.³⁴ 말하자면 반제국주의 운동으로서

29 「中國革命의 第一元勳 中山孫文氏 遂逝去」, 『朝鮮日報』(1925. 1. 28), 1면.

30 裴京漢(2001), 「1925年1月孫中山逝世說의 流傳與日本東方通信社」, 林家有 主編, 『孫中山與世界和平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北京: 人民出版社.

31 「注目할 中國의 同盟罷業(下)」, 『朝鮮日報』(1925. 6. 3), 1면; 「日本 對中經濟政策의 破綻」, 『朝鮮日報』(1925. 6. 5), 1면.

32 「社說: 東洋中之日本, 共存共榮의 幻滅」, 『東亞日報』(1925. 6. 7), 1면; 「日人은 吾等의 敵: 奉天學生의 排日宣傳」, 『朝鮮日報』(1925. 6. 17), 1면; 「重慶에서는 排日 氣勢 險惡」, 『朝鮮日報』(1925. 6. 30), 1면 등 참조.

33 「孫氏追悼禁止」, 『朝鮮日報』(1925. 6. 19), 2면.

34 「東亞漫畫: 孫文氏 肖像이나 한 번 더 보아두자」, 『東亞日報』(1925. 6. 21), 1면.

의 5·30운동은 당시 한국인들에게 항일을 표현하는 하나의 출구였으며 쑨원은 중국의 항일운동인 5·30운동에 대해 한국인들이 지지를 표현하는 또 다른 출구였던 셈이다.

요컨대 1924년 말부터 1925년 중반까지 한국 내에서 있었던, 쑨원 사망설 관련 보도와 쑨원 추도회 개최 시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920년대 한국인들에게 쑨원은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을 비판하고 민족적 독립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요, 방안이었다는 사실이다. 반제 내지 반일의 상징으로서 쑨원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이러한 쑨원 이해는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상당한 한계성을 노출하고 있던 한국에 대한 쑨원의 입장과는 어느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 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당시 한국인들의 이러한 쑨원 이해 속에는 비현실적 기대와 희망이 들어 있었다는 지적을 해야 할 것이지만 다른 면에서 보자면 당대 한국인들에게 쑨원은 그러한 비현실적 희망까지를 포함하는 반제와 항일, 그리고 혁명의 상징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5. 맺음말

일제의 식민지 지배 아래 놓여 있던 20세기 초 한국인들에게 쑨원이나 쑨원으로 대표되는 중국혁명은 어떻게 인식되고 있었을까? 이 물음과 관련하여 이 글의 논의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사실은 20세기 초 한국인들에게 쑨원과 쑨원으로 대표되는 중국혁명은 하나의 배워야 할 교과서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망국의 위기 속에서 국내에서의 독립·혁명운동이 사실상 불가

능해진 많은 수의 한인 지사들에게 중국혁명의 소식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는 복음으로 받아들여졌다. 무창기의 직후부터 한인 지사들의 중국 관내지역으로의 망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고 상해를 중심으로 한인사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중국혁명의 경험을 배우려는 한국인들의 기대감이 깔려 있었다.

뿐만 아니라 20세기 초 한국인들에게 쑨원과 중국혁명은 막혀 있던 독립 주장, 곧 반제와 항일을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창구가 되었다. 당시 한국의 일간지와 잡지들에서는 혁명 중국, 곧 ‘남방중국(南方中國)’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을 나타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항일과 독립의 염원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1925년 1월 쑨원 사망 직전 한국 언론들에 유포되었던 쑨원 사망설이나 쑨원 사망 직후 국내에서 전개된 쑨원 추도회 개최 시도는 당시 쑨원이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우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는가와 반제와 항일의 상징이 되고 있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나아가 20세기 초 한국인들에게 쑨원으로 대표되는 중국과 중국혁명은 함께 연대해야 할 동반자 내지 동지로 받아들여졌다. 그것은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 아래 동일하게 망국의 위기를 겪던 한국과 중국의 동병상련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으로 망명해간 초기의 한인들은 중국혁명을 지지하고 그것에 참가하거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한인 지사들의 중국혁명 운동, 곧 신해혁명 참여와 지지는 한편으로는 혁명의 성공으로 강성해질 중국의 한국에 대한 지원 기대감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다. 또 1921년에 있었던 상해 한국임시정부 대표 신규식의 광동호법정부 방문과 이때 이루어진 신규식과 쑨원 사이의 회담 또한 중국혁명의 성공에 대한 한국인들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었다. 한국임시정부 측에서는 미국의 주도로 열리게 된 워싱턴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쑨원과 광동정부의 지원을 기대했던 것이다.

물론 중국 지원에 대한 한인 지사들의 기대는 종종 상호연대의 수준을 넘어 중국 의존적 혹은 사대적(事大的)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무창기의 직후 상해에서 쑨원을 ‘알현한’ 신규식이 쑨원의 면전에서 만세를 부르는 장면이나 1921년 광주를 방문한 신규식 일행이 ‘국서를 봉정’하는 장면은 중국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 의존적 내지는 사대주의적 행동으로 비칠 여지도 있다. 또한 이러한 사대적 태도를 둘러싸고 한인 지사들 사이에서는 상호 비난과 분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쑨원과 중국혁명에 대한 한국인들의 이러한 기대는 사실상 처음부터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것은 중국혁명 자체가 한국을 지원해 줄 수 있을 만큼 성공적이지 못한 채 부침을 거듭하고 있었다는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는 쑨원과 중국 혁명과 인사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나 인식 자체가 한국인들이 기대했던 호혜 평등과는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해혁명을 전후하여 전개된 몽골의 독립운동에 대한 쑨원과 혁명파의 대응에 나타나는 것처럼 쑨원과 혁명파 인사들은 조선과 몽골을 비롯한 주변 약소국들을 회복해야 할 중국의 영토로 보는 전통적 중화주의적 영토관념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중화주의 영토관념을 전제로 하는 한 쑨원이 말하는 ‘민족주의’가 더 이상 중국 주변 약소국들의 이해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복음이 되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한국과 같은 주변의 시각에서 바라볼 경우 쑨원의 ‘민족주의’는 중국 중심의 중화주의를 극복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주변 약소국에 대한 쑨원의 중화주의적 태도는 그가 만년에 일본을 방문하여 행한 저 유명한 ‘대아시아주의’ 강연에서도 잘 드러난다. 아시아 약소민족들의 대연합을 주장하는 ‘대아시아주의’ 강연은 표면적으로는 민족 간의 호혜 평등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연합 주장, 곧 ‘중일영도론(中日領導論)’을 그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호혜 평등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쑨원은 말년까지도 끈질기게 일본의 지원을 기대하였다. 이러한 기대로 침략자인 일본에 아시아에서의 영도적 지위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중화주의적 영토관념에서 드러나는 것과 같은 중국 중심적 이해로부터 아시아에서 중국의 주도권 또한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다. 중국과 일본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볼 때 쑨원이 ‘대아시아주의’ 강연에서 일본의 한국 지배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할 여지는 처음부터 없었다. 그럼에도 당시 많은 한국인들은 쑨원이 이 강연에서 한국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쑨원과 중국혁명에 걸고 있던 이러한 기대는 무참하게 깨질 수밖에 없었다. 쑨원에게 최후의 공식적인 강연이 된 이 강연에서 쑨원은 한국 문제를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아시아에서 일본의 지도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입장만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쑨원의 한국에 대한 이해가 애매할 뿐 아니라 부분적으로 중화주의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관해 당대 일부 한국인들도 상당한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예컨대 당대 한국 최고의 언론인이요, 역사가이면서 가장 중심적인 독립운동 지도자였던 박은식의 경우 중국

망명 직후부터 한인들의 사대주의적 입장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쑨원을 포함한 중국 혁명파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기대가 아닌 ‘비판적 지지’ 입장을 견지하였던 것이다. 또 ‘대아시아주의’ 강연에 대한 한국인들의 기대가 무참하게 깨진 이후에도 당대 최고의 중국 전문 논설가라고 할 안재홍(安在鴻)을 비롯한 일부 한국 언론인들은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대연합이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며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하였다.

요컨대 20세기 초 한국인들이 바라보는 쑨원은 반제를 위한 동지이자 독립을 위한 동반자였지만, 동시에 중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한국을 비롯한 주변을 그 영향력 아래 두려는 중국 중심적 입장과 관련해서는 경계의 대상이었다. 쑨원에 대한 이러한 이해와 평가는 중화주의와 사대주의의 극복을 목표로 하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호혜와 평등에 기초하는 새로운 한중관계에 대한 모색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 초 한·중 간의 상호인식 - 쑨원의 한국 인식과 한국인들의 쑨원 이해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

뉴다용 (베이징대학)

배경한 교수의 이 논문은 현대중국 정치지도자인 쑨원이 한국 독립운동과 맺은 교류관계와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중 간의 상호인식에 고찰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한중관계를 보면서 전통적인 ‘중화주의-사대주의’가 쑨원과 한국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것을 지적하였는데, 이것은 중국 학계에서 쉽게 무시되는 문제이다. 배 교수의 논문은 우리가 국제관계를 연구할 때 ‘대국관’이나 ‘중국중심론’의 한계성을 벗어나야 하며, 수많은 주변국들의 ‘각자의 시각(本土視角)’에도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켜 주었다. 우리는 배 교수의 이러한 의견을 반드시 중시해야 한다.

그러나 쑨원이 몽골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한국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원칙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는 몽골의 독립에는 반대했지만 한국의 독립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지지하였다.

배 교수가 글에서 언급한 대로 쑨원과 한국인 사이의 교류와 관련된 사료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까닭에 토론자의 지식에도 한계가 있지만 이 방면에 관한 몇 가지 사료를 보충하고자 한다.

1912년 9월은 신규식(申圭植)이 재차 쑨원과 회견을 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았을 때인데, 쑨원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일본을 비난하였다. “일본은 고려 대하기를 우마 보듯 한다. 일본이 비록 강하다 하더라도 고려인이 이렇게 고통에 빠져 있다면 (자신에게) 털끝만큼의 이익도 없다고 말할 수 있다.”¹ 1913년 초 쑨원이 일본에서 정계원로인 가쓰라 다로(桂太郎)와 회견을 했을 때에도 그는 일본이 “전승의 기세를 타서 조선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불의한 행동임을 정면으로 비판하였고 일본이 ‘대아시아주의정신’과 ‘진정한 평등과 우호선린 원칙’을 관철하도록 힘껏 설득하였다.²

쑨원의 혁명목표 중 하나는 중국의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었지만 그는 또한 ‘전 아시아 민족의 부흥’을 희망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독립은 중국 혁명당의 투쟁 목표 중 하나가 되었다. 1914년 장제스(蔣介石)가 동북으로 가서 위안스카이(袁世凱)에 대한 군사 토벌을 도모할 때, 쑨원은 장제스에게 이렇게 당부하였다. “일본인이 만일 동북과 대만을 우리에게 반환하지 않고 조선의 독립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국민혁명운동은 멈출 수 없는 것이다.”³ 그의 목표가 동북과 대만을 회수하고 조선의 독립을 확보하는 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1918년 말 파리강화회의가 막 시작되려 할 때였다. 쑨원의 추진 하에, 광주 비상국회와 군정부정무회는 모두 신속히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였다.⁴ 다음해 1월 쑨원은 광주(廣州)의 중화민국군 정부를 대표하여 파리회의에 출석하는 비상국회 참의원 부의장인 왕정팅(王正廷)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

1 「在北京蒙藏統一政治改良會歡迎會的演說」, 『孫中山全集』第2卷, 430쪽.

2 羅家倫(1965), 『國父年譜』上册, 臺北, 增訂本, 496쪽.

3 李雲漢, 「蔣中正先生與臺灣」, 『近代中國』第109期에서 재인용.

4 『中韓關係專檔』23권.

하였다. “응당 중국이 열강과 맺은 모든 불평등 조약을 취소하고 침략당한 각지를 회수하며 고려의 독립을 승인해야 하니, 이렇게 해야 민족자결의 뜻에 부합할 수 있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강화회의의 가치는 없다. 중국의 참가는 더구나 의미가 없다!”⁵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 수립된 후, 쑨원은 곧장 상해에서 일본기자 오에도(大田)에게 담화를 발표하였다. “내 의견으로는 일본이 반드시 한국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그 독립을 승인하는 것이 마땅하다.”⁶ 다음해 10월 8일 쑨원은 또 상해통신사의 기자에게, “첫걸음은 한국인의 독립을 돕는 것” 이고 “두 번째 발걸음은 21개조 미국조약의 취소를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표명하였다.

쑨원은 한국 애국지사들의 불요불굴한 투쟁정신을 매우 높이 평가하였다. 1921년 12월 그가 구이린(桂林)에서 연설할 때 “일본의 고려에 대한 대우는 대단히 가혹하다. 고려인은 본디 혁명정신이 강하여 압제받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아 온갖 궁리를 다해 독립을 위해 운동한 지가 이미 오래이다. 일본이 비록 방비를 엄히 한다 하더라도 고려인들은 시종 굳건하니 필경 그 목적을 이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였다.⁷

1924년 말 쑨원이 북상할 때 일본을 경유하며 발표한 ‘대아시아주의’ 연설은 그가 북경에 도착한 후 해결해야 할 국내외의 정치 문제에 기반을 둔 것으로, 전적으로 일본의 정계인사들을 대상으로 강연한 것이다. 그 배경은 구미 열강 및 코민테른과 함께 삼족정립(三足鼎立)의 ‘국제민족’ 건립을

5 「孫逸仙先生言行小識」, 『胡漢民先生遺稿』(1978), 臺北.

6 『新韓青年』 第1卷 1號.

7 『孫中山全集』 第6卷, 16쪽.

구상한 것이었다. 이 전후로 그의 한국 독립 문제에 대한 태도는 줄곧 변한 적이 없다.

쑨원이 1923년 3월에 세상을 뜬 후, 한국임시정부가 그달 26일에 추도집회를 열었을 때 한 한국 지사는 다음과 같은 추도문을 발표하였다. “우리 고려는 일본의 압박을 오랫동안 받아 숨조차 마음대로 쉴 수 없는데, 이는 중국이 열강에 압박을 받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니 우리는 피차 동병상련이다. 쑨孫 선생은 고통 받는 동방민족을 이끌어 일제히 진공하기를 바라셨다. 어찌 큰 별이 홀연히 떨어지기를 바랐겠는가. 이후에도 쑨 선생의 신도들은 한결같이 그의 정책에 의거하여 열심히 나아가기를 바란다.”⁸

쑨원이 세상에 있을 때에는 어떤 실권이나 실력도 없었다. 조건에 한계가 있어 한국 지사들에게 많은 물질적 원조를 해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중국혁명의 역량이 적극적으로 한국의 독립운동을 원조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 사람이고, ‘원한독립(援韓獨立)’ 사상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다. 그의 태도와 입장은 한국 지사들에게 분명 거대한 정신적 고무가 되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은 모두 그의 이 방침과 사상을 계승하여 각기 다른 역사적 상황이었지만 힘이 닿는 범위 내에서 조선독립운동에 훨씬 더 많은 실질적인 지원을 하였다.

중국은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줄곧 다민족국가였다. 쑨원의 시대 또한 몇십 개의 민족이 국가를 구성한 시대였다. 따라서 중국에 관한 문제, 이를테면 민족주의, 민족 독립, 중국과 주변의 관계 같은 여러 문제를 연구함에 있어 만일 단일민족국가의 시각에서만 바라본다면 중국의 기본적인 국가적 성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

8 伍達光 輯(1925), 『孫中山評論集』, 上海三民出版部, 97쪽.

근대 한중관계 변천의 이상과 현실

— 한국인의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역사적 근원 —

왕위안저우 (베이징대학 역사학과)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
역사
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머리말

근대에 청(淸) 정부의 조선에 대한 최대의 외교목표는 조선의 현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조선이 때로는 러시아와 연합하고 때로는 일본과 친해지면서 결국 갑오전쟁시기에 일본 일변도로 흐르자, 당시 수많은 중국인들은 이를 조선의 배신이라고 생각했다. 항일전쟁시기 중국은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지하면서 전쟁 이후 중국과 우호적인 정권이 수립되기를 희망했으나, 실제로는 미·소의 한반도 분할점령으로 인해 중국의 목표는 달성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유엔의 5대국 중 하나인 중국이 내전의 위기에 빠지면서 한국인의 마음속에서 중국의 위상 또한 크게 떨어졌다. 근대 이후 중국의 한국에 대한 외교를 살펴보면 이상과 현실 사이에 큰 괴리가 존재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괴리의 근원으로는 국제관계나 양국 국내 정치의 문제 외에도 양국의 상호인식의 거리가 중요하게 꼽힌다.

역사적인 이유로 중국인이 종종 본능적으로 한국에 대해 호감을 가지면서 양국은 항상 형제와 같은 우방이고 동무동종·순망치한·동고동락(休戚相關)이라고 강조한다. 심지어 항전시기에도 일부 중국인들은 한국인들에게 이전의 중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여(人心思

漢,¹ 한국의 독립을 원조하였다. 한국이 해방된 후 한국에 온 중국인들이 원래 자신들이 한국인의 멸시 대상이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한국 독립운동의 후원자로서 느꼈을 상심은 상상해 볼 수 있다. 사실 그들이 전에도 일찌감치 화교는 업신여김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1948년 6월, 이후 베이징대학 동방언어문학과와 조선어 전공교수가 된 양통팡(楊通方)이 한국에서 유학을 했다. 당시로는 소수였던 중국 유학생 중 한 명으로 자연히 많은 한국 인사들과 기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이러한 질문을 받았다. “한국의 첫인상은 어떤 것입니까?” 나중에 양통팡은 『한중 문화(韓中文化)』 창간호에 한 편의 글을 발표하는데 이 질문에 대한 공개적인 대답이라고 간주해도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이 강렬하게 느낀 두 가지의 첫 인상으로, 한국 인사들이 매우 따뜻하게 대한다는 점과 한국에서는 이국 생활에서 오는 괴로움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본래는 형제인 한국과 중국 민족 사이에 불쾌한 사건들이 여전히 크고 작게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그에게 더욱 유감이었던 점은 소수의 지식인들이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도록 부추긴다는 것이었다.²

이후, 한국전쟁의 발발 및 중국의 참전과 함께 양국관계는 양통팡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없게 되었다.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양국의 경제관계와 인적 교류는 전례 없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필자 또한 양국의 상호인식이 전혀 근본적으로 개선

1 楊昭全 等 主編(1987), 「國民政府軍事委員會辦公廳致政治部函(1940. 5. 24)」, 『關內地區朝鮮人民反日獨立運動資料彙編』上册, 遼寧民族出版社, 688쪽.

2 楊通方(1949), 「關於韓中文化交流, 中國學生的幾句話」, 『韓中文化』創刊號, 40~41쪽.

되지 않았으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추세라고 본다. 필자가 한국인에 대해 관찰한 바로는 젊은 사람들일수록 중국을 비하하는 심리가 강하다. 게다가 바로 양통팡이 당시에 관찰했던 것과 같이 일부 한국의 지성계·교육계·언론계에서도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국민의 정서를 선동한다. 그래서 우리도 당시 양통팡이 가졌던 바람을 공유하면서, 양국의 문화교류가 보다 더 강화되길 희망하고, 특히 양국의 지식인들과 언론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그런데 현재 한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에서 우리는 놀라울 정도의 역사적 연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양국 국민들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한다면 근대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인식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방면에 대해 한·중 양국의 학자들은 이미 약간의 연구를 해 놓았다. 백영서 교수는 대한제국시기 한국의 신문에 나타난 중국에 대한 인식을 살폈고,³ 권혁수 교수는 황염배의 『조선(朝鮮)』과 이시영의 『감시만어(感時漫語)』를 통해서 양국인의 상호인식을 분석했으며,⁴ 배경한 교수는 박은식이 중국을 유랑하던 시기 중국에 대해 가졌던 인식을 분석했고,⁵ 박용희는 여행기를 통해 한국인의 중국문화에 대한 인식을 분석했다.⁶ 이 밖에 몇몇 한국의 화교문제에 대한 논문 또한 이 방

3 백영서(2000), 「대한제국기 한국언론의 중국인식」, 『동아시아의 귀환』, 창작과 비평사[原載 백영서(1997), 『歷史學報』 153輯].

4 권혁수(2007), 「근대이래 중한양국의 상호인식」, 『사회과학논집』,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

5 裴京漢(2003), 「중국망명시기(1910~1925) 박은식의 언론활동과 중국인식」, 『동방학지』 제121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6 박용희(2003), 「한국인의 중국문화 인식 : 여행기 분석을 중심으로」, 『문화관광연구』 5卷 1期, 韓國文化觀光學會.

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종합해 보면 한국인의 중국 인식에 대한 역사적 근원에는 깊은 천착이 부족하고 근대의 변화 및 그 영향에 대한 분석도 많지 않다. 이 글에서는 주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근대 이후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근원과 변화 및 영향을 분석한다.

2. 북벌론에서부터 북방사관까지

근대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중화와 소중화(小中華)의 관계에서 출발하여 변화해 온 것이다. 중국은 오랜 옛날부터 화하(華夏)라 불렸으며 조선은 소중화라고 불렸다. 소중화는 중국인의 조선에 대한 칭호였다. 조선 또한 소중화라고 스스로를 칭하며 중국문명을 표준으로 하는 화이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를 두고 한국 고대의 중화를 동경하는[慕華] 사상이 형성됐고, 중국으로부터 문화를 수입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조선 후기에는 북벌론과 존주대의론(尊周大義論)의 영향을 받아 조선의 소중화 의식에 커다란 변화가 생겨났고 한국인의 중국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조선 후기의 소중화 의식은 청을 이적으로 간주하여 청이 중국에서 정통적인 지위를 갖는다는 전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남명(南明)이 멸망하고 청조의 통치가 안정됨에 따라 청을 배척하는 것이 중국과 중화문화에 대한 배척이 되었다. 북학파의 박지원(朴趾原), 박제가(朴齊家) 등이 비평했듯이, 이로 인해 오랑캐를 물리치고 중화와 함께한다는 고유의 문물제도 또한 함께 배척되었다. 따라서 근대 이전에는 비록 양국

사절의 왕래가 끊이지 않았지만 중국문화의 영향력은 대폭 약화하여 이익장(李翼將)이 압록강을 ‘압록천연해자(鴨綠天塹, 역주: 오랑캐에 대한 방어선이라는 뜻인 듯)’라고 형용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⁷

조선 후기의 사대부가 존주대의를 엄수하려면 과거시험에 응하거나 출사하여 관리가 되지 말아야 했다. 19세기가 되자 홍직필(洪直弼, 1776~1852)은 조선 사대부가 “대명의 유민으로 남고자 한다면 응당 과거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⁸고 보았다. 한걸음 물러나서 말하면 비록 조선에서 관직에 나아간다 해도 중국에 사신으로 가는 것은 부당한 것이었다. 임헌희(任憲暉)는 설령 조선에서 태어나 조선에서 관리가 될 수는 있어도 중국에 사신으로 가는 명을 받는 것은 안 된다고 보았다.⁹ 그의 제자인 신기선(申箕善)은 과거에 응시하고자 했는데 일찍이 서응순(徐應勳, 1824~1880)과 중국에 사신으로 가야 하는가의 문제를 토론한 바가 있다. 신기선은 만일 조선에서 관리를 지내면 중국에 사신으로 파견되는 명을 받을 수 있으니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물었고, 이에 서응순은 당연히 명을 받들어 사신으로 가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신기선은 자신은 사신으로 가기를 거부할 것이라며, 그 이유로 “오랑캐에게 머리를 숙여 신하라고 칭하는 것은 사람이 참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응순은 사신으로 가야 한다고 하였지만, 이것도 단지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게 하면 안 된다”는 가르침에 입각한 것일 뿐이므로, “당신이 참을 수 없다면 다른 누가 참

7 「天地篇, 地理門, 鴨綠天塹」, 『星湖塞說類選』卷1下, 明文堂, 1982年版, 72쪽.
8 「序, 送朴季立榮歸序, 癸亥」, 『梅山文集』卷27, 國學資料院, 1989년 제5권, 240쪽.
9 「明剛問答」, 『申箕善全集』下, 亞細亞文化社, 1981, 95쪽.

겠는가? 온 세상이 모두 행하지 않는다면 누가 사신으로 가겠는가?”라고 하였다. 신기선은 “온 세상이 모두 참을 수 없다면, 동치(同治: 청穆宗의 연호)의 우두머리에서 휘하에 이르기까지, 어찌 그들에게 사신으로 갈 수 있겠는가? 세상 사람들 모두가 참는 것이 한이 될 뿐이다”라고 했다. 서응순이 “그것은 단지 자신만을 돌볼 뿐인 말이고, 세상을 책임질 사람의 말이 아니다. 자신이 뜻을 얻는다 하더라도 다른 이에게 사신으로 파견되게 한다면 그게 무엇인가? 자신이 하고 싶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시키는 것도 불가하다. 작은 일들이 큰 흐름이 되는 것은 면할 수 없는 일이다. 고통을 참고 억울함을 참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하지 않는가?”라고 하자, 신기선은 “도는 밝게 빛나지 않고 현혹함도 없도다. 선생도 이러한데, 만약 제가 세도를 담당하는자(當世道者)가 되었다면 (청에게) 예물을 보내는 것을 끝낼 것은 하늘도 기다릴 수 없을 것이다!”¹⁰라고 대답했다.

신기선은 후에 한국 근대사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는데, 그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이러했으니 양국 외교에 미친 영향은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서응순이 말한 것과 같이 매년 수많은 조선 사대부들이 하는 수 없이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명조 시기와는 크게 달랐다. 사신의 행렬이 가지고 있는 문서 등의 일은 모두 역관(譯官)이 처리하게 하고 길을 따르는 중국 주현관원과 관문의 수장들과는 만나지도 않고 통성명도 하지 않았다. 북경에 도착해서도 종묘 앞에서 읍하기를 부끄러워해서 최대한 중국 관원을 보지 않았고, 중국 관원과의 교류도 줄일 수 있는 한 줄여서 결국 규례를 마쳤는데, “때로는 접견 절차가

10 「綱堂問答」, 『申箕善全集』下, 188~189쪽.

있으면 무엇이든 아주 간소함만을 주장하고, 공손하고 겸손한 태도는 수치로 여겼다” 고 한다.¹¹ 사행에 참가해본 박지원은 이런 현상을 관찰한 뒤 일찍이 조선 사절들이 역관을 지나치게 신임하는 것을 걱정했다. “어느 날 아침에 걱정이 있었는데, 세 사신이 그저 묵묵히 서로 마주보고는 겨우 역관의 입에 의지하기만 하니, 사신을 위해서는 말을 안 할 수 없다.”¹²

조선의 사행인원들조차 이렇게 중국 관원을 대했으니 19세기 중기 이전에는 중국 민간인사와의 교류 또한 많지 않았다. 홍대용(洪大容)은 조선 사신 행렬을 따라 북경에 도착한 이후, 과거를 치르기 위해 항주(杭州)에서 북경으로 온 엄성(嚴誠) 등 세 명과 막역한 사이가 되었다. 이는 조선에서 미담으로 전해졌고 박지원·박제가·이덕무(李德懋) 등의 부러움을 사, 그들 또한 사신 행렬을 따라 북경에 와서 중국 사대부와 교류했다. 그러나 우리가 이덕무의 한탄을 통해 이것이 극히 특별한 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덕무는 일찍이 한탄하며 말하길, 과거에는 조선인 사절과 중국 사대부 사이에 지기(知己)를 맺은 미담이 자주 있었지만 “이제는 금지가 지엄하여 외교를 할 수가 없다. 60년래로 김창업(金昌業), 이일암(李日菴) 이후로는 중국인과 교류했다는 말을 들어본 바가 없다. ‘내가 어떻게 중국인과 서로 서신을 왕래하고 술을 서로 권하는 일을 했겠는가?’ 하고 싶어도 감히 하지 못한 것이니, 전하는 자가 잘 알지 못하고 한 말이다”¹³라고 했다.

사실 홍대용이 북경에서 중국 사인과 교제한 일은 화이 구분에 엄격

11 朴趾源, 『審勢編』, 『熱河日記』, 『燕岩集』 卷14, 別集, 253쪽.

12 朴趾源(1966), 『行在雜錄』, 『熱河日記』, 『燕岩集』 卷13, 別集, 240쪽.

13 『雅亭遺稿(十一)』, 書(五), 趙敬庵衍龜, 『靑莊館全書』 卷19.

한 일부 사대부들의 비판을 야기했다. 김종후(金鍾厚)는 일찍이 이에 대해 비판을 하였다. 김종후의 눈에 당시 청조 통치하의 중국은 ‘비리고 더러운 원수의 땅(腥穢仇域)’이었으니, 이러한 곳에 가서 홍대용이 “통분함을 참고 원망스러움을 견디는 뜻을 깊이 간직하고, 오직 부형(父兄)을 높이고 견문을 넓히는 이외에는 오랑캐의 일에 대해서는 털끝만큼이라도 못 본 체하리라”고 당연히 믿었던 것이다.¹⁴

역관은 증인의 신분으로 비교적 화이 구분의 속박을 덜 받았으며 게다가 직업상의 필요에 의해서 중국인과 접촉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19세기가 되자 역관 중에서는 시문을 즐겨 짓는 사람도 나타나 중국 사대부와 시사를 주고받기 시작하였는데, 그 중 비교적 유명한 인물로 이상적(李尙迪)을 들 수 있다. 사실 앞에 언급한 당시 박지원의 걱정에서 볼 수 있듯이 근대 조선과 중국의 교류 속에서 이용숙(李容肅) 등의 역관은 중요한 능력을 발휘했다.

상술한 기반 위에서 19세기 중기 이후가 되자 조선 사신 또한 중국 사대부와 교류하기 시작했다. 1861년 중국에 사신으로 간 박규수(朴珪壽)는 중국에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을 뿐 아니라 중국 친구들에게 ‘인신 무외교(人臣無外交)’의 금기에 구애받지 말자고 청했고, 지속적으로 서신 왕래를 하였다. 또한 병인양요가 발생했을 때에는 중국 친구들과의 서신 왕래를 통해 분노의 감정을 소통하여 외교적인 요소를 초보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유완(李裕完)은 중국에 사신으로 가 있을 때 유지개(游智開)를 통해 주동적으로 리홍장(李鴻章)에게 서신을 보냈고 리홍장은 이유완과의 서신 왕래를 통해 조선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주고자 시도

14 「直齋答書」, 『湛軒書』內集 卷3, 書 上册, 229쪽.

하였으니, ‘인신무외교’의 금기가 점차 깨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유
완은 리흥장과의 서신 왕래로 인해 국내에서 탄핵을 받기도 했다.

인적 교류가 감소했을 뿐 아니라 중화문화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화이 간의 구별에 엄격한 조선 사대부들이 보기에 중국이 만
주족 통치하에서 황제는 머리를 깎은 황제이고 장상대신도 모두 머리
를 깎은 신하이며 일반 독서인과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깎은 자들이었
다. 비록 육룡기(陸龍其)와 이광지(李光地)의 학문이 있고 위희(魏禧), 왕완(汪
琬), 왕사징(王士徵)의 문장이 있고 고염무(顧炎武), 주이존(朱彝尊)의 박식함이
있어도 한 번 머리를 깎고 오랑캐(胡虜)가 되면, 오랑캐는 곧 개나 양이나
같아서 개와 양에게는 자연히 배울 것이 사라지는 법이었다. 정조 시기
중국소설과 명청인 문집 등 서적을 조선에 유입하는 것을 금지했고 심
지어 경사서적을 비롯해 모든 중국 출판물을 조선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금지되어서, 사신의 행렬이 귀국하며 압록강을 건너 조선 경내에
들어올 때에는 소지품을 일일이 수색했다.¹⁵

인적 교류의 제한, 중국 문화에 대한 무시는 일반 조선인들의 중국
에 대한 무지를 양산하여 “하등(下等)의 선비는 오곡(五穀)을 보고는 중국
에도 이런 것이 있느냐 묻고, 중등(中等)의 선비는 중국의 문장이 우리만
못하다고 말하며, 상등(上等)의 선비는 중국에는 이학(理學)이 없다고 한
다”¹⁶는 말이 떠돌았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북학파는 일찍이 비판을
가하였는데, 박제가는 조선의 학자들을 이렇게 비판하였다. “오늘날 육
룡기와 이광지의 이름을 모르고 고정림(顧亭林)의 존주대의, 주죽타(朱竹

15 『正祖實錄』卷36, 正祖 16年 10月 甲申.

16 朴齊家(1986), 「北學議外篇·北學辨」, 『貞蕪閣全集』下冊, 驪江出版社, 439
쪽.

陀)의 박학(博學), 왕어양(王漁洋)과 위숙자(魏叔子)의 시문도 모르면서 도학과 문장이 모두 볼 것이 없다고 단언해 버린다. 그리하여 천하의 공의까지도 모두 불신하니, 나는 오늘날의 사람들이 무얼 믿고 그러는지 모르겠다!”¹⁷

바로 소중화의식의 고취 그리고 중국에 대한 무지 혹은 무시를 통해 조선인들은 점차 중국에 대한 우월의식을 키워나갔다. 일부 조선 사대부는 더 이상 이적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중화를 자처하기도 했다. 이종휘(李種徽, 1731~1797)는 기자(箕子)가 하(夏)로 이(夷)를 변화시킨 후에 곧 중화로 들어갔으니, 그 후의 신라·고려는 비록 이적으로 몰락했으나 중국이 오호의 난을 거치고 나서도 여전히 중국인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은 절대 그 ‘동하(東夏)’의 지위를 잃지 않았다고 강조했다.¹⁸ 김이안(金履安, 1722~1791)은 아예 조선이 자고로 중국과 같은 유의 인종이고 그 밖의 지역 사람들은 이적이라면서, 과거에는 단지 신중하게 말하기 위해 여전히 이적으로 자처했다고 했다.¹⁹ 따라서 김이안은 당시 조선인이 여전히 스스로를 동이라고 폄하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는 계속 너저분하게 자신을 이적이라고 하고 그들을 중국이라고 이름붙이고 있다. 오호, 이 말은 얼마나 틀린 말인가!” 라고 했다.²⁰

이러한 사상이 지배하는 가운데 조선인들의 시각에서는 중국에서 태어나는 것은 일종의 불행이고 조선에서 태어나는 것은 하나의 행운이었다. 김원행(金元行, 1702~1772)은 “사람이라면 여자가 아니라 남자여

17 朴齊家(1986), 앞의 글.

18 李種徽, 「送某令之燕序」, 『修山集』卷1, 序.

19 金履安, 「華夷辯」下, 『三山齋集』卷10, 雜著.

20 金履安, 위의 글.

야 하고, 지금의 중원에서 태어나지 않고 우리 동쪽에서 태어나야 사지가 완비되어 병이 없고, 귀와 눈이 밝아 막힘이 없는 것이다. 하늘을 떠이고 땅위에 우뚝서서, 어찌 한 생애를 헛되이 보내겠는가! 반드시 사람의 도를 깨우치고, 사람의 일을 행하여 마침내 진정한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²¹ 박지원(1737~1805)을 따라 중국에 간 하인 장복(張福)조차도 박지원이 그에게 중국에서 태어나고 싶었느냐고 물었을 때 “중국 은 오랑캐이니 소인은 원치 않습니다”²²라고 말했다. 소중화의식이 만들어진 배척의식과 자존의식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사회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중국에 대한 상대적 우월의식은 일부 조선 사대부들의 대국 의식도 점차 키웠다. 일반 조선인들은 항상 조선의 강역이 너무 작음을 한스럽게 여기고 있었는데, 윤기(尹愷, 1741~1826)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오늘날의 천하에서 오직 동방의 강역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오직 조선만이 홀로 승정(崇禎: 明 思宗의 연호) 이후의 시대를 지키면서 그 산천이 수려하고 풍속은 아름다우며 강토는 한 번도 침범당한 일이 없어 마치 대명 천지의 기상이 있는 듯하니, 이 어찌 우주 간에 가장 좋은 대(大)강역이라고 하지 않겠는가?”²³

그러나 문화적 우월성은 일반 조선인들이 대국이 되고 싶어 하는 심리를 절대 만족시킬 수 없었다. 청조 입관 이전에 두 차례의 침략전쟁이라는 자극을 받고 또 북벌론에 고무되어 조선인들은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기반으로 북방의 고구려와 발해의 옛 영토를 회복하고자 하

21 沈定鎮(1986), 「漢湖先生言行錄」, 『漢湖全集』, 驪江出版社, 401쪽.

22 朴趾源, 「熱河日記·渡江錄」, 『燕巖集』卷11, 別集.

23 尹愷, 「東方疆域」, 『無名子集』文稿冊8, 策.

는 강렬한 욕망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중원으로 북벌을 해 나가길 희망하는 조선인 사대부에게는 요동을 점유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었다. 성해응(成海應)과 한원진(韓元震)은 모두 조선이 북벌을 할 때 반드시 수륙의 두 갈래 길로 진공하여 물길로는 산둥(山東)반도를 통해 상륙해 곧장 북경(北京)과 천진(天津)으로 돌격해 나가고, 육지로는 요동에서부터 산해관(山海關)을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성해응은 조선이 오직 요동을 점거해야만 청조와 북경 아래에서 결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²⁴ 정약용(丁若鏞)은 조선이 온순하여 무력을 바라지 않는 나라로서 요동이란 지키기가 어려운 땅인데다가, 명조부터 북경에 수도를 정하여 중국 통치의 중심이 북쪽으로 옮겨왔으니 조선이 요동을 점령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여기고, “게다가 우리나라의 지세는 북으로는 두 개의 강을 경계로 하여, 두만과 압록이 있고, 나머지 삼면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강역의 형세가 그대로 자연적인 요새를 이루고 있으므로, 요동을 얻는 것이 오히려 군더더기가 될 뿐이다. 이러니 유감으로 여길 것이 뭐 있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나 그 또한 이 일대를 점유하고 싶은 원망(願望)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는 이어서 “그렇더라도 만일 나라가 부유하고 군사가 강성하여 하루아침에 천하를 다룰 뜻이 있어 한걸음이라도 중원을 엿보려 할 경우에는 먼저 요동을 차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서쪽으로는 요동을 얻고 동쪽으로는 여진을 평정하고 북으로 경계를 개척하여 흑룡강(黑龍江)의 원류에 닿고, 오른쪽으로 몽골과 다투다면 충분히 큰 나라가 될 수 있으니 이 또한 통쾌한 일이라 하겠다”²⁵고 말했다.

24 「風泉錄二·復雪議」, 『研經齋全集』卷32; 「雜識」, 『南塘集』卷38, 外篇下.

일부 조선 사대부 중에는 요동을 얻는 것에 절대 만족하지 못하고 정약용이 주장한 대로 증원으로 진출하길 바란 사대부도 많았다. 이는 북벌론 자체의 구체적 발로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북벌 성공 후 어떻게 그 국면에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의 구현이기도 했다. 앞서 언급한 성해응은 북벌 성공 후에 명조 황실의 후예를 황제로 옹립하고 조선은 동변으로 물러나 지키자고 주장했는데, 마찬가지로 북벌에 매우 열심이었던 한원진은 조선이 북벌의 기회를 이용해 천하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²⁶ 이중환(李重煥)은 『택리지』에서 조선의 민간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고 했다. 몽골·여진 등이 모두 이미 증원으로 진출했는데 조선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조선의 영토 모양이 노인과 같이 생겼기 때문으로, 서쪽을 향해 앉아 중국의 세력에 두 손을 마주잡고 읊하는 모양이라서 중국에 충순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조선에는 천리의 강이 없고 백리의 평원이 없어 위인이 나지 않아 그렇게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²⁷ 이는 간접적으로 일부 조선인들의 증원 진출에 대한 갈망을 반영한다.

청 정부가 제2차 아편전쟁과 태평천국 기의의 타격을 받고 쇠망의 기미를 드러내자 북벌론은 또다시 토론의 초점이 되었다. 이때에도 여전히 두 가지 대립의 관점이 존재했다. 예를 들어 신기선은 북벌 성공 후에 명조의 황실 후예를 구하여 대명을 다시 밝히자고 했다.²⁸ 그러

25 「文集·論·遼東論」, 『於猶堂全書』第1集, 詩文集 第12卷,

26 「雜識」, 『南塘集』卷38, 外篇下.

27 李重煥(1910), 「山水」, 『八域志(擇裏志)』, 朝鮮古書刊行會, 88쪽.

28 申箕善(1981), 「彙言」, 『申箕善全集』下, 陽園遺集卷17, 亞細亞文化社, 227쪽.

나 김평묵(金平默)은 명확하게 주장하기를 만일 조선의 효종이 당년 북벌을 성공했다면 효종을 황제로 칭해야 하고 명조를 부흥시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했다. 이는 효종 시기뿐 아니라 현재에도 마찬가지라며 조선인들은 이러한 각오로 하루빨리 북벌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었다.²⁹ 갑오전쟁 전에 이르기까지 몇 년 동안 여운형(呂運亨, 1886~1947)의 조부(祖父)인 여규신(呂圭信, ?~1903)도 정부에 북벌을 건의하고 또한 이를 위해 동분서주했다. 이로 인해 평안도의 깊은 산속으로 유배당한 후에도 그는 여전히 매일 병서를 읽고 수학을 연구했다.³⁰

근대 청 정부가 조선과 종번(宗藩)관계를 유지하고 조선이 러시아나 일본에 병탄되는 것을 막으려 애쓸 때에도 조선의 국내에서는 여전히 짙은 배척의식이 격렬히 끓었다. 단지 개화파의 배척의식뿐 아니라, 일부 사대당(事大黨)도 순수하게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자고 주장했다. 화이의 구분에 엄격했던 위정척사파들은 의병운동의 시기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청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결국 청 정부의 대 조선정책의 실패도 필연적인 것이었다.

한국이 점차 일본의 식민지로 몰락함과 함께 청 왕조도 중화민국으로 대체되고 북벌론은 한국인들에게 자연히 어떤 의의도 남지 않게 되었지만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이로 인해 철저히 변모하지 않고, 오히려 예전의 방식대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갔다. 일본이 갑오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 한국인들은 10년 정도 부단한 노력을 통해 부강한 문명을 이루고, 일본처럼 중국을 패배시켜 중국으로부터 요동과 동

29 金平默(1875), 「答柳聖一基洙」, 乙亥 11月, 『重庵先生文集』 卷26, 書; 金平默(1875), 「三江問答」, 『重庵先生文集』 卷37, 雜著.

30 呂運亨(1932), 「自敘傳-我的青年時代」, 『三千里』 第9期.

북지구 전체를 할양받고 8억 원을 배상받기를 바랐다.³¹ 러일전쟁의 전야, 이기(李沂)는 일본이 동북지구를 제압한 후 그것을 세 등분하여 동부는 일본에 귀속시키고 서부는 중국에, 남부는 한국에 귀속시키기를 바랐다.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 동아시아에서 정족이립(鼎足而立)하는 한·중·일 세 나라 중 한국은 땅이 작고 백성이 부족해 균등한 세력을 만들 수 없어 동아시아의 평화 대세를 이룩하는 데에 불리하기 때문이었다.³²

이후 신채호(申采浩), 박은식(朴殷植), 장지연(張志淵) 등 계몽사상가들은 한국의 민족주의를 정립하기 위해 더욱 중국을 한민족의 대립면으로 삼았다. 우선 영토의 문제에서 그들은 중국의 동북지구 점령을 보다 더 갈망했다. 장지연은 한탄했다. “요, 금, 몽골 이래로 기(箕), 고(高)의 오래된 강토가 다시 우리 판도로 돌아오지 않고, 신성한 조상의 왕릉과 발상지까지 이역으로 몰락하니 어찌 지사된 자로서 그 한이 없을 수 있겠는가?”³³ 또한 신채호는 동북지구가 한민족에 중요하다는 점을 한층 더 강조하였다. 그는 “한민족이 만주(滿洲)를 얻으면 한민족이 강성하며, 타 민족이 만주를 얻으면 한민족이 열퇴(劣退)하고”³⁴라고 생각하고, ‘고구려 구강수복(舊疆收復)’론을 주장했다. 또한 그는 한민족의 역사발전 규칙은 상고(上古)에는 북방에서 남방으로 발전해 오고, 중고(中古) 이후로는 남방에서 북방으로 발전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추세에 따라 발전해 나아가 앞으로 반드시 고구려의 옛 강토를 얻을 수 있고 다시 단군의 역

31 『獨立新聞』(1896. 8. 4).

32 「三滿論」, 『海鶴遺書』, 國史編纂委員會(1974), 64쪽.

33 『韋庵文稿』卷4, 序, 大韓疆域考序, 149쪽.

34 「韓國과 滿洲」, 『丹齋申采浩全集』別集, 234쪽.

사를 밝힐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조선과 고구려를 고대 로마와 같은 대제국으로 묘사하고, 아울러 흉노, 여진(만주족), 몽골, 선비족 등을 모두 동일시하면서 조선족의 한족에 대한 침략과 식민의 ‘영광사’를 강조하여 한국인의 민족정신 역량의 원천으로 만들려고 했다.

신채호는 여기서 단군을 정복 영웅으로, 화하(華夏)는 조선 통치하의 일부분으로 만들어, 현재 중국의 대부분이 모두 예전에는 조선의 식민지였다고 하면서, 제곡(帝嚳), 제요(帝堯), 제순(帝舜)은 조선 오부(五部)의 장관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신채호는 이렇게 말했다. “또 지나(支那)를 ‘화하’, ‘제하(諸夏)’라 함은, 당시 지나가 조선의 서남에 있어 남부 대가(大加)의 관할(管轄)을 받은 고(故)로 ‘하(夏)’란 이름을 가짐이니, 이는 한족(漢族)의 지나가 아니요, 강(江), 회(淮) 연안(沿岸)과 산둥(山東), 산서(山西), 직예(直隸) 등 지(地)가 다 조선의 식민지임이요, 그 나머지는 묘족(苗族)과 한족(漢族)의 차지라.”³⁵ 이것이 곧 신채호의 조선족 ‘지나식민론’이다.

고증이 어려운 고조선의 역사를 이런 식으로 고쳐 썼을 뿐 아니라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나라들이 중국을 침략하고 식민지로 삼았음을 강조했으니, 복건(福建)의 천주(泉州), 장주(漳州) 등의 땅이 예전에는 신라의 식민지였고³⁶ 백제는 일찍이 중국의 산둥과 저장(浙江) 일대를 점령했다고 했다.³⁷

박은식 또한 신채호와 비슷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일찍이

35 申采浩(1930), 「朝鮮上古文化史」, 『丹齋申采浩全集』上, 397~398쪽.

36 申采浩(1979), 「朝鮮上古史」, 위의 책, 螢雪出版社, 242쪽.

37 申采浩(1979), 위의 글, 221쪽.

대종교(大倮敎)의 영향을 받아 『몽배금태조(夢拜金太祖)』를 지어, 금이 송을 침략한 것을 조선족 역사의 ‘영광’으로 보고 이를 빌려 조선민족의 투지를 격동시켜 천하를 정복하기를 바랐다. 그는 “만일 조선민족(朝鮮民族)이 이순신(李舜臣)의 철함제조(鐵艦製造)를 계속하여 해군력(海軍力)을 확장하며 허관(許灌)의 석탄설명(石炭說明)을 연구하여 기계력(器械力)을 발달하였으면 조선국기(朝鮮國旗)가 구미제주(歐美諸洲)에 비등(飛騰)하여도 가(可)할지어날”³⁸이라고 말했다.

류인식(柳寅植)은 비록 계몽운동에도 참가했지만 기본적으로 유학자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상이 신채호처럼 철저히 변하지는 않았으나 중국에 대한 인식에서는 신채호와 비슷한 경향이 있었다. 그도 한국을 “삼국 이래로 동부에 웅거하며 지나를 짓밟고 혹은 중토를 석권하며, 혹은 변방을 침략하여 황제의 자손과 혈전한 지수천 년, 동양에서 무(武)가 강한 나라로 우리에게 비할 나라가 없다”³⁹고 형용했다. 그는 또한 만주족을 동족으로 보면서 청조가 중원으로 들어간 것을 단군의 후예가 중원을 통치한 것이라고 여겼다.⁴⁰ 이병헌(李炳憲)은 철저한 구식 학자로 여러 차례 중국에 가서 kang유웨이(康有爲) 등에게서 금문경학을 배우고 한국에서 유학을 발양하고자 했으나 그 역시 조선민족이 중국을 침략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에서는 신채호에 비해 손색이 없었다. 이병헌은 복희(伏羲) 역시 백두산에서 흥기하여 복희, 순(舜), 여진 모두가 조선민족이고, 복희에서 순에 이르기까지, 금, 청에 이르기까지 조선족이 차례로 네 차례 중원을 점거한 것이라고 했다.⁴¹ 이렇게 그들에게 만청

38 朴殷植, 「夢拜金太祖」, 『朴殷植全書』中, 218쪽.

39 「太息錄」, 『東山全集』下, 88쪽.

40 「大東史」, 『東山全集』上.

(滿清)은 더 이상 배척해야 할 이적이 아니라 칭송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병헌은 심지어 전 세계에서 “주(主)의 올바름에 있어 만청만한 것이 없다” 고까지 말했다.⁴²

한국의 지리상 우월성을 강조할 때 그 우월성 중 하나가 중국 대륙을 병탄하거나 잠식할 수 있는 점이라고 강조하는 사람까지 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형은 狹長하되 怡然히 猛虎도 갖고 臥蠶도 갖고 舞袖의 仙人도 가
태서 往昔領土主義와 軍벌주의를 尙할 시에는 능히 地나의 대륙을 병
탄하고 침식하얏으며 近古平和主義를 尙할 때에는 煙霞縹緲한 間에
安閑이 獨有하야 태평을 謳歌하얏고 또 미래에 世界平和의 先驅者 될
氣像을 帶하였다.⁴³

이러한 논술을 앞에 언급한 이증환의 『택리지』에 기재된 말과 비교해 보면 중국에 대한 태도 변화의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후 민족주의 사상가들이 일본에 창끝을 겨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한국의 대립면으로 세운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여진, 몽골, 만주 등 여러 민족을 조선민족에 포함 시킴으로써 조선민족이 한족을 능가하는 것으로 그리려고 했다. 이러한 역사적 ‘영광’의 작용은 이병도(李丙巖)의 고구려 역사에 대한 언급에도 표출되는 것 같다.

41 「曆史敎理錯綜談·總論」, 『李炳憲全集』上, 361쪽.

42 「曆史敎理錯綜談·國號及紀元考」, 『李炳憲全集』上, 361쪽.

43 靑吾(1925. 7), 「天惠가 特多한 朝鮮의 地理」, 『開辟』第61號.

弱骨貧血의 現今 조선인으로서 想을 往古에 馳 할 때에 다소의 자극, 흥분, 혹은 위안을 주는 것이 잇다하면 그것은 東方 삼국의 史跡이갓다. 삼국 중에도 저 眇眇한, 鴨綠江畔一隅의 地에 興起하야 드디어 遼左漢北(遼河以東, 南漢江以北)의 滿鮮地域을 포괄한 東方未曾有의 大國을 建成하얏든 고구려의 역사를 繙할 때에 더욱 吾人의 感을 절실케 하는 자가 만히 잇다.⁴⁴

따라서 민족독립을 추구하는 사상가로서 자기 민족을 역사상 무력이 강한 민족으로 형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당시 신채호, 박은식 등이 당시 중국에 망명하여, 한국독립운동을 중국에서 전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중국의 각 방면에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한 지지를 구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신채호는 이러한 역사를 강의할 당시 중국인 친구인 리스쨩(李石鎭) 등의 도움으로 베이징대학 도서관에서 사고전서를 열람하였으나, 이후의 연구 내용은 그들이 과거에 어떻게 중국을 굴복시켰는지, 앞으로 어떻게 다시 중국의 영토를 빼앗을지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상과 현실의 괴리는 구체적인 사람의 몸에 남아 필연적으로 심리적인 충돌을 일으켰다. 이러한 심리를 풀고 중국인과 교류하고자 하면 또한 필연적으로 심리적인 장벽이 남게 된다.

한국이 해방된 이후에도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고구려의 이른바 영웅적인 기개에 심취하여 만일 신라가 아니라 고구려가 통일을 했더라면 한국은 중국 동북과 화북지구를 아우르는 광대한 영토를 통치하며 한국도 대국이 될 수 있었다고 상상했다.⁴⁵ 오늘날까지 적지 않은 한국

44 李丙燾(1925. 7), 「高句麗國民의 氣象과 努力」, 『開辟』 第61期.

의 매체들이 여전히 고조선과 고구려의 역사를 한민족이 한족을 침략한 역사로 묘사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요와 금과 청의 역사를 한국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분명 근대 이후의 상술한 사상 경향의 연속으로 볼 수 있다.

3. 모화에서 천화로

전근대, 조선 사대부의 중국에 대한 우월의식은 화이 구분의 기반 위에 성립되었는데, 이 화이 구분이란 대체로 중국 문화를 표준으로 삼은 것이었다. 따라서 조선의 소중화의식이 얼마나 팽창했던 여전히 춘추대일통(春秋大一統) 관념의 범위를 극복할 수 없었고, 일원적 천하관도 넘어설 수 없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서자 문명개화파가 일본으로부터 서양문명을 표준으로 하는 신문명론을 수입했다. 이 문명론 속에서는 중화와 소중화가 모두 그 의의를 상실하고 반(半)개화국의 위치로 떨어진다. 갑오전쟁에서 중국이 일본에 패하자 『독립신문』은 중국이 실패한 주요 원인을 아직 문명화를 이루지 못한 데서 찾았다.

그러므로 더 이상 북학파의 주장처럼 만청을 중화 고유문명과 구분하면서 중국의 문화를 수입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용하변이(用夏變夷)의 관념은 더 이상 긍정적 반응을 얻지 못했고 도리어 일부 사상가들은 중국문화의 유입이 조선 쇠락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기에 이르렀다.

45 洪以燮, 「高句麗가 三國統一을 하였더라면」, 『洪以燮全集』 9, 376쪽.

당시 『독립신문』은 유학과 중국의 고서가 중국과 조선에 유해하다고 보는 글을 실었다.⁴⁶ 계몽운동 시기 신채호 등은 보다 더 격렬하게 비평을 가했다. 신채호는 강조하기를, “삼국시대 이전에는 한문(漢文)이 성행하지 않아 온 나라 인심이 단지 자신의 나라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중국을 자신의 구적(仇敵)으로 보았는데, 그 이후로는 집마다 한문 서적을 수집하고 보존하며 한문서적을 읽었다고 한다. 그 결과 한관(漢官)의 위(威儀)가 한국의 국수를 매몰시키고 한토(漢土)의 풍속과 교화가 국혼을 빼앗아갔고, 조선은 스스로를 속국으로 인식하게 되어 백성은 노예 근성에 젖고 국가는 오랜 기간 노예의 경지에 빠져 있게 되었다”고 했다.⁴⁷

조선은 유교국가였으므로 근대에 국가가 쇠락한 원인은 당연히 유교에 있다고 인식되었다. 박은식은 “소위 예의지방(禮義之邦)은 조선(祖先)의 공덕(功德)을 기념치 아니하는 자의 미명(美名)이며 소위 소중화(小中華)는 타국의 노예를 자감(自甘)하는 자의 휘호(徽號)”라고 보았다.⁴⁸ 정인보(鄭寅普) 또한 “(韓民族) 수백년래로 역사의 고향(膏肓: 병이 그 속에 들어가면 낫기 어렵다는 부분)을 가진 민족이 되었으니”, “수병(受病)한 원인은 암만하여도 송학(宋學)의 수입으로 좇아 명철보신(明哲保身) 일언(一言)을 성도시(聖道視)한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 하겠으나 이보다도 고려 중엽 이후로 중국에 대한 부모(浮慕)가 아주 선민(先民)의 전통적 국성(國性)을 저버리어 마침내 사이비(似而非)한 한문문사(漢文文詞)와 자성(自性) 없는 부종적(附從的)인 학술이 미만(彌漫)하게 되어 어느덧 본심(本心)을 잃어버린 것이 더 큰 원인

46 『獨立新聞』, 1896. 6. 20.

47 「國漢文의 輕重」, 『丹齋申采浩全集』別集, 75쪽.

48 朴殷植, 「夢拜金太祖」, 『朴殷植全書』中, 195쪽.

이라 하겠습니까. 대저 이 병근(病根)을 심각화(深刻化)하기는 송학이며, 이 병근(病根)을 온양(醞釀)해 내기는 모한파(慕漢派)의 배본(背本)한 학자들입니다”라고 했다.⁴⁹ 심지어 조선시대에 출현한 당쟁도 수차례 당동별이(黨同伐異)가 행해졌던 송대의 유가사상을 수용한 결과라고 인식되기도 했다.⁵⁰ 해방 후에도 일부 한국인은 “과거 한국에 있어서는 중국유교(中國儒敎)를 극도로 숭양(崇揚)해야 사대사상을 이루었으며 그 부패로 인하여 최근까지 사상적(思想的)으로 배화열(排華熱)이 농후한 것도 사실이다”⁵¹라고도 인정했다.

그러나 중국문화를 부정하는 외중에 이상한 현상도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한편으로는 중국문화를 부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고대문화가 조선문화에서 유래했다고 강조한 것이다. 신채호는 중국 고대문화의 수많은 것들이 조선 문화에서 유래했지만, 진한(秦漢)대에 이르러서 중국에 협소한 국수주의가 성행하여 조선의 학술에 대한 존숭이 더 이상 세상에 전파되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그는 우(禹)가 치수에 성공한 이유는 그가 단군의 태자인 부루(夫婁)로부터 『황제중경(皇帝中經)』을 얻었기 때문이고,⁵² 『홍범(洪範)』은 『황제중경』의 금간옥자(金簡玉字) 편을 기자가 풀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⁵³ 이기의 『홍범』에 대한 견해는 더욱 기이하다. 그에 따르면 『홍범』은 단군이 집필

49 鄭寅普(1983), 「曆史的 膏盲과 吾人의 一大事牛耳洞夏令會講話筆記」, 『薈園 鄭寅普全集』 2, 연세대학교출판부, 278~279쪽.

50 金起漣(1921), 「우리의 社會의 性格의 一部를 考察하여써 同胞兄弟의 自由處斷을 促함」, 『開闢』 10월 임시호.

51 張致煥(1948), 「人權宣言과 民主政治」, 『民聲』 4권 9~10期.

52 申采浩(1930), 앞의 글, 381쪽.

53 申采浩(1930), 앞의 글, 409쪽.

했고, 단군은 그 부분을 남생이[金龜] 속에 넣어 바다에 놓아주면서 “아무데나 네가 원하는 대로 가다가 그칠 때 너를 획득한 자가 성인 되리라”라고 했다. 우가 낙수(洛水)에 이르러 가장 먼저 이를 발견하고 낙서(洛書)라고 하였다. 이후 이것이 이윤(伊尹)에게 전수되고, 다시 기자에게 전수되었다. 그리하여 기자는 바로 단군의 제3세 화신이라는 것이다.⁵⁴ 한자의 생성을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었다. 즉 봉황이 동방의 군자국(조선)에서 한 도면을 물고 왔는데, 황제가 이를 얻어 그것에 의거해서 문자를 만들어, 서계(書契: 특히 은대에 나무·귀갑 따위에 새긴 문자)를 제정하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중화만세(中華萬歲)의 문명사업(文明事業)은 총(總)히 동방의 일신조(一神鳥)는 그 지침(指針)을 정하였으며 운로(運路)를 개(開)하였”⁵⁵다는 것이다. 정인보는 장태염(章太炎)이 ‘이(夷)’를 ‘인(仁)’으로 번역한 점에 착안하여, 인은 유가사상의 핵심 개념이니 동양사상의 주류가 조선에서 발원하였다고 추론하였다.⁵⁶

나아가 중국문화뿐 아니라 세계문화 역시 모두 조선의 문화에서 유래하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채호는 “대개 단군 이후 천여 년 동안의 조선은 그 치제(治制)의 선미(善美)가 고대(古代)에 가장이었으며 문화의 발달도 인방(鄰邦) 각족(各族)이 모범(模範)할 만하게 되었나니, 만일 자손 된 자는 무력으로 그 문화를 보호 또는 확장하였더라면 조선이 진실로 동양문명사 수좌(首座)를 점령할 뿐 아니라 환구(環球) 전토(全土)도 독점하였

54 李沂, 『真教太白經』[朴鍾赫(1995), 『韓末激變期 海鶴 李沂의 思想과 文學』, 亞細亞文化社, 111쪽에서 재인용].

55 局子街林楚(1921. 9), 「抑鬱한 朝鮮氏族의 假托의 家乘」, 『開闢』 第15號.

56 鄭寅普(1983), 앞의 글, 278쪽.

을 것”⁵⁷이라고 믿었다. 이에 비하면 이병헌(李炳憲)은 더욱 적극적이였다. 그는 직접적으로 백두산이 세계문명의 발상지이고 세계문명은 모두 조선족에서 기원했다고 주장했다.⁵⁸ 최남선(崔南善)은 ‘불함문화론(不咸文化論)’을 제기하여 한국을 동북아 문화의 중심으로 간주했다. 그는 1949년 반민특위에 제출한 『자열서(自列書)』에서 다음과 같이 불함문화론을 제기한 목적을 해명했다. “실로 단군문화(檀君文化)로서 일본은 물론 이요, 전인류 문화의 일반(一半)을 포섭하고자 한 당돌한 제안(提案)에 불외(不外)하는 것이었다.”⁵⁹

유교가 중국에서 전래되었으므로 중국은 자연히 비판과 부정의 대상이 되었다. 유길준(兪吉濬)은 1885년쯤까지 조선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갑오전쟁 이후 큰 변화가 생겨, 그는 완전히 일본 일변도로 돌아서서 중국인을 가혹하게 비판했다. 1895년 유길준이 외교사절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일본군을 위해 노역을 제공하고 싶어 하는 중국 백성들도 있다고 했다. 이에 유길준은 “이런 것이로구나! 인민에게 자립의 기상이 없음은 이러하구나! 청국의 백성은 천성이 이러하니, 고로 한인(漢人)이 소위 사이팔만(四夷八蠻)에게 능욕을 당하는 것이고, 만일 힘이 있어 주인으로 들어온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가장 많은 인민이 감히 화살 하나 향겨하지 못하고 순순히 그 군주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위(晉魏) 이래로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이다”⁶⁰라고 했다. 『독립신문』에도 다음과 같은

57 申采浩(1930), 앞의 글, 399쪽.

58 「曆史敎理錯綜談·總論」, 『李炳憲全集』上, 361쪽.

59 崔南善(1973), 「自列書」, 『六堂崔南善全集』10, 현암사, 532쪽.

60 「總理大臣伊藤博文問答(甲午)」, 『兪吉濬全書』IV(政治經濟編), 一潮閣(1971),

글을 실어 중국인을 비판했다. “인민이 약하며 천하며 어리석으며 더러
오며 나라 위할 마음이 없으며 남의게 천대를 바다도 천댄줄 모르고 업
스히 넉힘을 바다도 분한 줄 모로난지라.”⁶¹

이러한 과정 중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
은 역시 사대주의에 대한 비판이었다. 근대 이전에는 자소사대(字小事大)
가 대국과 소국의 관계에서 필연적인 형식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근대
에 들어서면서 조선은 서방 각국과 통상조약을 맺은 이후, 조공체제와
근대 국제관계 체제 사이의 모순에 대해 분명하게 표현하기 시작했다.
1882년 조선은 조공제도를 개혁하여 양국이 통상조약을 맺기를 요구
했다. 또한 조선 파견 사절이 북경에 주재하여 하사(賀謝), 진주(陳奏) 등의
일에도 따로 사절을 파견할 필요가 없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⁶² 그러나
리홍장과 청 정부는 이 요구를 거절했다. 비록 『청한수륙무역장정(淸韓水
陸貿易章程)』이 조인되었지만 거듭된 양국의 종속관계 천명 외에는 본래의
조공제도에 대한 어떠한 개혁도 없었다. 유일한 변화라면 임시적으로
사행인원이 수로를 통해 중국에 올 수 있게 하여 반드시 육로만 이용하
지 않아도 되도록 한 조치뿐이었다. 조대비(趙大妃) 서거시, 청 정부는 구
식 규거에 따라 칙사를 조선에 보내 치제(致祭)하려 하였으나, 고종은 중
국 사신의 파견을 원치 않았다. 위안스카이(袁世凱)는 그 이유가 중국 칙
사의 영접 의례를 거행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고, 청 정부는
마지막까지 사신 파견을 고집했다. 이 시기 조공제도의 불평등 및 근대
적 외교의례와의 부조화는 날로 강해지는 국가주권 관념과 충돌했고,

361~362쪽.

61 『獨立新聞』(1896. 4. 25).

62 「從政年表三」, 『魚允中全集』, 亞細亞文化社(1978), 830쪽.

이는 갈수록 두드러져갔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1884년 갑신정변 당시 김옥균(金玉均) 등은 조공 허례를 폐지하자고 주장하였다. 유길준은 예전에는 중국이 조선이 기댈 만한 역량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지만 이후 중국이 조선을 아시아의 영구한 중립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그는 『서유견문(西遊見聞)』에서 조공국이 독립주권국가가 될 수 있다고 천명했다. 갑오전쟁에서 패한 중국이 일본의 요구대로 조선이 독립주권국가임을 승인할 수밖에 없게 되자 조선 내에서는 독립을 경축하는 동시에 사대주의 비판이 시작됐다.

조선이 청조의 변속 지위에서 벗어난 독립주권국가임을 표방하며 설립된 것이 바로 독립협회였다. 독립협회는 청조와의 중변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국가가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간주했다.⁶³ 독립협회의 주요 사업 중 하나는 과거 청조의 칙시를 영접하기 위해 세운 영은문(迎恩門)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세우는 것이었다. 독립협회의 주요 지도자인 서재필(徐載弼)은 영은문의 철거는 조선 국민의 숙원임을 강조하였고, “무엇보다도 이 더러운 표, 부끄러운 이 문을 없애야겠다”고 말했다.⁶⁴ 이후의 계몽운동에서도 사대주의에 대한 비판은 주요한 내용 중 하나였다. 신채호는 한국인이 20세기의 새로운 국민이 되어 수백년간 사대주의에 심취했던 오랜 치욕을 설욕하자고 호소했다.⁶⁵ 유인식은 사대주의가 조선쇠퇴의 원인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

63 「徐載弼博士自叙傳」[洪以燮, 「徐載弼近代化的 기수」, 『洪以燮全集』 8, 100~101쪽에서 재인용].

64 「徐載弼博士自叙傳」[洪以燮, 위의 글, 100~101쪽에서 재인용].

65 「二十世紀 新國民」, 『丹齋申采浩全集』 別集, 211쪽.

선왕조가 건립된 이후부터 “존왕사대의 논(論)이 일부 그 이치를 이루긴 하나, 온 나라의 뇌수에 깊이 들어가 의존하는 습관을 키우고 자주의 성격을 결핍시켰다”⁶⁶고 주장했다. 나아가 중국을 동경하는[慕華] 사상을 비판하며 “이항로(李恒老)의 화서아언(華西雅言), 유인석(柳麟錫)의 숭화묘(崇華廟)는 쉬쉬하며 도망다니는 것이 참고 봐줄 수 없을 지경이니 사기를 위축시키고 인민의 풍속을 유약하게 하는데, 모두 이들 사대의 논자들이 그것을 숭상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⁶⁷

이러한 인식하에 조공·책봉제도의 의례상 불평등성에 대한 논의는 문학적 묘사의 장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신라 이래 고려, 조선의 군왕들이 중국의 황제에게 반드시 책봉 받아야 했던 것은 당시 조선인들에게 커다란 좌절감을 주었고, 조공은 우리나라의 재화와 보물을 중국에 헌납하는 것이었고, 금은보화를 중국의 천사(天使) 집대에 써야 했다고 묘사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자극한 것은 중국 황제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양가(良家)의 여자아이들을 바쳤다는 내용으로, 이는 조선인들에게 극도의 모욕감과 수치감을 주었다. 이에 어떤 이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그 이른바 以小事大는 天經地義로 解하고 用夏變夷는 鬼訓神誥로 信야 尊中華攘夷狄은 春秋的大義라는 문제하에서 聖宋大明을 위하여 胡元蠻清을 斥하노라고 감히 幾多의 희생도 공헌하였으며 反히 幾多의 유린도 招致하여 역사상 江漢을 傾하여 濯하고 秋陽을 借하여 曝할지라도 능히 沒痕跡의 快를 遏지 못할 절대의 수치를 自作하였다.⁶⁸

66 「太息錄」, 『東山全集』 下, 98쪽.

67 「太息錄」, 『東山全集』 下, 99쪽.

이러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일제시기에 더욱 격화되었다. 백영서 교수는 대한제국시기 한국 언론의 중국 인식을 천시의 대상인 중국, 동아시아의 화평이라는 대세를 유지하는 일원으로서의 중국, 개혁의 모범이 되는 중국의 3가지로 분류했다.⁶⁸ 그러나 시간의 추이에 따라 후자 두 가지의 인식은 약화되고 첫 번째 인식이 점차 강화되었다. 1920~1930년대에 이르러 중국 멸시의 정서는 식민지 조선에서 이미 매우 강렬했다. 1928년 웨이젠궁(魏建功)은 초빙을 받아 경성제국대학에서 중국어 강사를 하게 되었다. 그는 경성(서울)에 살면서 조선인이 화교를 무시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그가 조선에 온 뒤 몇몇 친구들이 그에게 “조선인은 중국인을 매우 무시한다”고 알려줬다고 한다. 조선인들이 중화요리점에서 비웃고 욕하며 밥을 먹고는 돈을 내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웨이젠궁 또한 어느 조선인 가족이 식사 후 술잔을 집어 가는 것을 목격했다. 조선인들은 화인(華人)을 보면 트집을 잡아 싸움을 걸고, 일부러 부딪치거나 비웃고 욕했다. 화인들이 외진 골목을 걸어가다 종종 못매질을 당하고 ‘媽啦格口’라는 욕설을 듣는 일은 일상다반사였다. 조선인은 믿는 구석이 있어 두려움을 몰랐고 화인은 묵묵히 참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경찰도 조선인이라 그들 자신도 화인을 우롱했기 때문에, 화인은 불평을 할 수가 없었다. 중국인에 대한 조선인의 이러한 태도를 웨이젠궁은 이렇게 평론하였다. “내가 평화롭게(혹은 다르게 보면 편파적으로) 말하자면, 조선인들은 그 일부 ‘불령(不逞)’한 사람을 제하면 그 나머지는 모두 ‘태령(太逞)’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68 局子街林莖(1921), 「抑鬱한 朝鮮氏族의 假托的家乘」, 『開闢』 第15號.

69 백영서(2000), 앞의 글.

유구한 시간 동안 종속적인 역사적 지위에 있었고 이제는 새로운 것을 무겁게 등에 지녀, 대부분이 탐욕적이고 은혜는 작게 베푸는 나쁜 습성을 갖게 되어버렸다. 노예는 털끝만큼의 좋은 것이라도 얻으면 곧 비할 바 없이 기뻐하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그 주인의 은혜를 기리려고 한다. 그는 이로 인해 또한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길 좋아하고, 대개는 자신이 그 주인에게 고분고분하고 얌전하게 대하듯 그의 노예도 주인을 그렇게 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화인이 온 세상의 주인이면서 노예의 노예란 말인가!”⁷⁰ 1931년 만보산 사건이 야기한 조선 각지에서의 화교 타살 풍조는 비록 일본 제국주의의 음모였지만 이러한 정서가 사회적 배경으로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후 조선 각지에서는 끊임없이 화교의 재산을 강탈하고 모욕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조선인은 중국인이 연 식당에서는 더욱 더 함부로 욕설을 퍼붓고 식기와 가구들을 때려 부숴다.

조선인이 중국인을 업신여기고 모욕하게 된 원인에 대해 웨이젠궁은 이렇게 분석했다. 일반적인 조선인은 주로 경제적인 원인을 드는데, 중국인이 조선에 와서 조선인의 경제적 이익을 빼앗아 간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해방된 이후에도 이러한 인식의 영향이 여전히 매우 강렬했다. 한국인의 배화심리가 일어났고, 1950년 화상(華商)의 창고가 차압 봉인되는 등의 사건이 생겼고 그 후에도 오랜 기간 화교 경제는 탄압받아 결국 화교들은 한국에 정착하기 어려워져 다른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한편 지성계에도 과거 화이 구분의 그림자가

70 「僑韓瑣談八·華韓之間의愛惡」, 『魏建功文集』五, 江蘇教育出版社(2001), 180쪽.

있어 여전히 중국인을 호(胡)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화이 구분은 이미 큰 변화를 겪었으며 과거의 문화 표준도 없어졌으니 단지 중국인을 천하게 부를 때에나 사용하는 부호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오늘날까지 이러한 중국인에 대한 천칭(賤稱)은 한국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웨이젠궁과 비교하여 한국인 이상은(李相殷)의 분석은 더욱 예리하다. 그는 한국인이 화교를 무시하는 감정이 생긴 원인은 대체로 한국인 자신에게 있다고 보았다. 연령층별로 보면 젊을수록 중국과 중국인에 대해 무시하는 감정이 강렬하여 아동들도 화인을 보면 ‘지나인, 칭국노, 미라, 미라’ 하고 모욕하는 동요를 불렀다고 한다. 젊은이들은 주로 일제의 식민교육을 받아서 일본제국주의 정치와 교육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학교에서 일본인으로부터 배우는 내용의 대부분은 중국과 중국인의 결점이지 장점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 역시 한국인이 중국과 중국인을 무시하는 감정의 근원 전부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이상은은 한국 지성계가 민족의식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양국관계의 역사를 고쳐 쓴 데에도 일부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당시 한국 지성계와 언론계는 일제의 식민통치 아래에서 문화운동을 통해 국민의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했다. 그들은 한국의 문자와 언어를 연구함으로써 민족의식을 고취하기를 희망했지만 일본 식민당국에 의해 금지당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역사에서 조선의 민족·자주정신을 발굴하였다. 그러나 일본과 관련된 역사는 마찬가지로 금지된 분야라서 결국은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리하여 중국과 연관된 문화와 역사적 관계가 개조되고, 1894년 전 중국의 번속이었던 역사를 한국의 치욕의 역사로 여기게 되었고, 이를 이용해 국민의 민족의식을 자극하였다. 이

렇게 중국과 일본이라는 이중의 수모감과 열등감에서 형성된 조선인의 심리적 불건전성은 마음속에 강렬한 원한의 감정을 축적시켜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폭발해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일본의 식민통치 아래 일반인들은 감히 원한을 일본인에게 발산하지 못한 반면 약자인 화교는 조선인의 화풀이 대상이 되어, 역사적으로 중국은 일본의 속죄양이 되었다. 일본이 보기에 (조선인들의) 중국에 대한 비판은 일본에 무해할 뿐만 아니라 조선의 중국에 대한 감정을 냉각시킬 수도 있는 것이었으므로, 이에 대해 방임하는 태도를 취했다. 그 결과 일본의 중국에 대한 비판이 젊은이들 사이에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혐오와 멸시의 심리를 만들어냈다.⁷¹

설령 중국에서 독립운동에 힘쓰던 인사들이라고 해도 사대의 역사는 어느 정도 굴욕적인 기억이었다. 이시영(李始榮)은 중국에서 중국인 친구에게서 “너의 나라는 본래 중국의 속방(屬邦)이었다. 그러므로 너의 나라와는 경쟁하지 않았다. 이제 너의 나라가 망하여 없어졌으니 우리가 능히 일본을 구제하여 옛 땅을 다시 보전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니 이는 실로 중국인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문제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비록 이것이 연민과 동정에서 나온 말임을 알았음에도 여전히 매우 불편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풍자했다. “언젠가 중국이 굴레에서 벗어나 힘을 키워 지구를 모두 점령하는 날이 오면 어찌 반도 한 나라에 한정되겠는가? 하지만 지금은 몸을 굽히고 남을 섬기고 있으니 인격도 없고 사사건건 모두 해명해야 하며, 자성하지도 않고 교만함을 고치려고도 하지 않으니, 어찌하면 그 몽매함을 깨달을까?”⁷²

71 李相殷(1949), 「韓國人에 對한 華僑의 感情」, 『韓中文化』 創刊號.

해방 후 한국에서 일제 식민교육의 영향은 사라졌지만, 한 가지 요소는 여전히 존재했으니 중국이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한 사실도 한국인의 이런 심리를 돌려세울 수 없었다. 그래서 양통팡 교수는 당시 한국 지식인들에게 더 이상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한국인의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멸시 정서를 선동하지 않도록 환기시킨 것이다. 이후에 중국이 한국전쟁에 출병한 영향으로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더 고착화되어 심지어는 전쟁 중의 인해전술까지 중국의 부정적 형상의 상징이 되었다. 지금까지도 한국의 학자들은 이 시기의 역사가 거론되기만 하면 중국의 인해전술에 대해 알가알부한다.

이러한 역사인식의 변화과정 속에서 우리는 조공·책봉관계와 관련하여 상이한 시기, 상이한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의 독립성을 강조할 때 조공·책봉관계는 실질적인 의의가 없는 의례 관계였던 것처럼 묘사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중국이 한국을 억압했던 것을 강조할 때는 이러한 전통적 관계의 불평등성이 또다시 매우 실제적인 것으로, 심지어는 근대의 식민관계처럼 묘사되기도 한다. 신채호는 한일합병을 비평하면서 일부 한국인들이 일본의 병탄정책을 명칭시대 조선과 중국의 관계와 동일하게 보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양자는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피(彼) 명, 청 등은 불과(不過) 시(是) 정부를 압박하여 금폐(金幣) 기천냥(幾千兩)이나 징(征)하고 인삼 기백근이나 구하여, 명의상(名義上)으로 정공국(征貢國)을 작(作)하는 동시에 우(又) 한정부(韓政府)에 납송(納送)하는 물품이 정수(征收)하는 물품보다 과하고, 단(旦) 인민의 권리는 감히 탈(奪)하지 못하였

72 李始榮(1983), 『感時漫語』, 一潮閣, 原文, 67~68쪽.

으며 인민의 산업을 감히 요(援)하지 못하였으니, 연즉(然則) 피(彼)가 일시 한국에 기반(羈絆)을 수(授)함은 허명(虛名)뿐이라. 고로 한인이 기(其) 고통을 명연(冥然) 불각(不覺)하였거니와 금(今)에는 국(國)이 망하면 민도 망하나니 한인이 일본의 거동을 명, 청같이 시(視)하지 아니하며”⁷³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상적인 경험에 기반을 두고 생겨난 중국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큰 신빙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한국인이 중국인에 대해 가지는 부정적인 인식 중 청말 이래 보편적인 것 하나는, 중국인은 더럽다는 것으로 요즈음 한국의 방송에서는 아직도 중국인이 목욕을 하는가가 토론의 주제가 되곤 한다. 한 국가의 방송국이 이러한 문제를 토론하는 것은 당연히 중국인의 위생과 건강 상황에 대한 관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을 빌려 일부 국민의 허영심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역사적 사실에서 보면 조선에 온 화교들은 주로 산둥 출신이었고, 대다수가 한국에서 생계를 이어나가려 했던 농민으로 그 생활수준이 높지 않았으며, 어쩌면 조선인 사대부만큼 청결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인의 눈에는 조선의 수도 한성(서울)과 조선인 역시 매우 위생적이지 않았다. 『소방호여지총초(小方壺輿地叢鈔)』에 수집된 몇몇 중국인의 한국 여행기에서 그들은 모두 한성의 거리가 매우 불결하고 각 집마다 변소가 없으며, 주민들이 길가 양측의 도랑에 직접 분뇨를 쏟아부어, 그 물이 흘러가게 내버려두고, 만약 물이 없을 때에는 길거리의 악취가 사람을 괴롭혀 행인들이 코를 가렸으니, 그야말로 “바다에 악취를 쫓아가는 사람이 있다[海上有逐臭之夫]”⁷⁴는 전설

73 申采浩, 「韓·日合竝論者에게 告함」, 『丹齋申采浩全集』別集, 205쪽.

에 상응하는 것이었다. 거리가 이리했듯이 사람 역시 불결하여 “사람들은 모두 목욕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고 부귀한 사람들은 집에서 몸을 닦고, 빈천한 사람은 여름에 연못에서 대충 목을 감았다. 따라서 아름다운 옷을 입어도 더러운 냄새는 도무지 참을 수 없다.”⁷⁵ 1928년 웨이젠궁이 경성제국대학 교수로 재직할 당시, 조선총독부는 파리박멸운동을 호소했는데, 신문지상에 당시 한국인의 파리에 관한 몇 가지 미신도 소개되었다. 예를 들어 파리가 앉았다 간 음식을 먹으면 호걸이 될 수 있다거나, 밥 위에 파리가 많이 오는 것이 재물이 많아질 징조라거나, 마실 물이나 탁주에 날아 들어간 파리는 좋은 운을 가져다주는 것이고, 파리를 먹으면 뱀독을 해독할 수 있고 정신병을 낫게 한다는 것 등이었다.⁷⁶ 여기에 대해 웨이젠궁은 다음과 같이 평했다. “나는 ‘야만’, ‘문명’의 선입견을 가지고 비평하고 싶지 않다. 누구나 각자의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명예롭거나 불명예스러운 습관과 미신을 가지고 있다.”⁷⁷

민족은 상상의 공동체라고 한다.⁷⁸ 민족을 건립하기 위해 자민족과 타 민족의 구별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타 민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또한 상당부분 허구적인 성분을 가지는 것이다.

74 缺名氏, 「朝鮮風土記」, 王錫祺 輯, 『小方壺輿地叢鈔』.

75 缺名氏, 위의 글.

76 「僑韓瑣談十五·蠅의迷信(朝鮮風俗)」, 『魏建功文集』 五, 203쪽.

77 위의 책, 205쪽.

78 Anderson Benedict(1983),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Nanam Publishing.

4. 맺음말 : 역사기억, 민족심리와 국제관계

상술한 것을 종합하면 근대 한·중 양국관계에서의 문제는 현실적인 이익의 충돌이라기보다 인식상의 격차인 것 같다. 이러한 인식상의 격차가 생겨난 배경, 원인과 변천에 대한 분석은 현 한·중 양국 국민의 상호인식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여 근대 한국인의 중화, 조공, 사대 등 관념에 대한 인식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근원을 밝히고자 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그 인식 속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밝혀내 양국 국민의 상호이해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청조는 조선과의 관계가 긴밀했고 사절의 왕래도 끊이지 않았지만 양측은 심리적인 층위에서는 소원했다. 그 주요한 원인은 조선의 소중화 의식에서 나온 것이었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중국과 한국은 정치적인 관계에서 이와 입술 같은 운명공동체가 되었지만 심리적인 층위에서 양국의 관계는 여전히 소원했기 때문에 조선 국내에서 친청, 친일, 친러, 친미 등의 구분이 생겨났다. 1895년에 종변관계가 종식된 후, 특히 대한제국의 멸망 후 한국에서는 1895년 이후의 역사를 망국사로 보고 1895년 이전을 사대의 역사인 치욕사로 간주하였다. 한국의 근대민족주의가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부정에 기초하고 있었으므로 한국인은 중국과 심리적 간극이 한층 더 커졌다. 비록 한국 해외 독립운동의 주요 무대가 중국이었지만 중국인과의 심리적 거리는 여전히 좁혀질 수 없었다. 중국인은 한국인을 만날 때면 역사적 기억을 바탕으로 한국 독립을 도와야 한다는 묵직한 책임감을 느꼈으나, 이에 대해 한국인에게

는 중국인에게 감사하는 따뜻한 마음과 동시에 일종의 굴욕감이 마음에 솟아올랐다. 그리하여 이시영은 『감시만어(感時漫語)』에서 중국인의 이러한 반응에 풍자를 가했던 것이다. 역사상 같은 제도를 두고 양국인의 역사기억 속에서 만들어낸 민족심리는 다른 것이었다. 이러한 민족심리는 필연적으로 양국의 정치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근대 이후 양국관계에 주요한 장애로 존재하고 있다.

상술한 중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과정에서, 조선 후기 소중화의식이 만들어낸 중국인식상의 편견은 근대 민족주의 수립과정에서도 다시금 나타나, 이렇게 중국은 일본을 대신하여 한국 민족주의 사상가들의 주요한 비판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드러난다. 현재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조선중화주의’를 고취하여 이것을 한국 민족주의의 사상적 자원으로 삼고자 한다. 지금 한국 민족주의 정서의 배후에는 여전히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고, 그리하여 양국인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와 심리적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양국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나아가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신시대를 열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역사기억과 민족심리를 극복해야 한다.

「근대 한중관계 변천의 이상과 현실」에 대한 토론

박경석 (동북아역사재단)

왕위안저우[王元周] 선생의 발표는 한국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는 중국의 전문 역사학자가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고 소중한 기회이다. 상호 인식의 문제는 관계사에 있어 도저히 빼놓을 없는 핵심적인 주제이다. 특히 근자에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한·중 상호 간의 부정적인 인식 내지 정서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일단의 역사적 근원에 접근했다는 점에서 더욱 흥미롭다.

발표문은 자료의 구사나 논지의 전개에서 흠잡을 데 없었다.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부정적 인식을 조선 후기부터 상세히 조망하고 있어 많은 공부가 되었다. 다만, 전체 논지에 대해서는 토론자 나름대로 입장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에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토론의 책임을 면하고자 한다.

1. 발표자는 ‘한국인의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역사적 근원’이라는 부제목을 달았지만, 사실 ‘역사적 근원’이라기보다는 ‘역사적 계보’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이런 토론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첫째, 발표자는 서론에서 “현재 한국인의 중국 인식 가운데에서 우리는 놀라운 역사적 연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과연 그렇게만 볼 수 있을까? 어느 시대든 타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긍정적 인식이 공존할 터인데, 부정적 인식을 계보화(系譜化)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연속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발표자는 근대 이후 현재의 인식이 전근대의 인식과 같은 성격이라는 것인데, 그것이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같다고 볼 수는 없다.

역사에서 연속성이 발생하는 연유와 관련해서는, ‘개체와 구조’라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동일한 사람이라는 측면이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살아온 내력이 있고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관성(慣性)이 있어 그리 쉽게 변하지 않으므로 연속성이 발생한다. 조선 시대의 사대부와 현재의 지식인을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또 하나는 연속성을 낳는 구조적 측면이다. 요컨대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낳는 구조적 요인들은 해당 시기의 정치·사회적 구조 또는 한중관계의 구조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데, 조선시대와 현재의 한중관계는 구조적으로 구분된다.

둘째, 현재의 부정적 상호 인식은 근대 이후 한·중·일 3국이 각각 식민지, 반식민지, 제국주의 국가로 분기(分岐)되면서 정립된 적자생존의 ‘갈등구조(구조화된 갈등관계)’에서 직접적으로 유래된 것으로 이전과 다르다. 한·일, 중·일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한·중 간에도 이런 갈등관계는 명확하였다. 예컨대, 19세기 후반 청조(淸朝)가 조선에 가한 내정간섭은 이미 전근대의 의례적 조공관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근대적 성격의 외압이었다. 위안스카이(袁世凱) 파견 당시의 청국은 종래의 조공체제에 가탁해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지배를 조선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위안스카이의 내정간

쉽 역시 그러한 시도의 연장이었던 것이다. 조선의 태도 역시 ‘멸망의 위기’ 앞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조급함 그대로였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국의 성공과 행복이 곧 자국의 실패와 불행이 되는 생생한 체험을 한 것이다. 이런 체험이 역사 기억의 무의식 공간에 잠재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주변국의 성장을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발표자가 말한 한국 민족주의의 ‘반중(反中) 인식’은 이런 각도에서 설명할 수 있다. 같은 부정적인 인식이라 할지라도 그 ‘단절성’이 주목되는 것이다.

2. 발표자는 부정적 인식만을 분석했는데, 이것이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인식 전체에서 자리매김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니까 조선 후기 이후 한국인의 중국 인식이 일관되게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기본적으로 조선 후기에도 ‘사대자소(事大知小)’의 관념이 주류였던 것 아닌가? 또한 부정적 인식이라면 사실 몽골시기, 중국에 대한 전에 없던 두려움이 그 근원이지 않을까 싶다. 조선시대 강고했던 사대의식이 몽골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3. 발표자는 결론에서 “한·중 간에 현실적인 이익의 충돌이 없었음에도 중국을 멸시하는 인식이 생긴 것은 인식 내지 심리상의 문제”라고 말한다. 인식이나 심리의 형성이 아무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인식과 심리의 형성에 역사 기억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매체와 이를 작동시키는 다양한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이 근래 ‘역사와 기억’에 대한 구미학계의 연구에서 충분히 강조되고 있다. 인식과 심리를 형성시키고 작동시키는 현실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구조적 분석이 필요하다.

4. 발표자는 ‘소중화(小中華)’가 중국인이 조선에 대해 쓴 용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가? 베트남 등 여타 지역에 대한 같은 사례가 있나?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 베이징대학 공동 학술회의

동북아 관계사의 성격

초판 1쇄 발행 2009년 8월 6일

초판 2쇄 발행 2009년 8월 14일

편 동북아역사재단

펴낸이 김용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 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77 임광빌딩

전 화 02-2012-6065

팩 스 02-2012-6187

e-mail book@historyfoundation.or.kr

© 동북아역사재단, 2009

ISBN 978-89-6187-126-6-94900

978-89-6187-128-0 세트

- *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